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19-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2.

- 연구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남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도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공익펠로우 변호사)  
김지연 (신시네티 대학, 형사정책학 박사)  
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손여옥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연구지원** 조병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오지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한솔 (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허정현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 〈제목 차례〉

<b>제1장   서론</b> .....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b>제2장   연구배경 및 문헌검토</b> .....	9
제1절 성인지 감수성 관련 선행 연구 .....	9
1.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 및 개념 .....	9
2. 성인지 감수성의 구성 요소 및 측정 도구 .....	12
가. 성인지 감수성의 구성 요소 .....	12
나. 성인지 감수성의 측정 도구 .....	13
제2절 젠더폭력에 대한 형사사법분야의 성인지적 대응의 필요성 .....	17
제3절 젠더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유형 문헌 연구 .....	20
1. 2차 피해의 개념 .....	20
2.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원인 .....	23
가. 성차별적 인식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 .....	23
나. 강간 통념 .....	23
다. 수사 시스템 및 구조의 문제 .....	24
3.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유형 .....	25
<b>제3장   젠더폭력사건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실태조사</b> .....	29
제1절 조사 개요 .....	29
1. 조사 항목 .....	29
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 .....	31
나. 제로섬 신념 .....	33
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	35
라. 이차피해 수사행동 .....	36
마.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	37
바. 타당도 척도 .....	38



2. 조사 표본 및 절차 .....	40
3. 분석 방법 .....	40
제2절 설문 타당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기술통계 .....	41
1. 설문 타당도 검증 .....	41
2.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기술통계 .....	42
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이용한 설문 타당도 .....	44
제3절 설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4
1. 전체 표본의 일반적 특성 .....	44
2. 경찰과 검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	45
3. 경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	47
4. 검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	48
제4절 성인지 감수성 관련 심리검사 척도 .....	50
1. 한국형 개정 남녀평등의식 검사 .....	50
가. 개정판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기술통계 .....	51
나. 개정판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53
다. 개정판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54
2.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	57
가.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기술통계 .....	58
나.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59
다.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60
3.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	63
가. 한국판 제로섬신념 척도의 기술통계 .....	63
나. 한국판 제로섬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63
다. 한국판 제로섬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65
4.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 .....	65
가. 젠더지위 제로섬신념 척도의 기술통계 .....	65
나. 젠더지위 제로섬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67
다. 젠더지위 제로섬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67
제5절 4대폭력 통념 및 이차 피해 수사행동 측정 검사 .....	71
1.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 .....	71

가.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기술통계 .....	71
나.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71
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72
2.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 .....	75
가.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기술통계 .....	75
나.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76
다.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77
제6절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	79
1.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척도 .....	79
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요인분석 및 기술통계 .....	79
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80
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	83
제7절 각 척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차이 .....	85
1. 한국형 개정 남녀평등의식 검사 .....	85
2.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	85
3.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	85
4.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 .....	85
5.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 .....	87
6.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 .....	87
7.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 .....	87
제8절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	89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89
2. 측정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	90
가.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의 다중회귀분석 .....	91
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93
<b>제4장   성인지 실태 및 강화방안 심층면담 조사 .....</b>	<b>99</b>
제1절 조사개요 .....	99
1. 조사대상 .....	99
2. 조사방법 .....	100

제2절 법집행공무원 심층면담 결과 .....	102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	102
2. 수사 경찰 .....	103
가. 최근 젠더폭력사건 수사 현황 및 특징 .....	103
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관행 .....	105
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경찰내 변화 .....	109
라. 성인지 감수성의 개별 및 조직 차이 .....	110
마.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역할 차이 .....	112
바. 성인지 감수성 강화방안: 교육의 중요성 .....	113
3. 검찰 및 법원 .....	113
가. 최근 검찰(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	113
제3절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	130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	130
2.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분석 결과 .....	131
가. 최근 동향 .....	132
나.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	137
다. 법집행 절차와 체계 .....	150
라. 대안 .....	163
<b>제5장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b>	<b>179</b>
제1절 젠더폭력의 정의 및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	179
1. 젠더폭력과 성폭력 범죄의 정의 및 유형 .....	179
2.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	181
가. 13세 이상 사람에 대한 강간죄 .....	181
나. 13세 이상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	186
다.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	189
라.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 .....	190
마. 균형법상 성폭력 범죄 .....	192
바. 성폭력 범죄로 인한 상해, 치상 .....	192
사. 성폭력 범죄로 인한 치상, 살인 .....	195

아.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	196
3.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	198
4. 소결 .....	203
제2절 성폭력 범죄 판결의 수사자료와 판결문 분석 .....	205
1. 분석 대상 판결문 선정 기준 .....	205
2. 강간 등 사건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108 판결 .....	206
가. 인정된 사실관계 .....	206
나. 사건 진행 경과 .....	206
다. 법원의 결정 .....	208
라. 평가 .....	212
3. 강제추행 사건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213
가. 인정된 사실관계 .....	213
나. 사건 진행 경과 .....	213
다. 법원의 판결 .....	213
라. 평가 .....	216
4.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배포 등 사건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 11753, 2021전도112 판결 .....	216
가. 인정된 사실관계 .....	216
나. 사건 진행 경과 .....	217
다. 법원의 결정 .....	218
라. 평가 .....	220
5. 가정폭력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2노577 판결 .....	220
가. 인정된 사실관계 .....	220
나. 사건 진행 경과 .....	221
다. 법원의 판결 .....	222
라. 평가 .....	223
6.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 11. 25. 선고 2021노3178 판결 .....	223
가. 인정된 사실관계 .....	223
나. 사건 진행 경과 .....	224

다. 법원의 판결 .....	224
라. 평가 .....	225
제3절 2021년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 분석 .....	226
1. 분석 대상 판결 .....	226
가. 선정기준 .....	226
나. 분석대상 판결 개요 .....	226
2. 세부 분석 기준 .....	233
가. 판결 내용 분석 기준 .....	233
나. 양형사유 분석 기준 .....	234
3. 분석대상 판결문 내용의 비판적 검토 .....	234
가. 성폭력 통념 ① 피해자답지 않다 .....	234
나. 성폭력 통념 ② 피해자유발론 .....	239
다. 성폭력 통념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것이다 .....	241
라. 성폭력 통념 ④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	247
마. 성폭력 통념 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251
4. 강간죄 유형 판결문 양형분석 .....	255
가. 불리한 정상 .....	255
나. 유리한 정상 .....	259
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 .....	262
5. 강제추행죄 유형 판결문 양형분석 .....	263
가. 불리한 정상 .....	263
나. 유리한 정상 .....	265
다. “처벌불원”을 달리 해석한 판결들 .....	268
6.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유형 판결문 양형분석 .....	271
가. 불리한 정상 .....	271
나. 유리한 정상 .....	272
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 양형분석 .....	274
가. 불리한 정상 .....	274
나. 유리한 정상 .....	276
제4절 소결 .....	280

<b>제6장   해외 주요 국가 젠더폭력 관련 양형기준 및 양형판례 분석</b> .....	<b>285</b>
제1절 비교분석의 범위 .....	285
제2절 이스탄불협약 .....	285
1. 성립 및 협약국 .....	285
2. 주요 내용 .....	286
가. 실체법적 사항 관련 협약내용 개관 .....	286
나. 강간죄의 정의 .....	287
3.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M.C. v Bulgaria 사건 .....	288
가.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	288
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	289
제3절 독일 .....	290
1. 성범죄 유형·성립요건 관련 최근 주요 입법 .....	290
가. 제50차 형법개정(2016.11.4.)의 주요 내용 .....	290
나. 제59차 형법개정(2020.9.10.) .....	293
2. 성범죄에서의 양형 .....	293
가. 주요 성범죄의 법정형 .....	293
나. 선고형 산정 방법 .....	295
3. 성범죄 양형 관련 사례 및 판례 .....	297
가.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	297
나.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의 법정형 상향 배경 .....	299
제4절 영국 .....	300
1. 주요 성범죄의 성립요건 및 법정형 .....	300
2. 선고형 산정 절차·방법 .....	301
가. 일반 양형가이드라인 .....	301
나. 수죄의 경우 전체형 산정방법 .....	302
3. 주요 개별 성범죄 양형기준 .....	304
가. 강간죄 양형기준 및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양형기준 .....	304
나. ‘아동음란이미지 제작 등 죄’ 및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양형가이드라인 .....	313
제5절 미국 .....	320

1. 연구범위 .....	320
2. 미국의 주요 성범죄 성립요건 및 법정형 .....	320
3. 미국 연방법상 신고형 산정 과정 및 기준 .....	322
4. 연방 성범죄 양형기준 .....	324
가. 성범죄 유형별 범죄등급 결정 기준 .....	324
나. 범죄등급 조정 .....	332
다. 범죄이력 등급 .....	334
라. 양형구간의 확정 .....	335
제6절 일본 .....	336
1. 성범죄의 성립요건 관련 최근 주요 입법 .....	336
가.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한 성범죄 관련 입법 및 개정 .....	336
나.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	338
다. 관련 판례 .....	340
2. 성범죄에서의 양형 경향 .....	343
가. 주요 성범죄 및 법정형 .....	343
나. 성범죄에서의 양형 경향 .....	344
3. 성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55
가. 범죄상황 (범정) .....	355
나. 일반상황 .....	356
다. 피해감정, 피해배상, 합의 등 .....	357
제7절 대만 .....	358
1. 대만의 성범죄 .....	358
가. 법령 개관 .....	358
나. 법률 .....	361
다. 규칙 - 성범죄방지법 시행세칙(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	370
라. 명령 .....	371
2. 성범죄 양형기준 .....	373
가. 형법상 양형기준 .....	373
나. 성범죄에서 양형주의사항 .....	374
다. 성자주권 방해죄 관련 양형참작사유 .....	380

라. 성자주권 방해 관련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 .....	384
마. 「형사사건 적정 양형 형법」 초안(「刑事案件妥適量刑法」草案) .....	390
3. 대만 성범죄 관련 판례 분석 .....	392
가. 지방검찰서 성범죄 사건처리 .....	392
나. 성자주권 방해 관련 검찰서류 분석 .....	394
다.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 관련 판례 .....	397
제8절 양형기준 관련 비교법적 분석의 시사점 .....	404
1. 비동의간음죄 관련 .....	404
2. 법정형 관련 .....	407
3. 범죄등급 구분 및 양형인자의 중요도 설정 관련 .....	409
4. 개별 양형인자의 의미·적용 관련 .....	411
5.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	412

**제7장 |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41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417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	417
가. 경찰 및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	417
나. 이차 피해 수사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	419
2. 심층면담조사 결과 요약 .....	419
가. 법집행공무원 심층면담 .....	419
나.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	421
3. 젠더폭력 사건 판례분석 결과 요약 .....	423
가. 주요 사건의 전과정 추적 조사결과 .....	423
나. 성폭력 범죄 하급심 판결문 분석 .....	427
4. 해외 입법례 분석 결과 요약 .....	429
제2절 정책제언 .....	432
1.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432
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소집단별 차별화된 교육 .....	432
나. 경찰 및 검찰의 이차 피해 수사행동 예방을 위한 특화된 교육 .....	434
다. 법관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435



라. 성인지 감수성의 정례적 실태조사와 교육효과의 상시적 측정 및 환류 .....	436
마. 형사사법 절차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제고 .....	436
2. 성인지 감수성 실천을 위한 수사 및 재판관행 혁신 .....	437
가. 성인지 관점의 사법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	437
나.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인 지위 강화 .....	438
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및 무료법률지원 확대 .....	440
라. 정당한 편의제공 실현을 위한 규정 강화 .....	441
마. 피해자 개인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법집행 절차 개선 .....	442
바. 피해자와의 무리한 합의 규제 .....	443
3.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개선 .....	443
가. 양형기준 제정절차 정비 .....	443
나. 범죄등급 구분 및 양형인자의 중요도 설정 관련 .....	444
다. 양형기준에 대한 해설·주석 제공 및 적용할 수 없는 양형인자 명시 .....	445
라. 처벌불원의 감경이유 구체화 .....	445
마. 감경요소로서 상당한 보상에 대한 범죄유형별 분리 .....	446
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	447
사. 판사의 양형기준 준수 .....	448
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양형기준 및 관련 인자 반영 .....	449
4. 강간죄 성립요건의 정비 .....	449

## 〈표 차례〉

[표 2-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2011)”의 젠더감수성 구성요소	14
[표 2-2]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2018)”연구의 남녀평등의식 구성 요인	15
[표 2-3]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2013)”의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16
[표 2-4] “경찰에 의한 여성폭력 2차 피해 지표(안)	26
[표 3-1] 설문지 구조와 조사항목	30
[표 3-2]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 검사 문항	32
[표 3-3]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온정적 성차별의식	33
[표 3-4] 제로섬 신념 문항	34
[표 3-5]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문항	35
[표 3-6]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36
[표 3-7] 이차피해 수사행동 문항	37
[표 3-8] 경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문항	38
[표 3-9]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	39
[표 3-10] 설문조사개요	40
[표 3-11]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기술통계 (N = 472)	42
[표 3-12]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총점과 요인별 내적합치도 (N = 472)	44
[표 3-13]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카이검증을 통한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460)	46
[표 3-14] 경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n = 293)	48
[표 3-15] 검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n = 167)	49
[표 3-16]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점수의 기술통계 및 내적신뢰도 계수 (N = 460)	50
[표 3-17]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요인별, 성별/나이별 기술통계와 T점수	52
[표 3-18] 소집단별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T점수 50 미만	53
[표 3-19] 개정판 남녀평등의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54
[표 3-20] 개정판 남녀평등의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56
[표 3-21]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기술통계, T점수, 내적합치도	57
[표 3-22] 소집단별 온정적 성차별의식: T 점수 50 초과	59
[표 3-23]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61
[표 3-24]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62

[표 3-25] 제로섬 신념 척도와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의 기술통계 .....	63
[표 3-26]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64
[표 3-27]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66
[표 3-28]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69
[표 3-29]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70
[표 3-30]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기술통계 (N = 460) .....	72
[표 3-31]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73
[표 3-32]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74
[표 3-33]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기술통계 (N = 460) .....	75
[표 3-34]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76
[표 3-35]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78
[표 3-36]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2요인 해법 .....	80
[표 3-37] 성평등 정책 인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82
[표 3-38] 성평등 정책 인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	84
[표 3-39] 성인지 감수성 관련 척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차이 .....	86
[표 3-40] 이차피해 수사행동 관련 척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차이 .....	88
[표 3-41]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N = 460) .....	90
[표 3-42]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다중회귀분석 .....	92
[표 3-43]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다중회귀분석 .....	94
[표 3-44]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다중회귀분석 .....	95
[표 4-1] 심층면담 대상 표집 .....	100
[표 4-2] 심층면담 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	101
[표 4-3] 법집행공무원 심층면담자 .....	102
[표 4-4] 피해자 지원기관 심층면담자 .....	130
[표 4-5]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주요 내용 .....	131
[표 5-1] 일반강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2009-2022) .....	183
[표 5-2]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2009-2022) .....	187
[표 5-3]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2012-2022) .....	190
[표 5-4]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양형기준(2009-2022) .....	191

[표 5-5]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0-2022) .....	192
[표 5-6]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상해, 치상에 대한 양형기준(2009-2022) .....	193
[표 5-7]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성범죄 상해, 치상에 대한 양형기준(2009-2022) .....	194
[표 5-8] 균형법상 성범죄로 인한 상해, 치상의 양형기준(2020-2022) .....	195
[표 5-9] 성범죄로 인하여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2009-2022) .....	196
[표 5-10]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기준 .....	197
[표 5-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양형기준 .....	199
[표 5-12]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양형기준 .....	199
[표 5-13] 허위영상물 등 반포 관련 범죄 양형기준 .....	200
[표 5-1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기준 .....	201
[표 5-15]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 .....	201
[표 5-16]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	202
[표 5-17] 분석대상 판결 분류 - 강간 .....	227
[표 5-18] 분석대상 판결 분류 - 강제추행 .....	228
[표 5-19] 분석대상 판결 분류 - 준강간 .....	228
[표 5-20] 분석대상 판결 분류 - 준강제추행 .....	229
[표 5-21] 분석대상 판결 분류 - 카메라등이용촬영 .....	229
[표 5-22] 유·무죄 여부 .....	230
[표 5-23] 피고인-피해자 관계 .....	230
[표 5-24]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	231
[표 5-25] 성인지 감수성 언급 판례 .....	232
[표 6-1] 독일법상 주요 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	294
[표 6-2] Sexual Offence Act 2003에 의한 주요 성범죄의 법정형 .....	300
[표 6-3] 강간죄의 범죄등급 .....	305
[표 6-4]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범죄등급 .....	307
[표 6-5] 강간죄 양형구간표 .....	308
[표 6-6] 강간죄 양형에서 가중·감경 인자 .....	309
[표 6-7]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양형구간표 .....	311
[표 6-8]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에서 가중·감경 인자 .....	312
[표 6-9] 아동음란이미지 소지, 유포·교부, 제작의 죄에서의 범죄등급 .....	314

[표 6-10] 아동음란이미지 제작·배포·소지에서 양형구간표 .....	315
[표 6-11] 아동음란 이미지 제작 등 죄에서 가중·감경 인자 .....	316
[표 6-12]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범죄등급 .....	317
[표 6-13]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양형구간표 .....	318
[표 6-14]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에서의 가중·감경 인자 .....	319
[표 6-15] 미국 연방법률상의 주요 성범죄 및 법정형 .....	321
[표 6-16] 연방양형가이드라인상의 양형구간표 .....	323
[표 6-17] 수죄에서 가중 기준 .....	335
[표 6-18] 일본 「형법」상 성범죄 유형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	343
[표 6-19] 강제성교등(강간)죄의 양형 추이 (1999년~ 2019년) .....	350
[표 6-20] 강제추행죄의 양형 추이 (1999년~ 2019년) .....	351
[표 6-21] 강제성교 등 치사상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	352
[표 6-22] 집단강간죄의 양형 추이 (1999년~ 2019년) .....	353
[표 6-23] 감호자추행죄 양형 추이 (2017년~ 2019년) .....	354
[표 6-24] 감호자성교죄 양형 추이 (2017년~ 2019년) .....	354
[표 6-25] 성범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범정 .....	355
[표 6-26] 대만 성관련 법령 .....	360
[표 6-27] 형법총칙 조문 구성 .....	361
[표 6-28] 형법각칙 조문 구성 .....	362
[표 6-29]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장(章)별 체계 .....	369
[표 6-30] 형법 제57조 양형기준 .....	373
[표 6-31] 형법 제221조 제1항 성자주방해죄(妨害性自主罪) .....	381
[표 6-32] 형법 제221조 제1항 가중성자주침해죄(加重妨害性自主罪) .....	382
[표 6-33] 형법 제227조 제3항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교죄 (對於14歲以上未滿16歲之人性交罪) .....	383
[표 6-34] 제221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	385
[표 6-35] 제222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	386
[표 6-36] 제224조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	387
[표 6-37] 제224조의1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	387
[표 6-38] 제225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	388

[표 6-39] 제227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	388
[표 6-40] 제227조 제3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	389
[표 6-41] 지방검찰서 성범죄 사건처리 통계 ……	393
[표 6-42] 성자주권 방해죄 및 풍기문란죄 유죄확정 집행인원 연령 ……	393
[표 6-43] 2008년~2020년 6월까지 특정 성자주권 방해 사건 분포도 ……	394

## 〈그림 차례〉

[그림 6-1] 강제성교 등(강간)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	346
[그림 6-2] 강제성교 등(강간) 치사상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	347
[그림 6-3] 강제추행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	348
[그림 6-4] 예측 변수 중요도 백분율 .....	396







## 제 1 장

# 서론

윤정숙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개념을 도입하여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가치 아래 정부 정책의 설계 및 시행, 공공기관 평가와 공무원 훈련 등 관련 기준을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젠더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2021년 기준 세계 149개국 중 10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sup>1)</sup>. 성차별의 문제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담보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최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안전 및 치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과의 접점이 큰 형사사법분야 공무원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은 특히 범죄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개인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이 집단적으로 총화되어 치안서비스의 방향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사법의 전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단계 실무자들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이나 성폭력에 대한 편향된 태도,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 등 젠더 이슈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의 조직문화가 양성평등의식과 젠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서 형사사법기관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수사, 공판, 판결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조력할 것이며, 가해자 처벌의 적절성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충실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출처: 한국일보 2021.3.21일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33113120003589>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신고한 성범죄 조사 과정에 수사경찰에 의한 성희롱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바, 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경찰관에 의한 2차 피해 문제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적 진실발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사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성희롱 및 2차 피해 발생은 관련 법의 제·개정으로는 예방 및 대처에 한계가 있는바, 수사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 문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수사 경찰을 비롯, 수사 및 재판 단계의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젠더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수사 및 판결 전(全)과정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추적조사를 통해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양형기준 및 관련 입법 개선과제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 조사를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개념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성인지 감수성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을 정리하였으며,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조사결과<sup>2)</sup>, 젠더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 유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접점이 가장 큰 경찰공무원과 검찰수사관(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sup>3)</sup>. 조사 내용으로는 남녀성평등 의식, 성폭력 통념, 성차별 의식 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개념 및 인식 수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인식이 수사 시 이차 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경찰·검찰 조직 내의 성평등 정책과 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내용 및 타당도 척도로 구성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예비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

2) 선행연구는 주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임

3) 설문조사에서 제외된 재판관의 성인지 실태는 본 연구의 판례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탐색될 예정임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소속 수사관, 검찰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sup>4)</sup>으로 확정된 후, 각각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협조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법집행 공무원 내부자 관점과 피해자 관점에서 성인지 실태 및 수사·재판 관행, 성인지 관점에 대한 중요성 및 교육 실태, 강화방안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의 조사 내용으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및 재판 관행에 대해 주로 질문하였으며,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강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최근 젠더폭력사건에서 2차 피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해자 권리 보호의 미흡한 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젠더폭력사건 판례분석을 위해서 먼저, 국내 형사사법 분야 판례 및 양형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의 법적 개념을 분석하고, 2020년~2022년 8월사이의 국내 젠더폭력사건 판례 조사 및 양형기준을 분석하였다. 수사재판기록 분석은 크게, 주요 젠더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 검토를 통한 전과정 추적 분석과 하급심 판례분석의 두 가지로 이뤄졌다. 수사 및 재판기록 검토를 통한 전과정 추적 분석은 신체접촉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 사건 중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다른 사건으로 세부 기록(증거서류 등 포함)을 입수할 수 있는 사건을 선정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 전체에서 성인지 감수성 투영 정도를 분석하였다. 하급심 판례분석은 2021년 기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의 양형이유 중 성인지 관점 반영 사례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지 관점 관련 최근 판결 현황을 정리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의 젠더폭력 관련 판례 및 양형기준 분석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와 독일 등의 대륙법계, 그리고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의 양형체계의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검토를 통해 문제 상황을 명확히 하고, 비교 대상 국가의 ‘성범죄 사건 양형 관련’ 주요 판례를 검토하였다. 판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하급심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상급심의 심판범위·정도 등에 관한 주요 판례 및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관련 해외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교 대상 국가에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취해지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4)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근무경험자 포함





## 제 2 장

# 연구배경 및 문헌검토

김효정







## 제2장 | 연구배경 및 문헌검토

### 제1절 성인지 감수성 관련 선행 연구

#### 1.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 및 개념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개념은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 대회에서 사용된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12개 주요 부분의 전략목표와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을 채택하고, 여성은 더 이상 남성과 사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남성과 더불어 동반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공식화하였다. 성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수준과 모든 영역에서 입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된 조치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정책 설계와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의 통합적인 차원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사와 경험을 포함시키는 전략을 의미하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실질적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달성이다(UN Women, 2022).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은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을 통해 성평등 달성을 위한 세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표방하였고, 이후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 시스템,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주류화(mainstreaming)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젠더 관점의 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법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필수적인 차원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현존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의 공식화는 성평등이 빈곤 감소,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 등의 다른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달성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빈곤 감소,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sup>5)</sup>.

이처럼 성주류화는 성평등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적이고 제도화된 프로세스이면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의 집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젠더화된 법과 제도, 문화적 규범 및 사회적 관행의 변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UN Women, 2022). 이를 위해서는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 젠더 관점을 도입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 질서에 내재한 젠더화된 규범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고정관점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성불평등한 사회질서와 구조, 체계, 인식, 정책 등이 성별에 미치는 다른 영향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성별에 따른 불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인지해 낼 수 있는 역량 또는 감수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역량을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또는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라는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좁게는 여성과 남성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의 존재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Tisch & Wallace, 1994) 넓게는 젠더에 따른 차이와 이슈,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를 전략 및 행동으로 통합하는 능력(Newman, 2003)까지를 의미한다. 초기 성인지 감수성 용어는 주로 정책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성차별적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폭넓게 설명되고 있다(Halime et al., 2010).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 공적 및 사적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젠더에 기반한(gender-based) 배제 및 차별과 연관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의하였다<sup>6)</sup>.

국내에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용어는 ‘젠더감수성’, ‘성별감수성’, ‘성 감수성’, ‘성평등의식’, ‘성인지력’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혼용되어 왔다. 조옥라(2003)는 성별 감수성을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젠더에 의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를 감성적으로 느끼고, 기존의 성고정관념에 의해 억압된 자신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

---

5) UN. Statement from the workshop on gender mainstreaming. (15-17 September 1997, Geneva, Switzerland). (출처: [https://www.un.org/womenwatch/daw/news/mainstw.htm?gclid=Cj0KCQiAkMGcBhCSARIsAIW6d0DOQYHcTHE1ASL9GcUYC56ShgshbLFTfr33mUTbU32WRcmRYrgIcnAaAqVQEALw\\_wcB](https://www.un.org/womenwatch/daw/news/mainstw.htm?gclid=Cj0KCQiAkMGcBhCSARIsAIW6d0DOQYHcTHE1ASL9GcUYC56ShgshbLFTfr33mUTbU32WRcmRYrgIcnAaAqVQEALw_wcB))

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경아(2004)는 ‘성인지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 주어진 맥락에서 중요한 쟁점이나 변수로서 성별(sex)와 젠더(gender)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성인지 감수성으로 개념화하였다. 김영옥 외 (2005)는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차별’의 문제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설명하면서, 정책과 사회 조직문화, 그리고 주체성 간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와 타자성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보았다. 한편, 송인자 외(2006)는 ‘성인지(gender sensitive)’를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별에 대하여 인지하는 감수성을 기반으로 개인이 접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성차별 개선에 대한 실천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의식화 단계를 거쳐 실천적 단계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였다. 이진영(2011)은 성인지성, 성인지력 등으로 단어로는 젠더 개념이 함의하는 불평등과 차별, 이분법의 문제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차별 문제뿐 아니라 이분화된 젠더 범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고 젠더감수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개념과 정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개인 및 사회질서에 내재된 젠더에 따른 차이와 차별, 고정관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나아가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설 수 있는 의지와 역량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때 전자를 협의의 성인지 감수성 개념으로 후자를 광의의 성인지 감수성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강은영·강민영·박지선, 2021). 성인지 감수성은 성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성주류화 전략 실현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개인적·사회적 역량을 의미하고, 이때 성평등 개념은 현존하는 성차별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평등한 방식의 변화를 꾀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젠더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인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정재원·이은아, 2018; 함영옥, 2021). 다만 성인지 감수성 역량과 능력 함양의 정도에 따른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낼 수 있는 역량이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함과 불평등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차별적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 2. 성인지 감수성의 구성 요소 및 측정 도구

우리나라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sup>7)</sup>. 성주류화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정책, 사회질서에 내재된 성별에 미치는 다른 영향과 효과를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즉 성인지 감수성의 함양 여부는 성주류화 정책의 성패와 성평등 실현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그동안 대학 등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질적이고 정성적인 차원이므로 이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거나 함양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십여 년간 성인지 감수성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 효과 또는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 가. 성인지 감수성의 구성 요소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 그로 인한 성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 변화를 위한 실행에 나설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포괄한다.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정의에 기반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크게 젠더 이슈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차이와 차별을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젠더 이슈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자체로 포괄적으로 젠더 감수성으로 불리기도 하며, 젠더 의식, 젠더 관점 등으로도 일컬어진다. 강선미(2005)는 젠더 의식(gender awareness)은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성별에 따른

---

7)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전략의 주요 추진 도구는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등이 있으며,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두고 있다.

사회적 위치의 사치와 성역할에 기반하는 여성과 남성의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강선미, 2005: 12). 이진영(2012)은 “젠더 감수성을 젠더 이슈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젠더 간 차이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그 차이들이 미치는 영향, 즉 성차별과 젠더불평 등을 인지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진영, 2012: 3). 젠더 이슈를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로 개인과 사회에 내재되어 내면화된 젠더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통념이나 편견과 연관된다. 이런 점에서 선행 연구들은 젠더 의식, 젠더 감수성을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인식과 편견(이수연 외, 2019; 이진영, 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강간 통념(강문봉·공정식, 2017; 이석재, 1999; Burt, 1980), 성에 대한 태도(남현미, 2003; Sugarman et al., 1996) 등을 통해 측정해 왔다.

다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과 그로 인한 성불평등과 차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차이와 차별, 도덕과 윤리,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진영(2012)은 감수성 측정도구들의 예로 공정 감수성, 형평 감수성, 환경 감수성, 도덕 감수성, 윤리 감수성, 인권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 등을 살펴보고, 대부분의 감수성 지표들이 주로 정서적 측면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젠더 감수성이 타자와의 차이에 대한 민감성 증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문화 간 감수성과 가장 유사성을 지닐 것으로 보고 이를 젠더 감수성 측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이진영, 2012: 27-30). 정재원·이은아(2018)는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의 주요 특징으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내재된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자기 성찰, 의식화 과정을 꼽았다(정재원, 이은아, 2018: 16). 성인지 감수성은 질적이고 내적인 개념이므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습득하기 어려우며, 스스로의 깨달음과 성찰, 이를 통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타인과의 교류와 교감, 획득한 지식의 실천적 전환,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정재원, 이은아, 2018: 16-17).

#### 나. 성인지 감수성의 측정 도구

본 절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의 메타 자료를 분석한 이도경과 김형빈(2022)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995년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발표된 학술지 및 학위논문 중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문 34편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인지 감수성 측정 도구는 이진영(2011)의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영은 첸과 스타로스타(2000)의 문화간 감수성 이론과 김양희·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 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참고하여 젠더감수성의 구성요소로서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의 4가지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젠더감수성 측정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3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감수성은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자기성찰, 비폭력,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의 4개 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2011)”의 젠더감수성 구성요소

구분	내용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젠더 이분법에 기초한 젠더 범주를 탈피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슈 관련 문항
자기성찰	자신이 얼마나 성차별주의와 젠더 이분법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
비폭력	성폭력, 아내구타 등 젠더폭력 관련 문항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성 역할 의식에 관한 문항

출처: 이진영(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63-66쪽의 내용을 표로 구성.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측정도구는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 와 2006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젠더감수성척도’를 같이 사용한 하경애(2018)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척도’와 2006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젠더감수성척도’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연구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이도경·김형빈, 2022: 57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척도’는 한국 최초의 표준화된 척도로 1999년에 처음 개발되었고(김양희·정경아, 1999), 이후 개정을 위해 2016년 이론적 검토와 예비 설문조사를 통한 검사 문항을 선정한 후(안상수 외 2016), 2018년 본조사를 실시하여 개정된 검사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이수연 외, 2018). 개정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척도’는 6개 요인에 대한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2018)”연구의 남녀평등의식 구성 요인

요인	내용
공적 영역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공적 영역에서의 남녀 간 능력과 역할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8개 문항)
여성의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들의 권리 요구나 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6개 문항)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여성의 행동, 언어, 옷차림 등에서 정숙함을 요구하는 규범(3개 문항)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의 역할, 책임, 남성다움(4개 문항)
부계 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가계 계승이나 상속에서의 아들중심주의(3개 문항)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고정관념(4개 문항)

출처: 이수연·김인순·고재훈, 2018.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2013)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통념인 연애, 여성성, 남성성, 성규범, 신체노출, 여성혐오, 결혼이주, 성욕, 낙태, 성폭력, 성매매, 가족, 십대, 동성애, 뽕뽕한 몸에 대한 젠더 이슈를 총 15가지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젠더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2013)”의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젠더감수성 체크리스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애인에게 화가 날 때 나의 불만을 말하기보다 참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2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다.					
3	‘민폐녀’, ‘진상녀’ 등 00녀의 등장은 한국 여성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4	배우자가 없는 남성들을 위한 국제결혼 사업은 불가피하다.					
5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여성은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이다.					
6	여성은 남성보다 성욕이 적다.					
7	키스 등 스킨십을 하기 전에 상대의 의사를 물으면 분위기만 깰 뿐이다.					
8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중절을 경험했다면 약혼자에게 말하는 편이 옳다.					
9	성폭력은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10	성폭력 가해자는 전과자이거나 사회부적응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11	“몸매 좋으데” 정도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다.					
12	성매매가 금지될수록 성폭력은 증가할 것이다.					
13	비(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은 불완전한 가족이다.					
14	십대의 동성애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15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비난받는 것이다.					

〈체크리스트 결과〉

매우그렇다 0점,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3점, 매우 아니다 4점으로 점수를 체크하여 합산합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30점 이하: 당신의 젠더감수성지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의 성폭력피해자에게 나도 모르게 편견에 가득한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젠더감수성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40점 이하: 이제 막 젠더감수성의 감을 잡게 된 당신! 젠더감수성이 충만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군요. 지금 바로 젠더감수성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59점 이하: 정말 멋진 당신! 하지만 아직 깨지지 않는 편견들이 있으시다고요? 완전 멋진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결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젠더감수성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60점: 젠더감수성 없는 성문화 통념에 NO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당신은 젠더감수성 마스터!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27쪽.



## 제2절 젠더폭력에 대한 형사사법분야의 성인지적 대응의 필요성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전세계적으로 세 명 중에 한 명 이상의 여성은 평생 한 번 이상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부터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다(WHO, 2013). 그 외에도 여성 살해, 성적 착취, 인신매매, 성기 절제, 조혼 등 성불평등한 사회적·문화적 실천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삶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성불평등과 성차별을 유지하는데 일조한다.

젠더폭력 피해의 대다수는 여성에게 집중되는데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위계적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문화와 실천,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공사 이분법적인 성역할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젠더폭력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성평등은 인종차별, 외국인차별, 경제적 불평등 등 사회의 억압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젠더폭력 근절은 성평등을 포함하는 사회 보편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UN Women, 2021).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과 행위자들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폭력이 발생하고 지속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건강권의 차원에서도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형사사법서비스의 제공, 정서적·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은 젠더폭력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피해자/생존자의 피해구제와 빠른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젠더폭력의 맥락과 피해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UN Women은 폭력피해 여성과 여아를 위한 필수 서비스들의 핵심요소와 품질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UN Women, 2015). UN Women, UNFPA, WHO, UNDP, UNODC는 파트너십으로 폭력피해 여성과 여아를 위한 UN 공동의 글로벌 프로그램<sup>8)</sup>을 구성하였고, 이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과 여아에게 다부문적 차원에서의 필수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한

8) The United Nations Joint Global Programme on Essential Services for Women and Girls Subject to Violence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와 프로세스 및 매커니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필수서비스 분야를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형사사법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특히, 형사사법서비스 분야의 기초적인 요소(foundational elements)로 거버넌스 감독과 책임(governance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그리고 성인지적 정책과 실천(gender sensitive policies and practices)을 제시하였는데<sup>9)</sup>, 이는 젠더폭력 관련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젠더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모듈로 구성하여 제공되며, 형사사법분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 모듈로 제시된다. 특히 수사(investigation), 재판전 과정(pre-trial process), 재판과정(trial/hearing process), 가해자에 대한 제재(perpetrator accountability and reparations)와 관련한 성인지적 대응이 강조된다. 본 절에서는 각 단계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수사과정에서는 젠더폭력 관련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한 수사(victim sensitive investigation)를 진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sup>10)</sup>. 젠더폭력을 사적인, 사소한 폭력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은 젠더폭력 범죄를 종종 다른 강력사건 또는 범죄사건보다 덜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오랫동안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스토킹 등은 사소한 집안일, 또는 연인 간 구애로 여겨져 엄정히 대처 되지 못했다. 젠더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건으로 여겨져야 하며, 즉각적이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를 고려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개인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sup>11)</sup>. 젠더폭력 피해는 개인의 내밀한 경험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다수는 폭력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비난하는 2차 피해를 빈번하게 경험한다. 이러한 젠더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

9) UN Women. Module1. Overview and introduction. Essential services package for women and girls subject to violence. Core Elements and Quality Guideliens, p.19. (출처: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12/essential-services-package-for-women-and-girls-subject-to-violence>)

10) *ibid.* pp.17-18.

11) *ibid.* pp.17-18.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수사/심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수사 진행은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은 사법절차에 손쉽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인지적이면서 피해자 또는 아동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sup>12)</sup>. 과거 젠더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신문 시키거나, 피해사실이나 증언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내밀한 피해경험에 대해 불필요하게 질문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법절차를 밟는 과정의 비용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등은 질적, 양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분야 행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은 일반 범죄 피해와는 다른 젠더폭력 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처벌과 배상과 관련해서 여성과 여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젠더 폭력 피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성인지적(gender-sensitive)이면서 연령에 적합한(age appropriate) 구제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동친화적인(child-sensitive)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sup>13)</sup>.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진술 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 능력 보장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사 및 사법상 절차를 통한 적절한 대응과 엄정한 처벌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향후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젠더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형사사법분야의 대응과 태도를 통해 젠더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분야에 종사하는 행위자들의 젠더폭력 피해 및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ibid.* p.20.

13) *ibid.* p.25.

### 제3절 젠더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유형 문헌 연구

#### 1. 2차 피해의 개념

여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논의들은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문제의식과 함께 발전해 왔다. 80년대에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지 못했던 '성폭력'의 개념을 정립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80년대 후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제출되며 본격화되었다(김선영, 1989; 박선미, 1989; 이명선, 1989). 김선영(1989)은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 등 집단별로 강간에 대한 통념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명선(1989)은 강간 피해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간 신화와 통념에 대해 논한다. 박선미(1989)는 강간재판 판례 분석을 통해 강간 범죄를 다루는 재판의 행위자들에게 성차별적인 편견과 통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학계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2차 피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다(장필화 외, 2003).

한국에서 2차 피해 개념 및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1987년 헌법 제 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규정의 신설, 1990년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피해자학회의 설립,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피해자학회에서는 범죄의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발생하게 되는 간접적 피해인 '2차·3차 피해' 개념을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다(장필화 외, 2003). 범죄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간접적 피해를 의미하는 2차 피해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또는 기관)들에 의해 발생하며,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3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에 중요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사건이 가해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초기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현미(2000)는 성폭력 범죄의 간접적 피해 중 하나로 '이차적 피해'를 '범죄행위 자체에 의한 일차적 피해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였다.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 관여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받기도 하며 이러한 피해는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외부의 통념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나 ‘강간에는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성차별적 담론의 형성은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일정 부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이후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최인섭 외(2006)는 범죄피해자가 겪는 ‘피해자화’의 과정 이후 발생하는 피해를 ‘제2차 피해자화’로 분류하고,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인, 학교나 병원 등의 기관에서의 권위적인 태도, 불친절 등에 의해 제2차 피해자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에 의한 일련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권적 수사 관행과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관들의 몰이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2차 피해이다. 즉 2차 피해는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도, 기관, 사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허선주·조은경(2012)은 국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 연구가 어떤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메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저자들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자에 대한 국내 연구를 1) 개선방안 마련 및 법적 논의 관련 연구, 2) 이론적 개관 및 실태조사 관련 연구, 3) 사례분석 연구, 4) 경험 연구로 분류하였다. 그중 2차 피해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크게 2차 피해의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와(정현미 외, 1999; 정현미, 2000; 류병관, 2006; 최인섭 외, 2006; 김성룡·김현조, 2013; 정혜욱, 2018), 법적 절차를 비롯한 2차 피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심희기, 2002; 송광섭, 2000; 김은주 외, 2001; 조국, 2002; 이미경, 2011)들로 나누어짐을 제시하였다.

김성룡·김현조(2013)는 2차 피해자화의 개념에 대해 ‘사건 이후 사회적 체계 및 주변 환경에 의해 간접적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것’,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병원, 언론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부적절한 반응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그 중 형사사법절차 내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원인으로 지나친 중복조사, 부적절한 조사 방법 및 태도, 가해자에 대한 무죄선고, 편향적 태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변화가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한편 권인숙 외(2016)는 강간 범죄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이 피해자를 '피해자화' 시키는 통념이나 규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존의 성폭력 통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강간을 중심으로 한 피해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거나 다양한 피해 형태를 논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들은 기존의 성폭력 통념과 더불어 피해자가 2차적으로 겪는 불이익이나 고통에 대한 이른바 2차 피해 발생 요인까지 고려한 '성폭력 피해 통념'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때 새롭게 정립된 성폭력 피해의 통념은 가해가 아닌 피해의 관점에서 전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소극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2차 피해에 대한 개념 및 통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차 피해는 개인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단일한 양상이 아니라 범죄의 특성 및 처리 절차의 특정 단계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혜욱(2018)은 피해 시기, 피해영역, 가해의 주체, 피해 원인, 피해 결과 등에 따라 2차 피해의 개념을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피해 이후 수사 이전, 수사 과정, 수사 이후 등 시기에 따라 2차 피해를 분류하였고, 가해의 주체 역시 형사사법절차 혹은 수사 과정 내부의 개인들, 여러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개인들 등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았다. 피해 원인 또한 사회적 체계 및 주변 환경, 가해자 중심적인 인식, 왜곡된 인식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통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는 2차 피해의 주요 개념으로는 가해자에 의한 직접적인 1차 피해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 직접적인 범죄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 통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가진다. 이때 강간 및 순결 신화, 성역할 고정관념, 피해와 가해를 둘러싼 통념 등 기존 한국 사회를 지배하였던 성차별적이고 가해자 중심적 인식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한 조건이자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한편 2차 피해의 양상은 단일하지 않으며, 피해의 시기와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결과, 범죄사건으로써 폭력피해를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 그 과정에서 만나거나 접하게 되는 개인 및 기관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원인

형사사법체계 상에서의 2차 피해는 시기에 따라 수사 단계-검찰 수사 단계-공판 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장미정·조은경, 2004). 이중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는 첫 번째 단계인 수사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를 다시 구분해 보면 신고 및 현장 출동 단계와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피해 조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는 경찰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사법기관이라는 점과도 연관된다.

### 가. 성차별적 인식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경찰 수사과정 상 2차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성대, 2009; 권혜림, 2019; 김효정 외, 2021). 2000년대 이후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와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의 도입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구조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하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국가의 질서와 사회를 유지시키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여겨지지만, 실상 그 안에 내재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경험을 비가시화하며 때로는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장필화 외, 2003). 성폭력 범죄는 여성의 성(性)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편견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이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수사기관 담당자들에게 내재된 성차별적 편견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나. 강간 통념

기존 연구들에서 '강간 통념'은 수사과정상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된

다(정현미, 2000; 심희기, 2002; 장필화 외, 2003; 이미경, 2013). 이미경(2013)은 강간 통념 중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내재된 '정조' 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한다. '정조'에 대한 관념은 여성의 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하며 '정조를 가진 여성'이라는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과거 형법 제32장의 제목이었던 '정조에 관한 죄'는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면서 더 이상 표면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지만, 대체된 용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조'에 대한 성편향적인 통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요구되는 많은 질문들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잘못된 강간 통념은 개인의 생활, 인식, 습관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사관들 역시 그러한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수사담당관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감수성, 그리고 성폭력 수사관으로서의 비전문성은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 다. 수사 시스템 및 구조의 문제

한편 수사 과정상의 시스템이나 구조를 개선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 박철현·곽명달(2007)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지나친 반복 조사에서 비롯된 수사 관행상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하거나 편향적인 태도가 내재된 수사관의 자질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로서 부적절한 질문을 받거나 부적절한 수사관의 태도를 목격했을 때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 과정을 경험하거나, 부족한 수사 환경에 놓였을 때 추가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지목하였다. 이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잘못된 수사절차상의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사절차 개선에 대해 분석한 이승준(2009) 역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절차의 개선이 자리 잡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명신·양난미(2011)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문제적으로 보고, 그 원인을 경찰의 수사 임무에 대한 인식, 편견, 수사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들은 법지식의 정도가 높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낮았지만,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이 수사 임무에 대한 법지식이 높을수록 적극적 수사행동은 증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감소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른 특이한 점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2차 피해에 대한 원인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경찰관이 함양한 법지식의 정도, 수사절차상의 지침 숙지 여부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권혜림(2019)은 수사 담당관들의 편견이나 통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2차 피해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적 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왜곡된 성문화와 이중적 성규범, 수사경찰관의 그릇된 편견 등이 수사상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범죄통제지향적인 경찰의 조직문화 역시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범죄통제지향적인 경찰의 하위문화는 비공식적인 관습으로 이어져 왔으며 경찰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범죄와 일반인에 대한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형성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수사상 발생하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인이 가진 편견과 통념에 대한 도전과 함께, 경찰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문화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유형

과거와 비교할 때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이념에 입각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와 절차는 여전히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저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다. 수사상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 수사 담당자들의 경험과 인식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젠더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갖고있는 반면 수사 담당자들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효정 외, 2021).

수사상 여성폭력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실태와 개선방안을 문헌연구, 피해당사자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경찰관계자에 대한 심층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석한 김효정

외(2021)의 연구에서 경찰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는 크게 ‘피해자 의심·비난’, ‘가해자 옹호·두둔’, ‘부적절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 미흡 및 권리 침해’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되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자 배경에는 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 피해자성에 대한 통념과 편견, 수사 전문성 부족, 인권 감수성 부족 등과 함께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피해자다움 통념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전환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표 2-4] “경찰에 의한 여성폭력 2차 피해 지표(안)”

구분	내용
I. 피해자 의심·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의도에 대한 의심 또는 비난</li> <li>• 피해를 사소화하는 발언이나 태도</li> <li>•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표현</li> <li>• 피해 당시 및 전후 피해자의 행위 또는 대응 방식에 대한 비난이나 질타</li> </ul>
II. 가해자 옹호·두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언행</li> <li>• 가해자의 진술을 언급하거나 인용</li> <li>•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나 태도</li> </ul>
III. 부적절한 사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지속적인 반복 진술 요구</li> <li>•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 질문</li> <li>• 피해 과정의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과잉 질문, 사건 재연 요구</li> <li>• 무성의하거나 고압적인 태도</li> <li>•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 부족</li> <li>• 고소 취하 권유 또는 가해자와 합의 중용</li> <li>•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위협</li> </ul>
IV. 피해자 보호 미흡 및 권리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묵살</li> <li>•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 소홀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li> <li>• 가해자/피해자 분리 미흡</li> <li>•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li> <li>• 비밀보장 및 신상정보 관리 소홀</li> <li>•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무리하게 요구</li> </ul>

출처: 김효정, 김애라, 정연주, 동제연, 서경남(2021).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125쪽. 경찰청.

## 제 3 장

# 젠더폭력사건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실태조사

김지연, 윤정숙



# 제3장 | 젠더폭력사건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실태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젠더폭력사건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실태 설문조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와의 체류시간 및 접점이 가장 많은 경찰 및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찰 및 검찰의 성인지 실태 및 2차 가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심층면담 내용,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토대로 조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1. 조사 항목

성인지 감수성은 제2절에서 논의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법집행 공무원의 이차 피해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차별적 통념, 성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을 주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 선행연구에서 기술하는 성인지적 태도 이외에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지나친 믿음 혹은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 등이 성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예: 정주리, 2021)를 참조하여, 이 부분 역시 함께 측정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는 설문지의 구조와 조사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설문지는 크게 성평등 인식을 측정하는 파트와 이차 피해 수사 행동을 측정하는 파트, 경찰(검찰)의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파트,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측정하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세 파트에서는 제로섬 신념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에게 각 척도를 순차적으로 제시할 경우, 척도의 측정 내용을 유추하여 응답 편향이 도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척도의 문항들은 응답자에게 무선적으로(random) 제시되었다. 척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표 3-1] 설문지 구조와 조사항목

구분	검사	요인	문항수
Part1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온정적 성차별의식-보호적 여성주의	4
		온정적 성차별의식-보완적 성역할 분화	4
		온정적 성차별의식-친밀한 이성애	4
	제로섬 신념	제로섬 신념	8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기만	16
Part2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8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6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3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4
		부계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3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4
	사회적 바람직성	인상관리	8
Part3	이차피해 수사행동	피해자보호결여	6
		과잉수사	6
		합의종용	5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스토킹	3
		성매매	2
		성폭력	5
		성희롱	6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7
Part4	경찰(검찰)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	경찰(검찰)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	12
Part5	조사대상자 일반현황	성별, 연령, 소속기관, 소속, 재직기간, 계급	10
합계			134

주: 검찰 대상 설문 문항 총 135개(Part5 11개 문항)

## 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설문지의 파트 1과 파트 2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2018)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2009)의 온정적 성차별척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2018)는 공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여성권리에 대한 요구,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부계중심적 가족에 대한 태도,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와 같은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가 최소 28~최대 112점으로 산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긍정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부정 문항을 역코딩해서 산출한다. 본 척도는 2018년 개정판 작업에서 기준 집단을 구성하여 성별, 연령별 기준집단의 점수 분포를 원점수와 T점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표본에서 산출된 점수를 기준 집단의 점수와 비교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이나 표본 내 소집단 혹은 특정 대상자가 기준 집단의 점수 범위 중 어느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해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3-2]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 검사 문항

검사	요인	문항
개정 한국형남녀 평등의식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8~32점)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한다.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한다.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한다.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6~24점)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자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 대우를 원한다.
		여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 없다
		여자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3~12점)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흉하다.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4~16점)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
		남자는 뭘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부계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3~12점)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4~16점)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자가, 요리, 빨래, 청소는 여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자가 하고, 차례상 음식마련은 여자가 하는 것이 공평하다.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는 긍정 문항, 나머지 부정 문항은 분석시 역코딩해야 함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여성정책연구원, 2009)는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의식 두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재구분되어 있다. 두 개의 척도 중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2018)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는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하위 척도 합산 점수의 범위는 12~4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3-3]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온정적 성차별의식

검사	요인	문항
온정적 성차별의식	보호적 남성주의 (합계: 16점)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신체상의 위험 부담이 큰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주어야 한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 (합계: 16점)	여성은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 교육에 좋다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친밀한 이성애 (합계: 16점)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 나. 제로섬 신념

설문지의 파트 1과 파트 3에는 제로섬 신념과 젠더지위에 대한 제로섬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배치되어 있다. 제로섬이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됐다고 믿어,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경제주체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게임이론(von Neumann & Morgenstern, 1944)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즉, 한정된 자원을 놓고 누군가 이득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복이나 권리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고(구자영, 서은국, 2007), 자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타인이나 외집단(out-group)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념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Forsyth, 1999; Sherif, 1966).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가치가 성별 자원의 배분에서 자신의 집단을 지지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측정해보기로 하였다.

제로섬 신념(정주리, 2021)은 원래 7점 척도로 측정되도록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의 설문문항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제로섬 신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3-4] 제로섬 신념 문항

검사	요인	문항
제로섬 신념	단일요인	어떤 사람들의 성공은 대개 다른 누군가의 실패와 같다.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만들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삶은 테니스 게임처럼 어떤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들은 지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점점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면, 그 당사자는 결국 손해 보게 되어 있다.
		소수 사람들의 부는 다수의 희생으로 얻어진다.

젠더지위에 대한 제로섬 신념(길보민, 2022)은 여성에 대한 차별 감소가 남성에 대한 차별 증가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남성과 여성은 제한된 자원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하는 관계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uthig, Kehn, Gamblin, Vanderzanden, Jones, 2017). 본 척도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나, 설문지 구조에 맞추어 4점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젠더지위에 대한 제로섬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5]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문항

검사	요인	문항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단일요인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남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더 많은 권력을 얻을수록 남성은 더 적은 권력을 갖는다.
		여성의 경제적 이득은 남성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여성의 정치 영향력이 클수록 남성의 정치 영향력도 줄어든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을수록 남성은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된다.
		여성에게 가정 내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것은 남성에게 가정 내 의사결정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차별 감소는 남성 차별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 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척도(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대한 통념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이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통념 척도들(예: 강간통념수용도(이석재, 최상진, 2001))의 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본 척도는 4대 폭력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문항수가 적은 이점이 있다. 따라서 전체 설문량을 고려하여 본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단, 가정폭력 요인에서 본 연구에 부적합한 문항 1개를 제거하고 최근 이슈가 된 스토킹 문항 2개를 추가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설문지 구조에 맞춰 역시 4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3-6]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검사	요인	문항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가정폭력·스토킹	부부가 폭력까지 행사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더라도, 남의 집안일에는 끼어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구애를 계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스토킹은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성폭력	밤에 숙박업소나 집에 함께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몇 년 전 사건을 문제 삼는다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다.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보는 사람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친한 동료들 간 단톡방 성적 대화는 당사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성희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될 것 같다.
		성희롱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예민하거나 의사소통에 미숙한 탓도 있다.
		이성과의 자리에서 음담패설은 성희롱이지만 동성끼리 있을 때는 성희롱이 아니다.
		평상시와 달리 술자리에서만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은 평상시 그런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경미한 성희롱으로 징계받거나 비난받는 행위자를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한 행위로 인하여 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 연구자에 의해 추가된 문항

## 라. 이차피해 수사행동

경찰의 이차피해 수사행동척도(이명신, 이계민, 2018)는 피해자 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중용의 세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평정되도록 개발되었으나 설문지 구조에 맞춰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수정하였다<sup>14)</sup>. 점수가 높은 경우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4) 검찰 대상의 설문조사 시에는 경찰을 검찰로 바꾸어서 질문하였음

[표 3-7] 이차피해 수사행동 문항

검사	요인	문항
이차피해 수사행동	피해자보호결여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를 설득하여 수사를 마무리해야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일이다.
		성폭력 수사 시 여성단체나 동행자가 있으면 도리어 공정한 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
		피해자 수사 중 피해자를 닦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경찰은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는 사건해결을 위한 사실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
	과잉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번 경찰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할 경우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대면도 어쩔 수 없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편이다.
		수사가 중요할 뿐 공개된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합의종용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애인인 경우 좋게 해결하라고 말한다.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권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 역할이다.
강간이 아닌 성추행, 성희롱인 경우에는 합의를 권하는 편이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억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취하를 권유한다.		

#### 마.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은 경찰의 성평등 정책 인식을 측정한 연구(윤경희, 양문승, 장일식, 2019)에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경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교육개선의 필요성,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같은 4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를 측정하는 2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sup>15)</sup>. 4점 리커트 척도에서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8] 경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문항

검사	문항
경찰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현재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은 만족스럽다.
	성평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성평등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성평등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성평등 교육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성평등에 대한 직원들 간의 토론, 워크숍이 필요하다.
	우리 기관 관리자급의 성평등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 기관 직원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조직 내 성평등 관련 규정, 지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 더 적절하다.*

\* 연구자에 의해 추가된 문항

## 바. 타당도 척도

응답자가 각 문항에 진실하게 응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당도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법집행 공무원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강용석, 2010; 2018)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수용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King & Brunner, 2000),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과장하는 성향(Rossiter, 2009), 타인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전달하기 위한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의 왜곡(Blake, Valdiserri, Neuendorf & Nemeth, 2006)으로 정의한다.

15) 검찰 대상의 설문조사 시에는 경찰을 검찰로 바꾸어서 질문하였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강용석, 2010; 2018)는 자기기만과 인상관리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도 척도는 특히, 타 척도의 문항들과 섞어서 무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응답자의 답변 유추를 방지할 수 있기에 4점 척도로 변환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개발자는 자기기만 문항의 경우 각 문항에서 4 또는 5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나머지 응답에는 0점을 부여한 후 모두 더하고 인상관리 문항의 경우 1 또는 2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나머지 응답에는 0점을 부여한 후 모두 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타당도 척도는 개발자의 논문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 표준편차의 최상위 범위에 있는 대상자를 유효 표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표 3-9]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

검사	요인	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기만	나는 자신을 잘 통제한다.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정직하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없는 편이다.
		나는 논쟁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태도를 취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
		이때까지 내가 한 결정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언행에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내 기분이 나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는 없다.
		만원버스 안에서 노인이 내 앞에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한다.
	부유한 사람보다는 인간성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상관리	나는 때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흥분 적이 있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픈 척을 했던 적이 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 적이 있다.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손님이 그만 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붙잡는 척 한 경우가 있다.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바쁜 척 할 때가 있다.
		상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다.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한다.

## 2. 조사 표본 및 절차

젠더폭력사건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실태 파악을 위해 젠더폭력사건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검찰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수는 각 직역별로 할당했는데, 피해자 대면업무가 많은 경찰에 300명, 그리고 검찰에 200명을 할당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성청소녀와 소속 경찰 수사관 318명과 여성아동범죄부 소속의 검사 및 수사관 179명이다.

[표 3-10] 설문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젠더폭력관련 법집행공무원 (경찰, 검찰)
응답대상	498명 (경찰 318명, 검찰 179명)
표집방법	직역별 임의할당표집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022년 9월 중순 ~ 10월 말

## 3. 분석 방법

분석 방법으로는 4대폭력에 대한 통념과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예측하는 독립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성평등인식을 측정하는 2개 척도, 제로섬 신념을 측정하는 2개 척도, 그리고 성평등 교육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이였다.

통계적 분석은 먼저 기술 통계에서는 성별, 연령별, 직급별, 지역별에 따른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의 평균값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기술 통계를 통해 성평등인식이나 이차피해 수사행동이 어떠한 소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선행적으로 가정되는 가설(성평등 인식은 4대폭력 통념 및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예측 모델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도 성인지적 태도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부가적으로, 기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성평등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차 피해 행동이 감소되는지 등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3.0 패키지를 이용하여 이뤄졌다.

## 제2절 설문 타당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기술통계

### 1. 설문 타당도 검증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총 498명의 경찰( $n = 318$ )과 검찰( $n = 179$ )이 참여하였다. 이 중 1명의 경찰 표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상자가 온라인 조사에 응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설문 참여자의 응답 반응시간이다. 본 연구진은 온라인 설문 설계 시 응답의 완료율(response rate)을 높이고 결측자료(missing data)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페이지 당 문항 하나만 노출하였다. 사전에 연구진은 설문지 문항 응답 시간(item response time)을 측정하였는데, 중간 정도 길이의 문항 기준으로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은 4초였다. 1개 문항 응답시간을 4초로 계산하면 모든 문항(총 134문항)의 응답 소요 시간은 약 8.9분이 된다( $134\text{문항} \times 4\text{초} = 536\text{초} = 8.9\text{분}$ ). 현실적으로 4초 미만으로 모든 문항을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8분 미만의 응답을 한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전체 응답 시간이 8분(480초) 미만인 표본의 수는 경찰이 17명, 검찰이 9명이었다. 따라서 총 26명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472명의 표본만 사용하였다.

둘째, 설문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 김용석, 2010; 2018)를 이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게 측정된 참여자의 응답은 제외하였다. [표 3-11]은 472명 표본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 2.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기술통계

원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이에 맞게 채점방식도 수정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자인 김용석(2010)이 사용한 응답 점수화 방식인 이항적 점수화 방식(dichotomous scoring method)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만' 요인(문항1 - 16번)의 경우 각 문항에서 3 혹은 4로 응답한 문항(즉, 동의할 때)은 1점을 부여했고 나머지 응답 문항은 0점 처리하였다. '인상관리' 척도(문항17 - 24번)의 경우 각 문항에서 1 또는 2로 응답한 문항(즉, 동의하지 않을 때)은 1점을 부여했고 나머지 문항은 0점 처리하였다. 각 척도에서 새로 부여된 점수를 더한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표 3-11]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기술통계 (N = 472)

요인	Range	집단			검사 점수의 차이			
		전체 (N = 472)	경찰 (n = 302)	검찰 (n = 170)	평균차이	t(470)	p	Cohen's d
		평균 (표준편차)						
총점	5-24	17.17 (4.03)	17.35 (4.13)	16.83 (3.84)	0.52	1.36	.175	0.13
요인1: 자기기만	3-16	12.07 (2.84)	12.38 (2.77)	11.52 (2.88)	0.86	3.19	.002	0.31
요인2: 인상관리 <sup>a</sup>	0-8	5.09 (2.03)	4.97 (2.13)	5.31 (1.81)	-0.34	-1.81	.071	-0.17

Note.

<sup>a</sup> df = 390.912

전체 표본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총점의 평균 점수는 17.17( $SD = 4.03$ ,  $Mdn = 17.50$ ,  $Range = 5 - 24$ )이었다. 경찰( $n = 302$ ,  $M = 17.35$ ,  $SD = 4.13$ )이 검찰( $n = 170$ ,  $M = 16.83$ ,  $SD = 3.84$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독립 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평균차(0.52<sup>16)</sup>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sup>17)</sup>.

16) 95% CI = [-0.23, 1.28]

17)  $t(470) = 1.36$ ,  $p = 0.17$ ,  $d = 0.13$

요인 1인 ‘자기기만’ 척도는 평균 12.07( $SD = 2.84$ ,  $Mdn = 12.00$ ,  $range = 3 - 16$ )이었다. 경찰( $n = 302$ ,  $M = 12.38$ ,  $SD = 2.77$ )이 검찰( $n = 170$ ,  $M = 11.52$ ,  $SD = 2.88$ )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평균차이는 0.86<sup>18)</sup>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sup>19)</sup>를 보였다. Cohen’s  $d$ 에 따르면 점수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는 작았다(Cohen, 1988<sup>20)</sup>). ‘인상관리’ 척도(요인2)는 평균 5.09( $SD = 2.03$ ,  $Mdn = 5.00$ ,  $Range = 0-8$ )로, 검찰( $M = 5.31$ ,  $SD = 1.81$ )이 경찰( $M = 4.97$ ,  $SD = 2.13$ )보다 0.34점 높은 평균을 보였다. T 검증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sup>21)</sup>.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총점은 전체표준이나 경찰과 검찰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기기만’ 요인(요인1)은 경찰이 검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는 경찰이 검찰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무의식적인” (김용석, 2018, p.106)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한 내적합치도 신뢰계수로 분석하였다(표 3-12) 참고). 전체 표본 수를 바탕으로 살펴본 신뢰도 계수는 척도의 총점이  $\alpha = .784$ , ‘자기기만’ 요인(요인1)이  $\alpha = .734$ , ‘인상관리’ 요인(요인2)이  $\alpha = .720$  계수를 나타내 분석 활용에 적합 (acceptable; George & Mallery, 2003<sup>22)</sup>) 하다고 판단되었다. 집단별로는 경찰 집단(총점:  $\alpha = .800$ , 요인1:  $\alpha = .731$ , 요인2:  $\alpha = .749$ )이 검찰 집단(총점:  $\alpha = .754$ , 요인1:  $\alpha = .726$ , 요인2:  $\alpha = .645$ )보다 좀 더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당시 성인 표본(즉,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자기기만:  $\alpha = .84$ , 인상관리:  $\alpha = .71$ ; 김용석, 2010)과 이후 타당도 검사에서의 성인 표본(사회복지사집단; 전체 척도:  $\alpha = .79$ , 자기기만:  $\alpha = .80$ , 인상관리:  $\alpha = .73$ ; 김용석, 2018)의 신뢰도 계수와 유사했다.

18) 95% CI = [0.33, 1.39]

19)  $t(470) = 3.19$ ,  $p = .002$

20) Cohen’s  $d =$  효과크기 (0.2 = small, 0.5 = medium, 0.8 = large)

21)  $t(399) = -1.81$ ,  $p = .071$

22) Cronbach’s  $\alpha$  값은 0에서 1 사이로,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

[표 3-12]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총점과 요인별 내적합치도 ( $N = 472$ )

집단구분	Cronbach's alpha ( $\alpha$ )		
	총점	요인1: 자기기만	요인2: 인상관리
전체( $N = 472$ )	.784	.734	.720
경찰( $n = 302$ )	.800	.731	.749
검찰( $n = 170$ )	.754	.726	.645

### 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이용한 설문 타당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준거점수(cutoff score)가 특정 점수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Mortel (2008)이 Edens, Buffington, Tomicic, & Riley (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임의적인 준거점수인 총점수의 평균 + 1.5 표준편차를 차용함에 따라,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개발한 김용석(2010; 2018)도 척도 개발에 이 계산법을 사용하였다. 즉, 총점수의 평균 ( $z$  점수로 계산) + 1.5 표준편차 이상은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준거점수의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수 평균 + 1.5 표준편차 이상인 참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설문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Z$  점수를 계산해  $Z$  점수 + 1.5 이상인 원점수(즉, 24점)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후속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n = 12$  [경찰  $n = 9$ , 검찰  $n = 3$ ], 전체 표본수의 2.4%). 결과적으로 후속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460명으로, 경찰 293명, 검찰 167명이다.

## 제3절 설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 전체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전체가 460명으로 경찰이 전체표본의 63.7% ( $n = 293$ ), 검찰이 36.6% ( $n = 167$ )를 차지하였다. [표 3-13]은 전체 표본의 기술통계 -빈도(frequency), 퍼센트(percentages), 평균(mean:  $M$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 와 경찰과 검찰 집단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그리고 두 집단의 차이점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결과이다.

전체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63.5%( $n = 292$ ), 여자가 36.5%( $n = 168$ )의 성별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령범위(range)는 23세에서 72세로, 평균 40.04세 ( $SD = 8.14$ )이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6.7%( $n = 16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50대 15.2%( $n = 70$ ), 20대 11.1%( $n = 51$ ), 70대 0.2%( $n = 1$ )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 71.5%( $n = 329$ ), 미혼 28.0%( $n = 129$ ), 이혼 0.4%( $n = 2$ )이었다. 학력분포는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참여자가 74.6%( $n = 343$ ), 고등학교 졸업자 11.5%( $n = 53$ ),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자 7.8%( $n = 36$ ), 전문대학 재학 혹은 졸업자 6.1%( $n = 28$ )이었다. 전체 집단의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았다(28.5%,  $n = 131$ ). 다음으로는 경상도 25.4%( $n = 117$ ), 경기도·인천시 19.8%( $n = 91$ ), 충청도 12.6%( $n = 58$ ), 전라도 5.9%( $n = 27$ ), 강원도 5.2%( $n = 24$ ), 제주시 2.6% ( $n = 12$ ) 순이었다.

## 2. 경찰과 검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경찰 조사대상자( $n = 293$ )의 성별은 남자가 약 70%( $n = 204$ )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검찰 조사대상자( $n = 167$ )는 남자 52.7%( $n = 88$ ), 여자 47.3%( $n = 79$ )이었다. 두 집단의 남녀 비율은 카이 검정 결과 유의미하였다<sup>23)</sup>.

23)  $\chi^2[1] = 13.15, p < .001$

[표 3-13]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카이검증을 통한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460)

변수	구분	빈도 (비율)			$\chi^2$	p value
		전체	경찰 (n = 293)	검찰 (n = 167)		
성별	남	292 (63.5)	204 (69.9)	88 (53.0)	13.15	<.001
	여	168 (36.5)	89 (30.1)	79 (47.0)		
연령	20대 (24-29)	51 (11.1)	41 (14.0)	10 (6.0)	12.69	.013
	30대 (30-39)	169 (36.7)	106 (36.2)	63 (37.7)		
	40대 (40-49)	169 (36.7)	95 (32.4)	74 (44.3)		
	50대 (50-59)	70 (15.2)	50 (17.1)	20 (12.0)		
	60대 이상 (60+)	1 (0.2)	1 (0.3)	0 (0.0)		
	평균 (표준편차)	40.04 (8.15)	39.75 (8.68)	40.56 (7.10)		
결혼 여부	미혼	129 (28.0)	83 (28.3)	46 (27.5)	.03	.857
	기혼	331 (71.9)	210 (71.7)	121 (72.5)		
학력 <sup>1</sup>	고졸	53 (11.5)	48 (16.4)	5 (3.0)	28.39	<.001
	전문대학	28 (6.1)	24 (8.2)	4 (2.4)		
	대학교	343 (74.6)	203 (69.3)	140 (83.8)		
	대학원	36 (7.8)	18 (6.1)	18 (10.8)		
근무 지역	서울특별시	131 (28.5)	67 (22.9)	64 (38.3)	32.16	<.001
	경기도, 인천	91 (19.8)	49 (16.7)	42 (25.1)		
	충청도	58 (12.6)	43 (14.7)	15 (9.0)		
	전라도	27 (5.9)	24 (8.2)	3 (1.8)		
	경상도	117 (25.4)	80 (27.3)	37 (22.2)		
	강원도	24 (5.2)	18 (6.1)	6 (3.6)		
	제주특별시	12 (2.6)	12 (4.1)	0 (0.0)		

Note.

<sup>1</sup>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력은 재학, 졸업 모두 포함

연령별로는 경찰 조사대상자 경우 30대(36.2%,  $n = 106$ )와 40대(32.4%,  $n = 95$ )가 가장 많다. 경찰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9.75( $SD = 8.68$ )였으며, 23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검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56세( $SD = 7.10$ , Range = 24 - 56)였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44.3%,  $n = 74$ )였으며 30대(37.7%,  $n = 63$ )가 다음으로 많았다. 카이검증 결과, 두 집단의 연령대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sup>24</sup>). 결혼 여부 관해서는 두 집단 조사대상자 모두 기혼자가 많았다(경찰: 71.0%,  $n = 208$ ; 검찰: 72.5%,  $n = 121$ ).

학력별로는 두 집단 모두 대다수가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자였다(경찰: 69.3%,  $n = 203$ ; 검찰: 83.8%,  $n = 140$ ). 두 집단 간 학력별 차이에 대한 카이 검증 결과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sup>25</sup>). 또한, 검찰이 경찰에 비해 높은 학력을 보였다. 경찰이 검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16.4% vs. 3.0%)과 전문대 재학 혹은 졸업(8.2% vs. 2.4%) 비율이 높았고, 검찰은 경찰에 비해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비율이 높았다(10.8% vs. 6.1%).

두 집단의 소속기관 지역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26</sup>). 경찰 집단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다. 경상도가 가장 높은 비율 (27.3%,  $n = 80$ )을 보였으며 그다음은 서울(22.9%,  $n = 67$ ), 경기도·인천(16.7%,  $n = 49$ ), 충청도(14.7%,  $n = 43$ )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집단은 수도권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38.3%,  $n = 64$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인천(25.1%,  $n = 42$ ), 경상도(22.2%,  $n = 37$ ) 순이었다. 제주 지역 소속기관은 경찰 조사대상자 12명(4.1%), 검찰 조사대상자는 0명(0.0%)였다.

### 3. 경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표 3-14]는 경찰조사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경찰 조사대상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13.60년(평균 163.27 개월,  $SD = 102.77$ , 범위 = 13 - 417개월)이었다. 계급별 분포는 경위가 30.7%( $n = 90$ )로 가장 많았으며, 경장(20.8%,  $n = 61$ ), 경사(18.8%,  $n = 55$ ), 경감(14.0%,  $n = 41$ ), 순경(8.2%,  $n = 24$ ), 경정(7.5%,  $n = 22$ ) 순이었다. 팀장급 이상은 23.5%( $n = 69$ )이었으며, 팀원은 76.5%( $n = 224$ )이었다. 경찰 조사대상자 대다수는 경찰서 소속(86.0%,

24)  $\chi^2[4] = 12.69, p = .013$

25)  $\chi^2[3] = 28.36, p < .001$

26)  $\chi^2[6] = 32.16, p < .001$

$n = 252$ )이었고, 그 중 68.2%( $n = 172$ )가 1급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급서는 14.7%( $n = 37$ ), 3급서가 17.1%( $n = 43$ )로 집계됐다.

[표 3-14] 경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 $N = 293$ )

구분		빈도(N)	비율(%)	평균 (표준편차)
총 재직기간 <sup>1</sup>		-	-	163.27 (102.77)
계급 (경찰)	순경	24	8.2	-
	경장	61	20.8	-
	경사	55	18.8	-
	경위	90	30.7	-
	경감	41	14.0	-
	경정	22	7.5	-
직급	팀원	224	76.5	-
	팀장급 이상	69	23.5	-
소속	시·도경찰청	41	14.0	-
	경찰서	252	86.0	-
근무지 규모 <sup>2</sup>	1급서	172	68.2	-
	2급서	37	14.7	-
	3급서	43	17.1	-

Note.

<sup>1</sup> 개월

<sup>2</sup> 경찰서 소속만 해당 ( $n = 252$ ). 퍼센트는 경찰서 소속 경찰표본 ( $n = 252$ )에서의 %

#### 4. 검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표 3-15]는 검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을 나타낸다. 설문에 참여한 검찰 조사대상자 중 대다수는 수사관으로( $n = 147$ ) 전체의 88%를 차지하였다. 검사는 12.0% ( $n = 20$ )를 차지하였다. 검찰집단의 총 재직기간은 약 평균 12.70년(평균 152.48개월,  $SD = 84.55$ , range = 1 - 385)이었다. 검사 조사대상자( $n = 20$ ) 중 10년 미만 근속한 검사는 9명(45.0%), 10년 이상 10명(50.0%), 부장검사 1명(5.0%)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수사관 그룹(전체의 88.0%,  $n = 147$ ) 중 가장 많은 직급은 7급(55.8%,  $n = 82$ )과 6급(20.4%,  $n = 30$ )으로 나타났다.



[표 3-15] 검찰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N = 167)

구분		빈도 (N)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신분	검사	20	12.0	-
	수사관	147	88.0	-
총 재직기간 <sup>1</sup>		-	-	152.48 (84.55)
직급 (검사)	검사 10년 미만	9	45.0	-
	검사 10년 이상	10	50.0	-
	부장검사	1	5.0	-
직급 (수사관)	5급 이상	6	4.1	-
	6급	30	20.4	-
	7급	82	55.8	-
	8급	12	8.2	-
	9급	13	8.8	-
	기타 (연구, 전문경력관 등)	4	2.7	-
근무지 유형	지청	67	40.1	-
	지검	78	46.7	-
	고검 및 대검	18	10.8	-
	기타 (법무연수원, 외부기관 파견 등)	4	2.4	-
근무지 소속 그룹 <sup>2</sup>	1그룹	50	29.9	-
	2그룹	41	24.6	-
	3그룹	18	10.8	-
	4그룹	29	17.4	-
	5그룹	4	2.4	-
	6그룹	3	1.8	-
	기타	4	2.4	-

Note.

<sup>1</sup> 개월

<sup>2</sup> 고검 및 대검 제외

근무지 유형은 지검 (46.7%,  $n = 78$ ) 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지청 (40.1%,  $n = 67$ ), 고검 및 대검 (10.8%,  $n = 18$ ), 기타 (법무연수원, 외부기관 파견 등; 2.4%,  $n = 4$ ) 순이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찰청에 소속된 그룹을 조사한 결과, 고검 및 대검을 제외한 지청, 지검, 기타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검찰청 유형 중에 1그룹 (29.9%,  $n = 50$ )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2그룹(24.6%,  $n = 41$ )과 4그룹(17.4%,  $n = 29$ )이 높게 나타났다.

## 제4절 성인지 감수성 관련 심리검사 척도

### 1.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2018)는 성평등의식을 여러 각도에서 측정하는 도구이다. 측정 도구의 구성은 (1) 공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2) 여성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3)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4)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5) 부계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그리고 (6)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 점수와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로 계산되었다(표 3-16) 참고). 신뢰도 계수는 요인 5(‘부계 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는 양호하거나 높은 신뢰도 계수( $\alpha = .779 - .950$ )를 보였다. 이는 척도 개발 당시 표본으로 수집한 신뢰도 계수와 매우 유사한 값이다(이수연 외, 2019). 요인 5는 알파값이 .600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고 요인 1이 가장 높은 신뢰도 계수( $\alpha = .892$ )를 보였다. 척도 개발 당시 보고에서도 요인 5는 가장 낮은 알파값( $\alpha = .568$ )을 나타냈고, 요인 1이 가장 높은 알파값( $\alpha = .890$ )을 보였다.

[표 3-16]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점수의 기술통계 및 내적신뢰도 계수 ( $N = 460$ )

요인/변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내적신뢰도 (Cronbach's $\alpha$ )
1. 공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16 - 32	27.62 (3.90)	.892
2.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10 - 24	18.15 (3.24)	.851
3.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3 - 12	9.60 (2.01)	.779
4.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5 - 16	11.87 (2.51)	.815
5. 부계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4 - 12	10.71 (1.44)	.600
6.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7 - 16	13.14 (2.31)	.819
7. 총점	57 - 112	91.09 (12.93)	.950

## 가.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기술통계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 5의 문항 1을 제외하고 모두 역코딩) 총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개정판 개발 당시 기준 집단에 따른 성별·연령별 점수 분포를 원점수, T점수<sup>27)</sup>, 백분위 점수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집단에서 산출된 원점수는 개정판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기준집단 점수를 기준으로 재해석하였다. [표 3-17]는 전체표본의 총점과 요인별 원점수를 기준집단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이다. 성별(남성, 여성)은 연령대별(20대 - 50대) 기준점수와 비교했다<sup>28)</sup>.

전체 표본의 총점은 평균 91.09( $SD= 12.93$ )로 T점수 60, 백분위 점수는 83에 해당했다. 전체 표본의 평균 총점과 같거나 낮은 기준집단은 전체의 83%라는 의미로 본 연구의 전체표본은 남녀평등 의식이 높은 상위 17%에 해당한다. 요인별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전체표본은 요인 2를 제외(백분위 점수: 66)하고는 모두 상위 20% 이내에 해당한다.

본 표본 집단의 전체 여성표본은 상위 5%의 성평등 의식을 보였다. 여성 집단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낮은 백분위 점수를 보여 여성의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평등 의식의 기준 집단 대비 백분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전체 연령대에서 원점수는 T점수 57, 백분위 점수 72였다. 이는 남성 집단에서 남녀평등 의식이 높은 상위 28%에 해당된다. 남성 전체표본은 여성 전체표본보다 낮은 성평등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집단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평등 의식의 기준 집단 대비 백분위 점수가 높아졌다. 20대 남성의 백분위 점수는 69(T점수 57)인데 반해 50대 남성의 백분위 점수 87(T점수 55)로 나타났다. 50대 남성 백분위 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상위 23%의 성평등 의식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기준집단과 비교 시 일반인 그룹에 비해 남녀평등 의식이 상위그룹에 속했다. 여성과 남성 집단 모두 연령이 높아지면서 같은 연령대 기준 집단 대비 성평등 의식이

27) 표준편차를 10, 평균을 50으로 하여 원점수를 전환한 점수

28) 60대 이상의 표본은 1명뿐이어서 연령대별 비교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높아짐이 보였다. 즉, 이 소집단은 동년배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높은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요인별로는 요인2 '여성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충분함에도 여성이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7]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요인별, 성별/나이별 기술통계와 T점수

구분		표본수 (N)	원점수			규준점수	
성별	나이/요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T점수	백분위 점수
전체	전체	460	91.09	12.93	57 - 112	60	83
	요인1	460	27.62	3.90	16 - 32	60	87
	요인2	460	18.15	3.24	10 - 24	53	66
	요인3	460	9.60	2.01	3 - 12	62	91
	요인4	460	11.87	2.51	5 - 16	59	86
	요인5	460	10.71	1.44	4 - 12	63	92
	요인6	460	13.14	2.31	7 - 16	59	86
여성	전체	168	99.10	10.62	60 - 112	66	95
	20대	33	98.18	12.18	60 - 112	65	79
	30대	74	100.41	9.64	76 - 112	67	88
	40대	53	97.87	10.56	64 - 112	65	93
	50대	8	99.00	13.52	80 - 111	66	96
남성	전체	292	86.48	11.85	57 - 112	57	72
	20대	18	86.39	11.55	63 - 107	57	69
	30대	95	89.45	13.09	57 - 112	59	84
	40대	116	85.25	11.03	60 - 109	56	86
	50대	62	84.31	10.84	62 - 109	55	87

Note.

요인 1: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요인 2: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요인 3: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요인 4: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요인 5: 부계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요인 6: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에서 T점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집단별 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표 3-1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표본의 13.5%가 T점수 50 미만에 해당되었다, 경찰 집단과 검찰 집단 모두 약 13%가 T점수 50 미만으로 전체표본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19.5%에 해당하는 남성표본이 T점수 50 미만에 해당했고, 여성은 표본의 3%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앞서 기술통계와 규준점수와의 비교분석 결과에서처럼 남녀평

등의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했다.

[표 3-18] 소집단별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T점수 50 미만

구분	전체 (N = 460)	경찰 (n = 293)	검찰 (n = 167)	남성 (n = 292)	여성 (n = 168)
원점수 평균	91.09	89.60	93.70	86.48	99.10
평균의 T 점수	60	59	62	57	66
평균의 백분위	83	82	89	72	95
T점수 50 미만					
T 점수 50 미만 원점수 범위	57 - 76	57 - 76	60 - 76	57 - 76	60 - 76
빈도 (n)	62	39	23	57	5
비율 (%)	13.5	13.3	13.8	19.5	3.0

#### 나.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표 3-19]는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경찰 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를 보여준다. t검정과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각 소집단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계급별, 직급별 소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성별에서는 남성( $M = 86.43$ ,  $SD = 11.41$ )이 여성( $M = 96.89$ ,  $SD = 11.25$ )보다 평균 10.46<sup>29)</sup>이 낮은 총점을 보였다<sup>30)</sup>. 효과크기는 큰 것( $d = .92$ )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31)</sup>. 30대 이상이 가장 높은 평균치 ( $M = 91.71$ ,  $SD = 12.67$ )를 보였고 5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 $M = 86.86$ ,  $SD = 11.40$ )<sup>32)</sup>. 셋째, 계급별로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치가 낮아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sup>33)34)</sup>. 넷째, 팀원급이 팀장급 이상 직급보다 5.34점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sup>35)</sup> 효과 크기는 작았다( $d = .44$ ). 그 외에,

29) 95% CI = [-13.30, -7.62]

30)  $t(291) = -7.25$ ,  $p < .001$

31)  $F(3, 289) = 2.96$ ,  $p = .033$

32) partial  $\eta^2 = .03$  (작은 효과크기)

33)  $F(5, 287) = 2.26$ ,  $p = .049$

34) partial  $\eta^2 = .04$  (작은 효과크기)

35)  $t(291) = -3.20$ ,  $p = .002$

미혼과 기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통계적 유의도에 접근했다. 두 소집단 평균차이는 3.04점이었다.

[표 3-19]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성	86.43 (11.41)	-10.46	291	-7.25	<.001	0.92
	여성	96.89 (11.25)					
연령	20대 (24-29)	91.66 (13.29)	-	3	2.96	.033	0.03
	30대 (30-39)	91.71 (12.67)					
	40대 (40-49)	87.84 (11.58)					
	50대이상 (50+)	86.86 (11.40)					
결혼 여부	미혼	91.78 (12.84)	3.04	291	1.91	.057	-
	기혼	88.74 (12.03)					
학력	고졸	87.58 (12.46)	-	3	1.04	.374	-
	전문대학	87.04 (9.79)					
	대학교	90.27 (12.47)					
계급	대학원	90.94 (13.17)	-	5	2.26	.049	0.04
	순경	93.17 (14.65)					
	경장	91.59 (11.03)					
	경사	91.76 (13.63)					
	경위	87.83 (11.82)					
	경감	88.12 (10.96)					
직급	경정	84.82 (12.28)	5.34	291	-3.20	.002	0.44
	팀원	90.86 (12.55)					
소속	팀장급 이상	85.52 (10.65)	-0.79	291	-0.38	.705	-
	시.도경찰청	88.93 (13.58)					
근무지 규모	경찰서	89.71 (12.13)	2.09	176	1.34 <sup>b</sup>	.181	-
	1급서	90.38 (12.63)					
소속기관지 역	2급서 +3급서	88.29 (10.92)	2.37	291	1.61	.108	-
	수도권	91.03 (11.91)					
	비수도권	88.67 (12.53)					

Note.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sup>b</sup> Equal variances not assumed

#### 다.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표 3-20]는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검찰 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총점의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수사관의 직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는 검찰 집단이 경찰 집단보다 더 큰 평균치를 보였다. 검찰 집단의 남성은 평균 86.61( $SD = 12.88$ )점으로 여성( $M = 101.59, SD = 9.33$ )보다 14.98점

낮았다<sup>36)</sup>. 효과크기 또한 컸다( $d = 1.32$ ).

연령대에서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sup>37)</sup>. 2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 $M = 103.70$ ,  $SD = 6.70$ )를 보인 반면, 50대 이상은 평균치 83.65( $SD = 13.25$ )를 보이며 큰 차이를 나타냈다<sup>38)</sup>. 결혼여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39)</sup>. 미혼( $M = 99.41$ ,  $SD = 12.14$ )이 기혼( $M = 91.53$ ,  $SD = 13.49$ )보다 7.88점 높았다<sup>40)</sup>. 이 두 집단 차이의 효과크기는 보통이었다( $d = .60$ ).

수사관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녀평등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41)</sup>. 9급이 가장 높은 남녀평등의식( $M = 101.54$ ,  $SD = 12.34$ )을 가졌으며 5급 이상이 가장 낮은 남녀평등의식( $M = 84.33$ ,  $SD = 12.60$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up>42)</sup>.

그 외, 직업별(검사 vs. 수사관)로는 검사가 수사관보다 남녀평등 의식이 평균 4.43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p = .171$ ), 검사 직급별(10년 미만 vs. 10년 이상)로도 총점(평균 7.80)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p = .147$ ).

36) 95% CI = [-18.39, -11.57]

37)  $F(3, 163) = 10.74$ ,  $p < .001$

38) partial  $\eta^2 = .165$  (중간 혹은 큰 효과크기)

39)  $t(165) = 3.46$ ,  $p = .001$

40) 95% CI = [3.39, 12.38]

41)  $F(5, 141) = 2.92$ ,  $p = .015$

42) partial  $\eta^2 = .094$  (중간의 효과크기)

[표 3-20] 개정 한국형남녀평등 의식검사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성	86.61 (12.88)	-14.98	158	-8.67	<.000	1.32
	여성	101.59 (9.33)					
연령	20대 (24-29)	103.70 (6.70)	-	3	10.74	<.000	0.16
	30대 (30-39)	98.52 (12.17)					
	40대 (40-49)	90.96 (13.13)					
	50대이상 (50+)	83.65 (13.25)					
결혼 여부	미혼	99.41 (12.14)	7.88	165	3.46	.001	0.60
	기혼	91.53 (13.49)					
학력	고졸	86.80 (15.25)	-	3	1.06	.370	-
	전문대학	87.75 (10.01)					
	대학교	93.69 (13.55)					
	대학원	97.06 (13.76)					
직업	검사	97.60 (11.84)	4.43	165	1.37	.171	-
	수사관	93.17 (13.74)					
직급(검사)	10년 미만	101.89 (10.77)	7.80	18	1.56	.147	-
	10년 이상	94.09 (11.97)					
직급 (수사관)	5급 이상	84.33 (12.60)	-	5	2.92	.015	0.09
	6급	89.80 (13.52)					
	7급	92.35 (13.74)					
	8급	100.83 (9.70)					
	9급	101.54 (12.34)					
	기타 <sup>1</sup>	98.25 (15.41)					
검찰청 유형	지청	92.87 (14.64)	-	3	0.28	.840	-
	지검	93.90 (13.24)					
	고검 및 대검	96.11 (11.10)					
	기타 <sup>2</sup>	93.00 (15.01)					
근무지 소속그룹	1그룹	96.60 (11.40)	-	6	1.51 <sup>c</sup>	.246	-
	2그룹	92.20 (14.20)					
	3그룹	89.78 (15.93)					
	4그룹	92.86 (16.07)					
	5그룹	85.25 (8.18)					
	6그룹	86.33 (11.01)					
	기타 <sup>2</sup>	99.75 (13.17)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94.93 (12.60)	3.38	108	1.49 <sup>d</sup>	.141	-
	비수도권	91.56 (14.98)					

Note.

<sup>1</sup> 연구, 전문경력관 등

<sup>2</sup>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sup>a</sup>  $t = \text{Cohen's } d$ , ANOVA = Partial Eta squared

<sup>b d</sup> Equal variances not assumed

<sup>c</sup> Welch's  $F$



## 2.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와 적대적 성별의식 척도는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안상수 외, 2007) 척도 중 하나다.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는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이며, 총 점수는 12점에서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음*으로 해석된다. 하위요인으로는 ‘보호적 부성주의’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인식), ‘보완적 성역할 분화’ (여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고정관념), ‘친밀한 이성애’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으로 삶이 완성되어진다는 인식)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은 전체표본의 총점, 요인별 기술통계와 전체표본과 각 성별의 연령대별 T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1]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기술통계, T점수, 내적합치도

구분		표본수 (N)	원점수			규준점수		내적신뢰도 Cronbach's $\alpha$
성별	요인		평균	표준편차	Range	T점수	백분위 점수	
전체	전체	460	28.75	6.30	12 - 45	49	35	.847
	요인1		9.20	2.60	4 - 16	-	-	.782
	요인2		10.32	2.21	4 - 16	-	-	.844
	요인3		9.22	2.70	4 - 16	-	-	.894
여성	전체	168	24.48	5.74	12 - 41	33	6	-
	요인1		7.37	2.24	4 - 13	36	7	-
	요인2		9.22	2.15	4 - 14	40	14	-
	요인3		7.89	2.72	4 - 16	38	13	-
남성	전체	292	31.21	5.20	12 - 45	44	24	-
	요인1		10.26	2.18	4 - 16	46	32	-
	요인2		10.96	1.98	4 - 16	48	40	-
	요인3		9.99	2.37	4 - 16	46	33	-

Note.

요인 1: 보호적 부성주의; 요인 2: 보완적 성역할 분화; 요인 3: 친밀한 이성애

## 가.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기술통계

다면성별의식 검사도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처럼 기준집단과 비교 가능하다.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비교한 기술통계는 [표 3-21]에 기재되어 있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표본의 평균은 28.75( $SD = 6.30$ , range = 12 - 45)로 전체규준(즉, 청소년과 성인의 합)의 T점수는 49점에 해당하였다. 백분위는 35점으로 이는 전체표본의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전체규준 평균에 비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표본의 '보호적 부성주의' 요인(요인1)은 4 - 16의 점수범위이며 평균 9.20( $SD = 2.60$ )이었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 요인(요인2)은 4 - 16의 점수범위에 평균 10.32( $SD = 2.21$ )이었다. '친밀한 이성애' 요인(요인3)은 4 - 16의 점수범위이며 평균 9.22( $SD = 2.70$ )이었다. 각 하위요인과 총점의 신뢰도는  $\alpha = .782 - .894$ 로 양호하거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본여성( $n = 168$ )은 일반 성인여성보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매우 낮았다. 여성 집단의 T점수는 33이었으며, 이는 백분위 6점으로 낮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은 집단의 상위 6%에 해당한다. 여성 집단에 대한 하위요인별로는 '보호적 부성주의' 요인(요인1)이 평균 7.37( $SD = 2.24$ )로 T점수 36점, 백분위 7에 해당하였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 요인(요인2)은 9.22( $SD = 2.15$ )로 T점수 40점, 백분위 점수는 14에 해당하였다. '친밀한 이성애' 요인(요인3)은 평균 7.89( $SD = 2.72$ )로, T점수 38에 해당했으며 백분위는 13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여성표본이 일반인 여성의 평균보다 총점과 하위요인에서 매우 낮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본남성( $n = 292$ )도 일반 성인남성에 비해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낮은 편이었다. 남성 집단의 T점수는 44점이었으며 백분위는 24점으로 낮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은 집단의 상위 24%에 해당한다. 원점수 총점이 31.21( $SD = 5.20$ )로 전체표본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남성의 '보호적부성주의' 요인(요인1)은 평균 10.26( $SD = 2.18$ )으로 T점수 46, 백분위 32에 해당되었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 요인(요인2)은 평균 10.96( $SD = 1.98$ )으로 T점수 48, 백분위는 40에 해당하였다. '친밀한 이성애' 요인(요인3)은 평균이 9.99( $SD = 2.37$ ), T점수 46, 그리고 백분위 33에 해당하였다. 하위요인 기준으로 본 연구의 남성표본은 일반인 남성의 평균보다 조금 낮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성별 간 총점과 하위요인 평균치 비교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은 T점수(백분위 점수)를 보였다. 이는 표본 남성 집단이: (1) 일반인 남성에 비해 낮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2) 여성 집단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2] 소집단별 온정적 성차별의식: T 점수 50 초과

구분	전체 (N = 460)	경찰 (n = 293)	검찰 (n = 167)	남성 (n = 292)	여성 (n = 168)
원점수 평균	28.75 (6.30)	29.69 (6.10)	27.10 (6.33)	31.21 (5.20)	24.48 (5.74)
평균의 T 점수	49	51	45	44	33
평균의 백분위	24	31	14	24	6
T점수 50 초과					
T 점수 50 초과 원점수 범위	30 - 45	30 - 45	30 - 43	34 - 45	33 - 41
빈도 (n)	220	154	66	100	15
비율 (%)	47.83	52.56	39.52	34.25	8.93

온정적 성차별의식에서 T점수 50을 초과한 소집단의 빈도를 확인해보았다 ([표 3-22] 참고). 전체표본의 47.83%가 T점수를 초과해 전체 표본 중 상당수가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 집단은 52.56%, 검찰 집단은 39.52%가 T점수 50을 초과했다. 경찰 집단이 검찰 집단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또한 뚜렷했다. 남성이 34.25%, 여성은 8.93%의 표본이 T점수 50을 초과했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은 표본이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 나.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경찰 집단에서는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계급별, 직급별 소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23] 참고). 성별로는 남성( $M = 31.37, SD = 5.32$ )이 여성( $M = 25.82, SD = 6.01$ )보다 평균 5.55점이 높았고<sup>43)</sup> 그 효과크기 또한 컸다 ( $d = 1.00$ ).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평균값( $M = 27.22, SD = 6.80$ )이 가장 낮았고, 50대 평균값( $M = 32.71, SD = 5.08$ )이 가장 높았다<sup>44)</sup>.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온정적 성차별의식도 높았다. 다음으로, 결혼을 한 집단이 결혼하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값이 약 2점이

43)  $t(291) = 7.89, p < .001; 95\% CI = [4.17, 6.94]$

44)  $F(3, 289) = 10.67, p < .001$

높게 나타났다<sup>45)</sup>. 기혼 집단의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미혼 집단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sup>46)</sup>. 계급별 소그룹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47)</sup>. 경정 그룹을 제외하고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팀장급 이상의 집단( $M = 31.68, SD = 4.37$ )이 팀원급( $M = 29.07, SD = 6.42$ )보다 2.6점 정도의 높은 평균을 보였다<sup>48)</sup>. 팀장급 이상 경찰이 팀원들에 비해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 다.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검찰 집단도 경찰 집단과 유사하게 소집단별 차이가 관찰되었다(표 3-24) 참고).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수사관의 직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sup>49)</sup>. 남성과 여성의 평균값 차이는 약 8점 이상이었다<sup>50)</sup>. 연령은 높아질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낮은 연령과 높은 연령의 평균값 차이는 최대 8.05로 나타났다<sup>51)</sup>.

결혼여부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sup>52)</sup>. 기혼( $M = 28.36, SD = 5.98$ )이 미혼( $M = 23.80, SD = 6.09$ )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평균치는 4.55점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가짐을 의미했다<sup>53)</sup>. 수사관의 직급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sup>54)</sup>. 기타 집단을 제외하고 9급( $M = 22.77, SD = 5.26$ )에서 5급( $M = 32.17, SD = 3.12$ )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보였다.

45) 95% CI = [-3.59, -0.51]

46)  $t(291) = -2.62, p = .009$

47)  $F(5, 287) = 6.00, p < .001$

48)  $t(165.790) = 3.84, p < .001$ ; 95% CI = [1.27, 3.95]

49)  $t(165) = 10.19, p < .001$

50) 95% CI = [6.33, 9.38]

51)  $F(3, 163) = 9.21, p < .001$

52)  $t(165) = -4.37, p < .001$

53) 95% CI = [-6.61, -2.50]

54)  $F(5, 141) = 3.61, p = .004$

[표 3-23]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31.37 (5.32)	5.55	291	7.89	<.001	1.00
	여자	25.82 (6.01)					
연령	20대 (24-29)	27.22 (6.80)	-	3	10.67	<.001	0.10
	30대 (30-39)	28.17 (5.93)					
	40대 (40-49)	30.82 (5.57)					
	50대이상(50+)	32.71 (5.08)					
결혼여부	미혼	28.22 (6.35)	-2.05	291	-2.62	.009	0.34
	기혼	30.27 (5.90)					
학력	고졸	30.25 (4.58)	-	3	2.33	.075	-
	전문대학	32.00 (5.63)					
	대학교	29.49 (6.40)					
	대학원	27.28 (5.95)					
계급	순경	26.21 (6.67)	-	5	6.00	<.001	0.09
	경장	28.13 (6.25)					
	경사	28.33 (5.59)					
	경위	31.73 (5.88)					
	경감	31.32 (5.71)					
	경정	29.77 (4.22)					
직급	팀원	29.07 (6.42)	2.61	166 <sup>b</sup>	3.84	<.001	0.43
	팀장급 이상	31.68 (4.37)					
소속	시·도경찰청	29.73 (6.31)	0.05	291	0.05	.959	-
	경찰서	29.68 (6.07)					
근무지 규모	1급서	29.32 (6.08)	-1.13	250	-1.38	.169	-
	2급서 + 3급서	30.45 (6.00)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29.42 (6.16)	-0.44	291	-0.60	.550	-
	비수도권	29.86 (6.06)					

Note.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sup>b</sup> Equal variances not assumed

[표 3-24]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30.82 (4.92)	7.86	165	10.19	<.000	1.58
	여자	22.96 (5.03)					
연령	20대 (24-29)	24.00 (7.42)	-	3	9.21	<.000	0.14
	30대 (30-39)	24.89 (5.57)					
	40대 (40-49)	28.07 (6.13)					
	50대 이상(50+)	32.05 (5.25)					
결혼여부	미혼	23.80 (6.09)	-4.55	165	-4.37	<.000	0.76
	기혼	28.36 (5.98)					
학력	고졸	27.80 (4.21)	-	3	0.90	.444	-
	전문대학	30.25 (3.77)					
	대학교	27.23 (6.43)					
	대학원	25.22 (6.33)					
직업	검사	24.70 (4.67)	-2.73	165	-1.82	.070	-
	수사관	27.43 (6.47)					
직급 (검사)	검사 10년 미만	22.56 (4.75)	-3.90	18	-2.00	.061	-
	검사 10년 이상	26.45 (3.99)					
직급 (수사관)	5급 이상	32.17 (3.12)	-	5	3.61	.004	0.11
	6급	30.03 (6.17)					
	7급	27.26 (6.42)					
	8급	25.08 (7.27)					
	9급	22.77 (5.26)					
	기타 <sup>1</sup>	26.50 (1.73)					
검찰청 유형	지청	26.27 (6.24)	-	3	0.96	.412	-
	지검	27.97 (6.07)					
	고검 및 대검	26.72 (6.86)					
	기타 <sup>2</sup>	25.75 (10.44)					
근무지 소속그룹	1그룹	26.58 (5.64)	-	6	1.21	.305	-
	2그룹	28.24 (7.16)					
	3그룹	27.33 (4.96)					
	4그룹	25.97 (6.44)					
	5그룹	32.00 (7.07)					
	6그룹	30.33 (4.16)					
	기타 <sup>2</sup>	23.50 (7.85)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26.92 (6.43)	-0.51	165	-0.50	.617	-
	비수도권	27.43 (6.19)					

Note.

<sup>1</sup> 연구, 전문경력관 등

<sup>2</sup>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sup>a</sup>  $t = \text{Cohen's } d, \text{ ANOVA} = \text{Partial Eta squared}$

### 3.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한국판 제로섬신념 척도(정주리, 2021)는 단일요인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수정했다. 총점은 최소 8점에서 최대 32점까지의 범위이다.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제로섬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 한국판 제로섬신념 척도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전체표본의 평균값 범위는 8점에서 31점으로, 평균 총점은 18.25( $SD = 3.89$ )이었다(표 3-25) 참고). 제로섬 신념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alpha = .844$ 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제로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의 신뢰도 계수( $\alpha = .87, N = 508$ )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정주리, 2021).

[표 3-25] 제로섬 신념 척도와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의 기술통계

검사명	문항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제로섬 신념 척도	8	8 - 31	18.25	3.89	.844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	7	7 - 21	10.61	3.61	.925

#### 나. 한국판 제로섬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경찰 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3-26) 참고). 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소집단 간의 차이는 미비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경찰 집단에서는 제로섬 신념이 소집단간의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소집단별 총점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이 높았다. 20대가 가장 높은 총점 평균을 보였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이, 대학원 집단보다는 고졸과 전문대학 집단이 높은 평균을 보였다. 경위가 계급 중에 가장 높은 총점을 보였고, 팀장급 이상,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 높은 총점을 나타냈다. 근무지역별로는 경찰서 근무자 중에서는 1급서에 근무하는 집단과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집단이 더 높은 총점을 보였다.

[표 3-26]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18.29 (3.84)	0.38	291	0.76	.449	-
	여자	17.91 (4.15)					
연령	20대 (24-29)	18.46 (3.78)	-	3	0.12	.947	-
	30대 (30-39)	18.18 (3.98)					
	40대 (40-49)	18.02 (4.23)					
	50대이상(50+)	18.22 (3.45)					
결혼여부	미혼	17.81 (3.93)	-0.51	291	-1.00	.316	-
	기혼	18.32 (3.93)					
학력	고졸	18.31(3.64)	-	3	0.09	.963	-
	전문대학	18.33 (4.22)					
	대학교	18.16 (3.98)					
	대학원	17.78 (4.07)					
계급	순경	17.88 (3.57)	-	5	0.34	.888	-
	경장	17.97 (3.69)					
	경사	18.20 (4.16)					
	경위	18.56 (4.27)					
	경감	18.12 (3.61)					
	경정	17.55 (3.81)					
직급	탐원	18.14 (3.95)	0.15	291	0.28	.780	-
	탐장급 이상	18.29 (3.91)					
소속	시.도경찰청	18.59 (4.32)	0.48	291	0.72	.471	-
	경찰서	18.11 (3.87)					
근무지 규모	1급서	18.26 (4.01)	0.47	250	0.89	.373	-
	2급서 + 3급서	17.79 (3.55)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18.17 (4.11)	-0.003	291	-0.01	.995	-
	비수도권	18.18 (3.82)					

Note.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 다. 한국판 제로섬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검찰 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도 미비하였다(표 3-27) 참고).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고, 20대와 다른 연령대간, 대학원과 타 학력간, 검사 직급 간(10년 미만 vs. 10년 이상), 수사관 그룹 중 5급 이상과 타 직급 간, 기타 검찰청 유형(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과 타 유형 간, 근무지 소속 그룹 간에 약 1점의 평균값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수들 중 유일하게 검사와 수사관 집단 사이에 평균차 2.2055)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56)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였다 ( $d = .59$ ). 하지만 검사 집단의 표본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길보민, 2021)는 젠더 기반의 제로섬 신념, 즉 “여성의 이득이 남성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믿음”(길보민, 2021, p.1)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점 리커트의 원척도가 아닌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수정해 총점을 산출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젠더기반의 제로섬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 가. 젠더지위 제로섬신념 척도의 기술통계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의 총점 범위는 7점에서 28점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의 점수범위는 7에서 21이었다(표 3-25) 참고). 총점의 평균값은 10.61( $SD = 3.61$ )으로 나타났다.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알파값 .925로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길보민(2022)의 연구에 나타난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인  $\alpha = .94$ 와 비슷한 계수이다.

55) 95% CI = [-3.96, -0.43]

56)  $t(165) = -2.46, p = .015$

[표 3-27]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18.59 (4.03)	0.44	165	0.74	.458	-
	여자	18.15 (3.55)					
연령	20대 (24-29)	20.10 (3.21)	-	3	0.87	.456	-
	30대 (30-39)	18.25 (3.61)					
	40대 (40-49)	18.15 (3.93)					
	50대 이상(50+)	18.80 (4.21)					
결혼여부	미혼	19.07 (3.26)	0.94	165	1.43	.154	-
	기혼	18.12 (3.98)					
학력	고졸	18.60 (3.85)	-	3	1.67	.176	-
	전문대학	18.75 (5.31)					
	대학교	18.61 (3.83)					
	대학원	16.50 (2.99)					
직업	검사	16.45 (3.72)	-2.20	165	-2.46	.015	0.59
	수사관	18.65 (3.75)					
직급 (검사)	검사 10년 미만	17.11 (2.85)	1.20	18	0.71	.487	-
	검사 10년 이상	15.91 (4.37)					
직급 (수사관)	5급 이상	20.50 (4.04)	-	5	0.56	.731	-
	6급	18.67 (3.37)					
	7급	18.57 (3.79)					
	8급	17.58 (4.81)					
	9급	18.85 (3.36)					
	기타 <sup>1</sup>	19.75 (4.11)					
검찰청 유형	지청	17.52 (3.80)	-	3	2.25	.084	-
	지검	19.03 (3.82)					
	고검 및 대검	18.39 (2.99)					
	기타 <sup>2</sup>	20.25 (5.12)					
근무지 소속그룹	1그룹	18.52 (3.74)	-	6	0.44	.852	-
	2그룹	18.93 (4.62)					
	3그룹	18.39 (2.70)					
	4그룹	17.55 (4.08)					
	5그룹	18.75 (3.50)					
	6그룹	17.00 (2.00)					
	기타 <sup>2</sup>	17.75 (3.59)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18.50 (3.89)	0.32	165	0.52	.603	-
	비수도권	18.18 (3.67)					

Note.

<sup>1</sup> 연구, 전문경력관 등

<sup>2</sup>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 나. 젠더지위 제로섬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표 3-28]는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소집단 간의 차이는 미비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차이는 평균값 1.21<sup>57)</sup>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58)</sup>. Cohen's *d*는 0.34로 두 집단 간 차이의 효과크기는 적었다. 연령 간, 결혼여부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전문대학과 평균값 1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p = .462$ ). 계급 중에는 경장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다른 계급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p = .340$ ). 근무 지역별로는 시·도 경찰청, 2급서·3급서, 비수도권의 집단이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 다. 젠더지위 제로섬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검찰 집단은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직급, 근무지역 등 변인에서 소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남성( $M = 11.82, SD = 3.57$ )이 여성( $M = 9.04, SD = 3.22$ )보다 2.78점 높은 평균<sup>59)</sup>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60)</sup>.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젠더기반의 제로섬 신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 간 차이의 효과크기는 컸다( $d = .82$ ). 둘째, 연령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sup>61)</sup>.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높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62)</sup>. 셋째, 미혼과 기혼 소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sup>63)</sup>. 기혼일수록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높음을 가리켰다.

57) 95% CI = [0.33, 2.10]

58)  $t(291) = 2.69, p = .007$

59) 95% CI = [1.74, 3.82]

60)  $t(164.998) = 5.29, p < .001$

61)  $F(3,35.040) = 6.84, p = .001$

62) partial  $\eta^2 = .10$  (중간의 효과크기)

63)  $t(92) = -3.02, p = .003$

넷째, 수사관 집단에서 직급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sup>64</sup>). 낮은 직급(8, 9급)에 비해 높은 직급(7급~ 5급)이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높음을 보였다<sup>65</sup>). 다섯 번째, 현재 근무 중인 검찰청 유형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고,<sup>66</sup> 고검 및 대검에 근무하는 검찰 그룹이 가장 낮은 평균치 ( $M = 9.72, SD = 3.64$ )를 보였다. 기타(예: 법무연수원 혹은 외부파견 등) 근무지에 근무하는 그룹이 가장 높은 ( $M = 16.25, SD = 6.18$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을 보였다<sup>67</sup>). 그 외 학력별로 대학원 집단과 대학교 집단이 전문대학 집단에 비해 낮은 평균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621$ ).

---

64)  $F(5,141) = 2.79, p = .019$

65) partial  $\eta^2 = .09$  (중간의 효과크기)

66)  $F(3,163) = 3.74, p = .012$

67) partial  $\eta^2 = .06$  (중간의 효과크기)

[표 3-28]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11.03 (3.58)	1.21	291	2.69	.007	0.34
	여자	9.82 (3.47)					
연령	20대 (24-29)	10.34 (3.56)	-	3	0.30	.828	-
	30대 (30-39)	10.57 (3.71)					
	40대 (40-49)	10.74 (3.54)					
	50대이상(50+)	11.00 (3.50)					
결혼여부	미혼	10.49 (3.59)	-0.24	291	-0.51	.608	-
	기혼	10.73 (3.59)					
학력	고졸	10.85 (3.84)	-	3	0.86	.462	-
	전문대학	11.71 (3.34)					
	대학교	10.50 (3.58)					
	대학원	10.61 (3.33)					
계급	순경	11.13 (4.22)	-	5	1.15 <sup>b</sup>	.340	-
	경장	9.89 (2.89)					
	경사	10.45 (3.92)					
	경위	10.93 (3.50)					
	경감	11.12 (3.74)					
	경정	10.91 (3.80)					
직급	팀원	10.52 (3.55)	0.61	291	1.23	.219	-
	팀장급 이상	11.13 (3.67)					
소속	시·도경찰청	11.34 (3.84)	0.79	291	1.30	.194	-
	경찰서	10.56 (3.54)					
근무지 규모	1급서	10.42 (3.45)	-0.41	250	-0.86	.390	-
	2급서 + 3급서	10.84 (3.74)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10.30 (3.45)	-0.60	291	-1.41	.160	-
	비수도권	10.90 (3.66)					

Note.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sup>b</sup> Welch's F

[표 3-29]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11.82 (3.57)	2.78	165	5.29 <sup>b</sup>	<.000	0.82
	여자	9.04 (3.22)					
연령	20대 (24-29)	8.80 (2.70)	-	3	6.84 <sup>c</sup>	.001	0.10
	30대 (30-39)	9.27 (3.18)					
	40대 (40-49)	11.30 (3.85)					
	50대 이상(50+)	12.30 (3.47)					
결혼여부	미혼	9.22 (3.26)	-1.77	92	-3.02 <sup>d</sup>	.003	0.49
	기혼	10.99 (3.72)					
	고졸	11.80 (5.89)					
학력	전문대학	12.00 (3.37)	-	3	0.62 <sup>e</sup>	.621	-
	대학교	10.51 (3.67)					
	대학원	9.72 (3.08)					
직업	검사	10.50 (3.50)	0.003	165	-0.004	.997	-
	수사관	10.50 (3.71)					
직급 (검사)	검사 10년 미만	9.56 (3.21)	-1.72	18	-1.10	.287	-
	검사 10년 이상	11.27 (3.69)					
직급 (수사관)	5급 이상	14.50 (3.62)	-	5	2.79	.019	0.09
	6급	11.03 (3.62)					
	7급	10.59 (3.71)					
	8급	8.67 (3.14)					
	9급	9.00 (3.21)					
	기타 <sup>1</sup>	9.25 (3.30)					
검찰청 유형	지청	10.51 (3.51)	-	3	3.74	.012	0.06
	지검	10.38 (3.49)					
	고검 및 대검	9.72 (3.64)					
	기타 <sup>2</sup>	16.25 (6.18)					
근무지 소속그룹	1그룹	9.56 (3.17)	-	6	2.66 <sup>f</sup>	.064	-
	2그룹	11.37 (4.04)					
	3그룹	11.56 (3.70)					
	4그룹	9.83 (3.26)					
	5그룹	13.75 (2.06)					
	6그룹	11.33 (3.51)					
	기타 <sup>2</sup>	13.25 (6.02)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10.47 (3.83)	-0.09	165	-0.14	.885	-
	비수도권	10.56 (3.42)					

Note.

<sup>1</sup> 연구, 전문경력관 등

<sup>2</sup>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sup>a</sup>  $t = \text{Cohen's } d, \text{ ANOVA} = \text{Partial Eta squared}$

<sup>b d</sup> Equal variances not assumed

<sup>c e f</sup> Welch's  $F$

## 제5절 4대폭력 통념 및 이차 피해 수사행동 측정 검사

### 1.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는 총 4개의 요인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요인 중 아동학대 문항(문항1개)을 제외했다. 대신에 스토킹 관련 문항을 2문항 추가하여 ‘가정폭력 및 스토킹 요인’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및 스토킹’ (3문항), ‘성매매’ (2문항), ‘성폭력’ (5문항), ‘성희롱’ (6문항)을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총점이 낮을수록 4대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음을, 총점이 높을수록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 가.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기술통계

‘가정폭력 및 스토킹’ 요인의 점수범위는 3에서 12이다(표 3-30 참조). 본 연구의 전체표준은 3에서 10의 점수범위가 나왔다. 평균값은 5.05( $SD = 1.50$ )로 중앙값(Median [ $Mdn$ ])인 5.00을 조금 넘는 수치였다. ‘성매매’ 요인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2에서 8이며 본 연구의 전체표본은 2에서 8의 점수범위를 나타냈다. 평균값은 3.83( $SD = 1.35$ )으로 중앙값인 4.00 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다. ‘성폭력’ 요인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5에서 20으로 본 연구의 전체표본은 5에서 16이었다. ‘성폭력’ 요인의 전체평균은 8.57( $SD = 2.46$ )로 중앙값은 8.00이었다. ‘성희롱’ 요인의 6에서 24의 점수범위 중, 본 연구전체 표준은 6에서 18을 기록하였다. 평균값은 9.58( $SD = 2.87$ )로 중앙값은 10.00이었다.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총점범위는 16에서 50으로 전체 평균값은 27.30( $SD = 7.04$ )이었다. 총점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81$ 로 우수하였다.

#### 나.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표 3-31]은 경찰 집단 내의 소집단별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점수 차이를 나타낸다. 소집단 중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이었다<sup>68)</sup>. 남성( $M = 28.63$ ,  $SD = 7.08$ )이 여성( $M = 26.44$ ,  $SD = 6.33$ )보다 2.19점 높은 총점<sup>69)</sup>을 보여 4대폭력에 대한

68)  $t(291) = 2.51$ ,  $p = .013$

69) 95% CI = [0.47, 3.91]

감수성이 낮음을, 즉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음을 나타냈다. 집단 차이의 효과크기는 작았다 ( $d = 0.32$ ).

[표 3-30]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기술통계 ( $N = 460$ )

척도명	하위요인	범위	평균값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	1. 가정폭력 및 스토킹	3 - 10	5.05	1.50	-
	2. 성매매	2 - 8	3.83	1.35	-
	3. 성폭력	5 - 16	8.57	2.46	-
	4. 성희롱	6 - 18	9.85	2.87	-
	총점	16 - 50	27.30	7.04	.88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소집단별 차이를 본다면,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통념을 나타냈다. 기혼이 미혼보다, 전문대학 졸업 (혹은 재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통념을 보였다. 계급은 팀장급 이상, 즉, 높은 계급일수록 통념이 높았다. 근무지 유형별로는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집단, 낮은 급서에 근무하는 집단, 비수도권에 소속된 집단이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검찰 집단에서는 성별, 결혼여부, 직급별 등 소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M = 28.94, SD = 7.38$ )과 여성( $M = 22.99, SD = 5.22$ )간에는 약 6점에 가까운 평균값 차이가 났다<sup>70)</sup>. 이는 검찰의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해 4대폭력 통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아짐을 보였다. 결혼여부로는 기혼일수록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았다<sup>71)</sup>. 두 집단 간 큰 평균차(4.34)<sup>72)</sup>를 보였는데, 기혼( $M = 27.32, SD = 7.28$ )이 미혼( $M = 22.98, SD = 5.49$ )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수사관 집단에서는

70)  $t(156.716) = 6.06, p < .001; 95\% CI = [4.01, 7.90]$

71)  $t(107.306) = -4.15, p < .001$

72)  $95\% CI = [-6.69, -2.00]$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통념을 보였다<sup>73)</sup>. 9급의 평균은 20.69( $SD = 3.57$ )이었으며 5급 이상에서는 34.33( $SD = 10.61$ )을 기록했다. 이외 소집단에서도 소집단간 평균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3-32] 참고).

[표 3-31]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28.63 (7.08)	2.19	291	2.51	.013	0.32
	여자	26.44 (6.33)					
연령	20대 (24-29)	28.51 (6.90)	-	3	1.74	.156	-
	30대 (30-39)	26.83 (6.84)					
	40대 (40-49)	29.00 (6.79)					
	50대이상(50+)	27.94 (7.22)					
결혼여부	미혼	27.01 (7.29)	-1.33	291	-1.48	.140	-
	기혼	28.34 (6.76)					
학력	고졸	28.98 (7.65)	-	3	1.62	.184	-
	전문대학	30.08 (6.70)					
	대학교	27.62 (6.79)					
	대학원	26.28 (6.30)					
계급	순경	26.67 (7.45)	-	5	1.49	.192	-
	경장	27.11 (6.43)					
	경사	26.75 (7.25)					
	경위	29.03 (7.03)					
	경감	28.22 (6.70)					
	경정	29.91 (6.38)					
직급	팀원	27.57 (7.00)	1.66	291	1.75	.082	-
	팀장급 이상	29.23 (6.58)					
소속	시·도경찰청	28.83 (7.65)	1.01	291	0.86	.389	-
	경찰서	27.82 (6.81)					
근무지 규모	1급서	27.60 (7.16)	-0.68	182	-0.79 <sup>b</sup>	.430	-
	2급서 + 3급서	28.29 (5.98)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27.13 (7.01)	-1.38	291	-1.67	.096	-
	비수도권	28.51 (6.84)					

Note.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sup>b</sup> Welch's F

73) Welch's F(5, 17.618) = 6.61, p = .001

[표 3-32]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28.94 (7.38)	5.96	157	6.06 <sup>b</sup>	〈.000	0.92
	여자	22.99 (5.22)					
연령	20대 (24-29)	20.40 (2.76)	-	3	13.06 <sup>c</sup>	〈.000	0.19
	30대 (30-39)	23.71 (5.41)					
	40대 (40-49)	27.20 (6.76)					
	50대 이상(50+)	32.60 (8.92)					
결혼여부	미혼	22.98 (5.49)	-4.34	107	-4.15 <sup>d</sup>	〈.000	0.64
	기혼	27.32 (7.28)					
	고졸	29.60 (9.94)					
학력	전문대학	30.00 (5.29)	-	3	0.84	.473	-
	대학교	25.91 (7.09)					
	대학원	25.94 (6.69)					
직업	검사	25.90 (5.31)	-0.26	165	-0.15	.880	-
	수사관	26.16 (7.31)					
직급 (검사)	검사 10년 미만	25.44 (5.59)	-0.83	18	-0.34	.739	-
	검사 10년 이상	26.27 (5.31)					
직급 (수사관)	5급 이상	34.33 (10.61)	-	5	6.61 <sup>e</sup>	.001	0.15
	6급	28.27 (6.91)					
	7급	26.38 (7.05)					
	8급	21.67 (5.21)					
	9급	20.69 (3.57)					
	기타 <sup>1</sup>	24.75 (8.26)					
검찰청 유형	지청	27.03 (7.70)	-	3	1.11 <sup>f</sup>	.379	-
	지검	25.18 (6.05)					
	고검 및 대검	25.39 (6.78)					
	기타 <sup>2</sup>	32.75 (13.30)					
근무지 소속그룹	1그룹	24.34 (6.14)	-	6	2.48 <sup>g</sup>	.073	-
	2그룹	26.95 (6.72)					
	3그룹	28.50 (8.40)					
	4그룹	26.10 (8.15)					
	5그룹	34.50 (4.93)					
	6그룹	25.33 (2.31)					
	기타 <sup>2</sup>	25.00 (7.79)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25.58 (6.53)	-1.48	106	-1.23	.220	-
	비수도권	27.07 (7.95)					

Note.

<sup>1</sup> 연구, 전문경력관 등

<sup>2</sup>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sup>a</sup>  $t = \text{Cohen's } d, \text{ ANOVA} = \text{Partial Eta squared}$

<sup>b d</sup> Equal variances not assumed

<sup>c e f g</sup> Welch's  $F$

## 2.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이명신 & 이계민, 2018)는 3개의 요인(피해자 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중용)과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가.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기술통계

‘피해자 보호결여’ 요인의 총점 범위는 6 - 19이며, 평균값은 10.60( $SD = 2.88$ ,  $Mdn = 11.00$ )이었다. 두 번째 요인인 ‘과잉수사’는 6 - 20의 총점 범위를 나타냈으며, 평균값은 12.49( $SD = 2.58$ ,  $Mdn = 13.00$ )이었다. 세 번째 요인인 ‘합의중용’ 요인은 5 - 18의 총점 범위와 8.03의 평균값( $SD = 2.52$ ,  $Mdn = 8.00$ )을 보였다.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총점은 17 - 5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31.12( $SD = 6.62$ )로 중앙값 ( $Mdn = 31.00$ )과 상당히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표 3-33] 참고).

총점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 = .851$ 로 높았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피해자보호결여’가  $\alpha = .716$ , ‘과잉수사’가  $\alpha = .652$ , 그리고 ‘합의중용’이  $\alpha = .788$ 로 이는 원척도 개발 당시 연구(이명신 & 이계민, 2018)에서의 하위영역 알파값인 .878(요인1), .837(요인2), .935(요인3) 보다는 수치가 낮았지만 양호한 수치였다.

[표 3-33]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기술통계 ( $N = 460$ )

척도명	하위요인	범위	평균값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	1. 피해자보호결여	6 - 19	10.60	2.88	.716
	2. 과잉수사	6 - 20	12.49	2.58	.652
	3. 합의중용	5 - 18	8.03	2.52	.788
	총점	17 - 53	31.12	6.62	.851

나.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경찰 집단에서는 소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34) 참고). 20대와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2.62 평균차가 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른 소집단에서는 큰 평균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 소집단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줄 가능성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4]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30.97 (6.67)	0.75	291	0.89	.373	-
	여자	30.21 (6.56)					
연령	20대 (24-29)	32.15 (5.86)	-	3	1.20	.311	-
	30대 (30-39)	30.67 (6.88)					
	40대 (40-49)	30.85 (6.76)					
	50대이상(50+)	29.53 (6.40)					
결혼여부	미혼	31.05 (6.70)	0.43	291	0.50	.615	-
	기혼	30.61 (6.62)					
학력	고졸	31.56 (6.80)	-	3	0.43	.730	-
	전문대학	31.17 (5.83)					
	대학교	30.57 (6.76)					
	대학원	29.83 (5.89)					
계급	순경	30.83 (6.34)	-	5	0.14	.983	-
	경장	30.74 (5.97)					
	경사	30.33 (7.47)					
	경위	30.81 (6.96)					
	경감	30.56 (6.83)					
	경정	31.68 (5.20)					
직급	팀원	30.67 (6.71)	0.31	291	0.33	.738	-
	팀장급 이상	30.97 (6.71)					
소속	시·도경찰청	31.27 (7.58)	0.62	291	0.55	.581	-
	경찰서	30.65 (6.48)					
근무지 규모	1급서	30.64 (6.78)	-0.03	250	-0.04	.968	-
	2급서 + 3급서	30.68 (5.81)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30.24 (6.48)	-0.82	291	-1.04	.301	-
	비수도권	31.06 (6.73)					

Note.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 다.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검찰 집단에서는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수사관 직급 등 4개 소집단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표 3-35) 참고).

첫째, 성별 간의 차이에서 남성( $M = 33.23, SD = 6.77$ )이 여성( $M = 30.18, SD = 5.99$ )보다 평균 3.05점<sup>74)</sup>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sup>75)</sup>. 남성이 여성보다 이차피해 수사행동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효과크기는 중간정도( $d = .48$ )였다. 둘째, 연령대별 소집단 간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76)</sup>.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셋째, 미혼( $M = 30.30, SD = 4.93$ )과 기혼( $M = 32.35, SD = 7.04$ )의 집단에서 약 2점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sup>77)</sup>. 이는 기혼이 미혼보다 이차피해 수사행동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수사관 집단에서 직급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sup>78)</sup>. 기타 그룹을 제외하고는 직급이 낮을수록 낮은 평균치를 보였고 (예: 9급  $M = 29.85, SD = 6.58$ ) 직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치도 같이 증가하였다. 9급과 5급 이상( $M = 37.00, SD = 6.10$ ) 직급 간 평균치 차이는 7.11점이었다.

74) 95% CI = [1.09, 5.01]

75)  $t(165) = 3.07, p = .003$

76)  $F(3, 163) = 3.74, p = .012$

77) 95% CI = [-3.96, -0.12]

78)  $F(5, 141) = 3.08, p = .011$

[표 3-35]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33.23 (6.77)	3.05	165	3.07	.003	0.48
	여자	30.18 (5.99)					
연령	20대 (24-29)	28.20 (5.01)	-	3	3.74	.012	0.06
	30대 (30-39)	30.92 (5.81)					
	40대 (40-49)	31.99 (6.70)					
	50대 이상(50+)	35.55 (7.67)					
결혼여부	미혼	30.30 (4.93)	-2.04	116	-2.11 <sup>b</sup>	.037	0.31
	기혼	32.35 (7.04)					
학력	고졸	35.60 (9.45)	-	3	1.72	.164	-
	전문대학	37.00 (4.69)					
	대학교	31.38 (6.62)					
	대학원	32.72 (5.10)					
직업	검사	32.65 (5.22)	0.98	165	0.63	.532	-
	수사관	31.67 (6.74)					
직급 (검사)	검사 10년 미만	32.78 (5.54)	0.23	18	0.10	.924	-
	검사 10년 이상	32.55 (5.22)					
직급 (수사관)	5급 이상	37.00 (6.10)	-	5	3.08	.011	0.10
	6급	33.43 (6.99)					
	7급	31.76 (6.45)					
	8급	26.33 (5.05)					
	9급	29.85 (6.58)					
	기타 <sup>1</sup>	30.50 (8.43)					
검찰청 유형	지청	32.46 (7.00)	-	3	1.57	.199	-
	지검	31.18 (6.08)					
	고검 및 대검	30.67 (6.66)					
	기타 <sup>2</sup>	37.25 (6.90)					
근무지 소속그룹	1그룹	30.24 (5.74)	-	6	2.01	.069	-
	2그룹	32.44 (6.58)					
	3그룹	34.50 (7.45)					
	4그룹	31.66 (6.84)					
	5그룹	39.25 (4.50)					
	6그룹	30.00 (8.18)					
	기타 <sup>2</sup>	32.00 (5.94)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31.14 (6.12)	-1.76	109	-1.60 <sup>c</sup>	.112	-
	비수도권	32.90 (7.21)					

Note.

<sup>1</sup> 연구, 전문경력관 등

<sup>2</sup>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sup>b c</sup> Equal variances not assumed

## 제6절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 1.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척도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척도는 본래 ‘정책의 인식도’, ‘만족도’, ‘교육 개선의 필요성’, ‘정책 개선의 필요성’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요인분석 및 기술통계

기술통계 분석에 앞서 척도에 추가하거나 수정한 문항들의 요인을 탐색하고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 12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sup>79)</sup>. 원 척도의 하위요인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고정된 요인 수 추출(Fixed factor extraction)을 사용하여 2개의 요인구조 모델을 뽑아냈다<sup>80)</sup>. [표 3-3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요인 1에 해당하는 문항은 8개, 요인 2에 해당하는 문항은 4개였다. 요인 1은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성평등 정책의 인식 및 만족도’로 명하였다.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alpha = .863$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성평등 정책의 인식 및 만족도’ 요인은  $\alpha = .660$ 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는 12에서 45의 점수범위(최소값 = 12, 최대값 = 48)를 보였다. 평균 총점 값은 31.29( $SD = 2.88$ ,  $Mdn = 32.00$ )였다.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요인은 8에서 32로 평균 총점 값은 21.19( $SD = 4.29$ )였다. ‘성평등 정책의 인식 및 만족도’ 요인은 평균 총점 값은 10.10( $SD = 2.12$ , range 4 - 16)이었다.

79) 데이터의 요인분석 적합성 테스트로 KMO 지수(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검사하였다. KMO 지수는 .765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 $p < .000$ ) 본 데이터는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함을 나타냈다.

80) 각각 전체변량의 35.91%와 19.49%를 설명했고 2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의 55.40%를 설명하였다.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orthogonal rotation)을 사용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3-36]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2요인 해법

문항	요인적재		공통성
	1	2	
11. 조직 내 성평등 관련 규정, 지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813	-	.712
6. 성평등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785	-	.684
4. 성평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755	-	.609
9. 우리 기관 관리자급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707	-	.510
10. 우리 기관 직원들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700	-	.491
5. 성평등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649	-	.454
8. 성평등에 대한 직원들 간의 토론, 워크숍이 필요하다.	.622	-	.387
12. 성평등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 더 적절하다.	.594	-	.424
2.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805	.652
1.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731	.542
3. 현재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은 만족스럽다.	-.430	.725	.710
7. 성평등 교육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424	.539	.470
고유가 (Eigenvalues)	4.31	2.34	-
% of variance	35.91	19.49	-

Note.

적재값 < .30 는 기록을 생략함

#### 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경찰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직급의 소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37] 참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sup>81)</sup>. 남성과 여성 집단의 평균차는 1.92이었고<sup>82)</sup>, 두 집단 차이의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이었다( $d = .43$ ). 연령별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50대 이상 연령대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sup>83)</sup>. 30대 평균치( $M = 30.44$ ,  $SD = 5.12$ )가 가장 낮았으며, 50대 이상의

81)  $t(291) = -3.35$ ,  $p = .001$

82) 95% CI = [-3.05, -0.79]



평균치( $M = 32.49$ ,  $SD = 3.63$ )가 가장 높았다. 직급별로는 팀장급 이상의 경찰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직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이며<sup>84)</sup>, 팀장급 이상( $M = 31.91$ ,  $SD = 3.65$ )이 팀원급 경찰( $M = 30.79$ ,  $SD = 4.83$ )보다 1.12점 평균치가 높았다<sup>85)</sup>.

---

83)  $F(3,123) = 3.10$ ,  $p = .029$

84)  $t(148.063) = 2.06$ ,  $p = .041$

85) 95% CI = [0.05, 2.20]

[표 3-37] 성평등 정책 인식 척도의 경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30.47 (4.55)	-1.92	291	-3.35	.001	0.43
	여자	32.39 (4.46)					
연령	20대 (24-29)	31.29 (5.12)	-	3 <sup>b</sup>	3.10	.029	0.02
	30대 (30-39)	30.44 (5.12)					
	40대 (40-49)	30.86 (4.07)					
	50대이상(50+)	32.49 (3.63)					
결혼여부	미혼	30.99 (4.97)	-0.09	291	-0.16	.876	-
	기혼	31.08 (4.46)					
학력	고졸	30.13 (3.50)	-	3	1.20	.309	-
	전문대학	30.63 (3.31)					
	대학교	31.22 (4.96)					
	대학원	32.22 (4.17)					
계급	순경	31.21 (3.79)	-	5	0.91	.475	-
	경장	30.84 (5.11)					
	경사	30.55 (5.51)					
	경위	30.82 (4.44)					
	경감	32.02 (3.58)					
	경정	31.91 (3.74)					
직급	탐원	30.79 (4.83)	1.12	148	2.06 <sup>c</sup>	.041	0.25
	탐장급 이상	31.91 (3.65)					
소속	시.도경찰청	31.27 (4.54)	0.25	291	0.32	.749	-
	경찰서	31.02 (4.61)					
근무지 규모	1급서	31.10 (4.57)	0.27	250	0.43	.670	-
	2급서 + 3급서	30.84 (4.74)					
소속기관 지역	수도권	30.98 (4.11)	-0.12	291	-0.22	.829	-
	비수도권	31.10 (4.90)					

Note.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sup>b</sup> Welch's F

<sup>c</sup> Equal variances not assumed

#### 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차이

검찰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직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3-38) 참고). 검찰 집단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sup>86)</sup>. 남성( $M = 30.75$ ,  $SD = 3.56$ )과 여성 ( $M = 32.75$ ,  $SD = 4.61$ ) 집단 간 평균차는 2점이었<sup>87)</sup>. 두 집단 간 차이의 효과크기는 중간으로 나타났다( $d = .49$ ). 검사와 수사관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sup>88)</sup>. 수사관( $M = 31.93$ ,  $SD = 4.30$ )이 검사( $M = 29.95$ ,  $SD = 2.93$ )보다 높은 평균치<sup>89)</sup>를 보여 수사관이 검사에 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6)  $t(165) = -3.15$ ,  $p = .002$

87) 95% CI = [-3.25, -0.74]

88)  $t(165) = 2.00$ ,  $p = .047$

89) 평균차 = 1.98, 95% CI = [-3.94, -0.02]

[표 3-38] 성평등 정책 인식 척도의 검찰집단 내 소집단별 점수 차이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df	t / F value	p	Effect size <sup>a</sup>
성별	남자	30.75 (3.56)	-2.00	165	-3.15	.002	0.49
	여자	32.75 (4.61)					
연령	20대 (24-29)	32.30 (4.50)	-	3	0.41	.746	-
	30대 (30-39)	31.97 (4.46)					
	40대 (40-49)	31.30 (3.88)					
	50대 이상(50+)	32.00 (4.52)					
결혼여부	미혼	32.09 (3.85)	0.54	165	0.74	.458	-
	기혼	31.55 (4.33)					
학력	고졸	32.80 (3.35)	-	3	0.70	.556	-
	전문대학	33.00 (1.63)					
	대학교	31.76 (4.38)					
직업	대학원	30.56 (3.20)	-	165	-2.00	.047	0.48
	검사	29.95 (2.93)					
직급 (검사)	수사관	31.93 (4.30)	-1.98	165	-2.00	.047	0.48
	검사 10년 미만	29.22 (3.56)					
직급 (수사관)	검사 10년 이상	30.55 (2.30)	-	5	0.51	.770	-
	5급 이상	31.50 (2.07)					
	6급	32.27 (4.31)					
	7급	31.72 (4.12)					
	8급	31.17 (6.94)					
검찰청 유형	9급	32.62 (3.20)	-	3	0.62	.603	-
	기타 <sup>1</sup>	34.50 (4.36)					
	지청	31.69 (3.40)					
	지검	31.47 (4.74)					
근무지 소속그룹	고검 및 대검	32.11 (4.43)	-	6	0.48	.824	-
	기타 <sup>2</sup>	34.25 (4.57)					
	1그룹	31.56 (4.31)					
	2그룹	31.22 (4.92)					
	3그룹	32.00 (4.17)					
	4그룹	31.86 (2.98)					
	5그룹	33.25 (3.30)					
6그룹	29.67 (1.15)						
소속기관 지역	기타 <sup>2</sup>	33.75 (5.12)	-0.12	165	-0.18	.860	-
	수도권	31.65 (4.53)					
	비수도권	31.77 (3.58)					

Note.

<sup>1</sup> 연구, 전문경력관 등

<sup>2</sup> 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sup>a</sup> t = Cohen's d, ANOVA = Partial Eta squared

## 제7절 각 척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차이

제3~5절에서 살펴본 각 척도의 총점과 하위요인을 이용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경찰 집단과 검찰 집단의 평균차이와 그 차이의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분석결과는 [표 3-39]와 [표 3-40]에 제시하였다.

### 1. 한국형 개정 남녀평등의식 검사

한국형 개정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표 3-39] 참고).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 검찰 집단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총점 평균에서는 검찰 집단이 4.10점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sup>90)</sup>. 하지만 두 집단 차이의 효과크기는 작았다( $d = 0.22 \sim 0.36$ ).

### 2.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의 총점과 하위요인을 사용한 t검증 결과, 총점과 3개의 하위요인 모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경찰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경찰 집단이 검찰 집단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의 효과크기는 작거나 중간수준이었다( $d = 0.19 \sim 0.44$ ).

### 3.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제로섬 신념 척도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 차이 또한 미비하였다.

### 4.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차이 또한 작았다.

90) 95% CI = [-6.53, -1.66]

[표 3-39] 성인지 감수성 관련 척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차이

척도	하위요인	집단			검사 점수의 차이			
		전체 (N = 460)	경찰 (n = 293)	검찰 (n = 167)	평균차이	t(458)	p	Cohen's d
		평균 (표준편차)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요인 1	27.62 (3.90)	27.31 (3.85)	28.17 (3.93)	-0.86	-2.28	.023	0.22
	요인 2	18.15 (3.24)	17.73 (3.10)	18.89 (3.35)	-1.16	-3.73	<.001	0.36
	요인 3	9.60 (2.01)	9.44 (1.98)	9.89 (2.05)	-0.44	-2.28	.023	0.22
	요인 4	11.87 (2.51)	11.64 (2.46)	12.26 (2.55)	-0.62	-2.57	.010	0.25
	요인 5	10.71 (1.44)	10.55 (1.46)	10.99 (1.36)	-0.44	-3.26 <sup>a</sup>	.001	-
	요인 6	13.14 (2.31)	12.93 (2.29)	13.51 (2.29)	-0.58	-2.60	.010	0.25
	총점	91.09 (12.93)	89.60 (12.32)	93.70 (13.57)	-4.10	-3.30	.001	0.32
온정적 성별의식 척도	요인 1	9.20 (2.60)	9.39 (2.64)	8.88 (2.52)	0.51	2.01	.045	0.19
	요인 2	10.32 (2.21)	10.66 (2.07)	9.74 (2.32)	0.92	4.34	<.001	0.43
	요인 3	9.22 (2.70)	9.64 (2.66)	8.49 (2.61)	1.16	4.51	<.001	0.44
	총점	28.75 (6.30)	29.69 (6.09)	27.10 (6.33)	2.58	4.31	<.001	0.42
제로섬 신념	총점	18.25 (3.89)	18.17 (3.93)	18.38 (3.81)	-0.21	-0.55	.579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총점	10.61 (3.61)	10.67 (3.59)	10.50 (3.67)	0.16	0.46	.643	-

Note.

-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요인명: 1. 공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2.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3.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4.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5. 부계중심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6.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요인명: 1. 보호적 여성주의, 2. 보완적 성역할 분화, 3. 친밀한 이성애

<sup>a</sup> df = 367

## 5.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의 t검증 결과, ‘가정폭력 및 스토킹’ 요인과 ‘성희롱’ 요인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성매매’ 요인에서는 경찰 집단이 검찰 집단보다 0.41점 평균점수가 높았다<sup>91)</sup>. ‘성폭력’ 요인에서는 경찰 집단이 검찰 집단보다 0.77점 높은 평균점수<sup>92)</sup>를, 총점에서는 1.84점 높은 평균값<sup>93)</sup>을 나타냈다. 이는 경찰 집단의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이 검찰 집단보다 높으며, 특히 ‘성매매’와 ‘성폭력’에 관련된 통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집단 간 차이의 효과크기는 작았다( $d = 0.26 \sim 0.32$ ).

## 6.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

‘피해자보호결여’(요인1), ‘과잉수사’(요인2), 총점에서는 경찰 집단과 검찰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합의종용’(요인3)만이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검찰 집단이 경찰 집단보다 1.18 평균이 높았다<sup>94)</sup>. 이는 검찰 집단이 경찰 집단보다 합의종용에 관련된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더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집단 간 차이의 효과크기는 중간이었다( $d = 0.48$ ).

## 7.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에서는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1) 95% CI = [0.16, 0.67]

92) 95% CI = [0.31, 1.24]

93) 95% CI = [0.50, 3.17]

94) 95% CI = [-1.65, -0.72]

[표 3-40] 이차피해 수사행동 관련 척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차이

척도	하위요인	집단			검사 점수의 차이			
		전체 (N = 460)	경찰 (n= 293)	검찰 (n= 167)	평균차이	t(458)	p	Cohen's d
		평균 (표준편차)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요인 1	5.05 (1.50)	5.10 (1.50)	4.96 (1.49)	0.13	0.91	.365	-
	요인 2	3.83 (1.35)	3.98 (1.36)	3.57 (1.31)	0.41	3.16	.002	0.31
	요인 3	8.57 (2.46)	8.85 (2.42)	8.08 (2.47)	0.77	3.28	.001	0.32
	요인 4	9.85 (2.87)	10.03 (2.85)	9.51 (2.88)	0.52	1.87	.062	-
	총점	27.30 (7.04)	27.96 (6.93)	26.13 (7.10)	1.84	2.71	.007	0.26
이차피해 수사행동	요인 1	10.60 (2.88)	10.70 (2.98)	10.43 (2.70)	0.26	0.95	.343	-
	요인 2	12.49 (2.58)	12.44 (2.63)	12.57 (2.51)	-0.13	-0.51	.608	-
	요인 3	8.03 (2.52)	7.60 (2.39)	8.78 (2.57)	-1.18	-4.97	<.001	0.48
	총점	31.12 (6.62)	30.74 (6.63)	31.78 (6.58)	-1.05	-1.63	.103	-
성평등 정책 에 대한 인식	요인 1	31.29 (2.88)	20.95 (4.41)	21.60 (4.04)	-0.65	-1.57	.116	-
	요인 2	21.19 (4.29)	10.10 (2.14)	10.09 (2.08)	0.01	0.06	.951	-
	총점	10.10 (2.12)	31.05 (4.60)	31.69 (4.20)	-0.64	-1.48	.139	-

Note.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요인명: 1. 가정폭력 및 스토킹, 2. 성매매, 3. 성폭력, 4. 성희롱

이차피해 수사행동 요인명: 1. 피해자보호결여, 2. 과잉수사, 3. 합의종용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요인명: 1.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2. 성평등 정책의 인식 및 만족도



## 제8절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1) 4대 폭력에 대한 통념과 (2) 이차피해 수사행동이다. [표 3-41]에서는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인 4대 폭력에 대한 통념과 이차피해 수사행동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 $r = .76, p < .01$ )를 보였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을수록 이차피해 수사행동 내용을 더 많이 수용하거나 동의하는 것이다. 두 종속변인은 모든 독립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과 남녀평등 의식은 부적상관 ( $r = -.73, p < .01$ )을 보였다. 이는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낮음을 의미한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은 온정적 성차별의식( $r = .43, p < .01$ ), 제로섬 신념( $r = .26, p < .01$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r = .67,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제로섬 신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높을수록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은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와 부적 상관( $r = -.54, p < .01$ )을 보였다. 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반대로, 온정적 성차별의식( $r = .26, p < .01$ ), 제로섬 신념( $r = .28, p < .01$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r = .60,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제로섬 신념이 높을수록,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높을수록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내용을 더 많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남녀평등의식과 정적 상관( $r = .25, p < .01$ )을 나타냈다.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r = -.12, p < .01$ ), 4대 폭력에 대한 통념( $r = -.23, p < .01$ ), 이차피해 수사행동( $r = -.17, p < .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녀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가 높고 개선 필요성을 느낌을 보여준다. 또한,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지지할수록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이 낮고 개선 필요성을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표 3-41]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N = 460)

변인	남녀평등	온정적	제로섬	젠더지위	4대폭력	이차피해	정책인식
남녀평등	-						
온정적	-.61**	-					
제로섬	-.28**	.27**	-				
젠더지위	-.71**	.36**	.36**	-			
4대폭력	-.73**	.43**	.26**	.67**	-		
이차피해	-.54**	.26**	.28**	.60**	.76**	-	
정책인식	.25**	-.06	-.04	-.12**	-.23**	-.17**	-

Note.

남녀평등 =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온정적 =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제로섬 = 제로섬 신념, 젠더지위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4대폭력 =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이차피해 = 이차피해 수사행동, 정책인식 =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  $p < .01$

## 2. 측정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성인지 인식이 젠더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독립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인구통계학 변인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종속 변인은 4대폭력에 대한 통념과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총점이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 변인들 (성별, 결혼여부, 재직기간<sup>95)</sup>)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고, 네 개의 심리변인(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제로섬 신념 척도,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과 성평등 정책의 총점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적합성과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sup>96)</sup> 후, 인구통계학 변인들을

95) 재직기간과 나이의 상관지수가 매우 높아( $r = .91, p < .001$ ),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재직기간 변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96) 잔차 독립성 (Durbin-Watson statistic 검사), 등분산성, 정규성, 선형성(scatterplot, histogram, P-P plot 검사), 다중공선성(Tolerance와 VIF 사용), outlier와 leverage points(Leverage 값 검사), influential points (Cook's 거리값 검사) 등을 검증하였다.

모형 1에 투입하였다. 모형 2에는 심리변인인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제로섬 신념 척도,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를 투입하여 모형 1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 변인이 통제변인이 되었다. 모형 3에는 성평등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의 총점을 투입하였다.

#### 가.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의 다중회귀분석

첫 번째 다중회귀분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성인지 관련 심리검사 변인들이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42] 참고).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투입한 첫 번째 모델의 회귀분석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며( $\beta = -3.257, p < .001$ ) 첫 번째 모델은 9.7%의 설명력( $R^2 = .097$ ; 수정된[adjusted]  $R^2 = .091$ )을 나타냈다<sup>97)</sup>.

두 번째 모델에 성인지 관련 심리검사 변인인 남녀평등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 제로섬 신념,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을 투입했을 때는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의 설명력이 47.6% 증가하여 57.3%의 설명력을 가졌다( $R^2 = .573$ ;  $\Delta R^2 = .476$ , 수정된  $R^2 = .573$ )<sup>98)</sup>. 47.6% 변화량은 남녀평등의식( $\beta = -.274, p < .001$ )과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beta = .594, p < .001$ )에 의한 증가였다. 이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을 통제 후에도 남녀평등의식과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의식은 1점 증가할수록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이 .274점만큼 감소했다. 또한,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1점 증가할수록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은 .594점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가 투입된 모델 3에서는 모델의 설명력이 추가적으로 0.4%가 증가하여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은 총 57.7%의 설명력을 가졌다( $R^2 = .577$ ;  $\Delta R^2 = .004$ , 수정된  $R^2 = .577$ )<sup>99)</sup>. 모델 3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추가된 모델의 설명력 크기를 봤을 때, 효과는 매우 작았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 $\beta = -.107, p < .05$ )가 1점 증가할수록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은 .107점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97)  $F(3, 456) = 16.32, p < .001$

98)  $F(7, 452) = 86.58, p < .001$

99)  $F(8, 451) = 76.83, p < .001$

[표 3-42]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의 다중회귀분석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인구통계 변인	성별	-3.257	-.223***	1.210	.083*	1.398	.096* <sup>100)</sup>
	결혼여부	.080	.005	.571	.037	.525	.034
	재직기간	.012	.162**	.002	.026	.003	.037
성평등 인식 변인	남녀평등	-	-	-.274	-.503***	-.259	-.475***
	온정적	-	-	.051	.046	.066	.059
	제로섬	-	-	.018	.010	.017	.009
	젠더지위	-	-	.594	.305***	.612	.315***
정책인식 변인	정책인식	-	-	-	-	-.107	-.068*
$R^2(\Delta R^2)$		.097		.573 (.476)		.577 (.004)	
$F$		16.32***		125.86***		4.24*	

Note.

남녀평등 =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온정적 =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제로섬 = 제로섬 신념,

젠더지위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정책인식 = 성평등 정책 및 교육에 대한 인식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Delta R^2$  = partial  $R^2$

\*  $p < .05$ , \*\*  $p < .01$ , \*\*\*  $p < .001$

100) 성별 단독 변인으로만 분석했을 때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과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성인지 인식 관련 심리검사들이 모형에 투입된 후에는 즉,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모두 통제된 후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4대 폭력에 대한 통념과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데, 현실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모두 평균적으로 유사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이차피해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예, Intra-Gender Hostility Thesis, Batchelder et al., 2004; Wentz & Archbold, 2012)도 있는 만큼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두 번째 다중회귀분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성인지 관련 심리검사 변인들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43) 참고). 인구통계학적 변인만을 투입한 첫 번째 모델의 회귀분석에서는 1.4%의 설명력( $R^2 = .014$ ; 수정된  $R^2 = .007$ )을 가졌다. 그러나 어떠한 변인도 이차피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 모델1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었다<sup>101)</sup>. 성별  $\beta = -1.313$  ( $p = .05$ ), 결혼여부  $\beta = -.431$  ( $p = .607$ ), 재직기간  $\beta = .004$  ( $p = .255$ )로 나타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 변인을 통제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심리검사 변인을 투입한 결과, 모델 2에서는 남녀평등의식( $\beta = -.191$ ,  $p < .001$ )과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beta = .661$ ,  $p < .001$ )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검사 변인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38.5% 증가하여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설명력은 39.9%가 되었다( $R^2 = .399$ ;  $\Delta R^2 = .385$ , 수정된  $R^2 = .390$ ). 남녀평등의식 척도는 1점씩 증가함에 따라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는 .191점 감소하였다.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의 경우 1점씩 증가함에 따라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는 .661점씩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를 투입한 결과, 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이차피해 수사행동은 총 40.0%의 설명력을 보였다<sup>102)</sup>. 하지만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beta = -.056$ ,  $p = .337$ )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 모델에서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남녀평등의식 검사와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였다. 반면, 인구통계학 변인과 심리검사 변인을 통제한 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척도는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  $F(3, 456) = 2.16$ ,  $p = .092$

102)  $F(8, 451) = 37.61$ ,  $p < .001$

[표 3-43]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다중회귀분석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인구통계 변인	성별	-1.313	-.096	1.704	.124**	1.803	.131**
	결혼	-.431	-.029	-.034	-.002	-.058	-.004
	재직기간	.004	.065	-.003	-.039	-.002	-.033
성평등 인식 변인	남녀평등	-	-	-.191	-.372***	-.183	-.357***
	온정적	-	-	-.050	-.047	-.042	-.040
	제로섬	-	-	.092	.054	.091	.054
	젠더지위	-	-	.661	.361***	.671	.366***
정책인식 변인	정책인식	-	-	-	-	-.056	-.038
$R^2(\Delta R^2)$		.014		.399 (.385)		.400 (.001)	
$F$		2.16		72.36***		.93	

Note.

남녀평등 =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온정적 =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제로섬 = 제로섬 신념,

젠더지위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정책인식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Delta R^2$  = partial  $R^2$

\*\*  $p < .01$ , \*\*\*  $p < .001$

한편, 이차피해 수사 행동과 상관성이 높은 4대폭력 통념척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동 척도의 추가적 설명력을 살펴보았다(표 3-44) 참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한 첫 번째 모델에서는 어떠한 변인도 이차피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 변인만으로는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심리검사 변인을 투입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성별( $\beta = -.191, p < .01$ )과 더불어 남녀평등의식( $\beta = -.191, p < .001$ )과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beta = -.191, p < .001$ )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 모델에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을 투입하자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은 이차 피해 수사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설명력 23.1% 증가,  $R^2 = .630$ , 수정된  $R^2 = .623$ ) 최종 모델에서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영향력이 소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01, p = .959$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이차피해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념은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4대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의 다중회귀분석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인구통계 변인	성별	-1.313	-.096	1.704	.124**	.868	.063
	결혼여부	-.431	-.029	-.034	-.002	-.429	-.029
	재직기간	.004	.065	-.003	-.039	-.004	-.058
성평등 인식 변인	남녀평등	-	-	-.191	-.372***	-.001	-.003
	온정적	-	-	-.050	-.047	-.085	-.081*
	제로섬	-	-	.092	.054	.079	.047
	젠더지위	-	-	.661	.361***	.250	.137**
4대폭력 통념 변인	4대폭력	-	-	-	-	.692	.735***
$R^2(\Delta R^2)$		.014		.399 (.385)		.630 (.231)	
$F$		2.16		72.36***		280.74***	

Note.

남녀평등 = 개정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온정적 = 온정적 성차별의식 척도, 제로섬 = 제로섬 신념, 젠더지위 =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4대폭력 = 4대폭력에 대한 통념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Delta R^2$  = partial  $R^2$

\*  $p < .05$ , \*\*  $p < .01$ , \*\*\*  $p < .001$







## 제 4 장

# 성인지 실태 및 강화방안 심층면담 조사

윤정숙, 김남희



## 제4장 | 성인지 실태 및 강화방안 심층면담 조사



### 제1절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젠더폭력사건과 관련한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적 형사사법절차집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은 젠더폭력 관련 1)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2)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피해자 관점의 의견수렴을 위해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트라우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실무전문가를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대상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표집하였으며, 면담대상은 당초 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계획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16명,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15명을 면담하였다.

면담대상자 중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은 경찰, 검찰, 법관 등 젠더폭력관련 형사사법분야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젠더폭력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내부자 관점에서 수사·재판의 관행에 대해 풍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젠더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그 외 장애 및 이주여성 등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가, 그리고 5년 이상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면담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젠더폭력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표 4-1] 심층면담 대상 표집

구분	면담대상	
	법집행기관	피해자 지원기관
조사대상	젠더폭력사건 관련 법집행공무원 (경찰, 검찰, 법관 등)	젠더폭력사건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경력5년이상)
조사대상자수	16명	15명
표집방법	눈덩이표집	눈덩이표집
면담목적	젠더폭력사건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적 형사사법절차집행 현황과 개선안 도출	젠더폭력사건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적 형사사법절차집행에 관한 욕구와 개선안 제시
분석관점	내부자 관점	피해자 관점
조사기간	2022년 8월 ~ 11월	2022년 8월 ~ 10월

##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심층면담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로 진행하였다. 면담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면담질문지를 전달하여 참여자가 면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면담시작 전 구두로 연구 참여 및 녹화 동의를 구하고 면담내용을 녹화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들은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진 세미나와 토론,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담의 질문 항목은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과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에 따라 차별성을 두었다. 법집행공무원의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이 제기한 쟁점(예: 2차 피해 수사 및 재판 행동, 피해자 보호 미흡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쟁점의 배경이 되는 수사 및 재판 관행에 대해 질문하였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고하는 성인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 항목을 보면 법집행공무원은 1) 젠더폭력관련 수사·재판 관행, 2)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3) 성인지적 접근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 안에서 수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재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파악 등 수사 과정시 성인지적 접근과 이에 대립되는 수사 관행에 대해 질문하고,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 양형 참작 및 선고 등 재판 과정시 성인지적 접근과 이에 대립되는 재판 관행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에 대한 주요 질문 항목은 1)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변화 양상, 2)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3) 형사사법절차에서 성인지적 접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구성하였다. 형사절차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추가 질문을 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심층면담 조사 질문지 주요 내용

구분	질문지 주요 내용
수사 및 재판 관련 법집행공무원	1) 최근 젠더폭력 사건 동향 및 대응 변화 - 최근 젠더폭력 사건 동향과 타사건과의 차별성 -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 내 대응 변화 2) 형사사법기관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실태 - 피해자다움 요구, 가해자 진술 언급 등 2차 가해 양상 - 피해자 진술권 보장 부족,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불허 등 - 합의중용, 피해자정보 노출 등 - 가해자 방어권 보장, 기계적 법리 적용 등으로 인한 2차 가해 가능성 3) 성인지적 접근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제도적 대안, 교육훈련 요소, 정책 제안 등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1)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변화 양상 - 최근 젠더폭력 동향, 수사재판사건 사례 - 법집행공무원의 태도 변화 양상과 영향요인 2)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 성인지 감수성 수준에 따른 2차가해, 태도차이 - 법집행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3) 형사사법절차에서 성인지적 접근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제도적 대안, 교육훈련요소, 타겟정책대상 등

## 제2절 법집행공무원 심층면담 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젠더 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인지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 조사에 참여한 법집행공무원은 경찰(젠더폭력 사건 수사관) 5명<sup>103)</sup>, 검찰(검사 및 수사관) 9명, 판사 2명이었다. 면담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법집행공무원 심층면담자

연번	구분	연령대	성별	근무여부
P1	경찰	40대	남성	현직
P2	경찰	30대	여성	현직
P3	경찰	40대	남성	전직
P4	경찰	50대	여성	현직
P5	경찰	40대	남성	현직
P6	검사	30대	여성	현직
P7	검사	40대	남성	현직
P8	검사	30대	남성	현직
P9	검사	30대	여성	현직
P10	검사	40대	여성	현직
P11	검사	40대	여성	현직
P12	수사관	40대	여성	현직
P13	수사관	30대	남성	현직
P14	수사관	50대	남성	현직
P15	판사	40대	여성	현직
P16	판사	40대	여성	현직

103) 경찰 총 6명 면담하였으나, 면담 후 1명이 면담내용공개를 거부하여 분석에서 제외

## 2. 수사 경찰

### 가. 최근 젠더폭력사건 수사 현황 및 특징

#### 1) 최근 젠더폭력사건 수사 현황 및 검찰 송치 정도

최근 수사기관에서 체감하는 젠더폭력 사건은 코로나로 다소 감소되었다가 성폭력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 연인간의 촬영물 불법 배포행위 등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가정폭력도 꾸준히 접수되며, 특히 데이트폭력이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젠더폭력 사건 중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은 성폭력에서는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으로 CCTV 영상이나 정보통신망 추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있는 증거로 확보될 경우 거의 대부분 송치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단, 피해자 진술과 상반된 증거가 있거나 객관적 합리성에 위배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불송치됨을 지적하였다.

둘 간의 교제나 아니면 대화 중에 카톡 내용을 복원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증거 관계로 어느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둘 사이에 데이트폭력이나 강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혐의없음으로 송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송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 강간과 좀 애매한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전후로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 내용이나, 모델이나 그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CCTV 장면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하고 너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P1)

대화 내용 중에 강간을 당했는데도 강간 직후에 '오늘 관계가 너무 좋았어. 사랑해' 아니면 cctv에도 끌려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끌어안고 갔고 포옹하고 간다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일단은 혐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송치를 보내긴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요. (P2)

## 2) 젠더폭력 사건 불송치시 피해자 대응

수사 경찰은 주로 국선번호인을 통해 불송치 사실을 전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체감적으로 10건에서 2건 정도는 피해자 측에서 불송치 사실에 항의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는 불송치 결정서 우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검찰에 바로 송치하도록 하고, 검사가 그 사건을 한번 더 검토한 후 의견이 달라질 경우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사 경찰은 젠더폭력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 입장에서 불송치 사실에 절망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불송치 결정이 났을 경우 수사 경찰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단은 이제 불송치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왜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직접 대면하고 또 그 가족들한테 설명이 가능하면 가족들이나 본인 당사자한테 저희가 수집한 증거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송치를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 크게 불만을 가졌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나 문자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여태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직접 대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한 정보도 일부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 납득은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었고요. (P1)

## 3) 젠더폭력사건 수사 특징

경찰은 젠더폭력 사건 수사의 특징을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보호까지 총책임을 맡고 있어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이 부담스럽다고 설명하였다. 젠더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피해자 보호 명령 등) 다른 수사에 비해 해야할 일이 많고, 임시조치 등 가해자와의 분리 등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다는 사실과, 성폭력같은 경우, 원스톱센터나 상담기관 연계, APO, 공무원 연계, 등, 피해자보호로 부과되는 업무가 많은 등, 사건 처리시 상당한 예민성과 민감성을 요한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이 가/피해자 분리를 하고 있고, 접근 금지나, 통신 매체 접근 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112 시스템 등록이나, 이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자에게는 구두 경고는 물론이고, 서면 경고 조치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4)

어쨌든 간에 수사 전체는 증거를 수집하고 각 피해자의 말을 듣고 제가 판단하는 절차는 맞는데, 특히 젠더 폭력 같은 경우에 증거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포맷이나 삭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 진술이 유리할 때도 있고요. 세심함을 가지고 접근을 잘 하고 증거 수집을 해야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대할 때도 경찰의 태도가 피해자들한테는 신뢰감을 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세심하게 바라보는 그런 수사의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P1)

## 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관행

### 1) 대질신문이나 가해자 진술 언급

경찰 수사관은 수사 매뉴얼상 대질신문은 절대로 불가함을 강조하였다. 가해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엇갈릴 때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재확인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해자 진술을 인용하지 않으며, 간접적이고, 양해하는 방식으로 질문한다고 설명하였다.

저도 대질 조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거짓말을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일선 수사팀에게도 요구하는 게 초동 조치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증거 채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 키트라든지, CCTV라든지, 상호 주고받은 대화나 통화 이력이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지 특별하게 대질을 한 적은 없고요. ..피해자한테 가해자 진술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면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를 추궁할 때 피해자 말을 인용할 경우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P1)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시냐, ‘그때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냐’ 하면서 약간 피해자에게 상반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가해자 진술을) 인용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P2)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거의 대질 신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정답처럼 관행화 되어 있어서. 제가 있는 5년 동안에 피해자를 대질신문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P5)

한편, 대질신문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진술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해자의 진술과 주장을 인용할 때는 피해자의 반응(주로 억울해하거나 부인)을 확인하여 진술조서에 기록으로 남겨 오히려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용한다고 답변하였다.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성폭력 같은 경우는 가/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질은 거의 경찰서에서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기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질을 안 하는 대신에,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진술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반응과 진술 내용 그대로, 가령 억울해하는 걸 그대로 글로 표현해 가지고 서류화해 놓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P4)

## 2) 피해자진술이 비일관적일 경우 반복조사

면담에 임한 수사 경찰은 가급적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존중하고 반복 조사는 지양하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타격이 심하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때 진술이 비일관적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P2) 이러한 때라도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수사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양해를 구하고 재질문하여 증거력을 확보하거나, 진술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진술이 비일관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술 그대로 받아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도 있다고 답하였다. (P2)

2차 피해 문제가 있어서 본인한테 항상 의사를 먼저 확인을 하고 원해야지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애를 처벌하기 위해서 네가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는 절대 못하는 것 같고요. (P5)

청소년인 경우는 본인도 사실 기억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세 번, 네 번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조사하다가 보면, 계속 진술이 오락가락하다 보면 결국에는 재판 과정이나 검사가 보기에, 오히려 피해자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있으면 진술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4)

### 3)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하거나 고소취하를 권하는 경우

수사경찰은 성폭력의 경우, 경찰 쪽에서 먼저 고소 취하하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하였다.

성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의를 먼저 권하거나 이런 경험이 진짜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피의자 쪽에서 다 인정하니까 합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중간에 전달은 해주는데 그 이유 외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P2)

이것도 거의 공식화되어서 먼저 합의 얘기를 하면, 경찰관 자신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런 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권하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해자 측에서 경찰관한테 합의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나, 아니면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국선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변호사가 피의자랑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P5)

그러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초동 대처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해당 사건을 경미하게 보고 해프닝성으로 판단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 관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찰 생활하시면서 거의 20년을 지구대, 파출소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과를 겪어보지 않으시고 112 신고만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막 심하게 발언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희는, '이거 왜 가정일인데 이렇게까지 개입하셔야 되냐' 이러면 '지금은 가정 일 아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거다. 기사만 봐도 모르시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희가 얘기를 하지, '이거 가정에서 해결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마 되게 오랫동안 지역 관서 오래 하신 분들.. 타성에 젖은 분들이나 매너리즘 빠지신 분들이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신고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P2)

경찰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그런 말을 하는 직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파출소나 지구대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달이 한 단계 조금 낮은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침투가 조금 덜 된다고 그러냐? 조금 늦게 된다고 하나?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눈에 띄게 경찰관들 인식이나 말, 언행 같은 것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100%는 아마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P4)

#### 4) 피해자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죄를 언급하는 경우

면담에 임한 수사 경찰은 명백하게 무고나 명예훼손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해당 발언을 자제하려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한테 바로 추궁을 한다든지,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따져 묻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주변인들과 그냥 증거 관계로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P1)

무고는 올 초쯤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불송치를 하게 되면, 예전에 검사들이 했던 무고의 판단 여부를 이제 경찰이 최종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고의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고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한테 먼저 한 적도 없습니다. (P4)

#### 5) 피해자 성관계 이력을 질문하거나, 피해자다움 요구 등

경찰 수사관들은 반복되는 교육 등으로 인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나, 피해자 성관계 이력 등 평소 성적 성향을 질문하여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물적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거나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실관계 여부를 위주로 수사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성관계가 있었는가, 그 장소에 갔던가, 그 다음에 폭행이나 강제 행위가 있었다면 몸에 상처나 이런 게 있는가, 아니면 만졌다고 했는데 DNA가 나왔느냐를 채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피해자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요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P5)

## 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경찰내 변화

### 1) 전반적 수사태도에서 피해자 관점 인지

수사경찰은 젠더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섬세함과 피해자 관점을 요구함을 강조하였다. 수사관의 성향이나 통념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태도가 때로는 타당성 없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세심하게 접근하고 피해자와의 라포 형성이나 피해자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수사나 딱딱함만 보여주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땠다고요' 이렇게 공감을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왜 공감을 못 해주지' 이런 사소한 말투나 태도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건 중간 결과도 예를 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계끔 하는 편인데 그 사건에 집중하고 다른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먼저 연락이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왜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에도 불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P1)

### 2) 피해자다움 강요 등 2차 가해 수사행위에 대한 인지 증가

면담 대상자에 따르면, 2017년부터 경찰 내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에 전사적 시동이 걸렸으며, 이에 대해 조직 내에서 1~2년 정도 저항이 있었으나 최근 3~4년간 상당히 침투가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다(P3).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형사나 지능수사 부서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사 중요성이 높은 부서와도 견주어 젠더폭력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부서의 수사 중요도가 상승하는 등 젠더폭력 수사 조직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졌음을 강조하였다.

2017년부터 경찰청 내에서 성인지 감수성, 이차 가해에 대해 엄청난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2년동안 조직에서 거기에 대해 엄청난 저항이 있었구요. 이후 각 서의 여청 수사부서에 피해자보호관을 임명하여 피해자보호에 대한 총책임을 맡도록 하고..교육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변화였죠. (P3)

그만큼 이제 여청 수사에 대한 중요도나 인식이 형사나 지능 쪽보다 올라갔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청 수사 쪽에는 한 번 문제시되면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경찰청 내지 지방청 단위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P1)

반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상당부분 이뤄졌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객관적 실체를 파악해야하는 경찰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정서를 배려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게 느껴지고, 교육에 있어서도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 오히려 성평등적 분위기에 남자 경찰관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거의 매년 교육 과정에 편성될 정도로 계속 듣고, 너무 익숙한 얘기고, 잔소리처럼 되는... 직원들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 형사들의 불만은 피해자의 감정, 상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청수사 직원들이 감싸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날카롭게 칼날처럼 사건을 파헤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 내가 피곤한데 무슨 피해자에 대해서... 정형화된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되지. 성평등적 분위기는 불평등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남자 경찰관들이 역차별을 앞두고 있다는 이런 불만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P5)

## 라. 성인지 감수성의 개별 및 조직 차이

### 1) 개별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차이

수사 경찰은 연령, 직급, 지역, 개별 경찰관의 성향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는 '왜 피해자가 그렇지 못했을까'라기보다 '왜 피해자가 그랬을까'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며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 편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전문성 미비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2차 가해성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저도 사실 한동안 여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여자는 피해자고 남자는 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자가 더 이상한 것 같더라고. 사건에 힘든 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그냥 쪽 다이렉트로 갖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언행도 같이 해요. 대신 피해자한테 최대한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저희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말도 조금 거칠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모두가 이렇게 느끼고 있죠. 어떻게 보면. (P2)

왜 피해자가 그렇지 못했을까 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청 조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수사 경력이 10년, 20년 넘어간 사람들보다 피해자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해 주고 좀 사건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수사관의 태도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사 경력을 한 20년 정도 했다 해서 그게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너무 따지고 들다 보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수사는 또 난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P1)

제 생각에는 수사에 대한 법적 지식, 전문지식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피해자를 겁박하는 (2차 가해)성향의 발언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P3)

## 2) 조직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수준 차이

수사 경찰은 소속 부서의 고유 특성이나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부서의 고유 특성상 높은 성인지 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타 부서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인지 수준은 성별이나 연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도 타 조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의 파급효과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지역의 관서, 지구대 등은 상대적으로 최근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침투력이 낮을 거라고 인식하였다. (P3)

여청 수사나 젠더 폭력 사건을 하는 데서는 피해자를 이해하는 성인지 수사 능력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런 감수성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게 사실 그런 감수성 때문에 사람들 개개인마다 판단하고 문제가 조금씩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수사 능력을 너무 과시하고 믿기보다는 자기 부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특히 젠더 폭력을 대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길러야 되는데, (P1)

거의 매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여경들 따로 이렇게 경감급 되는 계장님급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여경들만 따로 모여서 교육해 주시는 것도 있고... 나이대가 많으신 경찰서는 확실히 조직 문화가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는 이래야 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서 같은 경우는 젊다 보니까 이런 거에 더 민감해서 그런지 거의 평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P2)

## 마.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역할 차이

### 1) 경찰의 수사 직무에서 비롯되는 중립성에 대한 요구

면담에 임한 수사 경찰은 대체로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부 면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 역할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발언에 대한 맹신이나 경찰에 대한 비난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분들(피해자지원기관)이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도 이해를 잘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대체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성폭력 상담소에서 사건 관련이나 피해자 면담이나 이런 것도 직접 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따로 또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개별 수사관이나 수사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기관들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부족한 데에서는 아마 성폭력 상담소나 기관에서도 아직 경찰에서는 조금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P1)

NGO단체의 입장은 이해하나, 너무 피해자에게 편향되어 있고 피해자 말만 믿고 경찰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P3)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나쁜 행동이라는 거는 좀 다른데.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그에 대한 괴리감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처벌할 수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열심히 수사를 해봤지만 안 나오는 데. 형사법의 대원칙이 불리할 때 피고인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무죄가 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만, 법적인 걸 이분들도 조금 교육을 받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약간 수학 공식 같은 것인데. 이 공식의 1-1=0인데, 그제 감정은 1-1이 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다 보면은. (P5)



## 바. 성인지 감수성 강화방안: 교육의 중요성

모든 면담 대상자가 젠더폭력 사건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여청 수사에서 전문성이 생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하였다.

끊임없는 교육과 교육 자료 그리고 잘못된 사례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또 그런 방법들 때문에 이제 개선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이 부서의 특성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1년 있다가 또 다른 부서에 간다든지, 또 2년 있다가 한참 적응할 때 다른 부서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있다고 봐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어드벤처이지나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여청 수사에서 많이 이탈을 안 하고 전문 수사관들이 생기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청 수사에 대한 강조나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기 위한 반복된 교육과 교양 자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P1)

어쨌든 저희가 교육 같은 거를 하거든요. 피해자 보호나 아니면 피해자 진술 조서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는 사람만 가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를 해도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직설적이신 분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그 교육을 듣지 못했을 때도 겁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나중에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좀 조심해서 했던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교육을 갔다 오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라는 것들이 예시가 많기 때문에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P2)

## 3. 검찰 및 법원

### 가. 최근 검찰(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 1) 조직내 성인지 수준의 상향 평준화

면담에 임한 검찰 및 법원의 법집행 공무원들은 검찰, 법원의 피해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절차 마련, 성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양성 평등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조직의 성인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먼저, 검찰은 과거에 비해 여성검사나 간부급 여성, 여성 수사관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보다 유연하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조직 문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래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였고, 굉장히 군대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술자리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수성이 풍부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조직 문화가. 이런 것도 보면 저는 수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직문화 자체의 개선도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P6)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전사적 교육을 통해 침투되었으며, 미투사건을 통한 조직의 자성 등으로 성인지 부족을 야기하는 문제적 상황들이 일정 부분 정화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내에서 저희 자체 온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네 번 이상은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동영상을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시청을 하게끔 돼 있고.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부수적인 온라인교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검사님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미투한 그 이후로, 엄청나게 교육도 많이 하고. 지검장이나 지청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전 직원 앞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미 그때 한 번 정화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직장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꽤나 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14)

한편, 성범죄 전담 검사나 성범죄 공인인증 수사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전문조직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면서 성인지 수준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범죄전담 검사라든지 아니면 성범죄공인인증 수사관이라든지 또 실제로 재판에서는 성범죄전담 재판부를 두어서. 이런 전문 인력들이 있다보니까 계속 유사한 사건들에서 피해자보호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들을 보고, 요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P9)

이 외에도, 별도의 피해자 조사실 확보, 영상녹화 확보,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 및 제도 상의 변화로 인해 피해자 성인지가 개선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산범죄나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피해자 쪽 성인지를 많이 반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피해사실이 다시 한 번 꺼내져서 상처가 되지 않게끔 하는 피해자 쪽을 위한 그런 노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P13)

저희는 조사할 때 되게 배려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이랑 있는 걸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모르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검사실에서 말투나 어투,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시키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영녹실에서 따로 조사하게끔 검사님도 미리 배려하시고, 사전에 다 알아본 다음에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말투같은 것도 좀 쓰이다 싶으면 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실 정도로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분리 이런 것도 당연히 다 하고 있고요. 절차 같은 거는 너무 잘 지키고 있는것 같아요. (P12)

한편, 법원에서는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년 사이에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모임 발족, 법관 연수 강화 등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 왔고 많은 법관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점차적으로 보편적 법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레깅스판결 나올 때가 2017년이고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 대법원 판결도 지금 현재로는 약간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15)

(성인지 감수성은)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최근의 법원리이고 저희가 공부했던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판결문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하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판사님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조금 의문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관연수에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경력별 연수라고 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판사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전담부 법관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초 3월 달에 사무공단이 지정되게 되면서, 그때 가장 먼저 또 법관연수가 신설이 되는데 그때도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강의도 합니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이게 5~6년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아주 많은 판례에서 언급되고 인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모든 판사들이 거의 판단기준으로서 보편적 법원 리로서는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합니다. (P16)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보편적 법원리로 받아들이는 사례로 재판 진행시 피고인 변호인 측의 주신문 사항을 미리 받아서 2차 피해가 가해지는 질문이나 언행을 미리 검토하고 수정하여 증인신문사항 수정을 요청하는 재판부를 예를 들었다.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사전에 증인신문사항을 받거든요. 그래야지 반대신문을 준비해 오기 때문에... 주신문을 미리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재판부가 신문사항에 어구까지 모두 다 손을 봐가지고, 혹시 2차피해가 가해지는 언행들이나 질문사항이 없는지를 미리 수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증인신문사항 수정을 요청하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P16)

반면, 검찰이나 법원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며 각 개인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정의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거나, 개념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구현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거보다는 어쨌든 더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도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다 똑같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P10)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을 법원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재판/공판과정에서, 이것을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공판과정에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관습적인 재판진행방식을 깨뜨리고, 성인지 감수성에 민감한 방식대로 재판운영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16)

## 2) 준강간 사건, 친밀한 관계 사건 처리시 성인지 감수성 수준 드러나

한편,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잘 투영되지 못한 사례로 준강간 사건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을 예로 들었다. 준강간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 경우로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증명해

야 하다보니 피해자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비슷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거부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았다.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단연 준강간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 무죄 사례도 속출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한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재판장도 “그러면 여기를 왜 갔느냐, 왜 그러면 도망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가 좀 쉬운 구조입니다... (...) 피해자들 자신도 기억을 좀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아팠던 것밖에 기억이 안나요.”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서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좀 더 추궁하듯이 하거나, 질문하는 것들이 다른 사건보다 좀 많아지게 되고. (P6)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척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고 연인관계라고 피의자가 주장을 하는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례가 있는데, 피해자의 상황과 발생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외연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보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애매한 사건에 있어서,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면밀하게 피해자의 당시에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 피해자가 아무리 겉으로는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더 수사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그때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유죄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 피해자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보이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해서 추궁을 하면서, 수사관이든 검사든 너무 이상하다고만 여기고, 왜 이렇게 했는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성인지 감수성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인 것 같거든요. (P10)

### 3) 전담 부서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검사는 전담부서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높거나 교육을 많이 받는다기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성범죄를 많이 처리하고 성범죄 사건의 비중을 다른 부서보다 높게 처리하므로써 성편견적인 시선을 털어내는 ‘경험적 효과’(P6)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판사는 전담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법원리를 가장 많이 판단기준

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 정도가 처음에는 협소했더라도 하다 차차 넓어질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을 것'(P16)이라고 응답하였다.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지적한 순환보직에 따른 전담부서 성인지 수준의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약화는 있을 수 있으나 점차로 회복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순환보직이 필요한 이유로 전담부서의 전문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전담부서는 일반적으로 성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보직순환으로 많은 사람이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일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고 전문화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당직 때 검사들이 성폭력 사건들을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전담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검사님들은 전담부서에서 보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만한 중한 사건들,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강제추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편차가 심한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요. 1~2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좀 계속해서 한 업무에 근무를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10)

이제 성범죄전담이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우고, 확실히 이게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스토킹전담을 하고 있는데, 당직 중에 스토킹사건들이 들어오면은 스토킹전담이 아닌 당직검사들은 사귀다 헤어져서 연락 몇 번 한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스토킹으로 처벌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든지. 몇 번 찾아가서 선물 좀 놓고 온 게 그게 큰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확실히 전담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P9)

보직순환에 따라서 전담부서의 구성원이 바뀌어서 미흡해진다는 부분은 약간 동의가 어렵고, 오히려 보직순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레벨 업이 되는 거는 확실하고. 정말 성범죄에 전문화된 검사들이 분명히 지원 숫자가 매우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도 자체는 보직순환도 필요하고 전문화도 필요하고, 그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8)

외부에서 걱정할 만큼 보직순환으로 사람이 바뀌었다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성폭력전담 수사관한테 특혜를 줍니다. 전문인증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수사관이 되면 그 수사관들은 오히려 성폭력에 계속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승진 혜택도 주고, 사실 요즘은 신규승진해가지고 새로 유입되는 수사관 이외에는 대부분은 전문가들이 이미 성폭력전담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타청으로 가더라도,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성폭력수사관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걱정하실만큼 인지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14)

법원에서는 전담부 판사의 보직순환은 불가피하며 보직 순환으로 인해 법기술상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본다면 일시적으로 미흡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각종 연수나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학습한 법원리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법원리이며,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뒷받침하는 논리라는 통념으로 인해 판사 개개인마다 수용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약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옮기는 사무분담에 따라가지고 판사들의 역량 차이가 아주 크게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이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원리 자체가 최근에 등장한 생소한 법 원리이고, 성인지 감수성의 법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나,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판사들 내부에서도 요즘에 특히나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피해자증언에 신빙성을 높여주는 방어적법 원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연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거의 정착된 법원리인 것처럼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데, 판사 개개인들마다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정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원리 판단기준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거를 그렇게까지 대원칙처럼 형사법에 있어서 자리잡은 법원리로 볼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그 수용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P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 재판부 업무 시작시 의무연수를 이수하여야하며, 성폭력 전담부는 의무적으로 2년동안 사무를 분담하도록 법원 내규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에서 오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원리 채택이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들어 전담부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은 점차 향상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전담부는 다른 재판부랑 다르게, 다른 재판부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예규에, 법원 내부마다 그냥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폭력전담부만 유일하게 2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법원에서도 법규성 있는 예규로 성폭력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2년은 적어도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16)

## 나. 피해자(변호인)의 진술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

### 1) 피해자 증인 신청 불허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원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재판부가 진술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문제가 피해자측 변호사로부터 제기되었다.

면담에 임한 검사 및 판사들은 최근에는 피해자 증인을 재판정이 불허하는 경우가 매우 극소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의 관련 지적은 오래전 일일 것이거나 관련 판사가 형사소송규칙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일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제가 직접 나가서 검사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신 피해자분들도 많고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피해자 입장을 들어보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거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분 직접 나와서 말씀하실 게 있고, 증인신문하고 싶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받아줍니다. 판사님들도 대부분 들어보고 싶어하거든요. 저희도 그렇지만 직접 들어보아야 조금 더 보이고 느껴지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서류로만 보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P7)

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심문할 경우에, 퇴정을 요청하면 피고인 퇴정하도록 아예 규칙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재판부가 이런 신청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하는 건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재판부는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 규칙에 다 마련되어 있는 절차이고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퇴정을 시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재판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형사소송규칙을 모르신 판사님이 있으실 수 있겠죠. (P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해자 진술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 현행 형사재판 구조상 검찰과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구조에서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인보다도 검찰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다(P8). 또 한편으로는 정해진 재판 일정으로 인해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의 감정적 진술과 호소에 의존할 수 없고 판결에 증거로 사용되는 진술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무제한 진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재판의 효율성 추구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재판은 재판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두가 현장에서 진행되니까, 재판이 밀리는 것에 대한 압박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신문을 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재판효율도 있지만,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알수록, 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면 그러면 특정 그 답변이 나와줘야만 사람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다 알아요. 판사님도 변호사도 검사는 알아요. 근데 피해자는 그걸 모르니까. (P6)

한편 피해자 증인신청의 불허에 대해 재판부의 재량이 남용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문화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변호사님들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좀 전향적으로... 원칙은 이를 허용하고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불허하는, 그런 소극적인 재량만 허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법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P8)

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성폭력의 경험이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이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길게 보면 그 과정인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나가서 진술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의 과정인 것인데. 그거를 막는 거는... 나가서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재판진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는 거는, 피해자보호나 이런 관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P10)

## 2) 피해자(변호인)의 당사자 지위 부여에 대한 의견

현행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중심의 당사자주의로 인해 피해자의 지위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의견이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 및 법원은 검찰의 공익적 지위와 피해자 대변 기능이라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어쨌든 대변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검찰이 이제 객관의무라든지, 공익의 대변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지위하고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화에서는 충분히 피해자의 대변이 가능하고, 시스템 자체로 운영만 잘 된다면은 그 부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P7)

한 판사는 형사소송 자체가 국가법익 침해에 대한 처벌인 만큼 당사자주의를 견지해야하며, 검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당사자 지위를 행사하는 만큼 피해자의 지위를 확대하여 사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사적복수를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처벌을 함으로써 사적복수를 막는 거예요. 이게 시민사회형법체계의 근간 아닌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형을 깎아주지 않는 것처럼, 검사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은 부차적인 입장에 있는 게 근대시민형사재판의 원리 아닌가요? 오히려 검사의 당사자적 지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검사가 피해자 쪽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피해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기록 열람도 검사 통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사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피해자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국가법익에 대한 침해고,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P15)

한편, 피해자 변호사 쪽에서 제기한 피해자 변호사의 지위 확대 부분에서는 이견이 많았다. 한 판사는 이미 재판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변호사가 선정이 돼서 피해자가 꼭 증인신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기일 때마다 피해자변호사는 출석해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 보장되어 있고요. 형사재판 할 때 재판부가 재판기일 진행하면서 꼭 사전에 확인합니다. 혹시 피해자변호사 출석하셨는지. 그래서 출석한 게 확인이 되면, 일단은 상당부분의 재판부는 피해자변호사가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발언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언기회를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물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변호사님, 피해자 측을 대변해서 진술할 내용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피해자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만 한다면, 변론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P16)

면담에 임한 한 검사도 피해자 변호사 지위 확대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검찰 쪽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의사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사실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진행된다면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도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피해자 쪽 변호인을 저희 검찰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조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7)

한편,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미흡한 처우에서는 지위 확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이며, 향후 적절한 보상을 통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지위 확대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안에서 재판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강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호사님들의 어떤 시간당 기본적인 보수에 비해서는 이게 그렇게 프로핏터블하지 않은 그런 업무로, 제가 좀 조심히 생각해 알고 있는데, 이 참에 아예 제도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높은 보수를 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면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P8)

#### 다. 가해자와의 간접적 합의 중용 사례

##### 1) 피고인 쪽 변호인의 합의 요청과 재판부의 허가

일반 사건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억울함 등은 잘 알지만 사건이 현실적으로 입증 불가능하고 법률전문가로서 기소해도 유죄를 받기 힘든 사건일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원하는 차원에서 합의의사를 묻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피해자 지원 실무가는 피고인 변호인이 합의를 요청할 때 재판부에서 판결선고 기일을 늘려주는 등 간접적으로 합의를 중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그러한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였고, 검사 쪽에서 추후 이의제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충하였다.

피고인이 "내가 합의노력을 해볼 테니까, 조금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재판부에서 제가 보기에 그거를 "안 돼요."라고 했던 재판부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연락이 와요"라고 저희한테 서면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재판부에 내서, 이 사람은 오히려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한다,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P7)

면담에 참여한 판사들은 현재 양형 사유로 합의가 들어가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 중인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사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합의를 위한 직접적 연락을 엄히 경고하거나, 양형조사서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원하지 않고 추후 연락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표기했을 때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주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저야 전적으로 동감하죠. 솔직히 저는 합의를 왜 양형에 반영해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요. (...)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묵은 문제라서, 그 대신에 '피해자한테 합의를 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게 발견이 되면 오히려 형을 가중하겠다, 나쁜 양형 사유로 참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경고하는 재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재판장의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운영이 많이 달라지는 지점일 것 같아요..피해자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 게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피고인 주장을 차단할 수 있겠죠. 양형조사서에 보면 "연락을 원하지 않고, 합의 절대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유로 들어서 선고기일 연기 안 해 주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양형조사서에 반영이 돼 있는지 보고, 없으면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P15)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 공판과정 중에 피해자 의사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재판진행 중에 계속해서 피고인 측이나 피고인 변호인 측에게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좀 그런 소송진행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주의한 재판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16)

## 2) 형사조정 절차 안내시 피해자에게 간접적 압박 가능성

검찰이 형사조정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권유할 때도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처음부터 형사조정을 할 거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말하면서 일단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안내를 해주고, 아예 처음부터 연락을 하지말라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설명하거나 저희가 유도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깐요. 그리고 가서 꼭 형사조정을 할 필요 없다, 합의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그때라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맞지않으면 그냥 원래 절차대로 돌아오는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11)

형사조정 절차 안내시 피해자 변호사 측에서 제기한 문제 사항, 즉 법률 지식이 전문한 피해자에게 형사조정 의사를 물음으로써 피해자 측면에서 다소 의무감을 느끼는 사례에 대한 지적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조정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형사조정 절차의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도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정자리에 사실 변호인이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피해 회복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7)

### 라.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신청 불허 사례

일부 피해자 지원 실무가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아동 사건의 경우 무조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며, 일반 사건도 거의 불허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고 성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판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거부할 수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나마 우리는 형사소송법상 기록을 보고 있으니, 검찰은 이미 수사된 기록을 아니까, 피해자의 어떤 특성을 좀 알 수 있어요. 경찰 수사하다가도 공황장애가 온다고 중간에 중단했던 그 피해자다, 지금 이사 가가지고 불안해서 심리 상담 받는 그 피해자다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막 사람 눈도 못 마주치는 소심한 성향이라서 일반 성인임에도 굉장히 떠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아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기록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 지식도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P6)

그런 사례를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있다면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휴정을 하고, 물 한 잔 드리고, 검사나 피해자 측 변호인하고 설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막 울고 그러셔서 "이게 지금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침착하게 하셔야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법정엔 보통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드리고, 피해자 쪽 변호인하고 저하고 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진정시키고, 진정이 좀 됐다하면 제가 이제 판사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진행하시죠." 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적절하지 않죠. (P7)

한편, 검사와 판사 개개인이 피해자의 트라우마 정도나 성향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성인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는 이유가 트라우마 때문인지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주변인의 영향 때문인지를 가리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장애인은 다 동석시키는 게 법으로 다 되어 있으니, 그런데 성인인 경우에 장애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진술하면서 그런 이상행동을 보이면, 이게 트라우마에 의한 행위인지 아닌지 저희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피고인도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P16)

#### 마. 법리적용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자를 압박한 사례

수사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할 때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균형을 찾는 것의 어려움이 개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이해 및 설득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바뀌었는지를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너의 진술을 믿지 못한다고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질문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인지. 이거를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하다보면 피해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다 제각각이어서, 굉장히 처음부터 방어적 내지는 공격적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너의 진술을 내가 믿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질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더 이제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시각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좀 안정과 그런 신뢰를 주고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공격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해야. (P10)

한편, 재판에서는 재판정의 소송 지휘권 및 재량, 재판의 효율성 추구, 재판정의 공정성 등 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정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지적되었다. 또한 재판에서 감정을 호소하는 피해자 등 피해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차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균적 성향으로만 대하는 재판정의 성인지 수준도 지적되었다.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이 갖는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진술권을 주는 것도 5분 줄 거냐, 10분 줄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고... (...) 근데 일단 재판에 온 이상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믿고 기소한 거잖아요. 피해자가 울거나 피해자가 힘들어하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이러면은, 막 30분씩도 설득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통화하고 해요. 근데 재판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장은 양쪽에 중간에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P6)

저희가 연수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이게 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답에 대해서는 사실은 뼈 아프게 받아들여요. 저도 제가 되게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법정에 나왔는데 왜 증언을 못하나,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돼요. 연수에서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정신과 의사선생님들도 오시고, 심리학자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저희는 많이 교육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사실은 연수를 해도 재판장님 들은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체화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P15)

재판부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는 사건이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게 수사단 계에서의 피해자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피해자와 대면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지금 부른 건데.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울기만 하고,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낼 만한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피고인을 편들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피해자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그치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시간은 없고,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갈 만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제가 상담관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그렇게 나쁘게 좀 풀어가는 거죠. (P16)

#### 바. 피고인 방어권의 기계적 보장으로 인한 피고인 변호인의 2차 가해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 심문 상황에서 피해자 사생활 질문 등 2차 피해성 발언이 상당부분 나올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논리로 미성년 피해자 혹은 장애인에 대해 영상녹화 대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불인정되면서, 녹화만으로 안되고 결국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지속적으로 증언해야하므로 피해자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피해자 증인으로 부르게 됐을 때,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 심문 건이 사실상 거의 무제한 허용되는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심문을 100개씩 질문 해 와 가지고 사생활부터 묻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2차피해가 너무 발생하기가... (...) 이전에도 낙태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손을 들고 재판장님께 ”이 질문에는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고 입증 취지가 뭔지 모르겠다. 2차피해 우려된다.“ 이렇게 했을 때, 판사님이 또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 검찰은 구성요건에 대해 집중해서 묻는다면, ”먼저 목이 졸리고, 그 다음에 가슴을 만진 건가요?“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한다면, 변호인은 그냥 정말 평소 무슨 생각 갖고 사는지, 그냥 자기 묻고 싶은 걸 전부 다 물어봐요. 전부 다. 평소에 어떤 성격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그런데 그게 가이드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진짜 많이 피해가 일어납니다. (P6)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추궁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법정에서 ”이거는 조금 이 공소사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좀 제지를 했던 적이 있어요. (P7)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 변호인에 의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피해자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봐서 (P9)

이에 대해 공판검사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공판 검사들이 어느 정도 제지하거나 피해자한테 물을 질문이 아니라거나 해서,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판과정에서 좀 피해자보호를 하고 2차가해를 막기 위해서, 질문같은 경우에는 공판검사가 열심히 해서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P11)

형사소송 대전제인 측면, 당사자주의 측면에서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질문을 물어라, 묻지 말아라 하는 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소송지휘 안 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주면 사실은 진행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이 질문은 이 사건하고는 무관한 질문이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모양도 훨씬 좋고, 진행하기도 편하고, 피고인 측에서도 수궁하기가 쉽겠죠. (P15)

또한 피고인 변호사의 성인지 연수 강화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이 나서서 교육 실태 파악과 강화에 힘써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피고인 2차가해라는 사례는 주신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이거든요.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법리적인 거하고는 좀 따로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법관연수할 때 비폭력언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이게 폭력적 대화였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 대화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근데 변호사님도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니까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표현이었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2차 가해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사용되는 변호인의 표현들 중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어떤 표현이나 대화, 언행 같은 것들을 법정 내 언어로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을 모아서 연구한다든가, 서로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 연수화한다든가 변호사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P16)

### 제3절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젠더 폭력사건 형사사법절차에서 성인지적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상담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아래 [표 4-4]와 같다. 15명 모두 현장에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젠더폭력 사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경험을 수렴하기 위해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그 외 장애, 이주민 젠더폭력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담 내용에 풍부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자, 활동가, 변호사 등 다양한 직급, 직군에 대해 면담을 수행하였다.

[표 4-4] 피해자 지원기관 심층면담자

연번	구분	연령대	성별	직급 또는 직군
S1	성폭력	40대	여성	관리자급
S2	성폭력	40대	여성	관리자급
S3	성폭력	40대	여성	활동가급
S4	성폭력	40대	여성	활동가급
S5	가정폭력	60대	여성	관리자급
S6	가정폭력	50대	여성	관리자급
S7	디지털성범죄	30대	여성	관리자급
S8	디지털성범죄	40대	여성	관리자급
S9	장애여성	40대	여성	관리자급
S10	장애여성	40대	여성	활동가급
S11	장애여성	50대	여성	관리자급
S12	이주여성	40대	여성	관리자급
S13	이주여성	50대	여성	관리자급
S14	법적절차지원	40대	여성	변호사
S15	법적절차지원	50대	여성	변호사

## 2.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분석 결과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4-5]와 같다. 심층면담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5]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주요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1. 최근 동향	1-1. 젠더폭력의 변화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자,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젠더폭력</li> <li>• 젠더폭력의 복합적 양상</li> <li>• 입법 공백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젠더폭력</li> </ul>
	1-2.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천히 진화하는 긍정적 변화</li> <li>•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요인</li> <li>•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2차 피해</li> </ul>
2.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2-1. 피해자 관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폭력,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li> <li>• 친밀한 관계 젠더폭력에 대한 거대한 장벽</li> <li>• 사회변화보다 한걸음 느린 법집행공무원</li> <li>• 임의적 판단으로 무마되는 젠더폭력</li> <li>• 낮은 성인지 감수성의 순환 고리</li> </ul>
	2-2. 숨겨져 있던 통념의 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감수성' 자체를 비하하는 태도</li> <li>• 서면에서 드러나는 통념</li> <li>• 법집행공무원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젠더폭력</li> <li>• 역고소 상황에서 자유롭게 작동하는 통념과 편견</li> </ul>
	2-3. 2차 피해를 넘어 가해자 옹호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찰</li> <li>• 가해자 입장을 고려한 암묵적 합의 종용</li> <li>•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되는 현상</li> </ul>
	2-4. 피해자 관점이 배제된 법리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적 '중립' 명목의 은근한 2차 피해</li> <li>• 젠더폭력의 맥락보다 가시적 증거에 초점</li> <li>• 피해정황보다 주변부정황에 기반한 신빙성 판단</li> </ul>
	2-5. 소수문화 이해부족, 차별과의 시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li> <li>• 대공수사로 접근하는 탈북민 젠더폭력</li> <li>• 이주민, 외국인 통역 필요성 인식 부족</li> <li>•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li> <li>•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li> </ul>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3. 법집행 절차와 체계	3-1. 법집행 절차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 절차 집행</li> <li>•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꾼 지침위반</li> <li>• 교묘하게 이용되는 지침</li> <li>•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li> <li>• 민감정보에 대한 배려 부족</li> <li>• 압박으로 느껴지는 법집행기관의 연락</li> <li>•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태도 부재</li> </ul>
	3-2. 법집행 체계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공백으로 인한 2차 피해</li> <li>• 전담부에 포섭되지 않는 젠더폭력 사건들</li> <li>• 업무기피, 보직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li> <li>• 젠더폭력 사건과 다른 사건의 병합 문제</li> <li>• 당사자로서 피해자 지위의 부재</li> <li>• 피해자 변호인 지위 불인정</li> <li>•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li> <li>• 판결문의 민감정보 노출</li> <li>• 국선번호, 무료법률 지원 부족</li> </ul>
4. 대안	4-1. 체계·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 적극 활용</li> <li>• 법집행과정에서 피해자 지위의 정상화</li> <li>• 법집행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 지위 인정</li> <li>•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출권 보장</li> <li>• 물리적 공간에 대한 배려</li> <li>• 충분한 예산, 인력 보강</li> <li>• 이주민,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li> <li>• 젠더폭력 이해에 기반한 법적 근거 마련</li> </ul>
	4-2. 성인지 감수성 체화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관점에 기반한 젠더폭력 대응 교육 강화</li> <li>• 내재적 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li> <li>• 초기대면 법집행공무원의 전문성 강화</li> <li>• 의사결정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li> <li>• 판결문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li> <li>• 조직의 보편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li> <li>• 성인지 감수성의 기반이 되는 인권감수성 강화</li> </ul>

### 가. 최근 동향

최근 젠더폭력의 양상, 그리고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양상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젠더폭력의 변화 양상을 보면, 전통적인 형태의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보다 약자를 향하며,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였다.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 등장하면서 현재의 법망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 이것이 형사 사법절차 집행공무원의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집행공무원의 태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또 꾸준하게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논의를 이어나갔다.

### 1) 젠더폭력의 변화 양상

#### <약자,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지난 2~3년의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젠더폭력의 양상이 약자를 향하는 폭력이 증가하고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특히 사이버 젠더폭력이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되고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신고 역시 증가하여 이러한 양상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2~3년 전부터는 카메라 이용 촬영은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애매하게 안 들어가던 것들이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그 범주에 들어가면서 그게 많이 좀 늘어난 것들이 있었어요. (S3)

불법 촬영 사건이 가장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성적 괴롭힘이라고. (S7)

(장애여성) 최근에는 채팅으로 인한 사기 피해나 성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S11)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적 방식의 대면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수는 조금 줄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S15)

#### <젠더폭력의 복합적 양상>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젠더폭력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체폭력보다 정서적, 경제적 폭력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스토킹을

동반한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을 동반한 가정폭력은 현재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 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다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젠더폭력이 발생한다.

(가정폭력)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인 폭력 위주였다고 하면. 최근에 스토킹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정폭력이, 사실은 스토킹을 동반한 가정폭력의 많은 경우죠. (...) 이혼하고 난 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증가되고 있고. (S6)

(디지털성폭력) 민원실에서는 처음에 접수할 때에는 소관 부서를 여성청소년팀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팀 가서 진술을 했더니, 유포는 사이버에서 해야 된다... (S7)

#### <입법 공백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젠더폭력>

젠더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법률로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명백한 젠더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처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하는데 그 또한 구성요건이 맞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사이버 공간의 성적인 괴롭힘과 폭력들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사례들에 대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처벌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 명백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법 공백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고. 멀리 있는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도 적용이 안되거나 구성요건이 맞지 않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공백에 있어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S7)

#### 2)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양상

##### <천천히 진화하는 긍정적 변화>

최근 젠더폭력 법집행공무원의 태도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공통

된 의견이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 대부분이 법집행공무원들의 태도가 유의미하게 변화를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경찰들에게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S5)

조직 문화라든지, 교육 훈련 혹은 재판부 내부에서 이런 노력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S7)

경찰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고 이런 변화를 하는 거는 저희가 느껴져요. (S11)

####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요인〉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형사건과 여론, 정책 기조 변화와 법개정 등으로 언급되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젠더폭력 이슈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지원단체 활동이 힘을 얻고 그에 따라 법집행공무원의 태도도 젠더폭력 피해자 관점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법집행공무원의 행동지침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관 내부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침이 강화된 것도 변화를 이끈 요인들로 언급되었다.

언론들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신뢰관계인 동석도 그렇고, 재판할 때 증인 신문할 때도 별도의 공간이나 차폐막을 마련하거나 (...) 청문 감사실에 피해자가 직접 담당 경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담당 경찰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S4)

확실히 언론이나 여론 이런 데,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대두될 때면 수사기관이나 재판 기관이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반짝 보일 때가 있어요. (S3)

스토킹과 관련해서 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S5)

보다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그에 따른 사회적 관심으로 법집행공무원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 특히 법률 개정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확실한 변화요인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사회적 관심에 반응하여 지자체의 정책결정자의 결단있는 정책 추진도 주요하다는 평가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 4대 악으로, 그때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 폭력, 불량식품. 이렇게 4대 악이 되면서 경찰 연계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경찰 연계가 활발해지고. (S5)

다른 법률에 비교했을 때, 아주 급진적으로 개정뿐만이 아니라 신설까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재판부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S7)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반응을 했더라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S8)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주의 운동과 조직 내부에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법집행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피해자 여성들의 인식변화도 법집행공무원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여론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에 대해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여성 경찰관들 중에서 최근에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높아지는... (S7)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나는 피해자다 내 잘못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사관들이 좀 태도를 변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S8)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2차 피해〉

위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체감되는 중에도 여전히 2차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2차 피해 빈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법집행 현장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도가 낮아지는 거지 (...) 강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나아졌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안 들고. (S3)



전형적인 2차 피해 사례들은 이전보다 비율이 줄었다 뿐이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S7)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보여요. 근데 더 많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많이, 현장을 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S11)

## 나.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

### 1) 피해자 관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 <젠더폭력,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젠더폭력 피해자는 피해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곧바로 사건을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하는 것만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못 해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고가 늦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법집행공무원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늦게 한 것 등을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거로 보고 2차 가해성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입은 지 4일 만에 신고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피해자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잖아요. (S2)

수사하면서 너무 당연히 필요한 질문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한테는 이게 나를 지금 되게 비난성 2차 가해성으로 나를 질문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S2)

재판정에 나와 심리적으로 너무 취약한 피해자에게 재판 참여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법집행에만 초점을 맞추어 젠더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그렇게 우는데 “증인, 우리 지금 재판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고소장까지 냈으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의 조금 푸시하는 듯한 느낌? (...)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말조차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보다는, 좀

더 내 편이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S15)

법집행공무원들이 최근 ‘자신들의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옛날이야기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면담참여자 들은 2차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 지원기관과 법집행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법집행공무원은 2차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되는 것이 있음을 의미이다.

피해자 지원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분명히 이 수사재판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은 분명히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3)

수사 재판 기관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변화가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2차 피해와 우리가 생각하는 2차 피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S4)

법집행 공무원이 젠더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젠더폭력 법집행공무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형사가 남성분이었어요 (...)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입에 올리기 어렵고, 좀 비밀스럽고, 약간 되게 사적화하는 (...) 그래서 경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남성으로서 잘 모르는 여성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혹은 내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느낌으로 좀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의아하기도 했고. (S10)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유난히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권리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예민한 사람들’, ‘쓸데없이 뭔가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더 잘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며 인권적으로 접근하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관들의 생각이 오히려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예민한 피해자들, 쓸데없이 뭔가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 피해자도 국민으로서 적법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피해자들의 얘기도 그냥 흘러들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 기본적으로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의심을 하는 게 수사 재판에 관련된 분들은 그게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멀리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S4)

“꼭 그거 진술 녹화실에 세팅하는 거 시간이 걸리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라” (...)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냐” 이 반응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S3)

### 〈친밀한 관계 젠더폭력에 대한 거대한 장벽〉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은 가족간에, 연인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법집행공무원이 자신의 통념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피해자가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S2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고 느꼈다.

경찰이랑 얘기해 보면은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 성인 데이트 관계의 연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무부 의견서거든요. (S2)

“남녀 간에 뭐 하다 보면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S2)

부부 간에 일어났던 폭행과 강간 사건을 다뤘던 검사실에서 부부간의 강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 쌍방 폭행으로 결과를 내리고 “성폭력은 부부 강간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불기소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S4)

### 〈사회변화보다 한걸음 느린 법집행공무원〉

법집행공무원이 젠더폭력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물으며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법집행공무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에는 GHB 등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최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집행공무원의 무지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 형태의 성폭력이 사회문제화될 때 법집행 현장에서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텔레그램 이용 성범죄) 그냥 자기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거 못 잡는데”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S2)

“블랙아웃 상태가 어떻게... 나(판사)도 술을 먹은 성인으로서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당신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재판장 안에서 그런 통념을 그대로 보였었던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S1)

아예 이걸(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사건으로 자체를 인지 못 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2차 피해는 말도 못 할 정도였고. 거의 모든 사례마다 다 2차 피해가 정말 창의적으로 있었었고. (S7)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범죄가 속속 등장하면서 판례를 통해 법적용의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검사든 경찰이든 지금 판례도 많이 바뀌고 있고 강제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스토킹, 불법촬영 같은 거에 대한 판례도 많이 받고 (...)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거나 판례를 잘 적용을 안 해서 그냥 자기들 선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S2)

#### 〈임의적 판단으로 무마되는 젠더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고소 전에 먼저 경찰서에 가서 신고문의를 하기도 한다. 처음 사건문의를 하거나 신고로 법집행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를 대면하는 법집행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젠더폭력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법집행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이나 무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위축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포기하기도 하였다.

저희 상담소에 문의하시듯이 경찰에도 문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S2)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같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나 보다, 혹은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신고해도 아예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S2)

수사기관에 있는 담당 수사관 분께서는 “이거는 피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왜 피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라고 하기도 하고. (S7)

“정보 유출되고 금전 피해 같은 거 없었잖아요? 속상할 수 있는데 이걸 성폭력 피해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들. (S7)

“너 이거 내용 보니까 너 잘못하면 무고죄로다가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무고죄가 얼마나 무겁냐면...” 얘기하니까 피해자가 너무 두려우니까 진술하다 말고 “그럼 저 고소 취하할게요” 이런 거예요. (S3)

또한 신고받고 출동한 공무원이 자신의 통념으로 ‘온건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온건하게 한다고 가정폭력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하실 겁니까?” 또 “이혼할 거 아니면...” 이런 태도들이, 중재자가 되어서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2차 피해가 되는. 피해자는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에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 (S6)

#### <낮은 성인지 감수성의 순환 고리>

법집행공무원이 젠더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수사과정에서 무고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젠더폭력의 피해를 부정하게 되면, 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진술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사건이 정말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런 건 참 악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진술하기 전에 전제로 까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본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가 ‘이거를 나 이거 고소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보인다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되게 위축돼서 진술했는데, 결국은 불송치가 나왔어요. (S3)

## 2) 숨겨져 있던 통념의 발현

### 〈‘성인지 감수성’ 자체를 비하하는 태도〉

피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성인지 감수성 법리의견서에 대해 법집행공무원이 그 자체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 사례가 있었다. 법집행공무원의 인식 수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학생들의 논쟁거리 수준으로 비하하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약간 혼잣말처럼, “나는 이 성인지 감수성 범위가... 이걸 들으면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나 이거 우리나라가 너무 빨랐다고 봐,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학생 때 공부한 거 같아...” 이런 얘기를 비공개 재판도 아니고, 그냥 재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 혼잣말처럼 뱉어 놓고선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무고 법리를 자세히 보세요. 무죄 주장을 하시려면 무고 법리 판례를 필터링 하셔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러면서, 약간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말을 바꾸셨는데. (S14)

### 〈서면에서 드러나는 통념〉

수사재판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는 피해자와 면대면으로 만나는 현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서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수사재판 결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불기소처분이유서, 불송치결정이유서에서 법집행공무원의 통념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이 사건의 맥락이나 피해자 진술에 기반하여 이유서를 작성하기보다 참고인의 진술을 ‘짜집기’로 인용하여 자신의 통념을 반영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전혀 다르게 진술서가 작성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불기소처분이유서나 불송치결정이유서에 정말 통념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 (S1)

다른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짜집기해서 피해자는 사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은 A라고 했지만 참고인의 진술을 참고했었을 때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참고인의 진술도 맥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짜집기 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S1)

힘든 상태로 장시간을 본인의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나서 진술서 검토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찰이 이걸 아예 잘못 쓴 거예요. (...) ‘피해 당시에 내가 하혈이 있었고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런, 이런 행동을 뒤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서에는 ‘아픈 게 나은 상태여서 이런,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완전히 잘못 쓴 거예요. (S4)

〈법집행공무원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젠더폭력〉

피해자 중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이야기를 해당 수사관이 복도에서 다른 동료들과 비웃듯이 조롱하는 것을 듣고 사건 진행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때로 항의를 하면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에 화를 낸다고 생각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젠더폭력이 피해당사자에게는 너무 무겁고 힘든 사건이지만 법집행공무원은 젠더폭력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무게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을 가볍게 바라보는 법집행공무원의 태도를 보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잃어버리며 젠더폭력범죄에 맞서려는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는 진술이다.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진술을 다른 동료들이랑 얘기하면서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다. 이런 거를 들으신 거죠. (...) 그냥 내가 진술을 했다는 것도 다 그냥 기록을 없애달라 하면서 신고나 고소를 그냥 아예 포기하고 나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S2)

대수롭지 않게 “기분 나쁘셨나 봐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S2)

가정폭력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이 “그게 무슨 폭력이냐” 이런 말들. 되게 쉽게 하는 말들이죠. (S4)

〈역고소 상황에서 자유롭게 작동하는 통념과 편견〉

경우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젠더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사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통념과 편견이 자유롭게 작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인지적 접근이 반드시 피해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젠더폭력관련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역고소 건에 대해서 수사 과정을 밝을 때는 통념과 편견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좀 작동한다.  
(S1)

피해자는 이미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수사가 들어갈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전까지는 그런 고지를 다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사건 절차를 밟다가 정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도 피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S4)

### 3) 2차 피해를 넘어 가해자 옹호로

####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후원을 하면 감경가능하다는 정보를 경찰이 가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고소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 (가해자가 피해자 지원기관에) 후원을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 “경찰이 여기에다가 후원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S2)

피고인들이 ‘나 어느 변호사 선임하면 좋냐’, ‘형사 많이 했던 사람도 추천해 주실 수 있냐’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조사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찰들은 약간 팁 같은 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S2)

법집행공무원이 가해자의 나이, 상황을 언급하며 사건을 무마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결국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법집행공무원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초동대처가 결국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해자의 나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여 신고를 포기하게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지구대에 출동을 했는데 접근 금지 대상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 우선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분 나이도 있고 이분 상황이 이렇고 피해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 그 가해자가 또 다른 여성에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탄 처에서 구속된 거예요. 만약 그 수사관들이 이걸 제대로 조사했으면 다른 피해자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S3)

가해자가 올해 정년 퇴임인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나라고 하고. (피해) 당사자분이 돈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S9)

‘남의 인생에 빨간 줄 그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막 하다가 도저히 신고가 안 되겠구나. 이제 포기를 하신 거예요. (S4)

(장애여성 보호자에게) ‘고소인이 진술 한 번 잘못하면 이 한 남자의 평생 전과자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휴대폰 앱을 사용했던 정황이 좀 보이는데 앞으로 단속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S9)

#### 〈가해자 입장을 고려한 암묵적 합의 종용〉

명시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피해자 관점에서는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발언이 범집행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 종종 형량을 ‘깎아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사가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 합의를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견해다. 이러한 범집행공무원의 태도는 암묵적인 합의 종용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2차 피해의 여지를 준다. 재판부에서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면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장님들께서 쉽게 설명하신다고 쓰시는 용어 중에 깎아준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해자 편들어주고 있다는 생각. 가해자를 막 봐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느낌? (...)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러잖아요. “합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일을 속행해 주시면” 이러면, “예,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 “판결 선고 기일 넉넉히 줬는데, 혹시 그 안에 합의가 되다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선고 기일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으면 또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종용이에요. (S15)

###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되는 현장〉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항의에 법집행공무원은 이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부로 나가는 서류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보장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권리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보장되어 이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불기소이유서) 가해자는 회사원인데 왜 피해자는 대학생이 아니고 무슨 무슨 대학교, 무슨 무슨 과라고 돼 있는 것까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 검사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경찰에서 그렇게 올린 거야. 우리는 그거 보고 적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 ‘불기소이유서 우리가 그냥 보는 거지 이게 어디에 나가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 거예요. (S3)

피고인의 권리는 그냥 보장이 되어있는 거에 비해서 피해자 권리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판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S2)

#### 4) 피해자 관점이 배제된 법리 적용

### 〈기계적 ‘중립’ 명목의 은근한 2차 피해〉

법집행공무원은 법집행 과정에서 공정, 중립, 형평을 강조하지만, 그 기반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집행 과정 중에 2차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법집행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거든요. (...) 나는 중간에서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공정하게 들으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정은 사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고. (...)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한다기보다,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훨씬 더 집중해 있거나. (S10)

‘기계적인 형평’ 혹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명목으로 법집행 중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S14는 이를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은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측에서 수사 과정에서 한 번 감정을 받았으니, 피고인 측도 저렇게 원하시니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전문가 진술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불러서 오셨어요. (...) 가해자 측이 지정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진술은 뻔한 거였어요. (...) 기계적 평등이나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은근한 방법인데 사실은. (S14)

<젠더폭력의 맥락보다 가시적 증거에 초점>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젠더폭력 발생맥락의 이해를 강조한다. 하지만 법집행공무원은 피해자 관점에서 젠더폭력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상황, 증거, 현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 젠더폭력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가해자한테 거의 기대서 팔짱 끼고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게 피해가 맞나?”라는 그런 의심의 말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사건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 1심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S11)

사건을 바라볼 때 사건만 바라보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S11)

<피해정보보다 주변부정황에 기반한 신빙성 판단>

법집행공무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할 때 진술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러한 진술신빙성의 초점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말초적인 주변부 정황 진술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가는, 오히려 그 주변부 정황이 진술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느라, 정작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을 정확하게 맥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 (S9)

## 5) 소수문화 이해부족, 차별과의 시너지

### 〈소수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

이주여성, 장애여성, 탈북민 등 소수민의 젠더폭력과 관련한 보호·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탈북민, 이주민 등은 지역에서 그들만의 공동체가 작동하고 있는데, 수사관들이 해당 문화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젠더폭력 사건을 처리하여 본의 아니게 사건의 진실 은폐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탈북민의 경우 탈북자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부 권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이 은폐될 수 있고, 이주민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통역가가 모두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 친분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적인 개념을 터부시하는 문화 속에서 통역가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통역하지 않아 사건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집행공무원들은 이러한 소수민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다.

탈북자면 일단은 탈북자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고 (...)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피해자에게 누가 위협적인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맥락을 너무 너무 파악을 못해 가지고... (S2)

맥락을 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 가해자도 아는 사람이고 피해자도 아는 사람이고 통역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고 (...) 어떤 성적인 묘사를 할 때 그런 자세한 문화는 좀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거나 이러면 통역하시는 분이 그 용어를 정확히 통역을 안 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S2)

### 〈대공수사로 접근하는 탈북민 젠더폭력〉

탈북민에 대해서는 젠더폭력도 대공수사, 대남공작의 일환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대공수사 형태로 피해자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반복 진술을 요구하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었다.

(탈북민)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호소를 거의, 그분은 군검찰에서만 진술을 네 번을 하셨어요.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었는데 진술을 한 번 가면 10시간 이상씩 받으시고 되게 힘들었는데. (S4)

#### 〈이주민, 외국인 통역 필요성 인식 부족〉

이주민, 외국인의 경우 통역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주여성이 한국말을 조금만 할 줄 알아도 통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통역의 필요성을 묻지도 않고, 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아 사건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 언어와 법적 언어는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수사,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말을 잘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 통역이 필요하지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진술을 받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진술서를 이후에 확인했더니, “통역이 필요 없다.”라고 이분이 진술을 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경찰 진술에는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S12)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

내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성차별적인 언어나 태도를 조심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주여성에게는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 여성에게 더욱 성역할을 강조하고 그러한 성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 폭력이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그들이 당하는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거를 많이 따르도록 더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 전통적인 성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 이런 걸로 폭력 상황이 막 발생이 되는데. 경찰들도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폭력이 정말 아주 어디가 크게 다치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도 이주여성들한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라고 하면서. (S12)

가정폭력에 대한 판결문도 보면은, 선주민하고 다르게 이주여성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여성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어머니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을 한 것이 마치 이렇게 정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약간 폭력을 유발했다는 듯이. (S12)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여 유도하듯이 동의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인에게 보다 쉬운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진술을 받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질문을 하고 장애 여성이 “네”라고 답변하도록 한 사례였다.

담당 수사관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유도 신문은 하는 거죠. (...) 지적장애 여성분이 이 질문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S9)

젠더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2차 피해적 언어를 피해자 보호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적장애 여성이다 보니까 주 소통을 보호자인 아버님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문제적이기는 한데. (...) “제가 아버님한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자꾸 전제를 달면서 피해자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상황, 그리고 “수사 어느 정도 종결되면 이 피해자분 좀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S9)

외현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미등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에 수반하는 여러 장애지원 절차를 누락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역시도 기계적인 법적용으로 인해 법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장애 등록을 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긴 하지만, 그냥 비장애 여성으로 여긴 채 수사가 완전히 진행된 상황. 그래서 피해자 권리나 그거에 근거한 지원 조치 같은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S10)

## 다. 법집행 절차와 체계

### 1) 법집행 절차의 한계

#### 〈형식적 절차 집행〉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지만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피해자 권리 고지, 국선변호사 선임 고지, 증인지원심문관 안내 등 필요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계적으로 세팅되어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인식하였다.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민감하고 세심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본격적인 수사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고지를 읽어주며 안내하는 시간은 수사관의 태도를 갖추는 준비시간이며 상호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 권리 고지와 같은 절차는 단순한 절차의 의미를 넘어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무시되면서 이후 절차도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감수성이 또 갖춰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얘기하고, 참 그 시스템이 되게 기계적으로 세팅되는 형식인 것 같더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그냥 절차대로 집행하는 것. (S1)

법원에 증인 지원관 분들이 계시잖아요. (...) 잘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증인지원실에서. 그런데 그거를 전혀 받지 못하고... (S4)

피해자 권리 고지를 종이를 띄 주고 읽어라. 그다음에 자기네만 할 거 하고 끝이에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피해자 권리 고지했다고 하거든요. (S3)

사실 신변 보호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종이 몇 장을 딱 주시고, “이거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S8)

이미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피해자의 권리 고지해야 하는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피해자에게 진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 고지 내용을 수사관이 직접 이걸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는 그 과정도 수사관이 그 수사를 대하는 태도를 세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그냥, 약간 요식행위처럼 바뀌어 있어서 수사원들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S4)

###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꾼 지침위반〉

젠더폭력과 관련한 형사사법절차 이행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경찰수사 매뉴얼에 ‘무고’에 대해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고가 조금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S1)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침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담당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2차 피해가능성이 있는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고 결국 법집행공무원은 해당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하였다. 실제 사건의 피해자가 젠더폭력의 피해자였는지 무고죄 피의자인지 판단은 어렵지만 위 사례에 대한 우려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개인의 통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 문제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 그 수사가 끝나자마자 검사가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을 하고 무고 기소를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S1)

### 〈교묘하게 이용되는 지침〉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추가 진술을 받지 않는 사유로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는 이를 명목으로 피해자 진술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의사로 파악하였다.

이제 더 이상 지적장애 여성의 피해 진술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구나, 이미 본인에게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는 거죠. 평가받지 않을 말로. (S9)



###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부를 떠나 편의를 제공하도록 보장된 편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조사가 여과없이 진행되거나 더욱 심각한 피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인데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 해바라기 센터가 아닌 경찰서에서 진행한 사례인데요. (...) 피해 조사 과정에서 “택시를 충분히 안 탈 수도 있었는데 왜 탔냐”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왜’라는 질문. (S9)

피해자인 경우에는 미등록일지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출입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 경찰이 출입국에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S12)

통역이 필요한 이주민 젠더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시 가해자 퇴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통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해자 퇴정없이 피해자 진술이 진행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가해자를 퇴정시킨 다음에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이 그러면 다시 또 가해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가정폭력 사건이었는데, 약간 번거롭다라고 해서 여기 재판 안전하니까, 그냥 가해자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사가 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S12)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①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 증인 신문 시 진술조력인(변호인)의 동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지만, 친구나 가족 등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하면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가하더라도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방청석에 앉으라고 한다. 진술조력인인 변호인까지도 피해자 증인 신문 시 피해자 옆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이 피해자 증인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것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 자기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신뢰관계자 동석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허하세요. (...) 허가하는 경우에 이 신뢰관계자예요, 피해자 가까운 곳에 못 앉게 해요. (...) 방청석에 앉으라는 판사님도 계세요. (...) 피해자 변호사조차도 피해자 옆에 못 앉게 하시는 판사님도 봤어요. (S15)

#### 〈민감정보에 대한 배려 부족〉

스토킹범죄, 사이버성폭력 등 젠더폭력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와 젠더폭력의 높아지고 있는데, 법집행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다. 재판부가 피해자의견진술시 비공개 심리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인 퇴정을 불허한 상태에서 방청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불안함을 느끼게 만든 사례이다.

“피해자 지금 어디 있냐(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피해자의 정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요즘에는 성폭력 관련해서 디지털 성폭력이, 스토킹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하고 다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좀 그렇지 못하죠. (S15)

불법촬영물 고소를 하기 위해 증거물을 가지고 방문한 피해자를 별도 공간이동 없이 사무공간에서 증거물을 확인하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 같이 불법촬영 증거물을 보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다고 하니가 피해자를 앉혀놓은 상태도 아니고 다른 자리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서류를 막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거 본인 맞아요? 이거?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 그래서 피해자가 우물쭈물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 다른 또 수사관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라고 하면서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S3)

주변에 다른 경찰분들이 서서 이렇게 팔짱 끼고 옆에서 구경하고.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굉장히 위축되는 경험을 하시고, (S7)

지방의 소규모 도시에서 생활하는 피해자가 젠더폭력으로 신고한 사례에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출신학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를 공포로 느꼈다.

수사관이 초반부터 계속 어느 학교 나왔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 피해자분은 그 질문이 너무 공포스러웠대요. (...) 학교만 알면 대충이라도 이 정보만 있으면 본인의 이름과 학교, 친했던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소도시였는데. (S4)

법집행 과정 중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피해자에게 명백하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입회나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적 예고도 없이 현장에서 반복하여 들러줌으로써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도록 만든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 피해 당시를 녹음한 파일을, 그런 파일이 있는지도 존재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진술을 오라고 해서 그 파일을 그냥 들려준 거예요. 변호사도 없었고 피해자 혼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셨고 그거 마치고 실제로, 네, 극단적인 시도를 하실 뻔도 했던 분이었는데. (S4)

#### 〈압박으로 느껴지는 법집행기관의 연락〉

수사재판을 위해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지식이 제한적인 피해자의 경우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합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합의를 해야 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법집행기관에서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압박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피해자분이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그냥 재판부로부터 바로 전화를 받았대요. 재판부에서 “합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게 그냥 밑에 있는 실무관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였는데. (...) 법원에서 전화 왔으니까 그냥 합의해야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 재판부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는 것은 (...) 피해자를 오히려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피해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S15)

형사조정 절차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형사조정은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조정 이후에 후회하는 피해자가 발생한다. 형사조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형사

조정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물으면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하고 형사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성폭력 사건도 형사조정을 진짜 많이 보내요. (...)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30분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피해자분도 봤어요. 근데 형사조정에 대한 안내나, 형사조정이 어떤 것이라든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좀 제대로 안 되고. 검찰에서 또 전화 오니까,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S15)

####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태도 부재〉

젠더폭력 피해자가 만난 법집행공무원 중에는 피해자 관점을 견지하기보다 시혜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대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등 존중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젠더폭력 법집행공무원으로서의 태도에 앞서 기본적인 법집행공무원의 자세, 성인지 감수성에 앞서 인권감수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내가 널 도와주는 거다, 너는 나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 기본적으로 태도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고 굉장히 시혜적인? 내가 뭔가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S7)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조사 동석을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에요. (...) 계속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 그냥 인간으로서의 존중? 이런 게 없고. 직업 여성이다, 또는 그런 쪽의 종사자라고 약간 폄하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드는 거예요. (S15)

## 2) 법집행 체계의 한계

#### 〈법적 공백으로 인한 2차 피해〉

디지털 성폭력이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범죄로 등장하면서 법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은 법적 처벌을 위해 현행 법률로 처벌가능

한 증거를 요구한다. 이런 요구가 2차 피해가 되기도 한다.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의도치 않게 2차 피해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2차 피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적 처벌 규정의 공백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가해자가 특정 돼야 되는데, 누가 그런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이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당신의 ○○나 ○○를 캡처한 것을 채증 자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그걸 제출하면서 너무나도 모욕적이어서. (S7)

(그루밍 사건) 신고를 했을 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인터넷에 들어가지 말고 잘 밝게 지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건들이라든지. (S7)

#### 〈전담부에 포섭되지 않는 젠더폭력 사건들〉

성폭력 전담부에서는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알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담부에서 다양한 젠더폭력을 섭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사이버조사팀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담부의 좋은 점은 사례를 성폭력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생기는 이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 새로운 판례 같은 것도 전담 재판부는 알고 있어요. (S2)

디지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담 재판부에 잘 안 가기도 하거든요. (...) 사이버조사팀? 이런 데 가거나, 그게 디지털 경제, 사기 이런 거 조사하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하면은 전담 재판부는 알고 있지만 다른 부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판례도 잘 모르고... (S2)

수사가 이원화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 민원실에서는 처음에 접수할 때에는 소관 부서를 여성청소년팀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팀 가서 진술을 했더니, 유포는 사이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두 번 진술을 하고.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사 기관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는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S7)

### 〈업무기피, 보직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미투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증진 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보직 순환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젠더폭력 사건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전문성이 다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젠더폭력 관련 업무가 힘든 과업이며, 그에 비해 개인 고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분들의 업무 역량이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미투. 2018년 때가 가장 높았을 거예요. (...)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일하시던 전문적 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 경제라든지 일선에서 다른 사건을 하시던 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S15)

너무 안타까운 건 매년 관할서에 가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S3)

제가 해마다 교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왜 작년에 있었던 사람은 조금밖에 없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정폭력 사건이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대요. (S6)

전문성이 많이 쌓여서 잘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이 쌓이는 게 고과에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S3)

### 〈젠더폭력 사건과 다른 사건의 병합 문제〉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규정에 따라 사건 병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젠더폭력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건병합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가해자가 다수의 사건에 얽혀 있는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고등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는데, 고등법원이 피해자 변호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사건을 병합한 사례가 있었다.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 다수의 공범, 일반 형사 사건(예: 사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사건을 병합하면 판결문이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 모든 공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지방법원 재판부에 사건 분리를 요청했으나 지방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사건병합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분리를 거부하였다. 물론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병합사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건관계인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열람제한 신청이 무의미하게 된 상황이었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는 사건 병합의 문제는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디지털 성폭력과 같이 집단화된 사건,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별개의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기소가 된 거예요. (...) 피고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병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 기존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이고, 이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이 사건이 병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 그런데 이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그냥 병합을 해버린 거예요. (...) 아무런 통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병합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던 거죠. (S15)

#### 〈당사자로서 피해자 지위의 부재〉

피해자들은 젠더폭력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 신고,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사건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집행과정에서 피해자는 단지 참고인, 진술인으로 여겨져 주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집행 과정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어려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S8)

전반의 과정이 이 피해자를 사건의 주체로 전혀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은 점들. (S10)

피해자의 그런 상황이, 말하자면 참고인, 증인이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S5)

검사가 수사, 아니면 수사관의 의견을 가지고 검사가 대충 몇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아예 피해자가 여기에 개입이 안 될 수도 있고, 검찰에서는. (S6)

본인께서 고소를 하고 고소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건의 주체가 된다는 감각으로 나는 수사 과정에 임했는데, (...) 나는, 내 지인은 참고인, 법정에서 가도 진술을 하는 참고인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그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S1)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수인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확보된 증거물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기도 한다.

가해자도 여러 명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수사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서... (...)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다는 게 이 폭력의 특징이잖아요. (S7)

판결문 공개여부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지위는 없다. 판결문 비공개 신청은 피고인은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판결문 비공개 신청권이 없다. 즉, 피고인이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신청을 피고인이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비공개 신청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고인이 하지 않으면, 모든 판결문은 공개된 단 말이죠.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저희가 목격했잖아요. (S14)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사안이다. 헌법(제27호 5항)에서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규칙(제134조10)은 형사피해자가 증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

부부간에 일어났던 폭행과 강간 사건을 다뤘던 검사실에서 (...) 이 검사는 사실 피해자가 계속 본인이 피해 진술하겠다고 너무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S4)

#### 〈피해자 변호인 지위 불인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있으나, 피해자는 검사가 대신해서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증인신문도 할 수 없고, 증인신문사항도 낼 수 없고,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 검사가 검토해서 증거자료를 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피해자 변호인은 수사나 재판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주요 젠더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도 배제적이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의 지위 역시 배제되고 있다.



피해자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견서를 낼 수 있지만, 증인 신문도 할 수 없고, 증인 신문 사항도 낼 수 없고, 사실은 증거도 낼 수 없고, 그냥 참고 자료로 내거나, 아니면 검사한테 내서 검사가 검토해서, 검사로부터 증거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S14)

####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젠더폭력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아 재판정에 언론사나 방청객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측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개 심리로 진행하면서 가해자 측 신문, 공소장 및 판결문 낭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장 하나 하나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공소장 낭독할 때부터 심리 비공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 사건 할 때도, ○○ 사건의 공소장을 읽는 것 자체가 2차 피해예요 (...) 공소장 낭독, 이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겠다는데, 그조차도 비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S15)

판결문을 선고할 때, 다른 방청객들이 들어와 있거나,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 판결문의 작성이나 아니면 선고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S14)

공개, 비공개 여부를 떠나 피해자 증인신문 시 가해자 측에서 2차 피해성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여과 없이 법정에서 발언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피해자 증인 신문 시) 피고인의 변호인한테 질문하게 해요. 그러면 이미 질문을 다 들어야만, 그 질문이 부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사와 공판 검사와 피해자 변호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의 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입니다라고 해도 (...) 일단 그걸 내뱉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S15)

#### <판결문에서 민감정보 노출>

판결문에 범죄일람표가 첨부되는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로 디지털 성범죄는 파일 유포이기 때문에 파일경로, 제목 등이 있는데 이를 피해자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것을 그대로 범죄일람표 첨부 파일로 게재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법원 재판,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범죄일람표에 디지털 성범죄는 파일 유포이기 때문에, 파일 경로, 제목,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다 붙어 있어요. (...) 그냥 그대로 판결문에 뒤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좀 심각해요. (S15)

#### 〈국선변호, 무료법률 지원 부족〉

젠더폭력 피해자 중에는 국선변호 또는 무료법률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지원이 매우 적어 젠더폭력에 열의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인의 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국가지원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인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사건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거든요. 국선 변호사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 가해자는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S7)

어떤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장의 참여를 마지막 선고 때 참여를 해서 결과를 보러만 온다든지, 그리고 재판 중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이 “담당 변호사 참석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 하다가 되게 머쓱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S11)

국선 변호사들도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진짜 최근에도 저희 피해자한테 “왜 남자랑 단둘이 술을 마셨느냐” 이런 얘기를 진짜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S12)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다. 왜냐면 통역이 없다고 마치 아예 통역을 데리고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S12)

무료법률지원 변호사가 무고를 언급하며 그렇다면 국가가 무고사건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이 된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직원이 “우리가 이 형사 사건 성폭력 형사 사건을 조력하게 된다면은 그 형사 사건이 무고죄 사건일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무고 사건의 피해자, 무고 사건의 당사자를 조력하

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 법집행 공무원이라는 거가 경찰, 검찰, 재판관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범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었었고... (S1)

## 라. 대안

### 1) 체계·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

####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 적극 활용〉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2차 피해성 발언을 하는데 이에 대해 판사나 검사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에 의해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므로 이때 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송 지휘권을 재판 단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사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은 피고인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정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많이 재판 때 제시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지하고, 그것이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판사만 할 수 있거든요. (...)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권을 발휘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잘라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S3)

#### 〈법집행과정에서 피해자 지위의 정상화〉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에 대해 통보함으로써 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고 피해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피해자 지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수사재판 절차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피해자를 증인의 지위보다 더 격상해라라는 말은 부적절하고, 제자리를 찾게 하려면 (...) 하나의 지위를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러려면, 절차적 권리를 다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S15)

검정 수사권 조정 이후에 피해자의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통지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에게 사건관련 내용이 통지되고 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구속심문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의 보석, 영장기간 연장 등 가해자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 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곧 법집행 절차의 모든 진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석해줄 때 피해자 의사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석을 기각하면 상관없는데, 보석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 의사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고, 그에 대한 통지도 안 해주구요. (S15)

#### 〈법집행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 지위 인정〉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직접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건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 통지 대상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제외되어 있는 것도 개선사항 중 하나이다. 2012년 마련된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서 국선변호인에게 형사소송절차 통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선변호사’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통지 대상에 피해자 변호사가 없어요. 법 근거 규정이 없어요. (...) 경찰 수사 규칙이나 이런 거 안에다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아놔야... (S15)

형사소송절차 통지대상에 피해자 측 변호인을 포함시키고 변호인을 통해 형사조정 의사를 묻는다면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를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변호인에 대해 형사재판에서의 지위, 특히 정보 접근권(예: 영상물 증거 등사 요청, 증거 목록 요청 등이 거부당함), 재판에서의 권리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피해자 변호사가 지니는 피해자 형사재판에서의 지위, 특히 피해자 변호사의 어떤 정보 접근권이 라든가 아니면 재판에서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된다... (S14)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피해자 진술권 보장도 의무규정으로 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헌법 제27조 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10은 형사피해자가 증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형사소송규칙 제134조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개정으로 증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의견진술이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진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2장(증인신문)은 형사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증인 신청은 피해자(변호사) 측에서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증인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위와 같이 헌법,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피해자 의견진술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부에서는 젠더폭력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려는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의견진술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판부의 경우, 비공개 심리, 피고인 퇴정 등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헌법과 각 법률에서 규정한 피해자 진술권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 27조 5항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있고 (...)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 2015년 이후에 한 번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면서, 증인이 아닌 상태로도 진술하게끔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실은 피해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진술을 해왔거든요. (...) 재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술권을 행사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하는 거는 내가 허용을 하는데, 대신에 비공개도 안 된다, 피고인 퇴정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S15)

### 〈공간에 대한 배려〉

피해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집행공무원의 배려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배려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간적으로 편안하게 수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간의 배려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사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주는 되게 위압감과 위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배려도 좀, 공간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세팅 되는가, 작동되는가에 대한 것을 감각하는 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S1)

조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더러워서 수사관님 없어도 제가 거기 닦고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서 진술을 하면 피해자가 내가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더럽고. (S8)

### 〈충분한 예산, 인력 보강〉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은 법집행공무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충분한 인력 및 예산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동성 수사관을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 동성 수사관이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성 수사관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S8)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피해자분께서도 수사관이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아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요청을 못 드리고... (S7)

증인 지원관도 법원 안에서 너무 여러 역할을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어레인지하는 하지만 (...) 근데 여러 일을 동시에 받으시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S2)

국선변호사 또는 무료법률지원 변호인 역시 큰 범위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집행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제도를 지원하고, 역량있는 변호인들이 무료법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무료 법률 구조 기금) 기금이 매년 새로 배정된 이후에 7개월 정도면 다 소진이 되어서 (...) 항고라든지 재정 신청처럼 시급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들이 또 기금 처리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지. (S7)

사실은 너무 수입료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돼서, 역량 있는 분들도 국선 변호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성폭력 상담이나, 디지털 성범죄 법률 지원을 하시거나, 소송 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어떤 예산 지원이 사실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S8)

〈이주민,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더욱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의사소통의 한계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통역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민 및 외국인 젠더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통역이 가능한 통역사를 양성하고 상주인력으로 배치하는 것까지 제안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피해자들이나 난민, 중도 입국,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들이라든지 결혼이민여성 같은 언어 의사소통이 좀 쉽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 수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S7)

통역이 필요하나 묻고 통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받고 본인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 전문적인 사법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많이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S12)

통역에 대해서 걱정 없이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런 통역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공무원으로 집합 집행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S13)

〈젠더폭력 이해에 기반한 법적 근거 마련〉

궁극적으로, 공무원 집단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처벌을 위한 법적 구성요건이 특정 행동, 특정 사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만 찾으려는 시도로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게 된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젠더폭력의 이해에 기반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강간죄 개정 운동도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법적 근거를 바꿔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도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S9)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성폭력 피해 근거가 4조에 항거불능 조항인데. 그거 역시도 동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장애로 인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다 보니까, 수사관들이 이 장애 상태, 장애 정도에만 되게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 항거를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작 이 장애 여성이 그 권력관계 안에서 온전히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조적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는 그 안에서 뭐가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전혀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S9)

## 2) 성인지 감수성 체화를 위한 노력

### <피해자 관점에 기반한 젠더폭력 대응 교육 강화>

젠더폭력 법집행 절차에서 거시적인 법, 제도, 지침, 절차가 법집행공무원의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 면대면으로 만나는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적 태도이다. 열악한 거시체계 속에서 면대면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법집행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있는 성인지적 태도가 젠더폭력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수사재판의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계적 중립이 아닌, 피해자 관점을 견지한 젠더폭력 대응 태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객관성 유지, 공정, 중립을 내걸고 방어하지만, 실제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피해자의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폭력 피해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젠더폭력 사건 및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이해, 사건이 발생하



게 된 맥락과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우리 사회가 가해자 중심의 사회로, 가부장적이고 가해자 중심의 사회 구조가 이미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감각을 잃지 않도록 감수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 피해자 편을 들라는 게 아닌데 (...) 경찰에서 왜 피해자 편을 들라고 얘기하냐라고 하거든요. (S3)

그 수사관은 최소한 맨 처음에 딱 만나면 고소장을 받고 신고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러면 만약에 사건이 좀 시간이 흘렀으면 이 흐름 때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당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이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나 재판기관에서 어떻게 볼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피해자한테 지금 다시 고민해봐라. 고소하겠냐, 안 하겠냐. 고소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조사해 보겠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사관을 정말 만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너무 차별적으로 너무 좋은 사례였어요. (S3)

경찰은 사건진술서 작성을 위해 당연히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구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 안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해당 질문을 2차 피해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설명이 있으면 질문의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2차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법집행공무원들의 자세한 설명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젠더 감수성이 그냥 드러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성폭력이나”라던지, 수사하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일 수는 있어요. 필요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S15)

사전 설명이 너무 잘 돼서 하니까 피해자가 사실은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전혀 불편함 느끼지 않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되게 준비 되게 열심히 얘기를 하셨다고 저도 동석을 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S3)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 질문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잘해 주시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피해자분도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끼셨고, 시작하기 전에 그때 거기서 처음 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피해자 권리에 대한 홍보

영상 같은 걸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어떤 2차 피해라고 느끼거나 경찰이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인데도 피해자가 이것을 2차 피해라고 느끼는 것은 공격받고 뭔가 강압적인 느낌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S4)

수사절차에서 증거물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적절한 대응은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긍정적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피해 촬영물을 가져갔는데 “이거는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이거를 넘기기로 하고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저희는 최소한의 사람만 이걸 확인을 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S8)

경계성 지능에 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으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수사관이 고소장을 쓰시게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고요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이랑 아주 천천히... (S8)

구체적인 행동, 언어가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화되게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지침, 매뉴얼에 있는 대화의 방식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침, 매뉴얼 개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침과 매뉴얼 내용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화하여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휘 쓰시는 게. (...) 피해 상황 들으면서도 아이콘택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사람 진짜 나쁘네요.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그래서 이런 매뉴얼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교육을 받는데 이걸 실천을 하시는 거죠. (S8)

(매뉴얼)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말이 꼬일 정도로 너무 피해자분을 위한다는 그런 태도로 하셔서 (...) 배운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피해자분께서도 굉장히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S8)

더욱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젠더폭력 사건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기준이나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 있었다. 젠더폭력 관련 법집행공무원들은 판례에 따라 법기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젠더폭력사건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량의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그 목록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 (피해자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역량 같은 게 전문성으로 좀 목록화됐으면 좋겠다... (...) 판례만 인용해서 통 치잖아요. (S2)

### 〈내재적 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와의 면담 내용을 보면 법집행기관에서 젠더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S4는 이것을 ‘인지와 태도의 결합’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현장 출동 시에 현행법에 관련 실무 지침 같은 거, 이런 교육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S6)

2차 피해성 발언과 태도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 지금은 대부분의 경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는 알지만 그것이 실제 피해자를 대할 때 태도가 그 인지와 결합이 되느냐 분리되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4)

지침이나 절차가 모두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 내면의 내재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공무를 집행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각 개개인의 관점과 인식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어 절차는 집행하지만, 피해자 권리 고지문 한 장을 피해자에게 읽어보라고 줄 수도 있고, 함께 착석하여 피해자 권리 고지를 설명하며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사전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즉, 법집행의 절차적 행위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있어도 그 매뉴얼을 내가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다가 현장에서 구현해 내느냐는 계속 실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를 점검하고 있나? 저는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나 슈퍼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례 회의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구조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S3)

새로운 내용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습득해서 실제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S10)

오랜 기간 공무원 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 속에서 누적된 개인적 성인지적 가치나 신념이 변화되고 그것이 행동, 태도로 발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가치, 신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구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 경찰 본인의 살아왔던 어떤 생애를 통한 경험이 어떻게 이 개입에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S6)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가정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전보다는 가정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 사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다친 사람도 없고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요'라든지. (S6)

단순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되고, 무엇을 안되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인식 개선이나 문화적 변화가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와 관습과 정책과 문화와 모든 것을 통해서 관통해 왔던 맥락이 있는데 (...) 그렇게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것으로, 혹은 그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무슨 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방 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달라지거나 쉽게 변화하거나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좀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S5)

### 〈초기대면 법집행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피해자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폭력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기도 하였다. 젠더폭력은 초동수사에서 증거수집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공무원의 태도에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자를 대면하는 법집행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지구대에서 간 곳에서 사실은 이 피해자가 얘기하는 걸 어떠한 관점으로 듣고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향방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준강간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해자가 호소한 것에 기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추측해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 수사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게 현실인 상황에서 나중에 CCTV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없고 이러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감수성으로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 (S3)

처음에 접수하러 갔을 때 너무 통명스럽게 얘기한다거나, ‘확실해요? 이거 본인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그냥 접수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신고하러 가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S8)

### 〈의사결정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젠더폭력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법집행공무원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직의 경향성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처리에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그 작은 단위에서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 왜냐하면 밑에 실무선에서 감수성이 높아도, 말하자면 경감이나 경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감수성이 없을 때... (S5)

간부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군대 내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간부급 교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간부가 변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S8)

## 〈조직의 보편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

조직의 특정한 어떤 지점에서 법집행공무원의 전문성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피해자가 어떤 지점에서 누구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법집행공무원의 보편적인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민원실 담당관들이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경찰서에 어떤 부서이나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서 모든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역시 젠더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보편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특성상 업무를 담당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직 순환이 일어나 결국은 조직의 모든 법집행공무원이 성인지 감수성 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은 단순히 젠더폭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범죄 등 다른 류의 범죄와도 관련이 있어 다양한 부서의 법집행공무원이 공조를 하며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젠더폭력 전담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기보다 전 조직인원의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검찰에 대한 교육이나 검사의 젠더 감수성 부분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계속 검사들이 바뀌잖아요. 그 검사가 계속하고 있고, 한 번 교육받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조부 검사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 검사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있어야지... (S15)

경찰, 담당 경찰이 아니어도 경찰서에서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담당 수사관만큼이나 아주 잠깐 동안의 전화 통화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했을 때 피해자들이 그 한마디로 신고를 결심하거나 혹은 신고를 그냥 포기해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만나는 모든 일선에 계신 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S4)

정보가 없는 분들은 그냥 경찰서에 가서 이거 신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종합민원실이나 그냥 그 앞에 누구든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 신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 바로 이제, 바로 신고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S4)

법집행공무원 중에서는 경찰, 검사, 판사처럼 직접적으로 젠더폭력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가사조사관이나 양형조사관, 그 외 민간위원들도 젠더폭력 피해자와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 소속 인력 전반에 걸친 보편적 교육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가사조사관은 실제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혼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때 만나게 되는 법집행공무원이다. 가사조사관은 양육권 조정을 할 때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모성을 강조하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하여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법원 가사조사관에 의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낮음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 조사관들이 남성분들이 많은데, 가해자하고 라포 형성이 먼저 되어 있어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S5)

일반 가사 사건에 관한,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형사 사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만나게 되는 법원에서의 법집행 관련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업지요. 주로 좀 떨어지는 거죠. 감수성이. 그래서 빈번하게 이런 걸 당하고 있다라는. (S6)

법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관련 외부 민간위원들, 예로 가사조정위원 등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사조정위원으로 법원 내 뿐만이 아니고, 법원 외부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은퇴하신 분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 엄마로서의 모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S13)

#### 〈판결문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 공소장 낭독,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여과 없이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 중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중 판결문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판결문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성폭력 언론보도에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판결문 작성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성폭력 관련 보도 관련해서는 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언론사들이 자정 능력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판결 선고나 아니면 판결문 작성과 관련해서, 이런 2차 가해나 아니면 젠더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S14)

### 〈성인지 감수성의 기반이 되는 인권감수성 강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2차 피해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사사법절차 중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은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특히 아시아계 여성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지 감수성 이전에 인권감수성 강화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그 검사님이 이젠 젠더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권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머니” 이런 식. (...) 피해자분이 나오셔서, “변호사님, 검사는 다 저렇게 말하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식으로 말하냐,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S15)

최소한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무엇이고 2차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실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S3)

흔히 말하는 제3세계, 아시아계 이런 쪽 이주여성들한테는 한국어를 잘하냐, 얼마나 한국에 잘 적응을 했느냐 이러면서, 아이를 키울 자격, 양육권을 줘도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S12)





## 제 5 장

#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김영중, 이도경





# 제5장 |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 제1절 젠더폭력의 정의 및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 1. 젠더폭력과 성폭력 범죄의 정의 및 유형

이 연구에서 젠더폭력이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일컫는다. 이 중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일부 고유한 범죄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은 폭행, 상해, 모욕 등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진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개별 범죄로 특정되었지만,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축적된 판례나 수사사례가 거의 없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범죄의 하나로 여겨져 왔고, 성착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형벌이 비교적 높지 않아서인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고, 판례도 역시 범정이 경하다는 이유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성희롱은 그 정도에 따라 개별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그 유형이 다양한 데다가 별도의 처벌법도 없으며, 특유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이 장에서는 젠더폭력 사건 중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판례와 수사자료도 같은 이유로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2년 11월 현재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주요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이다.

「형법」에서는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요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에서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31장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경우,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 등의 죄도 성착취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며, 여기서 성폭력범죄에는 앞의 형법상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본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범죄들도 포함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특수강도(준)강간·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간·강제추행(제4조), 특수강간·강제추행, 합동강간·강제추행(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제5조),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반포 등(제14조의2),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제14조의3), 성폭력 범죄의 미수범(제15조), 성폭력 범죄의 예비·음모(제15조의2)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상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처벌 되는 성범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유사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예비·음모(제7조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제15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6조)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균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 2.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성폭력 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20년 2022년 수정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2022년 7월 4일 수정을 거쳐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sup>104)</sup>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피해자에 대한 일반강간(제1유형), 청소년강간(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3유형), 강도강간(제4유형),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제1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3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5유형)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균형법상 성범죄로 나눈다. 그 외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각 범죄 유형으로 나누어 기준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 가. 13세 이상 사람에 대한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제1유형은 일반강간, 제2유형은 청소년 강간, 제3유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제4유형은 강도강간이다. 제1유형인 일반강간은 기본형량이 2년 6월부터 5년이며, 감경할 경우 1년 6월에서 3년, 가중할 경우 4년에서 7년으로 징역형의 최저는 1년 6월이고, 최대는 7년이다. 여기서 일반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경우와 준강간·준유사강간한 경우가 포함된다.

제2유형은 청소년 강간이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을 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와 위력·위력으로 간음, 유사성교를 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가 포함된다. 이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기본 형량은 징역형 기준 4년부터 7년이며, 감경할 경우 2년 6월부터 5년, 가중할 경우 6년에서 9년이다. 이 유형의 경우 최저형량은 2년 6월이고, 최고형량은 9년이다.

104)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성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제3유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수한 유형의 강간범죄에 대해 규정한다. 여기에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이 결합된 범죄(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흥기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과 준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강간과 준강간이 포함된다. 이 유형은 징역형의 기본형량이 5년부터 8년이며, 감경할 경우 3년 6월부터 6년, 가중할 경우 7년부터 10년이다.

제4유형은 강도강간이다. 여기에는 강도가 13세 이상을 강간한 경우(형법 제339조)와 특수강도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가 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6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13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강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05)</sup>

---

105)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29면.

[표 5-1] 일반강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2009~2022)

죄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20	2022
일반 강간	기본	2년 6월 ~ 4년 6월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sup>106)</sup>	2년 6월 ~ 5년
	감경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가중	3년 ~ 6년	<u>4년 ~ 7년</u>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청소년 강간	기본	2년 6월 ~ 4년 6월 <sup>107)</sup>	<u>5년 ~ 8년</u>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4년 ~ 7년
	감경	1년 6월 ~ 3년	<u>3년 ~ 5년 6월</u>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u>2년 6월 ~ 5년</u>
	가중	3년 ~ 6년	<u>6년 ~ 9년</u>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친족 관계· 주거 침입· 특수 강간	기본	4년 ~ 6년	<u>5년 ~ 8년</u>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감경	3년 ~ 5년	<u>3년 ~ 5년 6월</u>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u>3년 6월 ~ 6년</u>
	가중	5년 ~ 8년	<u>6년 ~ 9년</u>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u>7년 ~ 10년</u>
강도 강간	기본	7년 ~ 10년	7년 ~ 10년	7년 ~ 10년	7년 ~ 10년	<u>8년 ~ 12년</u>	8년 ~ 12년	8년 ~ 12년
	감경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u>9년</u>	5년 ~ 9년	5년 ~ 9년
	가중	9년 ~ 13년	9년 ~ 13년	9년 ~ 13년	9년 ~ 13년	<u>10년 ~ 15년</u>	10년 ~ 15년	10년 ~ 15년

106) 유사강간은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함.

107) 친족관계 강간은 청소년 강간과 양형의 일반적 기준이 같았음.

형법상 강간죄(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형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징역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상한은 30년이며, 가중하는 때에는 50년이다(제42조). 따라서 단순히 형벌만으로 보면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 30년 이하임에도 강간죄의 일반적 기준만으로는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까지이므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형법상 법정형이 2년 이상 30년 이하인데 일반 강간보다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2/3으로 감경하므로 더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유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5년 ~ 30년)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유사강간의 법정형은 강간, 유사강간과 같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도 강간, 유사강간과 형벌이 같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보면 무기, 5년 ~ 30년인데 양형기준은 4년 ~ 7년이 기본이고, 감경할 경우에는 2년 6월 ~ 5년, 가중할 경우에는 6년 ~ 9년으로 무기징역은 양형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유기징역의 상한도 9년에 불과하여 법률 규정과는 거리가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2010년에 한 차례 기준 형의 상향이 있었는데, 법령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014년에 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되고, 유사강간의 징역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양형기준에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2022년 양형기준에서는 감경할 경우 징역형 하한이 3년에서 2년 6월로 낮아졌다. 성폭력처벌법이 2020년에 개정되어 주거침입강간 등의 징역형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수한 유형의 강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찬가지로 법정형과 균형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 30년의 징역인데, 양형기준은 기본이 5년 ~ 8년, 가중할 경우 7년 ~ 10년에 불과하다. 하한의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정형과 부합하게 되고, 상한선은 차이가 있다.

강간죄에서 양형기준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는 범죄는 강도강간이다. 성폭력처벌법상의 강도강간만 살펴보면 이 범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 3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범죄 유형은 2012년과 2022년 현재의 성폭력처벌법상 형벌이 같다. 2013년도에 이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한 차례 양형기준의 상향이 있었으나, 여전히 그 기준은 법정형에 미치지 못한다. 또 법에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어떤 경우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강간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로서 행위 측면에서 감경요소는 없으며, 행위자적인 감경요소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이 있다. 일반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는 소극적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삼고 있으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만취상태가 감경인자로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성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만취상태가 감경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인자에는 행위자요소로 심신미약이 있다. 물론 살인과 강간 등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만취상태 등이 감경요소에서 제외 된다.

2021년에는 양형인자로서 “2차 피해 야기”가 추가되었다. 여기서 2차 피해 야기 행위란 “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치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sup>108)</sup>

“진지한 반성”이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sup>109)</sup>

108) 양형위원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 2차 피해 야기([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2022. 12. 19. 최종접속)

109) 양형위원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 진지한 반성([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2022. 12. 19. 최종접속)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sup>110)</sup>

#### 나. 13세 이상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범죄를 제1유형인 일반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2유형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유형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유형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죄를 범한 자의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유형인 특수강도(미수 포함)의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으로 구성한다.

---

110) 양형위원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 처벌불원([https://sc.scourt.go.kr/sc/krc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https://sc.scourt.go.kr/sc/krc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2022. 12. 19. 최종접속)

[표 5-2]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2009-2022)

죄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20	2022
일반 강제 추행	기본	6월 ~ 2년	6월 ~ 2년	6월 ~ 2년	6월 ~ 2년	6월 ~ 2년	6월 ~ 2년	6월 ~ 2년
	감경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가중	1년6월 ~ 3년	1년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4년 8월
청소년 강제 추행	기본	6월 ~ 2년 <sup>111)</sup>	6월 ~ 2년 <sup>112)</sup>	1년 8월 ~ 2년 6월 <sup>113)</sup>	1년 3월 ~ 2년 6월	1년 8월 ~ 3년 4월	1년 8월 ~ 3년 4월	1년 8월 ~ 3년 4월
	감경	~ 1년	~ 1년	1년 ~ 2년	9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 2년	1년 ~ 2년
	가중	1년6월 ~ 3년	1년6월 ~ 3년	2년 8월 ~ 4년 8월	2년 ~ 3년 6월	2년 8월 ~ 4년 8월	2년 8월 ~ 4년 8월	2년 8월 ~ 4년 8월
친족 관계, 특수 강제 추행	기본	2년 ~ 4년	2년 ~ 4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3년 ~ 6년
	감경	1년6월 ~ 3년	1년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가중	3년 ~ 6년	3년 ~ 6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5년 ~ 8년
주거 침입 강제 추행	기본	2년 ~ 4년	2년 ~ 4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4년 ~ 7년
	감경	1년6월 ~ 3년	1년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3년 6월 ~ 5년
	가중	3년 ~ 6년	3년 ~ 6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수 강도 강제 추행	기본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7년 ~ 11년	7년 ~ 11년	7년 ~ 11년
	감경	5년 ~ 7년	5년 ~ 7년	5년 ~ 7년	5년 ~ 7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가중	7년 ~ 11년	7년 ~ 11년	7년 ~ 11년	7년 ~ 11년	9년 ~ 13년	9년 ~ 13년	9년 ~ 13년

111) 친족관계 강제추행도 같음.

112) 친족관계 강제추행도 같음.

113)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포함.

제1유형인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은 하한이 1월이므로 형의 범위는 1월 ~ 10년이다.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상한은 15년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형벌만으로 보면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징역형의 법정형이 1월 이상 10년 이하임에도 양형기준상으로는 가중처벌하더라도 1년 6월에서 4년 8월로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다.

제2유형인 청소년강제추행은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 제4항), 청소년 위계·위력 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강제추행의 형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2년 ~ 30년, 가중시 2년 ~ 45년)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형벌은 청소년 강제추행과 같다.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가중한 양형기준이 2년 8월 ~ 4년 8월로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

제3유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흥기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형벌은 5년 이상(5년 ~ 30년)의 유기징역이고 준강제추행도 형벌이 같다. 흥기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의 형벌도 친족관계의 경우와 같이 5년 이상(5년 ~ 30년)의 유기징역이며,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다. 이 유형은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5년 ~ 8년으로 하한은 경중이 맞지만 상한은 최대가 8년으로 법정형과는 차이가 크다.

제4유형은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이다. 이 유형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를 의미한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7년 ~ 30년)의 유기징역이다. 이 유형의 경우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가중하였을 때 양형기준이 6년 ~ 9년으로 법정형보다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

제5유형은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으로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10년 ~ 30년)이다. 이 유형은 다른 범죄보다 기본형이 높으므로 가중처벌할 경우 9년 ~ 13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앞의 경우보다는 격차가 좁혀졌으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로서 행위 측면에서 감경요소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이며, 행위자나 기타 감경요소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이 있다. 일반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는 소극적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가중요소로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상태 야기 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폭력 실행전과, 2차 피해 야기 등이 있다.

#### 다. 13세 이상 장애인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13세 이상 장애인과 공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이다. 제2유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공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추행(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이다. 제3유형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을 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 그 사람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추행을 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이다. 마지막 4번째 유형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준)강간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이다. 2010년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었으나, 2012년 개정에서 유형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 부문에 대한 양형기준은 행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기본을 8월부터 시작하여 최대 3년으로 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강간이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범죄에 대한 형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 30년으로 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징역형의 상한은 12년에 불과하다.

[표 5-3]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2012-2022)

죄명	구분	2012	2013	2020	2022
의제추행	기본	8월 ~ 2년	8월 ~ 2년	8월 ~ 2년	8월 ~ 2년
	감경	~ 10월	~ 10월	~ 10월	~ 10월
	가중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의제간음 · 강제추행	기본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감경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가중	4년 ~ 6년	4년 ~ 6년	4년 ~ 6년	4년 ~ 6년
유사강간	기본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감경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가중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강간	기본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감경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가중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 라.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제1유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한 경우(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이며, 제2유형은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13세 미만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자)(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이다. 제3유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제5항)이며, 제4유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준)유사강간과 위계·위력에 의한 유사성교이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5유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준)강간(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위계

· 위력 간음(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한 경우(형법 제339조), 특수강도가 13세 미만자를 (준)강간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다.

13세 미만자가 피해자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에 마련된 이후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의제강제추행은 그 상한과 하한이 너무 낮고, 강간은 범죄의 중대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표 5-4]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양형기준(2009-2022)

죄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20	2022
의제 강제 추행	기본	2년 ~ 4년	2년 ~ 4년	8월 ~ 2년	8월 ~ 2년	8월 ~ 2년	8월 ~ 2년	8월 ~ 2년
	감경	1년 ~ 3년	1년 ~ 3년	1년 ~ 3년	~ 10월	~ 10월	~ 10월	~ 10월
	가중	3년 ~ 6년	3년 ~ 6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의제 강간	기본	2년 ~ 4년	2년 ~ 4년	3년 6월 ~ 6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감경	1년 ~ 3년	1년 ~ 3년	2년 6월 ~ 4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가중	3년 ~ 6년	3년 ~ 6년	5년 ~ 8년	4년 ~ 6년	4년 ~ 6년	4년 ~ 6년	4년 ~ 6년
강제 추행	기본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감경	1년 ~ 3년	2년 6월 ~ 4년	4년 ~ 7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가중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유사 강간	기본	4년 ~ 6년	5년 ~ 8년	5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감경	3년 ~ 5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가중	5년 ~ 8년	7년 ~ 10년	7년 ~ 10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강간	기본	5년 ~ 7년	7년 ~ 10년	7년 ~ 10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감경	4년 ~ 6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가중	6년 ~ 9년	9년 ~ 13년	9년 ~ 13년	11년 ~ 15년	11년 ~ 15년	11년 ~ 15년	11년 ~ 15년

#### 마.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

군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과 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군인에 대한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4), 군인에 대한 강간(군형법 제92조)과 준강간(군형법 제92조의4)이다.

[표 5-5]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0-2022)

구분	구분	2020	2022
군인등 강제추행	기본	10월 ~ 2년 6월	10월 ~ 2년 6월
	감경	6월 ~ 1년 4월	6월 ~ 1년 4월
	가중	2년 ~ 4년	2년 ~ 4년
군인등 유사강간	기본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감경	1년 6월 ~ 3년	1년 6월 ~ 3년
	가중	4년 ~ 7년	4년 ~ 7년
군인등 강간	기본	4년 ~ 7년	4년 ~ 7년
	감경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가중	6년 ~ 9년	6년 ~ 9년

#### 바. 성폭력 범죄로 인한 상해, 치상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성폭력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간 등 유형을 구분하여 [표 5-6]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최소 2년 6개월에서부터 최대 6년으로, 주거침입 등 강간에 의한 상해나 치상의 경우 최소 6년에서 최대 16년까지 그 범위가 비교적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표 5-6]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피해, 치상에 대한 양형기준(2009~2022)

범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20	2022
일반강제추행	기본	2년 ~ 5년	2년 ~ 5년	2년 ~ 5년	3년 ~ 5년	3년 ~ 5년	3년 ~ 5년	3년 ~ 5년
	감경	1년6월 ~ 4년	1년6월 ~ 4년	1년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가중	3년 ~ 6년	3년 ~ 6년	3년 ~ 6년	4년 ~ 6년	4년 ~ 6년	4년 ~ 6년	4년 ~ 6년
일반강간	기본	3년 ~ 6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감경	2년6월 ~ 4년6월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가중	4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본	-	-	-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감경	-	-	-	3년 6월 ~ 6년	3년 6월 ~ 6년	3년 6월 ~ 6년	3년 6월 ~ 6년
	가중	-	-	-	7년 ~ 10년	7년 ~ 10년	7년 ~ 10년	7년 ~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기본	-	-	-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감경	-	-	-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가중	-	-	-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기본	3년 ~ 6년	4년 ~ 7년	4년 ~ 7년	7년 ~ 11년	7년 ~ 11년	7년 ~ 11년	7년 ~ 11년
	감경	2년6월 ~ 4년6월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가중	4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10년 ~ 14년	10년 ~ 14년	10년 ~ 14년	10년 ~ 14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기본	5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8년 ~ 13년	8년 ~ 13년	8년 ~ 13년	8년 ~ 13년
	감경	4년 ~ 6년	5년 ~ 8년	5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가중	6년 ~ 10년	7년 ~ 11년	7년 ~ 11년	12년 ~ 16년	12년 ~ 16년	12년 ~ 16년	12년 ~ 16년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범죄 유형보다 법정형이 중하므로 징역형의 하한과 상한이 더 높게 구성되어 있다. 양형기준의 하한이 가장 낮은 범죄는 의제강제추행 유형으로 감경할 경우 2년 6월이 하한이며, 상한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표 5-7]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성범죄 상해, 치상에 대한 양형기준(2009-2022)

죄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20	2022
의제 강제 추행	기본	3년 ~ 6년	3년 ~ 6년	3년 ~ 6년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3년 ~ 5년 6월
	감경	2년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가중	4년 ~ 8년	4년 ~ 8년	4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의제 강간	기본	3년 ~ 6년	3년 ~ 6년	3년 ~ 6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4년 ~ 7년
	감경	2년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가중	4년 ~ 8년	4년 ~ 8년	4년 ~ 8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6년 ~ 9년
강제 추행	기본	3년 ~ 6년	5년 ~ 8년	5년 ~ 8년	7년 ~ 11년	7년 ~ 11년	7년 ~ 11년	7년 ~ 11년
	감경	2년6월 ~ 4년	3년 ~ 6년	3년 ~ 6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8년
	가중	4년 ~ 8년	7년 ~ 10년	7년 ~ 10년	10년 ~ 14년	10년 ~ 14년	10년 ~ 14년	10년 ~ 14년
유사 강간	기본	6년 ~ 9년	7년 ~ 10년	7년 ~ 10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8년 ~ 12년
	감경	5년 ~ 7년	5년 ~ 8년	5년 ~ 8년	5년 ~ 9년	5년 ~ 9년	5년 ~ 9년	5년 ~ 9년
	가중	7년 ~ 11년	8년 ~ 12년	8년 ~ 12년	11년 ~ 15년	11년 ~ 15년	11년 ~ 15년	11년 ~ 15년
강간	기본	6년 ~ 9년	9년 ~ 13년	9년 ~ 13년	9년 ~ 14년	9년 ~ 14년	9년 ~ 14년	9년 ~ 14년
	감경	5년 ~ 7년	7년 ~ 10년	7년 ~ 10년	6년 ~ 10년	6년 ~ 10년	6년 ~ 10년	6년 ~ 10년
	가중	7년 ~ 11년	11년 ~ 15년, 무기	11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군형법상 성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은 2년 6월이 징역형의 하한이며, 가중할 경우에는 상한이 9년으로 되어 있다. 유사강간이나 강간의 경우에는 하한이 3년 6월이고 최대 10년까지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표 5-8] 군형법상 성범죄로 인한 상해, 치상의 양형기준(2020-2022)

죄명	구분	2020	2022
군인등 강제추행	기본	4년 ~ 7년	4년 ~ 7년
	감경	2년 6월 ~ 5년	2년 6월 ~ 5년
	가중	6년 ~ 9년	6년 ~ 9년
군인등 유사강간 ·군인등 강간	기본	5년 ~ 8년	5년 ~ 8년
	감경	3년 6월 ~ 6년	3년 6월 ~ 6년
	가중	7년 ~ 10년	7년 ~ 10년

#### 사. 성폭력 범죄로 인한 치상, 살인

이 부분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강간살인이나 강제추행살인은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강간치사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는 사형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데, 강간살인과 강제추행살인을 같이 묶어서 규정하면서 가중요소가 작용하였음에도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25년으로 두는 것은 법정형을 보아도 이해가 어렵다. 또 어떠한 경우에 무기징역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표 5-9] 성범죄로 인하여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2009-2022)

죄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20	2022
강간치사, 유사강간 치사, 강제추행 치사	기본	8년 ~ 11년	11년 ~ 14년	11년 ~ 14년	11년 ~ 14년	11년 ~ 14년	11년 ~ 14년	11년 ~ 14년
	감경	6년 ~ 9년	9년 ~ 12년	9년 ~ 12년	9년 ~ 12년	9년 ~ 12년	9년 ~ 12년	9년 ~ 12년
	가중	10년 ~ 15년	12년 ~ 15년, 무기	12년 ~ 15년, 무기	12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강간살인, 강제추행 살인	기본	12년 ~ 15년, 무기	12년 ~ 15년, 무기	17년 ~ 22년 <sup>114)</sup>	17년 ~ 22년 <sup>115)</sup>	20년 이상, 무기 <sup>116)</sup>	20년 이상, 무기 <sup>117)</sup>	20년 이상, 무기 <sup>118)</sup>
	감경	11년 ~ 13년	11년 ~ 13년	14년 ~ 18년	14년 ~ 18년	17년 ~ 22년	17년 ~ 22년	17년 ~ 22년
	가중	무기 이상	무기 이상	20년, 무기 이상	20년, 무기 이상	25년 이상, 무기 이상	25년 이상, 무기 이상	25년 이상, 무기 이상

#### 아.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sup>119)</sup>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때에는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를 비교하여 주요 긍정사유가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주요 부정사유가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한다.<sup>120)</sup>

114) 살인죄 양형기준 중 제4유형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됨.

115) 살인죄 양형기준 중 제4유형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됨.

116) 살인죄 양형기준 중 제4유형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됨.

117) 살인죄 양형기준 중 제4유형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됨.

118) 살인죄 양형기준 중 제4유형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됨.

119)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55면.

12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56면.

[표 5-10]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li> <li>• 특별보호장소에서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li> <li>•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반복적 범행</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위험한 물건의 사용</li> <li>• 윤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li> <li>• 임신</li> <li>• 중한 상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li> <li>• 처벌불원</li> </ul>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li> <li>• 약물중독,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 범행</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li> <li>• 피고인이 고령</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여기서 우발적인 범행이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sup>121)</sup>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경우는 위의 [표 5-10]에서 제시한 사유 중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만

121) 양형위원회-성범죄 양형기준-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2022. 11. 29. 최종접속).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이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긍정사유가 부정사유 보다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강간이나 유사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 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sup>122)</sup>

### 3.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년 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2021년 12월 6일 한 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최근 양형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제14조의2),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제14조의3)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제1유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이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2유형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나 상영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제공, 그 목적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나 상영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제4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정황을 알고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제5유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다.<sup>123)</sup>

2022년 11월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24)</sup>

122) 양형위원회-성범죄 양형기준-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2022. 11. 29. 최종접속).

123) 양형위원회-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형종 및 형량의 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2022. 11. 29. 최종접속).

124) 양형위원회-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아동·청소년성착취물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2022. 11. 29. 최종접속).

[표 5-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무기, 5년 이상	2년 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5년 이상	2년 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 등	3년 이상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3년 이상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 등	1년 이상	6월 ~ 1년 4월	10월 ~ 2년	1년 6월 ~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의 제1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특정 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이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유형은 위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임대, 제공하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와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를 말하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유형은 영리목적 촬영물 배포의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제4유형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를 말한다.<sup>125)</sup>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26)</sup>

[표 5-12]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7년 이하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7년 이하	4월 ~ 1년 4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3년 이상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3년 이하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125) 양형위원회-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형종 및 형량의 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2022. 11. 29. 최종접속).

126)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692-693면.

허위영상물 등 반포범죄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제1유형은 촬영에 의한 편집물,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이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제2유형은 제1유형의 편집이나 합성, 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후에 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를 말하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제3유형은 영리목적 반포 등의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2 제4항)를 의미한다.<sup>127)</sup> 허위영상물 등 반포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28)</sup>

[표 5-13] 허위영상물 등 반포 관련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5년 이하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2	반포 등	5년 이하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7년 이하	4월 ~ 1년 4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범죄는 제1유형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유형인 이러한 협박을 통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그 상습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제3항)으로 나누어진다.<sup>129)</sup>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30)</sup>

127) 양형위원회-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형종 및 형량의 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2022. 11. 29. 최종접속).

128)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691-692면.

129) 양형위원회-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형종 및 형량의 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6/digital_sexual_01.jsp) 2022. 11. 29. 최종접속).

130)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689면.



[표 5-1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1년 이상	9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3년 이상	1년 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sup>131)</sup> 이 범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표 5-15]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대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는 다른 디지털성범죄와 차이가 없으나, 범죄의 성격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경우에도 가중사유로 작동하지 않는다.<sup>132)</sup>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sup>133)</sup>은 다음과 같다.

13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693면.

13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688면.

13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2, 55면.

[표 5-16]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li> <li>• 특별보호장소에서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li> <li>•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li>• 반복적 범행</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위험한 물건의 사용</li> <li>• 윤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li> <li>• 임신</li> <li>• 중한 상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li> <li>• 처벌불원</li> </ul>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li> <li>• 약물중독,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 범행</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li> <li>• 피고인이 고령</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위의 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sup>134)</sup>

134) 양형위원회-성범죄 양형기준-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2022. 11. 29. 최종접속).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경우는 위의 [표 5-16]에서 제시한 사유 중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이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긍정사유가 부정사유가 많은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강간이나 유사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sup>135)</sup>

#### 4. 소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1일에 최초 시행된 이래, 2010년, 2012년, 2012년, 2013년, 2020년, 2022년 수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의 기준은 2022년 7월 4일에 개정된 것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대체로 법정형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30년 이하인데, 일반 강간보다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2/3으로 감경되므로 일반 강간범죄보다도 경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성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강간범죄의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 협박,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부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어느 부위를 침해했느냐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한편 강도강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10년 ~ 3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3년도에 한차례 하한과 상한이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법정형에 미치지 못한다. 또 법에서는 형별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어떤 경우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강간·강제추행 살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강간치사의 형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다. 하지만 양형기준표에서는 사형을 부과하는 기준을 언급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무기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중요소가 작용하였음에도 유기징역형을 두고 또 그 기간도 25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정형과의 균형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무기징역형

135) 양형위원회-성범죄 양형기준-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2022. 11. 29. 최종접속).

과 유기징역형의 선택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강간죄의 감경요소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이 있다. 하지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왜 하였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일반 양형 인자에서의 감경요소는 소극적 가담, 강압에 의한 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등이 있다. 그러나 상당금액을 공탁하였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서 타인에게 맡겨서 반성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실무에서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진지한 반성이나 금액 공탁을 형벌 자체를 감경하는 요소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중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추행은 가중요소 중 하나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를 든다. 성적인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교체되었다. 다만 수치심과 불쾌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이 용어만 교체되어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불원과 상당 금액 공탁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감경인자로 작용하는 동시에 집행유예의 요소도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 즉 이 인자를 충족시킴으로써 형을 낮게 받으면서 집행유예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면에서 집행유예에서는 제외하고 감경인자로만 고려하되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적절한 형벌 부과 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는 피해자가 존속이거나 범행에 취약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인 경우와 같이 가족 또는 친족 중 일부에 대한 폭력을 양형 가중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협박이나 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가정 내 폭력의 대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양형에서는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양형에서 반영하여 가정 내의 폭력에 대하여 법원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제2절 성폭력 범죄 판결의 수사자료와 판결문 분석

### 1. 분석 대상 판결문 선정 기준

연구의 목적이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최근인 2020년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배포,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추출하였다. 우선 일반 강간 사건은 법률적 쟁점 외에 특별히 다를 만한 사건이 보이지 않아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후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주요 판결을 그 대상으로 조사하여 대상사건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근 판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된 미투사건으로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을 분석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sup>136)</sup>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심 관할법원의 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결과에 따라 열람이 승인된 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입수, 등사하였다. 다만, 앞에서 선정한 사건 중 일부 사건(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군인등강간치상 사건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의 경우 일정한 사유를 들어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기록열람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수사기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등), 공소장(검사), 공판조서(법정진술), 제1심, 제2심 판결문 등 증거서류와 공판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이 기록에서 나타나는 수사기관, 판사 등의 성인지 감수성 요소(피해자 의심 비난, 가해자 옹호, 두둔,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진술 요구, 강간통념, 성역할 고정관념 등)를 평가하였다.

136) 제59조의2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 강간 등 사건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108 판결

### 가. 인정된 사실관계

이 사건은 강간,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등 여러 범죄를 경합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으로 이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사실관계 중 강간 부분만 따로 떼어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4. 모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A시에 있는 B모텔에서 피해자에 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노449 판결).

### 나.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은 2017. 4. 19.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2017. 4. 24.에는 피해자가 정신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7. 4. 28.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조사시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1차로 경찰에 출석하여 2017. 4. 20. 진술을 하였고(이 사건은 경찰 인지 사건임), 2차로 2017. 4. 23., 3차로 같은 해 4. 26.에 진술을 하였다. 피의자는 2017. 5. 4.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강간 부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에서는 2017. 5. 17. 피해자조사가 있었으며, 같은 해 5. 23.에 한 차례 더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은 2017. 5. 24.에 이루어졌다. 검사는 강간 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제1심, 제2심, 제3심,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에 대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총 5번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경찰에서는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는 최초 진술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보고 싶다’ 등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디지털 증거분석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거짓 진술을 하”며,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조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내사보고, 피의자의 핸드폰 통화내역, 피해자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분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의자의 강간 부분에 대해 기소의견(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정에서는 경찰관의 강간통념이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에 임의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제1심 재판 당시 공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지명이나 이름 등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화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2017.7.19. 피해자 증인신문 속기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에게

문 : 그러면 친정엄마가 O에서 일은 하고 있나요?

답 : 예, 하고 계십니다.

문 : 그리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딸이 있는데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1박2일 동안 있다가 데려다준다. 증인과 증인의 딸인 O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답 : 아니요,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문 : 증인은 ‘O과 이혼하려고 아이도 가지지 않았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1, 2개월 안에 이혼하겠더라’는 그런 얘기를 피고인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없습니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문 :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답 : 없습니다.

문 : 지금 질문이 많은데 O가 있고, 1박2일 이런 얘기 등 하나도 없어요?

답 : 예, 없습니다. 그 사실은 주변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 : 이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답 : 없습니다.

당시 제1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사이에서는 강간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 이야기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의 피해여부에 대한 진실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법정에서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고정관념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적절히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의 질문과 답변 역시 피고인 측 변호인의 강간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해서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목 부분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했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상처를 입은 데는 없는가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이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해서 피고인이 목을 누르면서 제압을 했다 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요?

답 : 저희가 신고를 한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표시가 안나는 상태였고, 이렇게 꼭 누르고 내리는데 바지가 고무줄 바지였습니다.

문 : 그 전에 멍이든 건

답 :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문 : 그래서 증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멍이 들었다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지요?

답 : 예, 없습니다.

문 :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을 성폭행 하려고 했을 당시에 크게 반항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답 : 예.

문 : 그 이유가 뭐지요?

답 : 처음에 반항했던 건 사실이지만 계속 머릿속에 아이들 생각도 나고, 정말 나중에는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중략) ...

문 : 그러면 성폭행당할 당시에 강하게 반항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답 : 변호사님도 배우자가 있고 자녀 분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 같은 상황에 배우자분이나 가족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나요?

## 다. 법원의 결정

1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7. 11. 15. 선고 2017고합34 판결)은 공소사실 중 강간 및 협박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였다고 주장한 점, ② 강간의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의 폭력단체 내 위상,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와 그녀 앞에서 경찰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친분을 과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는 점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었고,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사와 고민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친딸이 담임 교사에게 한 이야기나 고등학교 진학 문제, 친정 모친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대화는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신뢰를 가지게 된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범인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점, ⑥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기까지 5일간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는 상태라고 진술하면서도 첫날밤의 폭행과 협박 상황 이외에는 협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에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이겨 모텔에 끌려가기에 이르러서는 강간의 위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 당시의 구체적인 협박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강간의 수단이 된 유형력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팔을 잡아 침대로 집어던진 다음,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하의를 벗겨 강간했다’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못한 점, ⑦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속옷과 용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⑧ 모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의 모습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맥주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성관계 후 모텔에서 나와 다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점, ⑨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다가 결국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이 후 샤워를 하고 피고인에게 착용한 속옷의 용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피고인의 담배를 피우고 가정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강간을 당한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2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2018. 5. 4.선고 2017노477 판결)은 1심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A의 원심법정 진술, 피해자의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뿐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심 법원에서는 강간 부분의 무죄판단에 있어서 ①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 무렵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사이에 네 번 정도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해자의 친정 모친에 관한 얘기와 딸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한다는 얘기, 딸이 예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말을 했다는 등 피해자의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한 바 있는 점, ③ 모텔 CCTV 영상에서 보면 피고인의 차가 모텔에 주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 직전에 남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3심 법원인 대법원(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강간죄의 경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하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2심 법원의 판결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비판하면서 제2심 판결 중 강간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통화한 사실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횟수, 만나서 한 일,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맥주만 마시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경우 등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음으로 제1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만 하다가 나오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는 것이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접촉 없이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아가 모텔 객실에서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집과 범행장소인 이 사건 모텔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피해자가 당일 공소의 2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각, 위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소의 2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도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났을 때는 모텔에 가기로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이미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기 때문에 미리 공소의 2에게 앞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사정을 꾸며서 알린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늦은 밤에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일부러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공소의 2가 베트남에 있는 내내 공소의 2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해왔음에도 공소의 2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사실이나 공소의 2의 사생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등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을 당한 날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 날 때마다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모두 지우라고 해서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모두 지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수사에서 메시지 등을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남편의 친구, 친구의 처 사이로서 2016. 12.경 피해자와 공소의 2가 이사가기 전까지 한 동네에 살면서 부부동반으로 만나기도 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일상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대답해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생리대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샤워 후에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며 남편 등 피해자의 가정에 관한 대화를 10여 분 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외포된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수치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달랬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⑥ 공소의 2는 베트남에서 귀국한 당일 잠깐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는 다시 집을 나가 광주에 있는 장례식에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피해 사실을 공소의 2가 귀국하여 집에 도착한 즉시 말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공소의 2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이후에야 말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진술을 반복하여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모텔에 가게되었다고 하면서도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2019. 1. 7. 선고 2018노449 판결)에서 대법원과 같은 근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강간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강간 부분에 대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2년 6개월 ~ 5년 이었으나 그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하면서,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대법원(2019. 3. 28. 선고 2019도1108판결)에서 상고사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평가

이 사건은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고, 또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대법원에서 판결 파기의 이유로 작용한 사안이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폭행, 협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출된 증거를 다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서 제2심 판결은 파기되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한 후 강간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였고, 최종심에서는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대해 변호인이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추궁을 이어갔고, 강간에 대하여 왜 반항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그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법정에서 판사가 이를 적절하게 제지하지 않았고, 강간에 대한 통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되어 무죄가 선고되게 되었다. 즉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법원과 피고인측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실을 바라보아야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 3. 강제추행 사건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가. 인정된 사실관계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강남구 O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쳤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나.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은 3차례의 피해자 진술과 2차례의 피의자 신문이 있었으나,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특별히 성인지 관점에서 살펴볼 점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녹취서는 증거자료와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다. 법원의 판결

1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2019. 7. 26. 선고 2019고정59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점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관계와 같은 추행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1심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고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참고인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회식에서의 자리 위치상 참고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가 아니면 쉽게 알기 어려운 경험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2020. 5. 29. 선고 2019노2513 판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2심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개장소이며, 거래처의 업무상 관계자들이 동석한 자리였던 점, 피해자의 머리카락 자체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헤드락을 거는 행위가 폭행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언동(“이년 못된 년이야”, “이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라고 보았다.

제3심 법원인 대법원(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2세의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26세의 미혼 여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와 직원의 관계였다.

② 당시 동석했던 거래처 대표가 피해자 및 다른 직원에게 “결혼을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애네는 내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직원은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 말을 지적하며 “행동뿐 아니라 그런 마인드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 무의식에 반영된 피고인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과 욕설 등을 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치는 등 행위를 하였다.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거래처 대표는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고 하며 말렸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려 회식 자리가 마무리 되었다.

⑤ 당시 상황과 감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저의 목을 헤드락 걸 듯 안고 품에 넣고 머리를 주먹으로 두 번 쳤다.”, “저를 확 끌어당겨서 안았기 때문에 머리가 분명히 가슴에 닿았다.”, “대표의 가슴에 제 머리가 닿을 때나, 손으로 제 머리를 잡을 때 손가락으로 제 두피를 만지는 것이 느껴져 소름끼쳤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모멸감에 수치스럽고 불쾌했다. 머리채 잡을 때 손끝이 느껴졌다. 너무 불쾌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의 첫 번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목 부분이 접촉되었고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았으므로 그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이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의 반응 역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라. 평가

이 사건은 수사자료와 소송기록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인다. 제1심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면서 가슴이 팔목에 닿는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일반·평균인의 관점을 들어 그와 같은 부위의 접촉과 발언은 이를 야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피고인의 성욕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수공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제1심, 제2심, 제3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확정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이 작용된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4.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배포 등 사건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753, 2021전도112 판결

### 가. 인정된 사실관계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상해,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착명령 등 많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제1심과 제2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SNS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 노출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수위가 높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이러한 사진 및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해외 SNS서비스 등 여러 SNS에 게시하여 회원들끼리 돌려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시키는 행동을 모두 따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이른바 ‘노예’로 지칭하며 피고인의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건네받는 등의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보안이 강화되어 사용자의 추적이 어려운 SNS인 E에서 닉네임 O로 활동하면서 위 E상에서 여러 개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방마다 번호를 매겨 각각 서로 다른 성착취 영상물을 위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한 다음 회원에게 위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주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하여” 왔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2021. 4. 8. 선고 2020고합31, 50(병합) 판결).

#### 나.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피고인을 고발하면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20. 5. 9.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2020. 5. 12. 구속 후 구속기간 갱신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기소 후 2021. 4.에야 유죄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는 2015년부터 시작된다. 기록에 의하면 2018. 7. 11. 피해자A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B는 2018. 11. 17.출석하여 진술을 한 것도 있다. 2017. 1. 18.에는 다른 피해자C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기록도 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신원보호를 위하여 가명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진정을 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층은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피해자A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모친이 동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혼자 있는게 자유롭게 진술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제2회 진술에서는 제1회 진술을 할 당시에 오히려 모친의 동석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체 동영상 등을 전송한 것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경찰조사시 아래의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피해자 G 2018.

#### 7. 24 경찰 진술조서).

문 : 진술인이 음란한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할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답 : 저는 너무 하기 싫었지만, 이미 촬영된 제 몸사진이 신고되면 더 큰일이 난다고 생각이 들었고 초등학교 여자아이라고 채팅을 한 아이도 '언니 한 달만 버티면 모두 아무일 없었던 듯이 되요.'라고 저에게 말하여 저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싶지만 시키는 대로 촬영하여 보내준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D의 2020. 6. 1. 경찰진술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반영하는 “아동성착취”, “성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였다.

문 : 여러 남자들이 있는 단체 방에 진술인의 성착취 영상을 올리면 기분이 어땠나요

답 : 정말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끔찍해요

문 : 그 사람들은 최소한 진술인의 OO으로부터 아동성착취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답 :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꺼예요... 그리고 OO이 저보고 노예라고 하는 것과 제 나이가 중학생... 어린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위와 같은 표현 외에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약 50명 이상),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긴 기간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 다. 법원의 결정

1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2021. 4. 8. 선고 2020고합31, 50(병합), 2020전고 5, 9(병합), 2020보고6, 11(병합), 2020초기113 판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징역 3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였고, 일부 성착취 영상물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이에 부수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 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 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노예 또는 게임아이템 정도로 취급하며 변태적·가학적인 행위를 일삼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들인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거나 타인에게 유포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협박에 궁지에 몰려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을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으며, 오히려 인적사항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아직도 유사 범행에 따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수법들을 모두 망라하여 OO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주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일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영향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 ~ 45년이었다.

2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2021. 8. 19. 선고 2021노169 판결)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도11753, 2021전도112(병합))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 라. 평가

이 사건은 2015년 경부터 피해자의 진정이 시작되었고, 계속적으로 특정 어플과 대화방 등에서 피해 동영상 유포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고를 전국 경찰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접근하는 것, 성폭력상담센터에 상담받는 것등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수사기관 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의 경우 일부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법원은 여러 건의 디지털성범죄와 협박과 강요 등이 결합된 이 건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사례와는 다르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최대 45년인데 35년을 선택하였고,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함), 사회에 디지털성범죄의 무거움을 경고하였다고 평가된다.

### 5. 가정폭력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2노577 판결

#### 가. 인정된 사실관계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위협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폭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습으로 4차례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게 위 폭행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2노577 판결).

## 나.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은 2021. 6.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후 2021. 6. 17. 경찰서에 피해자가 임의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였고, 동시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2021. 7. 1.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리고 갔으며, 2021. 7. 23.에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려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가정법원에서는 2021. 7. 30.에 2개월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결정하였으며, 그 후 위 건에 대해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상습특수폭행(특수폭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하였지만,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아래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면서 나온 질문과 답변이다. 수사경찰은 피의자와 계속해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었다(2021. 6. 17. 경찰 진술조서).

답 : 제가 의지할 곳이 남편밖에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죠. 의지할 곳만 있다면 이혼하고 싶기도 해요

문 : 친정집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답 : 제가 친정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들어가기 싫어요.

문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잘 해주기도 하나요.

답 : 그렇죠. 잘해줄 땐 또 잘해줘요. 제가 심적으로 힘들 때 만나서 저를 위로해 줬고 또 그 이후에도 잘해 줄 때는 잘해줘요. 계속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죠.

위와 같은 질문과 답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경찰은 피해 여성이 어딘가에 의존할 곳이 필요하다는 관념에서 위와 같은 질문이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인데, 가해자가 잘 해 주었는지를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조사에 따른 결과 경찰은 일부 폭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2021. 7. 9. 경찰 수사보고서).

엘리베이터 내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껴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CCTV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 다만 앞의 피해자 조사에서 피의자의 폭행과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집 안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행을 당한 후에도 서로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수사자료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다. 법원의 판결

1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2022. 2. 28. 선고 2021고합628)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8년 이었으며, 권고형의 범위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징역 1년 ~ 4년 5월로 정하여졌다. 법원은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부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지적정애가 있는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월 0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재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22. 6. 9. 선고 2022노577 판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는 바,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또한 비교적 크지는 않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 라. 평가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보복 폭행이 있었고, 그 전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에 비해 비교적 경한 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이러한 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폭행과 협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 생각된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하였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처벌을 받은 데 대한 보복 폭행이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폭력에 취약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지속적·계속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폐쇄성, 지속성, 가족관계의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가 달리 피할 도리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6.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 11. 25. 선고 2021노3178 판결

### 가. 인정된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 B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우측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다투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B 옆으로 와 B를 끌어안자 발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또 다른 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음식과 메모지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두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

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다른 날 위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다가 CCTV를 발견하고는 되돌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 나.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신고전화로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1. 28.에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에서의 신문이 있었다. 2. 11.에는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 22. 검사는 특수상해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간 것은 공소제기 후인 3. 12.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추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수사를 거쳐 4. 26.에 해당 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다.

2심법원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B는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021. 1. 23. 피해자B 진술조서).

문 : 진술인은 예전에도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나요.

답 :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문 : 예전에는 왜 폭행을 당했나요.

답 : 한 번은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맞았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랑 술을 마셨다고 때렸습니다.

문 : 예전에 폭행을 당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나요.

답 : 아니요.

문 : 왜 신고하지 않았나요.

답 : 첫 번째는 실수했거나 했구요 두 번째는 제가 솔직하게 지인이랑 만나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어쨌든 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은 안했어요.

...(중략)...

문 :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왜냐하면 습관같아요. 남자친구가 자기 입으로 예전에 자기 여자친구를 때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 다. 법원의 판결

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특수상해와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심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15년이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8월 20일이었다. 특수상해의 특별양형인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이었고, 주거침



입의 감경요소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8. 선고 2021고단559, 2021고단1229(병합 판결).

2심법원은 “데이트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전·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로서 누가 피해자가 되는 지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고, 가해자가 사랑으로 포장한 집착과 감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위 특성을 보이고,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폭력행위 등을 사랑으로 정당화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예속되거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특징을 흔히 보이며, 피해자가 폭력을 못 이겨 공권력을 비롯한 타인 도움을 요청해도 “연인간의 일”로 치부되어 제3자가 개입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는 상습성이나 은밀성 및 집착성 등 데이트 폭력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1심과 같이 특수상해, 주거침입을 인정하였음에도 징역 6월로 그 형을 감경하였다(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 11. 25. 선고 2021노3178 판결).

#### 라. 평가

이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으나,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1심법원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이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 보고 있으나 2심법원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2심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라 형벌을 경하게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그 후 다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단순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제3절 2021년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 분석

### 1. 분석 대상 판결

#### 가. 선정기준

제2절에서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수사과정에서부터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2021년의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2018년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 해당 판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최근까지도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분석대상 판결문 중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의 양형 인자에는 성인지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젠더폭력 중 기본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과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 및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하급심 판결문 총 342건<sup>137)</sup>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통념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되어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대상으로 고려되었던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추행죄의 경우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판결문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력 성범죄의 경우 판단과정에서 성인지 관점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분석 대상 범죄 유형 중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까지 제외하지는 않았다.

#### 나. 분석대상 판결 개요

분석대상 판결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결문에 대한 간단한 기록조사를 병행하였다. 죄명, 유·무죄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137) 2022. 8. 18. 기준, casenote-pro(<https://casenote.kr/>)에서 각 죄명별 2021년 선고 판결 정확도 순으로 검색하여 중복 판결문은 삭제하였다.

### 1) 죄명

분석대상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죄명은 크게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로 분류하였고, 각 범주별 구체적인 죄명은 아래 표와 같다. 경합범이 있어 전체 건수는 분석대상 판결문의 개수를 초과하였다.

강간 유형의 경우 총 96건으로,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치상, 미성년자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대부분의 강간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13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이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8건이었다.

[표 5-17] 분석대상 판결 분류 - 강간

구분	빈도
강간	32
강간미수	6
강간상해	8
강간치상	2
강도강간	1
미성년자의제강간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1
유사강간	9
유사강간상해	1
유사강간치상	1
합계	96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총 174건으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군인등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강제추행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법률은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표 5-18] 분석대상 판결 분류 - 강제추행

구분	빈도
강제추행	130
강제추행미수	3
군인등강제추행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치상)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5
합계	174

준강간 유형의 경우 총 44건으로, 준강간,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준강간치상, 미성년자준강간 등의 준강간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표 5-19] 분석대상 판결 분류 - 준강간

구분	빈도
준강간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치상)	1
준강간미수	2
준강간치상	1
준유사강간	8
준유사강간치상	1
합계	44

준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총 19건으로,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법률은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표 5-20] 분석대상 판결 분류 - 준강제추행

구분	빈도
준강제추행	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3
준강제추행미수	1
합계	19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판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혹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었는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264호, 2022. 1. 27. 일부개정)에 따른 해당 범죄의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이기에 하나의 죄명으로 기록하였다. 총 49건의 범죄 중 3건은 상습범이었다.

[표 5-21] 분석대상 판결 분류 - 카메라등이용촬영

구분	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
합계	49

## 2) 유·무죄 여부

앞서 살펴본 총 382개의 각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단이 244건, 무죄 판단이 137건, 면소로 판단한 판결이 1건이었다. 유죄선고 중에는 징역형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50%가 넘지 않는 비율이었다. 징역형 다음으로는 집행유예가 85건으로 많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은 37건이었다. 2심 판결문 중 피고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1심의 선고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5건 있었다.

[표 5-22] 유-무죄 여부

구분		빈도
면소		1
무죄		137
유죄	선고유예	2
	벌금	37
	집행유예	85
	징역	115
	알 수 없음	5
합계		382

### 3) 피고인-피해자 관계

분석대상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는 80건, 아는 사이인 경우는 221건,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41건이었다.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친구, 동호회 구성원 등 친분이 있는 지인인 경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나 현재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합쳐서 46건이었으며, 소개팅 등으로 사건 직전 처음 만난 관계가 44건, 업무상 관계에서 아는 사이인 경우가 36건 등이었다. 아래 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분류한 것이다.

[표 5-23] 피고인-피해자 관계

구분	빈도
모르는 사이	80
친밀한 관계(부부/애인)	34
과거 친밀한 사이	12
가족관계(친부/계부/사촌/사돈/친모동거남)	7
친분이 있는 지인(친구/동호회/대학구성원 등)	59
업무상 관계(직장동료/상사/거래처 등)	36
기타 권력의 차이가 있는 관계(군대선임/선생님/종교관계/상담자 등)	18
사건 직전 처음 만난 사람(채팅 후 만남/즉석만남/소개팅/가게점원 등)	44
안면이 있는 사이	11
알 수 없음	41
합계	34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모르는 사이’인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모든 분석대상 범죄 유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보다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여부

분석대상 판결문 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판결문은 아래 표와 같다.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건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거의 유사한 비율로 확인되었다. 준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지 않았거나, 판결문에 실시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아 유의미한 통계를 얻지 못하였다.

[표 5-24]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구분		빈도
강간	신빙성 있음	41
	신빙성 없음	18
강제추행	신빙성 있음	67
	신빙성 없음	50
준강간	신빙성 있음	12
	신빙성 없음	10
준강제추행	신빙성 있음	8
	신빙성 없음	0
카메라등이용촬영	신빙성 있음	2
	신빙성 없음	2

#### 5) 성인지 감수성 언급 판례

분석대상 판결문 342개 중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는 10개에 불과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10개의 판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25] 성인지 감수성 언급 판례

판결	죄명	유/무죄
수원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노164 판결	강간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고합377 판결	준유사강간치상	유죄
대전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합395, 2021고합42(병합), 2021전고8(병합) 판결	강간	유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합255, 2020전고31(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죄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1072 판결	준강간	무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4. 선고 2019고합118, 2020고합31(병합), 2020고합45(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죄
청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1468 판결	강제추행	유죄
청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410 판결	강제추행	유죄
대전고등법원 2021. 9. 10. 선고 2021노1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죄
인천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고합2, 2021전고1(병합), 2021보고1(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죄

10건의 판례 중 2건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8건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하였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판결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유의미한 판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였음에도 오히려 성폭력 통념이 드러난 판단을 한 경우들도 있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들을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부분적으로 인용한 판례는 다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가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판결문에 사용하기에 부담스럽다거나 혹은 거부감을 느끼는 현실<sup>138)</sup>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138) 조선일보,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성폭력사건 유죄판결 남발” 비판’, 2021. 5. 18.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8/LMXTGI5WOFBGXA22P5R5VCKZAA/](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18/LMXTGI5WOFBGXA22P5R5VCKZAA/), 검색일: 2022. 11. 29.)



## 2. 세부 분석 기준

### 가. 판결 내용 분석 기준

2018년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sup>139)</sup>고 하여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원칙으로 강조하였다.

2021년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여 위 법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들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분석대상이 성폭력 사건의 판례라는 것을 고려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통념’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기준이 되는 ‘성폭력 통념’의 경우 한국성폭력상담소(2019)에서 제시한 10가지 대표적인 성폭력 통념과 여성가족부(2019)에서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성폭력 통념 문항을 참고하되, 분석범위와 판결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통념 등을 고려하여 5가지(① 피해자답지 않다, ② 피해자유발론,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것이다, ④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로 유형화 하였다. 하나의 판결문에서 여러 유형의 성폭력 통념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sup>139)</sup>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나. 양형사유 분석 기준

2018년 대법원의 법리는 성폭력 범죄가 있었는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인정된 이후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양형사유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342건 중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양형사유를 실시한 판결문은 187개였음을 밝힌다.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제1절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 부정적·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양형사유가 무엇인지를 죄명별로 살펴 보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거나 반대로 성폭력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등, 성인지 관점에서 유의미한 양형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검토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짚어 볼 지점이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히 살펴보았다.

## 3. 분석대상 판결문 내용의 비판적 검토

### 가. 성폭력 통념 ① 피해자답지 않다

#### 1) 기준의 해석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로 이슈가 되었으나, 핵심적인 법리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 혹은 ‘전형적’인 피해자의 태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더 이상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오래된 성폭력 통념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해자다움’은 이제까지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기대했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면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거나, 그 직후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상하다거나, 피해 이후에는 가해자를 만나지 않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성폭력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므로 너무 당당히 드러내는 건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는 식의 인식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는 없다. 각각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정도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sup>140)</sup> 특정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을 때 비교대상이 되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은 이미 가해자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서 상상된 피해자일 뿐이다.

2018년 대법원 판례의 영향인지 분석대상 판결문 중 ‘피해자답지 않다’는 통념이 드러난 판결은 2건에 불과하였으나, 이 부분이 대법원이 지적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두 판례에 대해서는 보다 설명하고자 한다.

##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17. 선고 2020고합385 판결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5. 9. 경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고, 다음날(2020. 5. 10.)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어제는 너무 과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사과하고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 직후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씻고 담배를 피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위 증인신문조서 10쪽), 피고인이 방을 나간 뒤 같은 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정을 숨긴 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위 증인신문조서 15쪽),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5쪽).

<sup>140)</sup> 한국성폭력상담소, 의심에서 지지로, 2019, 19면.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날 처음 만나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이 다음날 다시 방으로 찾아와 '회를 사 왔으니 술 한잔하자'는 말에 술 먹고 얘기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인데(위 증인신문조서 18, 19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피해자는 그렇게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과 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술을 사서 돌아올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위 증인신문조서 20쪽),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피해자가 말동무 없는데 말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21쪽) 등을 보태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2020. 5. 10.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물을 마시고오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있어 옷을 입으라 하고 그냥 TV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5쪽, 위 증인신문조서 22, 23쪽), 심지어 '당시 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의도하였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조서 23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이때도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채 또 다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시도하리라는 인식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단순히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추가 범행 등이 두려워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점, 사건 당일 남자친구를 만났다하더라도 남자친구에게 모르는 남자와 집에서 술을 마셨고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문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모습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위와 같은 판단 자체가 해당 재판부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이미 상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광주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제주)2021노76 판결

이 사건 재판부가 사건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2018. 10. 7.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사촌언니의

소개로 2018. 10. 13. 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의 일을 시작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일부터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약 10일간 숙소를 마련해주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임시로 거주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8. 10. 18. 경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가졌고, 2018. 10. 22.에도 성관계를 가진 후, 2019. 4. 8.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④ 한편, 피해자는 기혼자로 중국에 남편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2018. 12. 12. 남편과 함께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이 피고인 밑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6.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남편과 빨리 이혼해야 피해자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최초 두 번의 성관계에 대하여 각각 강간 및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해서는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마저 부인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8. 10. 18. 강간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뿌리쳤는데도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배를 꼬집는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면서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5.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배를 꼬집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Don't touch me'라고 얘기하거나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Sorry'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었는바, 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과 그 이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2018. 10. 22. 피감독자간음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폭행·협박 등은 수반되지 않았으면서 피고인이 그때도 잘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그 후 2019. 5.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피고인이 당시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사촌언니를 신고해 잡아가게 하겠다. 일을 못하게 하고 월급을 주지 않겠다. 말을 잘 들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감독자간을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약 4일 전 피고인에게서 강간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밑에서 계속 일하였던 점, 처음에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성범죄 피해를 감수하고도 계속 일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특히 불법체류 중인 사촌언니의 추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고, 중국에 2차례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남편과 동행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체류 사실과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근로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그 이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행동은 다소 이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자해행위를 한 다음날인 2019. 3. 26.경에도 '남편과 빨리 이혼해야 한다'거나 '우리 사랑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요구로, 혹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후략)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점,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던 점,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그러한 모습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이 직접 보냈거나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과 유사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점, 만일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출국하였다가 굳이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이후 어떤 감정이 생겼다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지 5일 만에, 그리고 문제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때로부터 6개월 전에 일어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사촌언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에게는 큰 공포로 느껴졌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다움’에 근거한 판결로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성폭력 통념 ② 피해자유발론

### 1) 기준의 해석

“피해자유발론”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책임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여지를 주었다는 논리이다<sup>141)</sup>. 이러한 성폭력 통념은 흔히 “피해자도 원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나타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거나, 호감을 표시했다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 등은 피해자가 그 이후에 발생한 특정한 성 행위(범죄 행위)에 합의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특정한 행동 혹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맺고 있던 관계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며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다.

판결문에서 이와 같은 성폭력 통념이 드러나는 방식은 대부분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위와 같은 통념을 제시한 것이었다. 특히 이 유형의 성폭력 통념이 드러난 판결은 대부분 사건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였던 경우거나, 친분이 있는 지인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 2) 성폭력 통념이 드러난 판결들

피고인과 상당기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매우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관계가 시작될 무렵의 성관계를 특정하여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방법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무인 모텔에 들어간 사실’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141)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글, 2019, 13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장소는 무인 모텔(2017. 9. 18.과 2017. 9. 19.) 혹은 마트 지하주차장(2017. 9. 21.)이다. 그런데 무인 모텔에서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당시 굳이 피고인을 따라 무인 모텔에까지 들어가야 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마트 지하주차장에서의 경우는, 장소의 성질상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서의 성관계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굳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인데, 피해자는 그 이유를 단순히 '자포자기 상태'라고만 진술(원심 해당 녹취록 17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노145 판결)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 밤에도 피해자가 남편과 싸우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먼저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애초에 성관계를 염두에 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성폭력 통념이 반영된 1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도 있었다.

나아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냈고, 비록 구체적인 횟수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평소에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다. (2) 피해자는 당시 남편과 한 번씩 싸우게 되면 피고인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17쪽).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남편과 싸우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해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광주고등법원 2021노338 판결)

피고인과 6-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피해자가 강간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팔에 상처가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해당 상처가 피해자가 저항하다 남겼다는 진술이 피고인의 설명보다 타당한 점, 피해자의 목결이가 끊어진 상태로 사건현장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콘돔을 끼지 않은 삽입행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 강간 범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방문한 편의점에서 여러 개의 칫솔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주거지의 엘리베이터 CCTV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입에 아이스크림을 물어 피고인의 입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기 전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친구 F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인관계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였고 이들과 헤어진 뒤 피고인과 통화를 할 때 들려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에서도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요구에 응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21 판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갔다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아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저항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억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강간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판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의 상황에서 확인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추단가능한 객관적 증거보다도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 삼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폭력 통념이 크게 드러난 판결이라 할 것이다.

#### 다. 성폭력 통념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것이다

##### 1) 기준의 해석

현행 형법 상 성폭력 범죄의 기본유형으로 여겨지는 강간죄<sup>142)</sup>와 강제추행죄<sup>143)</sup>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으로 ‘비동의’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신윤진, 2005; 이호중, 2005; 장다혜·이경환, 2019 등). 이와 같은 논의는 현재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최협의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판단<sup>144)</sup>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142)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항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였을 것이다'라는 성폭력 통념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동의'라는 개념을 형법 상 구성요건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박들도 있으나(이영란, 1994; 서보학, 1998 등), 하급심 판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우리 법원은 이미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위에서 언급한 성폭력 통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면 기소된 행위에도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 2)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판결들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피고인)를 내보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묵인 하였다'는 성폭력 통념이 반영된 1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었다.

피고인이 마사지사를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항거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소극적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노3225 판결)

피고인이 연인사이이던 피해자를 각각 다른 날에 협박, 폭행(3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2019. 11. 18. 술을 마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힘으로 원피스를 찢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비록 거부의사를 표시하

144)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였더라도 완강하게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강간의 고의는 없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 날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7.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발생장소인 숙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숙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에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었다. 원피스가 찢어지자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찼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침대 옆의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중략)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지 약 2년 가량 된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상호 동의하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 사건 홍콩여행 기간 중에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57 판결)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업무 차 머물게 된 숙소에서 자신의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준강제추행),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다시 잠들자 피해자를 따라가 유사강간(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특히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애인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남자친구로 착각하였다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착각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부분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여기고 평소 남자친구에게 하였던 행동을 피고인에게 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항공사의 팀장인 I와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I에게 '너무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으로서는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성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순간적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로 나아갔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3 판결)

피고인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행위 직후 웃음을 보였다는 등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가슴적으로 추행하였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전의 동의를 계속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고 하며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판결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한 번도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를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당황스럽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추행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장난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부 의사가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피고인 으로서는 피해자가 그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에 동의할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969 판결)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색을 한 이후로(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로) 피고인이 1회 더 피해자를 껴안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밀쳐낸 후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착각하여 추행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웃고 있는 앞 40초 정도까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당겨 끌어안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표정이나 몸짓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이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정색을 한 이후로 피고인이 1회 피해자를 다시 껴안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오해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생각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자 강제적인 접촉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착각한 경우로서 추행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91 판결)

### 3) 그 전에 동의하였다면 또 '동의'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판결들

분석대상판결 중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유형의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였고 사귀는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친 촬영 중 적어도 일부는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동일한 날 촬영한 경우에도 일부는 동의하였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한 사진과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정면을 보고 누워있을 때는 동의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여러 장의 사진이 촬영된 사안에서 피해자 자신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는 모습들만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정면을 보고 누워있는 장면의 촬영을 동의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촬영에 전부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985 판결)

부분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촬영한 사진 1장이 캐쉬 파일 형태로 확인되었다.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장소는 실내이고, 밝은 조명 아래 피해자의 정면에서 위 사진을 촬영한 점, 사진의 촬영 각도, 구도, 선명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잠시 눈을 가리는 동안 몰래 찍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촬영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967 판결)

촬영당시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797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제기간 중에 둘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많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가 자고 있어 명시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결은 성폭력 통념이 강하게 드러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B(피해자)은 약 8년의 교제기간 중 50,000여장의 사진과 200여개의 동영상(전체 약 255GB 정도의 용량에 달한다. 이하 '교제기간 촬영물'이라 한다.)을 일상적·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 왔다. 교제기간 촬영물 중에는 외식, 여행, 일상생활 등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피고인과 B이 나체인 모습,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모습, 둘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연인간의 은밀한 생활영역을 촬영한 것이다.

3) 교제기간 촬영물 중에는 피고인과 B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관계 중의 적나라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 상당수 존재하고, B이 직접 그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도 많이 있다. 이러한 촬영 당시 B이 나체 상태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촬영에 응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이 사건 촬영물은 B의 동의와 협력 아래 촬영된 교제기간 촬영물 중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과 비교하면 훨씬 온건한 편에 속한다.).

(중략)

B이 더 수위가 높은 교제기간 촬영물에 대한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와 달리 자신이 잠든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를 꺼려하였다거나 거부하였다고

불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교제기간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촬영물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B이 서로 포괄적·목시적 동의 아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라. 성폭력 통념 ④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 1) 기준의 해석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는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함께 한다. 2017-2018년 검찰의 무고 사건 처리 통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 중 84.1%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5.9%에 불과하였다.<sup>1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9)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통념으로는 ‘연애관계가 안 좋게 끝났을 때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람을 피우다가 배우자 또는 애인에게 들켰을 때 이를 둘러대기 위해’ 고소를 하였다는 의심 등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여러 이유로 고소를 망설인다. 고소를 할 만큼의 힘이 없는 상태일수도 있고, 사회의 시선을 걱정하기도 하고, 위와 같은 의심에 노출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위는 저마다 다르다. 주변의 도움으로 고소할 힘을 얻었을 수도 있고, 문득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자신과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일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발생 후 피해를 감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과거의 성폭력 피해 내용까지 고소할 결심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판결문 중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결들이 있었다.

145)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139면.

## 2) 친밀한 관계에서의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고소하였다는 의심

'피해자다움' 유형을 분석하며 소개하였던 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76 판결에서는 네 번째 유형의 통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앞서 언급하였던 사실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업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두고, 이것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고 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4. 13. 'M'이라는 사람이 출근한 이유를 따져 묻고, 2019. 4. 20.~21. '피고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M이 여기서 일을 하면 피해자는 일을 하지 않을 테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피고인이 M을 선택했으니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업무관계나 급전적 대가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76 판결)

피고인이 가출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우연히 한 집에서 살게 되어(당시 해당 장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지냈다) 교제를 하는 사이였는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진술에서 '싫다고 했는데 자꾸 만지고 보보를 해서 많이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판결문에 적시된 'F'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특성 상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장애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진술이 더 유의미하다는 점(이미정, 2016; 장애여성공감, 2016) 등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F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G, H, I, 피고인과 다룬 일과 피고인이 I와 바람을 피워 화가 많이 난 일'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76쪽).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0노690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외부 유출 여부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때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싫은 양가감정을 충분히 느꼈을 수 있고, 특정한 사건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진 때에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성폭력 통념이 드러난 판결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B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B의 고소로 인해 둘만의 은밀한 추억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반면, B은 2019. 1.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가(구입가 약 2,460만 원 상당)의 '위 블로 아이스뱅크 크르노 301.CK.1140. RX' 시계 1개를 절취하고도 모른 척 하다가 피고인의 고소 및 이어진 수사로 절도범임이 밝혀져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둘의 관계가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촬영물 중 일부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797 판결)

### 3) 다른 문제를 보복하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의심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판결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사실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사발식을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푼을 뺏으려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직후 회사 내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G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회식 후 대전에서 구미로 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동승하였던 F, E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점”<sup>146)</sup>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146) 대전지방법원 2020.4.9. 선고 2019고단4178 판결

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피고인의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한 2019. 4. 23. 아침에 있었던 직원회의에서 E과 피해자 사이의 불미스러운 소문과 관련하여 O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욕신각신 하던 중 비로소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사건 발생 당시 임신 초기로서 출산 후로 신고를 미루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심본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고 경위가 석연치 않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1076 판결)

#### 4) 본인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하였다는 의심

피고인이 친구가 부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친구가 집으로 가지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마셨던 주점에서 토를 하기도 하고,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등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다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뉠대로 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이후 이를 기억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절히 실시한 바와 같이 C이 위 문자를 확인하게 된 경위, 남편에게 범행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C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으로 납득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C이 유부녀로서 외박을 하게 된 것을 남편에게 숨기려다 피고인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문자를 남편이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072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귀가하자 자신도 자겠다며 따라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의 전화 통화 내용에도 불구하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5. 21.자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가

몸을 먼저 너 몸을 더듬었거든. 그랬는데 너가 반응이 없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가 남자친구(D)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8. 5. 6. 03:00경 D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의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 봤다는 것인바,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하여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D은 원심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실수였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이제 안 만날 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D에게 그 친구인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알려지게 되자 향후 D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2020노258 판결)

## 마. 성폭력 통념 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1) 기준의 해석

일부 성폭력 범죄의 법률 또는 성폭력 범죄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그간 꾸준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나 분노, 무기력함, 불쾌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sup>147)</sup>. 이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의 문제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등 전문가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 (65.2%) 또는 '성적 모욕감' (63%)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sup>148)</sup>.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양형위

147)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2022, 152면.

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안에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수정하기도 하였다<sup>149)</sup>.

그런데 분석대상 판결문 중 특히 강제추행 유형의 판결문들에서, 강제추행죄는 구성요건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 2) 성폭력 통념이 드러난 판결들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 2명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팔뚝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성이라는 점, 행위 태양이 팔뚝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들과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동성(同性)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거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3171 판결)

교사인 피고인이 다수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 아닌 당혹감과 불쾌감이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148) 법무부, 앞의 책, 156면(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젠더 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2018. 에서 재인용)

149)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2, 4면.

피해자 G의 이 부분 피해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경 수행평가를 위해 자신이 발명한 생리대를 설명하러 온 피해자 G의 양손을 잡으면서 생리대를 뜯어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74쪽, 공판기록 제1권 182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생리대 발명품에 대하여 얘기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수는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남자친구 AI와 과학실에 같이 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공판기록 제1권 181쪽, 증거기록 제2권 7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중인 남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과학과목 수행평가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피해자가 고안한 생리대 발명품에 대하여 지도교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당시 기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저는 기분이 나빠서 '점수주기 싫으면 주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생리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어요", "손잡고 점수 들먹이면서 생리대를 뜯어보라고 강요하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데 시키니깐 기분이 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4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보다는 생리대를 뜯어보라고 시킨 것에 대해 더 기분이 불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와 접촉한 부위, 신체 접촉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77 판결)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수업 도중 예시를 설명한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자신(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판결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영어학원의 선생인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거나 피해자의 마스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평소 친밀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일 뿐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 안에서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반팔을 입은 채 팔짱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분노, 무기력, 모욕감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욕 충족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오로지 수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sup>150)</sup>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모두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라기보다는 불쾌감이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 직후 느낀 감정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수업 전에 제가 선생님 겨드랑이를 긁으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더럽기도 하고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남자 손이니까 손이 부드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57면). 또한, 피해자는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몸에 손이 닿아 '기분이 나쁘다'고만 표현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직후 느낀 감정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수업전 겨드랑이를 긁은 손으로 손목을 잡힘으로써 느끼는 위생상 불쾌감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718 판결)

한편, 강제추행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피해자 B(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E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일부 노출된 신체를 찍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은 불쾌감 또는 도덕적 수치심이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었다.

1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4.22. 선고 2020고합583 판결

피해자 B는 피고인과 장기간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같은 50대의 중년 남성인 점, 피해자 B는 어깨 부분이 드러난 옷을 입고 전신에 이불을 덮고 있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전체를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는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인 점, 피해자 E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 있는 외에는 특별히 성행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상태로 방에 들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약 5초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와 촬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쾌감 또는 도덕적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13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에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거주지에 침입한 시간이 아침 06:40이므로 피해자들이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실제로 침입 후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밀착하여 있는 상태임을 알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혼인관계에 있었다더라도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B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침입행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B가 수치스러움 및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4. 강간죄 유형 판결문 양형분석

##### 가. 불리한 정상

###### 1)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정도를 고려함

강간죄 유형 판결들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누범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이 거의 없었다. 동종누범 외에 특별양형인자가 있다고 본 사건으로는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들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행위에서의 가중요소로 실시한 판결이 있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략)

피해자는 독신으로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8 판결)

다만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요소에서의 특별양형인자(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의 나이나 상태,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범행양태가 불량하다거나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문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 (서울고등법원 2021노634 판결)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17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내용이 엄중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를 마음대로 조종·통제하면서 열다섯 차례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 안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81 판결)

## 2)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성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인적 신뢰 관계 이용'이 정해져 있다. 강간죄 유형의 판례에서 해당 요소를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고려한 판결은 찾기 어려웠는데, 피고인이 전도사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교회 신도였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판결이 있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이른바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까지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신도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학입시 문제로 힘들어하자 이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신뢰를 얻었고, 이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켜 피고인에게 더욱더 복종하게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피해자는 청소년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피고인의 성적 착취 행위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124, 2021전노97(병합), 2021보노50(병합) 판결)

### 3) 2차 피해를 고려함

한편, 2021년에 적용된 양형기준(성범죄 5차 수정 양형기준)에는 일반양형인자로서 정해져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 중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sup>151)</sup>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설치한 판결문이 있었다. 이러한 판결들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sup>152)</su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sup>153)</sup>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판결이라 할 것이다.

151) 성범죄 5차 수정 양형기준 상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정해져 있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2차 피해 야기”로 수정되었다.

15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5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이 사건 범행이 공론화되었고 피고인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 설치된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에 회부되어 전학처분 등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피해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노192 판결)

판시 강도강간죄의 경우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당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등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합27, 2021고합1(병합) 판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443 판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110-1(분리), 2021보고1(병합) 판결)

#### 4)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함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혹은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문도 다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우울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709 판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81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191 판결)

이처럼 피해자가 입을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일부라도 회복시켜주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합111, 2021전고16(병합) 판결)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이 엄히 처벌받기만을 바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합51 판결)

이러한 사유들이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판결문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거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들의 경우 1건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유리한 정상

##### 1) '처벌불원'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강간죄 유형의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대표적인 양형사유로는 '처벌불원'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나 범죄행위가 경합하여 감형을 하더라도 권고형의 하한 자체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결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는 성범죄 양형기준 상으로도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이고, 집행유예 기준 상으로도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의 경우 양형사유의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정하고 있는데, 분석대상 판결문 중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전과가 아닌 경우에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문이 다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208 판결)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950 판결)

다만 피고인은 당시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191 판결)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폭력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고등법원 2020노295 판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 이나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95, 2021고합42(병합), 2021전고 8(병합) 판결)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55, 2020전고31(병합) 판결)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각 폭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96 판결)

## 2) '피해자의 그릇된 성관념'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판결

한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3건 있었는데, 그 중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 185 판결의 양형사유는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비판할 지점이 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동일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각각 다른 일시에 간음하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판 전에 사후적 경합범으로 다른 성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세 성인인 피고인 A는 15세인 피해자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로 불렀다. 이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에서 본 성 보조기구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수갑이나 채찍 등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스물다섯 살이나 차이나는 어른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실시하였다.

1)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그릇된 성관념을 갖게 된 것 역시 어른들의 제대로 된 관심과 선도를 받지 못한 탓이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데는 다소나마 참작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콤한 말로 꺾어내거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관계로까지 유도해 낸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남성들에게 먼저 성관계를 공개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피해자를 보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는 조금 다른 죄질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이른바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의 경계가 다소 희미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출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그 이후의 정황들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만 빼면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법정형의 차이[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16세 미만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밀도, 수갑, 채찍 등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기구 사용을 먼저 제안한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로서, 이러한 나이의 미성년자와 이 사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유형력의 행사 혹은 대가를 제공함이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6) 유·무죄와 관련 없는 일부 행위 태양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 전체적인 죄책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공개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죄가 ‘조건만남’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까지 실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혹은 위계나 위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처럼 피해자의 평소 성행이나 관점을 문제 삼고, 피고인의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피해자유발론’을 비롯한 성폭력 통념이 드러난 판결이라 할 것이다.

#### 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

한편, 강간죄 유형의 분석대상 판결 중 3개의 판결이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는데, 판결문에 실시된 양형사유를 살펴보아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선고는 그 자체로 가해자 중심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고합183 판결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여 4차례 강간하고, 556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년에서 22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형사유를 보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였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고합146 판결은 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이들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자해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년에서 13년 6월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판결에서 양형사유로 형법 제51조<sup>154)</sup> 소정의 양형조건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들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이용하여 자해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강제추행죄 유형 판결문 양형분석

### 가. 불리한 정상

#### 1) 범행부인

강제추행죄 유형의 경우,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있는 양형사유들이 강간죄 유형과 유사하였다. 다만, 강간죄 유형의 판결들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들이 많았다.

15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은 CCTV 영상이 있는 것조차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허그'라거나 장난이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229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요양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4128 판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 동료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지위에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이 사건 각 추행의 횟수와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2637 판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23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부산지방법원 2020노3646 판결)

## 2) 2차 피해를 고려함

강간죄 유형의 판결문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 중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문도 있었다. 특히 강간죄 유형의 판결문들과 비교하였을 때 2차 피해 내용을 상세히 실시한 판결들이 많았다.

피고인은 증언을 앞 둔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한 취지는 뭐냐고 확인을 하며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제출하고, 동료 시의회 의원들, 직원들에게 각종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좁은 지역사회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본인이 증언한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거나, 본인이 증언한 내용을 열람·등사하지 말게 해 달라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다. (중략)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229 판결)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장 내 근무행태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제주지방법원 2021노360 판결)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 회복을 하기는커녕 형식적인 사과와 책임 회피를 하다가 나중에는 없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80쪽 참조), 이처럼 범행 후 정상도 아주 나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1137 판결)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지도교수가 된 피고인은 첫 논문 상담 후 제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자신이 사실상 대학원생으로서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관계로 진입하는 순간 벌어진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그 뒤 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적 가해들이 더 끔찍한 것이었다. (중략) 그때부터 피고인은 더욱 노골적으로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유리하게 조작하고 R과 S 등을 내세워 실제로는 연관도 없는 거짓 증거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해자 또한 자신이 2차 미투 후 감정에 휩쓸려 피고인과의 문자를 지워버린 것, 과거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관하지 않고 매도해버린 것 등을 통탄하며 무수히 반복하여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변호해야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507 판결)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어야 했음을 양형사유로 자세히 실시한 판결들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별을 포함한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피해자가 견뎌야 하는 차별적 시선 등을 깊이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 나. 유리한 정상

### 1) 강간죄 유형과 비슷한 사유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양형사유의 일반양형인자인데, 분석대상 판결문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전과가 아닌 경우에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실시한 판결문이 다수 있었다. 다만 해당 판결들의 판시 내용은 강간죄 유형의 판결들과 거의 유사하여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2)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의 경우 강간죄와 달리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두고 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 유형의 판결문에서는 양형사유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혹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설시를 한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특히 폭행 행위가 그 자체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sup>155)</sup>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그러한 판시가 두드러졌다. 아래 제시한 판결들도 모두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는 판결들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수감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 229 판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9 판결)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함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858 판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380 판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합64 판결)

그런데 위 판결들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각각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 행위(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단229 판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9 판결),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수원지방법원 2021노858 판결),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 내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를 수회 벗긴 행위(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380 판결),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진

---

155)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행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합64 판결)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만 놓고 본다면 다른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적어도 분석대상 판결들에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면 범죄로 인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성적불쾌감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추행 혹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경향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에 반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 3)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

성범죄 양형기준에 정해진 양형사유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판결이 있었다. 아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1. 3. 9.부터 H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413 판결)

그런데 1심 판결의 양형사유에서도 이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고려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제시한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가 주된 감형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쉬웠을지도 모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다. “처벌불원”을 달리 해석한 판결들

### 1) “처벌불원”의 해석

강제추행죄 유형의 판결 중에서도 피해자 혹은 그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런데 성범죄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의 정의에 따르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156)</sup> 이는 “처벌불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판단을 한 아래 판결들을 살펴본다.

### 2) 수원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0노909 판결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11세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친모는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56)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2, 32면.

이 사건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침터에서의 생활이 불편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법정 진술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 것인지, 그러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진 후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인지는 판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 3)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321 판결

이 사건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6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탄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6세에 불과하여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이해나 동의를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지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해당 의사표시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의 해석을 넘어선 판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 4) 수원고등법원 2021. 11. 2. 선고 2021노487 판결

이 사건은 장애인 강제추행사건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는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경비원으로서 입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입주민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5) 대구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1노862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지압을 해주는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해당 건강원의 손님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빨아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증용하였고, 원심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변호인은 당시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강요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서울고등법원 2021. 10. 12. 선고 2021노41 판결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만5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12세의 남자 아동이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를 마주쳤고, “돼지야 잘 먹었니?”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모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였고 위 합의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본인의 합의에 관한 의사와도 배치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41 판결)

특히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 6.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유형 판결문 양형분석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 유형 판결문의 경우,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판결의 개수가 많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나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유사한 양형사유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합쳐서 검토하였다. 강간과 강제추행 유형에서 이미 살펴본 양형사유들(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 범행부인 등,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실시한 판결문도 다수 있었으나, 이하에서는 특히 성인지 관점에서 유의미한 양형사유들을 살펴보았다.

### 가. 불리한 정상

#### 1)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고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판결문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판례에서처럼 ‘2차 피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실시한 판결은 없었지만, 피고인의 범행과 그 이후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외에도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판결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수치심은 물론, 범행 이후 민사소송 및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2020노523 판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당일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악화되어 수차례 자해 행동, 자살시도를 하거나 정신병원의 폐쇄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506)

## 2)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

강제추행죄 유형의 판결에서 살펴본 것과 반대로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822 판결)

판결문만 보아서는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었던 점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지적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 나. 유리한 정상

###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서 “계획적 범행”을 정하고 있는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1노48 판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494 판결)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4세의 대학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B대학교에서 제적되는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93 판결)

그런데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sup>157)</sup>, 설령 만취상태에 이르렀더라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성범죄 양형기준 상으로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관련된 사유를 양형기준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 2) 범행 전 피해자의 행동을 고려

준강간 사건의 판결문 중 대구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합352 판결은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점,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버렸기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합석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2~3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필라테스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피고인을 껴안는 자세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는 점(그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다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당시에는 만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버렸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은 잠겨있어 열수 없고, 피해자가 지갑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의 지인에

157)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2, 5-6면.

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의 동료도 모두 먼저 가버려 피해자를 혼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료인 I에서 연락하여 "왜 먼저 갔냐"고 다그치면서 "모텔로 빨리 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I을 모텔 앞에서 만난 후 모텔 체크인카드를 피해자 근처에 두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이 인정된다.

위 판시 내용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했던 행위들이 결코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양형사유에 고려하였다는 것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유발론'의 성폭력 통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점에서 남성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성폭력 통념, 이를 이유로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동을 두둔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성폭력 통념이 드러나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판단으로 보인다.

## 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 양형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양형위원회에서는 2021. 1. 1.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따로 시행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제1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고, 이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판결문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였다. 다만, 해당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로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상 특별양형인자 등으로 정해져있더라도 분석대상 판결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양형사유로 실시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 가. 불리한 정상

#### 1) 다수의 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로 하고 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았고, 판결들은 대부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촬영 화면이 보이지 않는 판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4953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여성들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버스정류장,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카메라를 가방에 놓고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휴대폰 카메라의 100배 줌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도 교묘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730 판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여자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233 판결)

촬영된 피해 여성의 수가 굉장히 많고,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엄청 많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나 그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앞서 본 처벌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832 판결)

피고인은 2019. 7. 2.부터 2020. 12. 12.까지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비치하여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52 판결)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회적 피해를 고려

2020년 소위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 국회에서는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규정도 개정하는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sup>158)</sup>.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결문 중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 자체의 특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판결이 다수 있었다.

1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로 보는 n번방 방지법', 2020.5.27.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800>, 검색일: 2022. 11. 29.)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6 판결)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089 판결)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영역에 있는 디지털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경우 그 개인은 물리적 성폭력에 못지않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러한 고통을 두 번이나 겪어야 했다(피해자는 아마도 평생토록 자신과 관련된 동영상 이 유포되고 있는지 불안에 떨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225 판결)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23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횡수 및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148 판결)

다만 판결문의 내용만을 보고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실제 양형에 얼마나 고려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각 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도 벌금형(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6 판결), 징역형의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08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노148 판결), 징역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225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230 판결)으로 달랐다.

## 나. 유리한 정상

### 1) 유포 여부와 정도를 고려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촬영만 했을 경우와 반포 등을 했을 경우의 권고형 자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범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중 촬영물이 '반포되지 않았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노출 정도 및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61 판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합88 판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648 판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고, 또 다른 피해자 1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0대의 대학생으로 장래 성행의 개선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230 판결)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약 6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148 판결)

심지어 촬영물을 반포 했을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반포 대상이 피해자의 친구들이어서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거나, 공개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조회수가 높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판결들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복제물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친구들이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에 대하여 여자 친구라고 하였고, G는 남성으로서 피고인이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상반신이 보이는 나체 사진이다), 위 복제물이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58 판결)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개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조회수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에는 피고인의 J 계정이 모두 삭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 2225 판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대표적인 정신적 피해가 “유포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다<sup>159)</sup>. 기술의 발달로 촬영물은 짧은 시간 안에 가해자의 핸드폰 등 저장기기를 넘어 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될 수 있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최초 촬영물이 저장된 기기 등이 압수/몰수 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 영상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날 다시 유포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호소한다. 심지어 이미 한 번 유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누가 어떻게 저장하여 재유포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은 더욱 심해진다.

실제로 분석대상 판결 중 하나였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2. 10. 선고 2021고단2225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해당 영상 중 일부가 온라인 상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 유포한 행위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의 영상이 D에 남아있음을 기회로 이를 재차 다운로드 받은 후 수 십 개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까지 특정하여 5회에 걸쳐 D나 G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현재’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다른 판결로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유포하였음에도 그 기간이 짧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159)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7, 25면.

##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함

양형사유에서 성폭력 통념이 드러난 판결들도 있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sup>160)</sup>인데 범죄의 성립이나 보호법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촬영에 이르게 된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치료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12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머리를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메시지 내용을 알아내는 등 장시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고자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중략)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감금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감금에서 풀어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유포하지 아니하였고 오래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 6,000여만 원이 있어 추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위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8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노889 판결은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 있고 그것으로 추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성폭력 통념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1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절 소결

판결문과 수사자료를 통해 전과정을 추적한 사건의 유형은 강간 등 사건, 강제추행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가정폭력 사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이다.

우선 강간 등 사건은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일부 성적인 편견이 담긴 질문과 답변을 이어 나갔고, 재판장은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은 채 본인도 그러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의 피해여부에 대한 진실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법정에서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고정관념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일부 질문은 강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이 담겨져 있었다. 대법원은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단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강간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자료와 소송기록에서 특별한 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1심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면서 가슴에 접촉한 사안에 대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2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이 작용하게 되면 균질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위 N번방 사건 중 하나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조사 당시에 음란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진술을 청취하였던 경찰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성착취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 영상 등 피해자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경찰에서의 조사는 성착취 영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2015년부터 여러 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물 등의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더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벌이 비교적 경하게 선고되는데,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왔다면 이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021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성폭력 통념이 드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사건 당시 혹은 이후의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판결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사이인 경우거나 친분이 있는 지인인 사건들에서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책임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여지를 주었다는 '피해자유발론'에 영향을 받은 판결문이 있었다. 해당 판결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는 모습이 자발적으로 보인다가 나,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되게 '동의'를 추단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착각하였을 것이라며 가해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정한 판결들도 다수 있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설령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전에 특정 행위에 동의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여서 동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라도 피고인은 같은 행위에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로 범행의 고의를 부정한 판결 등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 상 고소를 망설이다가 피고인과의 다른 갈등으로 비로소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특이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 전 다른 갈등상황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의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한 판결들도 있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죄를 선고한 분석대상 판결문들의 양형사유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유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혹은 '동종전과 없음'이었다. 유죄를 선고한 대부분의 판결에서 두 사유 중 하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 반영되어 있으나, 단순히 동종전과가 없다는 것은 양형기준 상 정해진 바가 없음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양형사유를 실시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유의미하게 반영된 판결들도 있었다. 우선 분석대상 판결이 선고된 2021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 하고(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2차 피해 방지의무를 부과한(제18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한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해당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판결들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들도 다수 있었다. 범죄의 성립과 전혀 관계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릇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막연히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를 고려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도 있었다. '기습추행' 유형의 판결들에서는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습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 제 6 장

# 해외 주요 국가 젠더폭력 관련 양형기준 및 양형판례 분석

박경규, 선종수, 손여옥



## 제6장 | 해외 주요 국가 젠더폭력 관련 양형기준 및 양형판례 분석



### 제1절 비교분석의 범위

본 장에서는 먼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탄불협약의 실제법적 내용 중에서도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및 대만을 비교국가로 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성범죄 특히, 강간죄 성립요건 관련 최근 입법을 살펴보고 난 뒤, 주요 성범죄 유형 및 법정형을 개관한다.

해외국가의 젠더폭력 관련 양형기준 및 양형판례·실무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젠더폭력 또는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할 수는 없기에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폭력범죄라고 할 수 있는 강간의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위주로 비교분석한다. 각 국가에서 선고형 산정의 일반적인 절차·방법을 살펴본 후,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위주로 양형기준 및 양형 판례·실무를 검토한다. 양형기준 및 양형 판례·실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가중·감경 요소로 기능하고, 양형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둔다.

### 제2절 이스탄불협약

#### 1. 성립 및 협약국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1년 4월 7일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투쟁하기 위한 협약(Th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이른바 ‘이스탄불협약’)을 채택하였고, 동 협약은 2014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에도 가입·비준·수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37개 국가가 이스탄불협약을 비준

또는 수용하였고, 협약에 서명하였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8개 국가이다.<sup>161)</sup>

비교국가인 독일은 2011년 5월 11일에 서명하고, 2017년 10월 12일에 비준하였으며 2018년 2월 1일부로 독일에 대해 동 협약이 발효되었다. 영국은 2012년 6월 8일에 서명하였지만, 최근 2022년 7월 21일에서야 비준하여 2022년 11월 1일부로 영국에 대해 동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아직 동 협약에 서명 등을 하지 않고 있다.

## 2. 주요 내용

### 가. 실체법적 사항 관련 협약내용 개관

이스탄불 협약은 12개의 장, 총 81개 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협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소추하며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참조), 동 협약은 “여성에게로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용된다(제2조 참조).

협약 제3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에 대한 위반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여성에게로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해악이나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 또는 여성에게 차별적 효과를 가져오는 폭력”을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참조).

제2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및 정보수집”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제7조에서는 “각 협약국은 동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그러한 폭력에 투쟁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정책을 취하고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그리고 기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예방”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실체법(Substantive law)”이라는 제목 하에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심리적

161) <https://rm.coe.int/16806cac22> 참조, 2022.7.31. 최종검색.

폭력’(제33조), ‘스토킹(제34조), ‘물리적 폭력(제35조), ‘강간’을 포함한, 성적 폭력’(제36조), 강제결혼(제37조), 여성 할례(제38조), 강제낙태 및 강제불임(제39조), 성적 협오(제40조) 등 협약국이 자국법으로 형사범죄화 해야 할 여성폭력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협약 제43조는 “동 협약이 협약국에 형사범죄화하도록 하고 있는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범행자 간의 관계성격에 상관 없이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46조는 양형에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지표들을 나열하고 있다.

#### 나. 강간죄의 정의

협약 제36조는 강간죄를 아래와 같이 “비동의 간음행위”로 정의하고, 협약국이 그러한 강간죄를 입법적 조치를 통해 범죄화하도록 하고 있다.

<p>Article 36 – Sexual violence, including rape</p> <p>1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ollowing intentional conducts are criminalised:</p> <p>a. engaging in <u>non-consensual vaginal, anal or oral penetration of a sexual nature of the body of another person with any bodily part or object</u>;</p> <p>b. engaging in other <u>non-consensual acts of a sexual nature</u> with a person;</p> <p>c. causing another person to engage in <u>non-consensual acts of a sexual nature</u> with a third person.</p> <p>2 Consent must be given voluntarily as the result of the person’s free will assessed in the context of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p> <p>3 Parties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lso apply to acts committed against former or current spouses or partners as recognised by internal law.</p>
--

위와 같이 협약 제36조는 ‘비동의 간음행위’를 강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 정도의 강한 물리적 저항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정도의 물리적 저항이 입증될 수 없는 사례에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없는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sup>162)</sup> 협약 제36조를 ‘협약상의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범행자

162)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p 33, 2011.

의 관계성격에 상관 없이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43조와 함께 이해하면, 강간 피해자와 범행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행위는 강간죄 또는 성적 폭력으로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sup>163)</sup> 한편 협약 제46조는 양형에서 가중적 정황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46조제g호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기를 사용한다고 협박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적 정황으로 들고 있다. 협약 제36조를 제46조와 함께 이해하면 이스탄불협약은 비동의간음행위를 강간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도록 하면서, 무기사용 등의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행위는 강간죄의 가중적 사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3.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M.C. v Bulgaria 사건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는 이스탄불협약의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sup>164)</sup>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스탄불협약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2003년에 M.C. v Bulgaria 사건에서<sup>165)</sup> '동의를 없을 것이 강간죄의 핵심성립요건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폭력 또는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을 것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가.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sup>166)</sup>

불가리아 여성 M.C.는 1995년 6월 31일(당시 14세) 그녀의 친구 그리고 남성 A(당시 20세) 및 P(당시 21세)와 함께 디스코를 갔다가 차로 함께 돌아오는 길에 A의 제안으로 잠깐 수영하기 위해 저수지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수영하는 동안 M.C.는 차에 있었다고 한다.

163)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to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p 33, 2011.

164) CoE. ECHR Case-Law Research Report. Article 2, 3 and 14. Articles 2, 3 and 14. Equal access to justice in the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violence against women, 2018, p. 28.

165) ECHR, M.C. v. Bulgaria, Judgment 4 December 2003 (Application no. 39272/98).

166) ECHR, Press release. Chamber Judgment in the case of M.C. v. BULGARIA, 4.1 2.2003 참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차로 돌아온 P는 강제로 M.C.와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M.C.에 의하면 그녀는 매우 불쾌하고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두 남성은 새벽에 어느 집으로 차를 몰고 갔고, 그 곳에서 A와 P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강간범행 도중뿐 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울었다고 한다. 그녀는 나중에 그녀의 엄마에 의해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는데, 처녀막 손상이 확인되었다.

A와 P는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범행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A와 P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하였다. 검사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M.C.는 불복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M.C.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강간죄로 기소하는 불가리아법은 개인의 신체의 완전성 및 사적 생활을 보호하도록 할 의무를 국가에 부담시키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에 반한다'고 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였다.

#### 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sup>167)</sup>

M.C. v Bulgaria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먼저, 유럽국가에서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강제적인 물리력의 사용 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 특히, 보통법계에 속하는 많은 유럽국가들이 '동의 없는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정의하고,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것을 더 이상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데 반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폭력사용을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국가에서도 동의 없는 간음이 강간죄의 핵심요소이지, 강한 물리적 폭력 사용이 없었다는 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점이 강간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구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판례도 강제적인 물리력의 사용을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근거로 유럽인권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67) 판결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coe.int/t/dg2/equality/domesticviolencecampaign/resources/M.C.v.BULGARIA\\_en.asp](https://www.coe.int/t/dg2/equality/domesticviolencecampaign/resources/M.C.v.BULGARIA_en.asp), 검색일 2022.8.1.

“위와 같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 및 실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해자가 저항하였을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성범죄로 기소하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일정 유형의 강간범행이 처벌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간죄 성립요건에 관한 현재의 법적 기준 및 경향을 고려하면, 유럽인권협약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약국의 의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저항이 없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동의 없는 성적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효과적으로 소추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68)</sup>

## 제3절 독일

### 1. 성범죄 유형·성립요건 관련 최근 주요 입법

#### 가. 제50차 형법개정(2016.11.4.)의 주요 내용

독일은 2011.5.11. 이스탄불협약에 서명하고, 2017.10.12.에 협약을 비준하였다. 독일은 ‘자발적 동의없이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성적 침해행위를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탄불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6년 11월 4일에 「제50차 형법개정법률 - 2016.11.4.자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개선을 위한 법률(50. StrÄndG - 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vom 4.11.2016)」을 제정하여 형법전의 강간죄 등 성범죄규정을 개정하였다.<sup>169)</sup> 이러한 이행과정을 거쳐 이스탄불협약은 2018.2.1.부로 독일에 대해 발효되었다.

#### 1) 강간죄의 요건 및 체계 개편

독일은 형법 제177조의 조문명을 “성적 침해행위; 성적 강요; 강간”으로 바꾸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를 성폭력범죄(강간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고, 준강간죄 규정인 구 제179조를 삭제하고, 준강간행위도 제177조에서 함께 규율하였다. 그리고 제177조제2항에서

168) [https://www.coe.int/t/dg2/equality/domesticviolencecampaign/resources/M.C.v.BULGARIA\\_en.asp](https://www.coe.int/t/dg2/equality/domesticviolencecampaign/resources/M.C.v.BULGARIA_en.asp) 참조, 검색일 2022.8.1.

169) MüKoStGB/Renzikowski, 4. Aufl. 2021, StGB § 177 Rn. 30.

는<sup>170)</sup>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대안적(Alternative)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제17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제177조제1항 제2항의 성적 침해행위에 비해 가중적으로 처벌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177조제5항에서는 1.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한 경우, 2.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3. 피해자가 비보호상태로(schutzlos) 범행자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177조 제6항에서는 2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특히 중한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1. 범행자가 피해자와 성교를 하거나,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특히 모욕감을 주는 유사한 성적 행위를 - 신체부위에 삽입하는 행위는 특히 그러한 행위에 해당함 - 피해자에게 행하거나, 특히 모욕감을 주는 유사한 성적 행위를 피해자에게 행하도록 한 경우(강간[Vergewaltigung]), 또는 2. 수인의 범행자에 의해 공동으로 범행이 범해진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강간죄에 관한 규정인 구 형법 제177조를 위와 같이 개편한 이유로 입법이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170) 제177조제2항은 아래와 같다.

- 2) 다음 각 호의 경우,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가 범행자에게 성적 행위를 행하도록 하거나 그가 제3자에게 성적행위를 하도록 또는 제3자가 그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수인하도록 한 범행자도 마찬가지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된다.
  - 1. 그 사람이 반대의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한 범행자
  - 2. 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반대의를 형성하거나 표현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한 범행자. 단 범행자가 그의 동의를 확실히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범행자가 그 사람이 놀람·당황(Überraschung)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경우.
  - 4. 피해가 저항하는 경우 그에게 민감한 해악(empfindliches Übel)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한 범행자.
  - 5. 민감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수인하도록 강요한 범행자.

“지금까지와는 달리 Vergewaltigung(강간)은 더 이상, 범행자가 피해자를 폭력행사, 폭력행사의 협박 또는 비보호상태의 이용을 통해 강요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범행자가 강요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예: 피해자는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자는 피해자에게 성교를 하였다) Vergewaltigung이 성립한다. 이는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 형태의 성적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형법적 의미에서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 자체를 성적화된 폭력(sexualisierte Gewalt)으로 여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제184i조(성적 괴롭힘/모욕) 신설

신설된 제184i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성적인 방법으로(‘성적 성격을 가지고’라는 의미임) 신체적으로 접촉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독일은 2016년 법개정에 의해 제184i조(성적 괴롭힘)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제184h조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심각성/현저성 요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존 성범죄 규정에 포섭될 수 없던 행위들(기습추행행위 또는 경한 성격의 성적 신체접촉 행위)을 모욕죄(Beleidigung)로 처벌해 오면서 모욕죄로 처벌되는 ‘기존 성범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한 성범죄행위들’을 ‘성적 모욕죄(Sexualbeleidigung)’라고 지칭해 왔다.

독일은 이스탄불협약의 취지를 받아들여 경한 성적인 신체접촉행위도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제184i조를 신설하였고, 2016년 형법개정 이후 기습추행행위 또는 경한 성적 접촉행위는 모욕죄가 아니라, 제184i조(성적 괴롭힘)로 처벌되고 있다. 다만 신설된 제184i조가 ‘신체접촉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신체접촉이 없지만 성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로서 다른 성범죄 규정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한 성적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sup>171)</sup>

171) 학설 및 판례는 제184i조(성적 괴롭힘)가 신설되었기에 경한 ‘성관련적 행위’를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한하려는 경향에 있는데, “성관련적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사안의 정황에 의할 때 그 행위가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모욕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즉, 행위자의 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저급한 평가가 표현될 때에 모욕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나. 제59차 형법개정(2020.9.10.)

독일은 2020.9.10. 「제59차 형법개정법률 - 촬영을 통한 인격권침해의 개선 (Neunundfünf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Persönlichkeitsschutzes bei Bildaufnahmen 2020.10.9.)」을 제정하여 형법 제184k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제184k조(촬영을 통한 내밀한 영역의 침해)

(1) 다음 각 호의 사람은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성기, 둔부, 여성의 가슴 또는 속옷 상태의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부분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촬영하거나 전송한 자,
2. 제1항에 의해 생성된 촬영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가능토록 한 자.
3. 제1항의 방법으로 권한없이 생성된 촬영물을 의식적으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접근가능토록 한 자

(2) [생략]

(3) [생략]

(4) [생략]

## 2. 성범죄에서의 양형

### 가. 주요 성범죄의 법정형

독일의 주요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주요 성범죄의 법정형을 우리나라 성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독일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정도의 법정형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독일법상 주요 성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174 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남용	피보호자와 성적 행동 또는 피보호자에게 성적 행동을 하도록 시킨 자	3월 - 5년 이하 자유형
§ 176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	14세 미만 아동과 성적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아동에게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한 자	1년 이상 자유형
§ 177 성적 침해행위; 성적 강요; 강간	의사에 반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자 동의여부를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당황상태 등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한 자	6월 - 5년 이하 자유형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동의의사를 표명할 능력이 없는 자와의 성행위 폭력사용 등을 통해 간음한 자	1년 이상
	수인이 공동하여 동의 없이 간음	2년 이상
	무기 또는 흉기를 소지하여 동의 없이 간음 중한 신체상상의 위험 초래	3년 이상
	무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간음 중한 신체상해 초래 또는 사망의 위험 발생	5년 이상
§ 178 사망을 초래한 성적 침해행위; 성적 강요; 강간	성적 침해행위, 성적 강요,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 182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강제상태를 이용한 청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 대한 성적 남용	5년 이하 자유형
§ 184 음란물 반포 등	음란물의 반포·제공 등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184b 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및 소지	아동음란물의 제작, 반포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
	영리적으로 또는 집단구성원으로 아동음란물의 제작, 반포	2년 이상 자유형
	아동음란물의 소지시도 또는 소지	1년 이상 5년 이하 자유형
§ 184c 청소년음란물의 반포, 취득 및 소지	청소년음란물의 제작, 반포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영리적으로 또는 집단구성원으로 청소년음란물의 제작, 반포	3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청소년음란물의 소지시도 또는 소지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184i 성적 모욕·괴롭힘	성적인 신체접촉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184k 촬영 등을 통한 내밀한 사적영역의 침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촬영 또는 촬영물의 반포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나. 선고형 산정 방법

### 1) 일죄의 경우

독일은 양형의 방법·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독일 법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개개 사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다.

하나의 죄로 유죄판결되는 경우 선고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방법으로 결정된다. 1) 법정형 확인 → 2)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의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한 처단형의 결정 → 3)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독일 형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 결정. 독일 형법 제46조는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행위자의 전력,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등 법원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요소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하여 선고형을 정할 것인가를 독일은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법원의 의무합치적 재량판단에 맡기고 있다.

독일 형법 제46조 제3항은 이중평가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해당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요소로 고려된 요소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요소로 기능할 수 없다.

### 2) 수죄(경합범)의 경우

독일은 형법(전) 제52조 내지 제55조에서 경합범의 처벌 방식 및 형의 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나뉘는데 상상적 경합이든 실체적 경합이든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sup>172)</sup>

독일 형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적용하지만, 경한 죄의 하한이 중한 죄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 경한 죄의 하한이 적용된다. 중한 죄에서 따로이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중한 죄에서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유형을 선택한 경우일지라도 독일 형법 제41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유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sup>172)</sup> 독일 형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참조.

독일 형법 제53조에 의하면 실제적 경합범의 경우 1개의 전체형/병합형(Gesamtstrafe)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 범죄에서 모두 동종의 형을 선택한 경우, 예컨대 모두 자유형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전체형으로서의 자유형(Gesamtfreiheitsstrafe)' 그리고 모두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전체형으로서의 벌금형(Gesamtgeldstrafe)'을 선고한다.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벌금형과 함께 자유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1개의 전체형을 선고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형을 따로 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해 각각 벌금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의 전체벌금형(Gesamtgeldstrafe)을 선고 한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경합되는 경우에 선고되는 1개의 전체형이란 자유형을 의미한다.<sup>173)</sup> 제54조 제1항과 제3항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sup>174)</sup>

실제적 경합범에서 전체형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범죄에서 - 만약 선택형이라면 - 형종을 선택하여 독일 형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한 개별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sup>175)</sup> 다음으로 형을 병과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선고형을 병합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산정하는데, 전체형의 산정은 가장 중한 개별선고형을 가중하는 가중주의 방식을 따른다.<sup>176)</sup> 따라서 가장 중한 형이 무기자유형인 경우에는 전체형으로 무기형을 선고하고, 기타 모든 경우에는 중한 형을 가중하여 전체형을 산정한다. 무기자유형 이외의 이종의 형을 선택한 경우 그 성격상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하여 전체형을 정하고, 동종의 형을 선택한 경우 중한 동종 형을 가중하여 전체형을 정한다(제54조 제1항 참조).

독일 형법은 경합범의 처벌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sup>177)</sup> 일률적인 가중정도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가중할지 여부는 법원의 합리적인

173) LK/Ruth Rissing-van Saan, § 53, Rn. 15 참조.

174) 54조 제1항은 "개별 범죄에 대한 형(Einzelstrafe) 중 하나가 무기자유형인 경우에는 전체형으로 무기형을 선고한다. 기타 모든 경우의 전체형은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하고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한다."고 하고 있고, 제54조 제3항은 "자유형과 벌금형을 병합하는 경우 벌금형 1일은 자유형 1일로 계산하여 전체형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

175) BGHSt 4, 345 (346); BeckOK StGB/v. Heinschel-Heinegg, § 54, Rn. 16.

176) LK/Ruth Rissing-van Saan, § 53, Rn. 3.

177) 우리는 무기자유형 이외의 동종의 형을 선택한 경우 일괄적으로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을 가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량에 맡기고,<sup>178)</sup> 가중시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가중의 한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가중시의 일반적 판단기준으로 제54조 제1항 제3문은 “행위자의 인격과 개별 범죄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각 개별범죄에 관련된 양형책임요소들은 각 범죄의 개별선고형을 정하면서 고려해야 하고, 전체형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체범죄와 관련된 정황들만을 - 예컨대, 각 범죄 간의 관계(시간적 간격, 상관성 등), 범행빈도, 전체범죄로부터 나타나는 범죄자의 범죄적 성향 등 -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sup>179)</sup> 전체범죄와 관련된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 및 전체범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가중하여 전체형을 산정해야 하고, 도식적인 가중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sup>180)</sup> 예컨대 먼저 모든 개별선고형을 합산한 뒤 일정 비율로 감경하는 방식으로 가중하거나 가장 중한 개별형을 다른 모든 개별형을 합산한 형기 또는 금액의 1/2까지 가중하는 방식은 적절한 가중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sup>181)</sup> 어느 정도로 가중할지를 정함에 있어서 개별형을 합산한 형기 또는 일수가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sup>182)</sup>

다음으로,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제적 경합범에서 전체형은 “개별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전체형은 유기자유형인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벌금형인 경우에는 720일수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 3. 성범죄 양형 관련 사례 및 판례

#### 가.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0년 11월 10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LG)은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죄 유죄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사실관계 및 법원의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8) BeckOK StGB/v. Heinschel-Heinegg, § 54, Rn. 8 f.

179) BeckOK StGB/v. Heinschel-Heinegg, § 54, Rn. 16 f.

180) BeckOK StGB/v. Heinschel-Heinegg, § 54, Rn. 16 f.

181) BGH StV 1994, 424; BGH NStZ-RR 2009, 200; BeckOK StGB/v. Heinschel-Heinegg, § 54, Rn. 16.

182) BGH NStZ-RR 2003, 295; BeckOK StGB/v. Heinschel-Heinegg, § 54, Rn. 17.

## 1) 사실관계

48세인 피고인 A(남성)는 2014년부터 B와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A의 가족과 B의 가족은 친하게 지내 B의 가족은 매년 3-4번씩 정도 A의 가족을 방문하곤 하였다. A의 가족은 2016년에 B의 집에 놀러갔고, A는 B1(2010년 7월 30일 출생, 피해 당시 5-6세)의 방에서 B1과 함께 모형비행기를 가지고 함께 놀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놀지 않겠다고 하였다. 함께 모형비행기를 가지고 놀고 싶었던 B1은 A의 요구에 따랐고, A는 이를 통해 자위행위를 하였다. B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날뿐만 아니라, 집에 놀러 온 다른 때에도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총 몇 회에 걸쳐 그와 같이 행동하기도 하였다.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은 A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제176조제1항)'으로 유죄판결 하고, 징역 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 2) 양형이유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은 무엇보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징역 6개월 내지 9개월 형'을 합의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은 유죄합의에 기해 인정된 '징역 6개월 내지 9개월'이 피고인의 범행 및 책임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죄합의에 기해 약속된 형량범위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범위에서 양형사유를 고려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백하였다는 점, 당해 사안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고, 피해일시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데, 피해아동의 피해여부 및 피해사실 진술에는 피해자 어머니의 강한 영향·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기때문에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유죄판결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해 유죄판결이 가능하였다는 점, 피해아동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여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보다 중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피해아동이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징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들면서 징역8월의 형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은 징역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가정의 생계도 열심히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기에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장래 적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들었다.

## 나.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의 법정형 상향 배경

3년여 전 독일에서는 한 유명인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26개의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사실로 유죄판결 받았는데, 법원은 그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선고된 형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독일 입법자는 2021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다.<sup>183)</sup>

독일은 2021년 6월에 「아동에 대한 성적화된 폭력에 투쟁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sexualisierter Gewalt gegen Kinder)」을 통해 아동음란물 유포범죄의 법정형을 기존의 '3개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83) <https://www.mdr.de/ratgeber/recht/strafe-urteil-vergewaltigung-100.html> 참조, 검색일 2022.8.1.

## 제4절 영국

### 1. 주요 성범죄의 성립요건 및 법정형

[표 6-2] Sexual Offence Act 2003에 의한 주요 성범죄의 법정형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강간 (Rape)	동의 없는 성기삽입 또는 구강성교	종신형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동의불문	종신형
유사강간 (Assault by penetration)	동의없이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여성의 성기에 삽입	종신형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	동의불문	종신형
강제추행 (Sexual Assault)	동의없이 신체접촉	S: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I: 10년 이하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동의불문	S: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I: 14년 이하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	아동성착취영상을 촬영하거나 송출하는 행위	S: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I: 14년 이하 자유형
아동음란이미지(indecent photographs of children) 소지 <sup>184)</sup>		S: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5레벨 이하 벌금 I: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관음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S: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I: 2년 이하 자유형

※ 약어 설명

S. = Summary Conviction(치안판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

I. = Conviction on Indictment(배심재판을 통해 재판받는 경우)

184) 「형사사법법률(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60조에서 규율되고 있다.

1976년 이전까지 영국 보통법에서 강간죄는 ‘폭력, 공포 또는 기만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여성과 성교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신체상해가 있었을 것이 폭력이 행사되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는 증거로 요구되었다.<sup>185)</sup> 그러나 「성범죄법률 1976(Sexual Offences Act 1976)」에서 강간죄가 ‘동의 없는 간음행위’로 정의됨으로써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폭력행사가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sup>186)</sup>

영국은 아동음란이미지(indecent photograph of child) 제작, 배포, 소지의 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법률 1978(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및 「형사사법법률 1988(Criminal Justice Act 1988)」에서 규율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sexual exploitation of a child)의 제작, 배포에 대해서는 「성범죄법률 2003」 제4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성범죄법률 2003」 제51조는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송출하는 행위’를 ‘성적 착취’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 2. 선고형 산정 절차·방법

### 가. 일반 양형가이드라인

영국은 개별 범죄군 및 범죄군 내 개개 범죄별로 상세한 양형가이드라인(offence specific sentencing)을 제정하여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범죄별 양형가이드라인은 범행의 중합(seriousness of the offence) 정도(‘범죄자의 유책성’과 ‘피해정도’를 핵심요소로 함)에 따라 해당 범죄에서 범행등급을 세분화하고, 범행등급별로 양형범위를 설정하면서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가중·감경 인자를 제시한 것으로, 범행등급별로 해당범죄사건에서 인정되는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할 때 도출할 수 있는 양형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

만약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양형가이드라인(general guideline)이 적용된다. 일반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선고형 산정은 다음의 절차·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sup>187)</sup>

185) ECHR, M.C. v. Bulgaria, Judgment 4 December 2003 (Application no. 39272/98), para. 100, 140 참조.

186) ECHR, M.C. v. Bulgaria, Judgment 4 December 2003 (Application no. 39272/98), para. 100 참조.

- 1단계 : 잠정적 선고형(출발점 선고형) 도출
  - 법정 최대형, 항소법원의 양형판결례, 유사범죄에서의 양형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잠정적 선고형 도출
  - 범죄자의 유책성(culpability) 및 범죄에 의해 초래된 피해정도(harm)의 요소로 구성되는 범죄의 중합 정도 판단
- 2단계 : 일반적인 가중·감경인자<sup>188)</sup> 적용하여 출발선고형 범위 조정
- 3단계 : '소추협조'에 기한 감경 여부
- 4단계 : 유죄협상에 의한 감경 여부
- 제5단계 : 위험성 판단
- 제6단계 : 일정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구금 선고형 여부 판단
- 제7단계 : 수죄의 경우 전체형 판단(Totality principle)
- 제8단계 : 배상 및 부수명령
- 제9단계 : 양형이유
- 제10단계 : 미결구금 산입

#### 나. 수죄의 경우 전체형 산정방법

‘수죄로 유죄판결되는 경우 전체형 산정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totality guideline)’에 의하면 수죄로 유죄판결되는 경우 법원은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먼저, 유죄판결되는 각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각 범죄에서의 선고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concurrent sentences)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관계(consecutive sentences)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sup>189)</sup>

‘상상적 경합관계’란 동일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the same incident or facts)에 기해 수죄로 유죄판결되는 경우이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특히, 동일 피해자에게 연속적으로

187)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verarching-guides/crown-court/item/general-guideline-overarching-principles/>, 2022. 8. 1. 최종검색.

188) 예시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중·감경인자에 대해서는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verarching-guides/crown-court/item/general-guideline-overarching-principles/> 참조, 검색일 2022. 8. 1.

189) ‘전체형 산정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totality guideline)’(<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verarching-guides/crown-court/item/totality/>, 검색일 2022. 8. 1.) 참조.

범해진 범행인 경우이다. 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경우 중한 범죄에서 인정되는 선고형에 경한 범죄에서 인정되는 선고형이 적절히 가중되어야 한다. 예컨대 하나의 위험운전 행위보다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각 피해자별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초래된 전체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 피해자별 범죄의 선고형이 적절히 합산되어야 한다. 연속된 소액의 사기 또는 절도로 유죄판결되는 경우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획득된 전체 이득액을 반영하여 적절한 전체형이 선고되어야 한다.<sup>190)</sup>

우리나라의 경우 상상적 경합의 경우 중한 범죄에서 인정되는 처단형으로 처벌되고, 경한 범죄의 하한이 중한 범죄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 경한 범죄의 하한이 전체형의 하한으로 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한 범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한 범죄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지만,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처단형 상한이 가중되지는 않는다. 그에 반해 영국에서는 중한 범죄의 선고형에 경한 범죄의 선고형을 적절히 가중하여 전체형을 정하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상상적 경합형 산정 방식에 비해 보다 높은 선고형이 산정될 수도 있다.

실체적 경합관계란 1) 서로 다른 수개의 사안 또는 사실관계에 기해 수죄가 범해진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연속해서 범죄가 범해졌지만 상상적 경합형 산정방법에 의해서는 범죄의 중합정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3) 하나 이상의 범죄에서 법정 최소형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인데, 상상적 경합형이 그 범죄의 법정 최소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형 산정 가이드라인’은 2)의 경우의 예로서 “① 반복된 여러 상점점원에 대한 절도와 같이, 동일·유사한 방법에 의한 연속범행이지만 피해자가 다른 경우, ② 같은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범해진 가정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를 들고 있다.<sup>191)</sup> 실체적 경합관계인 경우 법원은 각 범죄에서의 선고형을 단순합산 한 후, 단순합산한 전체형이 정당하고 비례적인지(just and proportionate)를 판단하여, 단순합산한 전체형이 너무 부당하고 불비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형을 감경한다.<sup>192)</sup>

190)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verarching-guides/crown-court/item/totality/> 참조, 검색일 2022. 8. 1.

191)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verarching-guides/crown-court/item/totality/> 참조, 검색일 2022. 8. 1.

192)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verarching-guides/crown-court/item/totality/> 참조, 검색일 2022. 8. 1.

우리 양형기준은 실제적 경합범의 경우 죄의 수에 상관 없이 중한 죄의 상한에 1/2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총칙상의 실제적 경합범 가중방식과 달리, 다수범이 2개인 지, 3개 이상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다수범이 2개인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한다. 다수범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다시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한다.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는 최대값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5/6이다. 우리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영국의 실제적 경합범에서의 전체형 산정기준과 비교하면, 실제적 경합범에서 각 범죄별 선고형을 단순합산한 후 형이 과중하면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기준에 의할 때 더 높은 선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 3. 주요 개별 성범죄 양형기준

#### 가. 강간죄 양형기준<sup>193)</sup> 및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양형기준<sup>194)</sup>

##### 1) 1단계: 범죄카테고리·범죄등급(offence category) 결정

##### 가) 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의 최대형은 종신형이고 양형범위(offence range)는 '4 - 19년 자유형'이다. 법원은 강간죄에서 1단계로, 아래와 같은 강간죄 범죄등급(Offence category) 결정기준에 따라 강간범행에 의해 피해자에게 초래된 해악(harm)의 등급과 범죄자의 유책성(culpability) 등급을 판단한다.

193)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참조, 검색일 2022.8.1.

194)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of-a-child-under-13/>, 검색일 2022.8.1.



[표 6-3] 강간죄의 범죄등급

피해정도(H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2급 인자(factor)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극심한(extreme) 경우이거나 피해 2급 인자가 상호결합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extreme) 영향을 초래한 경우 1급으로 변경될 수(may) 있음</li> </ul> </li> <li>■ 피해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li> <li>• 범죄피해로 임신 또는 성병감염</li> <li>• 납치</li> <li>• 오랫동안의 감금, 지속적 사안</li> <li>• (강간죄에 내포된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 사용 또는 폭력사용의 협박</li> <li>• 피해자 주거로의 강제침입</li> <li>•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li> </ul> </li> <li>■ 피해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1급 또는 2급의 인자가 없는 경우</li> </ul> </li> </ul>
유책성(Culp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책성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저한 정도의 계획적 범행</li> <li>• 수인이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li> <li>• 해당 범죄를 범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알콜/마약류를 이용한 경우</li> <li>• 신뢰관계 남용</li> <li>• 주거침입강도 기회에 범한 경우</li> <li>• 범행을 촬영</li> <li>• 상업적 착취 그리고/또는 그러한 동기</li> <li>• 인종적 사유 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범행</li> <li>•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또는 가해자가 생각한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적의(hostility)에 기인한 범행 또는 그러한 적의를 표출하면서 이루어진 범행</li> <li>• 피해자의 장애(또는 가해자가 생각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적의(hostility)에 기인한 범행 또는 그러한 적의를 표출하면서 이루어진 범행</li> </ul> </li> <li>■ 유책성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급 카테고리의 인자가 없는 경우</li> </ul> </li> </ul>

피해자가 강간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서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형법관에게 달려 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양형법관은 피해자의견진술서(Victim Personal Statement, VPS)에 기재된 피해정황 및 증인진술 과정에서 파악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 피해자로부터 직접 발견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판단은 피해자에게 초래된 정신적

피해가 적거나 사소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sup>195)</sup>

‘신뢰관계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의지하는 상황이어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현저한 책임(significant responsibility)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였어야 한다. 신뢰관계는 여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전문 상담사와 고객의 관계 또는 돌봐 주는 사람(비용이 지불되는지를 불문하고)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는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승객과 택시운전사, 버스 등에서 승객이 1명인 경우 등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신뢰관계의 발생은 이러한 상황에 한정되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여 언제나 신뢰관계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sup>196)</sup>

---

195)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참조, 검색일 2022.8.1.

196)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참조, 검색일 2022.8.1.

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에서 범죄등급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6-4]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범죄등급

피해정도(H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2급 인자(factor)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극심한(extreme) 경우이거나 피해 2급 인자가 상호결합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extreme) 영향을 초래한 경우 1급으로 변경될 수(may) 있음</li> </ul> </li> <li>■ 피해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li> <li>• 범죄피해로 임신 또는 성병감염</li> <li>• 납치</li> <li>• 오랫동안의 감금, 지속적 사안</li> <li>• (강간죄에 내포된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 사용 또는 폭력사용의 협박</li> <li>• 피해자 주거로의 강제침입</li> <li>• 아동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해 특별히 취약한 아동인 경우</li> </ul> </li> <li>■ 피해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1급 또는 2급의 인자가 없는 경우</li> </ul> </li> </ul>
유책성(Culp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책성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저한 정도의 계획적 범행</li> <li>• 수인이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li> <li>• 해당 범죄를 범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알콜/마약류를 이용한 경우</li> <li>• 피해자에게 그루밍 행위를 이용한 경우</li> <li>• 신뢰관계 남용</li> <li>• 피해자에게 이전에 폭력을 행한 경우</li> <li>• 주거침입강도 기회에 범한 경우</li> <li>•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취득하거나 공유한 경우</li> <li>• 피해자를 의식적으로 고립시킨 경우</li> <li>• 상업적 착취 그리고/또는 그러한 동기로</li> <li>• 인종적 사유 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범행</li> <li>•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또는 가해자가 생각한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적의(hostility)에 기인한 범행 또는 그러한 적의를 표출하면서 이루어진 범행</li> <li>• 피해자의 장애(또는 가해자가 생각한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적의(hostility)에 기인한 범행 또는 그러한 적의를 표출하면서 이루어진 범행</li> </ul> </li> <li>■ 유책성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급 카테고리의 인자가 없는 경우</li> </ul> </li> </ul>

2) 2단계: 양형구간표에 따른 양형범위 판단

가) 강간죄의 경우

(1) 양형구간표에 따른 양형출발점과 양형범위

피해등급과 유책성등급이 결정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강간죄 양형구간표에 따라 해당 범죄 등급에서의 양형출발점(starting point)과 양형범위(category range)를 확인한다. 해당 범죄등급에서 '양형출발점'은 해당 범죄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게 즉, 유죄합의 유무, 전과 유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적용된다.

[표 6-5] 강간죄 양형구간표

	유책성 A급	유책성 B급
피해 1급	출발점 15년 자유형	출발점 12년 자유형
	양형범위 13 - 19년 자유형	양형범위 10 - 15년 자유형
피해 2급	출발점 10년 자유형	출발점 8년 자유형
	양형범위 9 - 13년 자유형	양형범위 7 - 9년 자유형
피해 3급	출발점 7년 자유형	출발점 5년 자유형
	양형범위 6 - 9년 자유형	양형범위 4 - 7년 자유형

피해등급 또는 유책성등급을 판단할 때 고려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양형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하기 전에 양형출발점을 높일 수 있다.<sup>197)</sup>

197)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참조, 검색일 2022.8.1.

(2)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하여 양형출발점을 조정

범죄등급에 따른 양형출발점과 양형범위가 결정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하여 양형범위를 조정한다.

[표 6-6] 강간죄 양형에서 가중·감경 인자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문법상의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관련성,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li> <li>• 보석 중에 범죄를 범하였는지</li> </ul> </li> <li>■ 기타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 <li>• 사정이 있었던 경우(제1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li> <li>• 블랙메일 또는 기타 위협이 이용된 경우(제1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li> <li>• 범죄 장소</li> <li>• 범죄 시각</li> <li>• 무기 또는 기타 공포심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물건의 사용</li> <li>• 피해자를 강제로 주거 밖으로 내몬 경우</li> <li>•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li> <li>• 가석방 중 범한 범죄</li> <li>• 범죄를 범하기 위해 아동과의 만남을 남용한 경우</li> <li>• 타인, 특히 아동이 보는 앞에서 강간한 경우</li> <li>•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 또는 소추를 지원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li> <li>• 증거의 인멸, 은닉</li> <li>• 알콜 또는 마약류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범행</li> </ul> </li> </ul>
감경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경력이 없거나 관련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li> <li>• 범죄자의 후회·반성(remorse)</li> <li>•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li> <li>• 범죄자의 연령 그리고/또는 범죄자가 성숙성(maturity)</li> <li>• 범죄자의 정신적 장애 또는 교육능력 장애, 특히 그러한 요소가 범행과 관련된 경우</li> <li>• 긴급히 중하거나 장기의 의료처우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 또는 심각한 의료상태</li> </ul>

예컨대 연령, 질병, 장애와 같은 개인적 사유로 인해(그러한 사유에 한정되지는 않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라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립된 경우, 술에 만취된 경우 또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에도 취약한 피해자로 고려될 수(may) 있다. 범죄자

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유로 범행대상을 선정하였다면 범행자의 유책성은 증대하고, 범행자가 피해자를 홀로 머물도록 한 경우 등 범행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조장하였다면 유책성은 증대한다.<sup>198)</sup>

‘범죄자의 후회·반성’이 (유죄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죄합의로 인한 감경과는 별도로) 감경인자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경우여야 한다. 후회·반성이 없다는 점은 결코 가중인자로 기능할 수 없다.<sup>199)</sup>

강간죄의 경우 감경인자를 고려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에 큰 의미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없다.<sup>200)</sup> 오히려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이 강간범행에 이용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은 가중인자로 기능할 수 있다.<sup>201)</sup>

---

198)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검색일 2022.8.1.

199)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검색일 2022.8.1.

200)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검색일 2022.8.1.

201)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rape/>, 검색일 2022.8.1.

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1) 양형구간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양형구간표는 다음과 같다.

[표 6-7]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양형구간표

	유책성 A급	유책성 B급
피해 1급	출발점 16년 자유형	출발점 13년 자유형
	양형범위 13 - 19년 자유형	양형범위 10 - 15년 자유형
피해 2급	출발점 13년 자유형	출발점 10년 자유형
	양형범위 11 - 17년 자유형	양형범위 8 - 13년 자유형
피해 3급	출발점 10년 자유형	출발점 8년 자유형
	양형범위 8 - 13년 자유형	양형범위 6 - 11년 자유형

(2)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하여 양형출발점을 조정

[표 6-8]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에서 가중·감경 인자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문법상의 가중인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과: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관련성,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li><li>• 보석 중에 범죄를 범하였는지</li></ul></li><li>■ 기타 가중인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별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li>• 사정이 있었던 경우(제1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li><li>• 블랙메일 또는 기타 위협이 이용된 경우(제1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우)</li><li>• 범죄 장소</li><li>• 범죄 시각</li><li>• 무기 또는 기타 공포심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물건의 사용</li><li>• 피해자를 강제로 주거, 학교 등의 밖으로 내 몬 경우</li><li>•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li><li>• 가석방 중 범한 범죄</li><li>• 범죄를 범하기 위해 아동과의 만남을 남용한 경우</li><li>• 타인, 특히 아동이 보는 앞에서 강간한 경우</li><li>•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 또는 소추를 지원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li><li>• 증거의 인멸, 은닉</li><li>• 알콜 또는 마약류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범행</li><li>•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고무된 경우</li></ul></li></ul>
감경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범죄경력이 없거나 관련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li><li>• 범죄자의 후회·반성(remorse)</li><li>•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li><li>• 범죄자의 연령 그리고/또는 범죄자가 성숙성(maturity)</li><li>• 범죄자의 정신적 장애 또는 교육능력 장애, 특히 그러한 요소가 범행과 관련된 경우</li><li>• 긴급히 중하거나 장기의 의료처우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 또는 심각한 의료상태</li></ul>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양형에서 가중·감경인자는 강간죄 양형에서의 가중·감경인자와 거의 동일하다. 강간의 죄에서는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이 감경인자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은 강간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 나. '아동음란이미지 제작 등 죄' 및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양형가이드라인

영국은 '아동음란이미지 제작 등 죄(Possession of indecent photograph of child/ Indecent photographs of children)'의 양형가이드라인<sup>202)</sup> 별도로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Causing or inciting sexual exploitation of a child)'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sup>203)</sup> 두고 있다. 전자의 양형가이드라인부터 살펴본다.

### 1) 아동음란이미지 제작 등 죄

(가) 1단계: 범죄카테고리·범죄등급(offence category) 결정

아동음란이미지 소지죄의 법정 최대형은 5년 자유형이고, 양형범위는 '사회내처우 - 3년 자유형'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죄의 법정 최대형은 10년 자유형이고, 양형범위는 '사회내처우 - 9년 자유형'이다.

법원은 먼저, 아래 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동음란이미지 소지 등 범죄의 범죄등급을 판단한다. 유포 또는 공유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유포·교부(distribution)에 해당한다.

202)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magistrates-court/item/possession-of-indecent-photograph-of-child/> 참조, 검색일 2022. 8. 1.

203)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causing-or-inciting-sexual-exploitation-of-a-child/> 참조, 검색일 2022. 8. 1.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 아동성착취 관련 아동통제, 아동성착취 알선·촉진의 죄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인데,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와 관련하여서만 다룬다.

[표 6-9] 아동음란이미지 소지, 유포·교부, 제작의 죄에서의 범죄등급

	소지	유포·교부(distribution)	제작
A급	성기삽입적 성적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의 소지; 동물과의 성적 행동 또는 가학적 성적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의 소지	성기삽입적 성적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의 유포·교부(sharing); 동물과의 성적 행동 또는 가학적 성적 행동에 관한 이미지의 유포·교부	성기삽입적 성적 행동에 관한 이미지의 생성; 동물과의 성적 행동 또는 가학적 성적 행동에 관한 이미지의 생성
B급	非-성기삽입적 성적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의 소지	비-성기삽입적 성적 행동에 관한 이미지의 유포·교부	비-성기삽입적 성적 행동에 관한 이미지의 생성
C급	기타 음란한 이미지의 소지	기타 음란한 이미지의 유포·교부	기타 음란한 이미지의 생성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제작·유포·소지한 이미지 중 가장 심각한 이미지에 따라 범죄등급이 결정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이미지가 범행의 범죄등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낮은 등급이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자가 더 높은 등급의 이미지들을 제작하였거나 취득하였다면 낮은 등급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sup>204)</sup>

204)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magistrates-court/item/possession-of-indecent-photograph-of-child/> 참조, 검색일 2022.8.1.

2) 2단계: 양형구간표에 따른 양형범위 판단

범죄등급이 결정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양형구간표(category range)에 따라 양형출발점(starting point)과 양형범위(category range)를 판단한다.

[표 6-10] 아동음란이미지 제작·배포·소지에서 양형구간표

	소지	유포·교부	제작
A급	출발점 1년 자유형	출발점 3년 자유형	출발점 6년 자유형
	양형범위 26주 - 3년 자유형	양형범위 2 - 5년 자유형	양형범위 4 - 9년 자유형
B급	출발점 26주 자유형	출발점 1년 자유형	출발점 2년 자유형
	양형범위 고강도 사회내처우 - 18개월 자유형	양형범위 26주 - 2년 자유형	양형범위 1 - 4년 자유형
C급	출발점 고강도 사회내처우	출발점 13주 자유형	출발점 18개월 자유형
	양형범위 중강도 사회내처우 - 26주 자유형	양형범위 고강도 사회내처우 - 26주 자유형	양형범위 1 - 3년 자유형

법원은 범죄등급에 따른 양형출발점과 양형범위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은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하여 양형출발점을 조정한다.<sup>205)</sup>

205)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magistrates-court/item/possession-of-indecent-photograph-of-child/> 참조, 검색일 2022.8.1.

[표 6-11] 아동음란 이미지 제작 등 죄에서 가중·감경 인자

가중인자

- 성문법상의 가중인자
  - 전과: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관련성,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
  - 보석 중에 범죄를 범하였는지
- 기타 가중인자
  - 법원명령을 위반한 범행
  - 가석방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또는 이미지에 이용된 아동의 취약성
  - 아동음란이미지에 의해 초래된 확인될 수 있는 고통 또는 괴로움(distress)
  - 이미지 소지·유포·제작의 기간
  - 많은 양의 이미지를 소지·유포·제작한 경우
  -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미지를 설치
  - 영상 등의 수집
  - 증거 인멸, 은닉의 시도
  - 신뢰관계의 남용
  - 범죄자가 아는 아동을 이용한 경우
  - 아동음란이미지의 생성 또는 공유를 촉진하거나 조장하는 네트워크 또는 프로세스에 적극 개입
  - 상업적 착취 그리고/또는 상업적 동기로
  - 어린 아동, A등급 이미지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성적 남용 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찾은 경우
  - 피해자가 많은 경우
  - 알콜 또는 마약류에 취한 아동의 묘사

감경인자

- 범죄경력이 없거나 관련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 범죄자의 후회·반성(remorse)
-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
- 범죄자의 연령 그리고/또는 범죄자의 성숙성(maturity)
- 범죄자의 정신적 장애 또는 교육능력 장애, 특히 그러한 요소가 범행과 관련된 경우
- 긴급히 중하거나 장기의 의료처우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 또는 심각한 의료상태

2) 아동성착취물 촬영·송출의 죄

(가) 범죄등급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법정 최대형은 14년형인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형범위는 '1 - 13년 자유형'이고, 피해자가 13-15세인 경우 양형범위는 '26주 - 11년 자유형'

이며, 피해자가 16-17세인 경우 양형범위는 ‘사회내처우 - 7년 자유형’이다.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 아동성착취 관련 아동통제, 아동성착취 알선·촉진의 죄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은 피해정도와 범죄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범죄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sup>206)</sup>

[표 6-12]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범죄등급

피해정도(Ha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성기삽입적 성교행위를 행한 경우</li> <li>• 납치/감금</li> <li>• 폭력사용 또는 폭력사용의 협박</li> <li>•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인 심리적 학대</li> <li>• 당해 범죄에 고유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불안전하고 비인간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한 경우</li> <li>•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다른 “고객”으로 순환되었거나 그리고/또는 다른 사창가로 옮겨진 경우</li> </ul> </li> <li>■ 피해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1급 인자가 없는 경우</li> </ul> </li> </ul>
유책성(Culp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책성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적 기초 하에 아동성착취행위를 지휘·조직한 경우</li> <li>• 현저한 경제적 또는 기타 이익의 기대</li> <li>• 신뢰관계의 남용</li> <li>• 피해자에게 그루밍 행위를 이용한 경우</li> <li>• 신뢰관계 남용</li> <li>• 피해자를 아는 자에 의한 성적 착취</li> <li>• 피해자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면서 성적 착취</li> </ul> </li> <li>■ 유책성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자의 관여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범죄자가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 아동성착취 관련 아동통제, 아동성착취 알선·촉진 행위에 깊이 관여한 경우</li> </ul> </li> <li>■ 유책성 C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시하에 제한적 기능을 수행한 경우</li> <li>• 강요, 협박, 착취행위로 인해 깊이 관여한 경우</li> </ul> </li> </ul>

206)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offences/crown-court/item/causing-or-inciting-sexual-exploitation-of-a-child/> 검색일 2022. 8. 1.

(나) 범죄등급별 양형출발점 및 양형범위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에서 유책성등급과 피해등급에 따른 범죄등급별 양형출발점 및 양형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6-13]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의 양형구간표

		유책성 A급	유책성 B급	유책성 C급
피해 1급	13세 미만	출발점 10년 자유형	출발점 8년 자유형	출발점 5년 자유형
		양형범위 8 - 13년 자유형	양형범위 6 - 11년 자유형	양형범위 2 - 6년 자유형
	13-1 5세	출발점 8년 자유형	출발점 5년 자유형	출발점 2년6월 자유형
		양형범위 6 - 11년 자유형	양형범위 4 - 8년 자유형	양형범위 1 - 4년 자유형
	16-1 7세	출발점 4년 자유형	출발점 2년 자유형	출발점 1년 자유형
		양형범위 3 - 7년 자유형	양형범위 1 - 4년 자유형	양형범위 26주 - 1년 자유형
피해 2급	13세 미만	출발점 8년 자유형	출발점 6년 자유형	출발점 2년 자유형
		양형범위 6 - 11년 자유형	양형범위 4 - 9년 자유형	양형범위 1 - 4년 자유형
	13-1 5세	출발점 6년 자유형	출발점 3년 자유형	출발점 1년 자유형
		양형범위 4 - 9년 자유형	양형범위 2 - 5년 자유형	양형범위 26주 - 2년 자유형
	16-1 7세	출발점 3년 자유형	출발점 1년 자유형	출발점 26주 자유형
		양형범위 2 - 5년 자유형	양형범위 26주 - 2년 자유형	양형범위 고강도 사회내처우 - 1년 자유형

다)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한 양형범위 조정

법원은 범죄등급별 양형출발점 및 양형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가중·감경인자를 고려하여 양형출발점 및 양형범위를 조정한다.

[표 6-14]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에서의 가중·감경 인자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문법상의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관련성, 유죄판결받은 범죄와 당해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li> <li>• 보석 중에 범죄를 범하였는지</li> </ul> </li> <li>■ 기타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범행한 경우</li> <li>• 가석방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li> <li>•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킨 경우</li> <li>• 특별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li> <li>• 피해자를 정부기관(예컨대 이민청, 경찰), 가족, 친구 기타에 노출시키겠다고 협박한 경우</li> <li>• 피해자의 가족, 친구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여 범행한 경우</li> <li>• 여권, 신분증을 빼앗은 경우</li> <li>• 피해자가 의료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경우</li> <li>•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li> <li>• 음식 제한</li> <li>• 수익을 범죄자가 보유, 관리하거나 과도한 임금착소, 과도한 채무부과, 과도한 여비 또는 생활비 부과, 비합리적인 이자율</li> <li>• 피해자가 소추기관에 사안을 신고하거나 소추기관으로부터 지원, 협조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li> <li>• 증거 인멸, 은닉의 시도</li> <li>•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li> </ul> </li> </ul>
감경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경력이 없거나 관련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li> <li>• 범죄자의 후회·반성(remorse)</li> <li>•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li> <li>• 범죄자의 연령 그리고/또는 범죄자의 성숙성(maturity)</li> <li>• 범죄자의 정신적 장애 또는 교육능력 장애, 특히 그러한 요소가 범행과 관련된 경우</li> <li>• 긴급히 중하거나 장기의 의료처우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적 장애 또는 심각한 의료상태</li> </ul>

## 제5절 미국

### 1. 연구범위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형법이 있고, 주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주에 따라 양형 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상세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그렇기에 일부 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실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를 대상으로 양형기준 및 양형실무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미국 연방법을 대상으로 하여, 연방법상의 성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그리고 연방양형가이드 라인에 의할 때 강간의 죄 및 아동·청소년에서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 2. 미국의 주요 성범죄 성립요건 및 법정형

미국 연방법률(U.S. Code) 제18편의 제109A장, 제110장, 제117장 등에서 연방법원 관할 성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연방법률상의 주요 성범죄와 법정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5] 미국 연방법률상의 주요 성범죄 및 법정형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241 가중처벌되는 성적 학대 (Aggravated sexual ab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협박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간음·유사간음) 폭행하거나 누군가 사망·중상해 또는 납치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의식적으로 타인을 간음·유사간음하거나(sexual act) 무의식상태를 초래하여 또는 약물 등을 이용하여 간음·유사간음한 자</li> <li>▪ 12세 이하 아동을 간음·유사간음할 의도로 주 경계를 넘거나 12세 미만 아동을 간음·유사간음한 자 또는 폭행·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12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을 간음·유사간음하거나 간음·유사간음하려고 시도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형, 자유형 또는 종신형</li> <li>▪ 벌금형 그리고 30년 이상 자유형 또는 종신형</li> </ul>
§ 2242 성적 학대 (sexual abuse)	사망·중상해·납치 이외의 해악고지를 통해 협박하여 간음·유사간음하거나 간음·유사간음 행동의 성격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거부의를 표명할 수 없거나 표명하기 어려운 자를 간음·유사간음하거나 동의 없이 타인을 간음·유사간음한 자	벌금형, 자유형 또는 종신형
§ 2243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 등에 대한 성적 학대	12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피보호자 또는 피구금자를 간음·유사간음한 자 또는 미수범	벌금형 또는 15년 이하 자유형
§ 2244 학대적 성적 교류 (Abusive sexual contact)	타인에 대한 성적 접촉(sexual contact)행위가 그 행위가 간음·유사간음이었다면 각각 제2241조 내지 제2243조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10년/3년/2년 이하
§ 2251 아동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명백한 성적 행동의 시각적 표현물의 제작 또는 실시간 전송을 위해 미성년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고용하거나, 설득하거나, 교사하거나, 유도하거나 강요한 자 등	벌금형 그리고 15년 이상 30년 이하 자유형(가중 구성요건 충족시 가중)
§ 2251 A 아동매매	아동성착취물을 위해 아동을 매매·매수 하거나 지배력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자	벌금형 그리고 30년 이상 자유형
§ 2252 아동성착취물 운송, 취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성착취물을 운송하거나 취득하거나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 또는 공모범</li> <li>▪ 아동성착취물을 시청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접근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 또는 공모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형 그리고 5년 이상 20년 이하 자유형(관련 성범죄 전과 있는 경우 가중)</li> <li>▪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 자유형(관련 성범죄 전과 있는 경우 가중)</li> </ul>
§ 2252 비디오 관음 (Video voyeurism)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적 영역을 촬영한 자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자유형

### 3. 미국 연방법상 선고형 산정 과정 및 기준

미 연방법 제18편 제3553조는 범죄의 성격 및 정황, 범죄자의 이력 및 특성 등 선고형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상의 범죄 분류와 범죄자 분류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범죄의 중합 정도 분류와 범죄자 특성 분류를 두 가지 핵심요소로 하여 양형의 일반적 기준, 범죄군별 상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1)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범죄별 양형가이드라인' 확정 → 2) 그 범죄의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기본 범죄등급'을 결정한 후,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범죄특성, 상호참조, 및 특별 지시사항을 고려하여 범죄등급(offence level)을 결정 → 3) 피해자 관련 요소, 범행에서 범죄자의 역할 정도, 사범방해 여부 등 양형가이드라인 제3장(Chapter)에 나열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범죄등급을 조정 → 여러 혐의(counts)로 기소된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상의 '유사혐의 그룹화 기준'에 따라 유사혐의를 그룹화하고, 앞의 절차를 반복하여 혐의그룹별 범죄등급 결정 → 소송법상의 범죄사건 수 판단기준, 수 개 혐의그룹에서의 가중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범죄등급' 결정 → 피고인의 책임인정에 따른 범죄등급의 조정 → '범죄이력 등급(criminal history category) 기준'에 따라 범죄이력등급 결정 → 범죄등급과 범죄이력등급을 상호결합시켜 양형구간을 제시하고 있는 양형구간표(sentencing table)에 따라 양형구간 확정.<sup>207)</sup>

양형가이드라인은 범죄등급과 범죄이력등급을 결합시켜 [표 6-16]과 같이 양형구간표를 제시하고 있다.<sup>208)</sup>

207)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17.

208)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407.

[표 6-16] 연방양형가이드라인상의 양형구간표

Sentencing table(in months of imprisonment)							
	Offense Level	Criminal History Category (Criminal History Points)					
		I (0 or 1)	II (2 or 3)	III (4, 5, 6)	IV(7, 8, 9)	V(10, 11, 12)	VI(13 or more)
Zone A	1	0-6	0-6	0-6	0-6	0-6	0-6
	2	0-6	0-6	0-6	0-6	0-6	1-7
	3	0-6	0-6	0-6	0-6	2-8	3-9
	4	0-6	0-6	0-6	2-8	4-10	6-12
	5	0-6	0-6	1-7	4-10	6-12	9-15
	6	0-6	1-7	2-8	6-12	9-15	12-18
	7	0-6	2-8	4-10	8-14	12-18	15-21
	8	0-6	4-10	6-12	10-16	15-21	18-24
Zone B	9	4-10	6-12	8-14	12-18	18-24	21-27
	10	6-12	8-14	10-16	15-21	21-27	24-20
	11	8-14	10-16	12-18	18-24	24-20	27-33
Zone C	12	10-16	12-18	15-21	21-27	27-33	30-37
	13	12-18	15-21	18-24	24-20	30-37	33-41
Zone D	14	15-21	18-24	21-27	27-33	33-41	37-46
	15	18-24	21-27	24-20	30-37	37-46	41-51
	16	21-27	24-20	27-33	33-41	41-51	46-57
	17	24-30	27-33	30-37	37-46	46-57	51-63
	18	27-33	30-37	33-41	41-51	51-63	57-71
	19	30-37	33-41	37-46	46-57	57-71	63-78
	20	33-41	37-46	41-51	51-63	63-78	70-87
	21	37-46	41-51	46-57	57-71	70-87	77-96
	22	41-51	46-57	51-63	63-78	77-96	84-105
	23	46-57	51-63	57-71	70-87	84-105	92-115
	24	51-63	57-71	63-78	77-96	92-115	100-125
	25	57-71	63-78	70-87	84-105	100-125	110-137
	26	63-78	70-87	78-97	92-115	110-137	120-150
	27	70-87	78-97	87-108	100-125	120-150	135-168
	28	78-97	87-108	97-121	110-137	135-168	140-175
	29	87-108	97-121	108-135	121-151	140-175	151-188
	30	97-121	108-135	121-151	135-168	151-188	168-210
	31	108-135	121-151	135-168	151-188	168-210	188-235
	32	121-151	135-168	151-188	168-210	188-235	210-262
	33	135-168	151-188	168-210	188-235	210-262	235-293
	34	151-188	168-210	188-235	210-262	235-293	262-327
	35	168-210	188-235	210-262	235-293	262-327	292-365
	36	188-235	210-262	235-293	262-327	292-365	324-405
	37	210-262	235-293	262-327	292-365	324-405	360-Life
	38	235-293	262-327	292-365	324-405	360-Life	360-Life
	39	262-327	292-365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40	292-365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1	324-405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2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360-Life
	43	Life	Life	Life	Life	Life	Life

#### 4. 연방 성범죄 양형기준

##### 가. 성범죄 유형별 범죄등급 결정 기준

양형가이드라인 제2장에서는 범죄유형별로 범죄특성에 따른 범죄등급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제A절의 3에서는 '성적 학대 범죄(criminal sexual abuse)'에서의 범죄유형별 범죄등급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제G절에서는 '상업적인 성적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of minors)'에서 범죄유형별 범죄등급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H절의 3에서는 '프라이버시 범죄'에서의 범죄등급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성적 학대 범죄군(sexual abuse offences)에서 범죄특성에 따른 범죄등급 결정

가) 성적 학대 범죄(sexual abuse)

양형가이드라인 §2A3.1.에 의하면 성적 학대 범죄(sexual abuse)에서 범죄특성에 따른 범죄등급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p>§2A3.1. 성적학대 범죄 또는 그 미수범</p> <p>(a) 기본 범죄등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 U.S.C. § 2241(c)에 기술된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38등급, 기타의 경우 30등급</li> </ul> <p>(b) 특별 범죄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범죄가 18 U.S.C. § 2241(a) 또는 (b)의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4등급 상승</li> <li>- 18 U.S.C. § 2241(a)(2)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2세 미만인 경우 4등급 상승; 피해자가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2등급 상승</li> <li>-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관리, 감독적 통제하에 있던 경우 또는 교정기관의 보호·관리하에 있던 경우 2등급 상승</li> <li>-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영구한 또는 삶을 위협하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4등급 상승;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중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2등급 상승; 신체손상의 정도가 앞의 2가지 경우의 중간 정도인 경우 3등급 상승</li> <li>- 피해자가 납치된 경우 4등급 상승</li> <li>- 미성년자를 금지된 성적 행동을 하도록 설득·교사·유인·강요하는 행위가 참여자 신원의 허위 표시와 관련되거나 컴퓨터 또는 상호대화적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2등급 상승</li> </ul> <p>(c) 상호참조(cross referen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 양형가이드라인 §2A1.1 적용</li> <li>- 범죄행위가 미성년자를 아동성착취물의 생성에 관여케 하는 행위인 경우 §2G2.1 적용</li> </ul> <p>(d) 특별 지시(special instru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소 또는 기타 교정기관의 구금 또는 통제 하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교도관인 경우 §3A1.2 적용</li> </ul>
---

나) 성학대적 성적 접촉

양형가이드라인 §2A3.4.에 의하면 성학대적 성적 접촉(abusive sexual contact) 범죄에서 범죄특성에 따른 범죄등급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A3.4. 성학대적 성적 접촉 또는 그 미수범

(a) 기본 범죄등급

- (1) 범죄행위가 18 U.S.C. § 2241(a)에 기술된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경우 20등급
- (2) 18 U.S.C. § 2242에 기술된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경우 16등급
- (3) 기타의 경우 12등급

(b) 특별 범죄특성

- (1) 피해자가 12세 미만인 경우 4등급 상승. 4등급 상승하더라도 22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22등급으로.
- (2) 기본범죄등급이 (a)(1) 또는 (2)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인데, 피해자가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2등급 상승
- (3)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금, 보호, 감독적 통제 하에 있던 경우 2등급 상승
- (4) 미성년자를 금지된 성적 행동에 이르도록 설득·교사·유인·강요하기 위해 참가자 신원을 허위로 알린 경우 2등급 상승
- (5) 미성년자를 금지된 성적 행동에 이르도록 설득·교사·유인·강요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상호대화적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등급 상승

(c) 상호참조

- (1) 범죄행위가 성적 학대 범죄(sexual abuse) 또는 그 미수범과 관련되는 경우 §2A3.1 적용
- (2) 범죄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또는 그 미수범과 관련되는 경우 §2A3.2 적용

2) 상업적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

양형가이드라인 §2G1.1.은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아닌 자와의 상업적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에서의 범죄등급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G1.1. 미성년자 아닌 자의 상업적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

(a) 기본 범죄등급

(1) 범죄행위가 18 U.S.C. §1591(b)(1)에 기술된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경우 34등급

(2) 기타의 경우 14등급

(b) 위 (a)(1)이 적용되고, 범죄행위가 기만적 행위(fraud) 또는 강요와 관련되는 경우 4등급 상승

(c) 상호참조

(1) 범죄행위가 18 U.S.C. §2241(a)나 (b) 또는 18 U.S.C. §2242에 기술된 행동과 관련되는 경우 §2A3.1 적용

(d) 특별 지시

(1) 범죄행위가 수인의 피해자와 관련되는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별개의 유죄로 인정된 혐의사실(count of conviction)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상업적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을 하도록 운송되거나, 설득되거나, 교사되거나, 유인되거나 강요된 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별개의 혐의사실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유사범죄로 묶여질 수 없고, 각각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어야 한다.<sup>209)</sup> 피해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른 양형구간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양형구간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sup>210)</sup>

양형가이드라인 §2G1.3.은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의 상업적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에서의 범죄등급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9)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05.

210)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05.

§2G1.3. 미성년자의 상업적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

(a) 기본 범죄등급

- (1) 피고인이 18 U.S.C. §1591(b)(1)으로 유죄판결 받는 경우 34등급
- (2) 피고인이 18 U.S.C. §1591(b)(1)으로 유죄판결 받는 경우 32등급
- (3) 피고인이 18 U.S.C. §2422(b) 또는 §2423(a)로 유죄판결 받는 경우 28등급
- (4) 기타의 경우 24 등급

(b) 특별 범죄특성

- (1) 피고인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 친척 또는 법적 후견인인 경우 또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피고인의 구급, 보호 또는 통제적 감독하에 있는 경우 2등급 상승
- (2) 미성년자를 금지된 성적 행동에 이르도록 설득·교사·유인·강요 또는 촉진하기 위해 신원을 허위진술 한 경우 또는 기타 참가자가 부적절하게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2등급 상승
- (3) 범죄행위가 성착취범죄 또는 성적 접촉 범죄에 관련되거나 (a)(3) 또는 (a)(4)가 적용되고 범죄행위가 상업적 성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2등급 상승
- (4) 위 (a)(3) 또는 (a)(4)가 적용되고 범죄행위가 12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경우 8등급 상승

(c) 상호참조

- (1) 범죄행위가 고지 또는 광고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생성에 미성년자가 관여토록 하는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2G2.1 적용
- (2) 미성년자가 18 U.S.C. § 1111의 살인죄가 성립되는 정황 하에서 살해된 경우 §2A1.1 적용
- (3) 18 U.S.C. §2241 또는 §2242에 기술된 행동과 관련되는 경우 §2A3.1 적용

(d) 특별 지시

- (1) 범죄행위가 수인의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설득, 유인, 강요, 운송의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으로의 참가자 신원을 허위진술하는 행위(mis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identity)는 미성년자에게로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sup>211)</sup> '참가자가 부적절하게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참가자가 미성년자 행동의 자발성을 유발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성행위 참가자가 미성년자보다 적어도 10살 이상 많은 경우 '참가자가 부적절하게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은

211)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09.



‘반박될 수 있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참가자와 미성년자 간의 상당한 나이 차이로 인해 ‘참가자가 미성년자에게 어느 정도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추정될 수 있다.<sup>212)</sup>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취급되어야 하고,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른 양형구간을 벗어나 높은 양형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sup>213)</sup>

### 3)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양형가이드라인 §2G2.1.은 다음과 같이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에서 범죄등급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12)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09.

213)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10.

§2G2.1.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 보호자의 아동성착취행위 허용; 아동성착취물에 관여토록 광고하는 행위

(a) 기본 범죄등급: 32등급

(b) 특별 범죄특성

- (1) 범죄행위가 12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경우 4등급 상승; 12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경우 2등급 상승
- (2) (다음 기준 중 보다 중한 기준 적용) 범죄행위가 성행위 또는 성적 접촉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2등급 상승; 범죄행위가 성행위와 관련되고 18 U.S.C. §2241(a) 또는 (b)에 기술된 행동과 관련되는 경우 4등급 상승
- (3) 피고인이 의식적으로(knowingly) 반포행위를 한 경우 2등급 상승
- (4) 범죄행위가 가학적이거나 피학적 행동 또는 기타 폭력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영유아와 관련된 아동성착취물에 관한 것인 경우 4등급 상승
- (5)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부모, 친척 기타 법적 후견인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피고인의 지배, 보호 또는 통제적 감독하에 있는 경우 2등급 상승
- (6) 범죄행위가 참가자 신원의 허위진술과 관련되거나 컴퓨터 또는 상호대화적 컴퓨터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경우 2등급 상승

(c) 상호참조

- (1) 미성년자가 18 U.S.C. §1111이 충족되는 정황하에 사망한 경우

(d) 특별 지시

- (1) 범죄행위가 수인의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경우 각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에서도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각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별개의 범죄사실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른 양형구간에서 벗어나 높은 양형구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14)</sup>

양형가이드라인 §2G2.2.는 다음과 같이 ‘아동성착취물 판매, 취득, 운반, 광고, 소지’범죄에서의 범죄등급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14)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13.

§2G2.2. 아동성착취물 매매; 아동성착취물 취득, 운반 또는 광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a) 기본 범죄등급

- (1) 피고인이 18 U.S.C. §1466A(b), §2252(a)(4), §2252A(a)(5) 또는 §2252A(a)(7)로 유죄판결 받는 경우 18등급
- (2) 기타의 경우 22등급

(b) 특별 범죄특성

- (1) 위 (a)(2)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성착취물 취득 또는 요청(solicitation)에 한정되는 경우이고, 피고인이 아동성착취물을 거래에 유통시키거나 반포할 의도가 아니었던 경우 2등급 상승
  - (2) 아동성착취물이 사춘기전의 아동 또는 12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되는 경우 2등급 상승
  - (3) (다음 중 보다 중한 기준 적용)
    - (A) 금전적 이익 획득을 위한 반포행위인 경우 이득액에 상응하여 과 아래 §2B1.1에 따라 등급 상승, 단 적어도 5등급 이상으로 상승
    - (B) 금전적 이익 이외의 가치 있는 대가를 받고 반포한 경우 5등급 상승
    - (C) 미성년자에게 반포한 경우 5등급 한도로 상승
    - (D) 아래 (E)에 기술된 불법행위 이외의 불법행위에 관여토록 미성년자를 설득·교사·유인·강요할 의도로 미성년자에게 교부한 경우 6등급 한도로 상승
    - (E) 금지된 성적 행동에 이르도록 미성년자를 설득·교사·유인·강요할 의도로 미성년자에게 교부한 경우 7등급 한도로 상승
  - (F) 위 (A) 내지 (E) 이외의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반포하는 경우 2등급 상승
  - (4) 아동성착취물이 가학적이거나 피학적 또는 폭력적 묘사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영우아의 성적 학대(abuse) 또는 착취(exploitation)와 관련되는 경우 4등급 상승
  - (5)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성적 남용 또는 성적 착취 행위와 패턴으로 관련된 경우 5등급 상승
  - (6) 시청의도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전달, 취득 또는 교부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상호대화적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등급 상승
  - (7) 범죄행위가
    - (A) 적어도 10개 이상 150개 미만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경우 2등급 상승
    - (B) 적어도 150개 이상 300개 미만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경우 3등급 상승
    - (C) 적어도 300개 이상 600개 미만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경우 4등급 상승
    - (D) 600개 이상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경우 5등급 상승
- (c) 상호참조
- (1) 범죄행위가 고지 또는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가 성착취물생성 행위에 관여토록 하는 경우 §2G2.1 적용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 행위와 패턴으로 관련된 경우’란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에 관한 둘 이상의 별도의 범죄사안(two or more separate instances)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고,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 행위가 범죄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동일한 피해자가 문제되는지는 상관없다.<sup>215)</sup>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아동성착취물 취득, 소지 등의 경우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기본범죄등급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사진, 컴퓨터 이미지 또는 기타 시각적 이미지는 각각 하나의 이미지로 계산되고, 이미지의 수가 미성년자의 수에 상당히 미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구간에서 벗어나 양형구간의 상승이 인정될 수 있다.<sup>216)</sup> 하나의 비디오 영상, 비디오 클립 등 영상물은 75개의 이미지로 계산되고, 영상물 재생시간이 5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범죄등급의 상승이 허용된다.<sup>217)</sup>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음란물범죄(Obscenity)의 경우 아동성착취물 취득, 소지 등의 행위에서 인정되는 범죄등급 상승 인자와 동일한 인자를 이유로 범죄등급의 상승을 인정하고 있지만(예컨대 음란물을 미성년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가학적·폭력적 내용의 음란물인지 여부, 컴퓨터 또는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 음란물 범죄의 경우 유포된 음란물의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범죄등급을 상승시키지는 않고 있다.<sup>218)</sup> 미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의 이러한 태도는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음란물범죄에 비해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범죄등급 조정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제3장(Adjustment)에서 피해자 관련 요소, 범행에서 범죄자의 역할, 사범방해여부, 수개의 혐의사실, 책임인정과 같이 범죄에서 피해자, 범죄자와 관련되는 요소로서, 범죄의 중합 정도에 따라 결정된 범죄등급을 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215)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17.

216)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17.

217)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17.

218)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221-222 참조.

### 1) 피해자 관련 요소를 고려한 범죄등급의 조정

양형가이드라인 §3A1.1.은 ‘혐오범죄 또는 취약한 피해자’라는 피해자관련 범죄등급 상승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민족, 성, 성적 정체성, 장애 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택하였다면 범죄등급은 3등급 상승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약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던 경우라면(should have known) 범죄등급은 2등급 상승된다. 범죄가 혐오범죄이고, 많은 수의 취약한 피해자와 관련된 경우 3등급이 추가적으로 상승된다. ‘취약한 피해자’란 양형가이드라인 §1B1.3에 나열된 범죄의 피해자이고,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취약하거나 기타 범죄적 행동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를 뜻한다.<sup>219)</sup>

양형가이드라인 §3A1.2.는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official victim)’를 범죄등급 상승요소로 인정하고 있고, 양형가이드라인 §3A1.3.은 ‘피해자의 신체적 저항이 있었던 경우’ 범죄등급을 2등급 상승시키는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저항’은 그러한 요소가 이미 범죄성립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범죄등급 상승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기타 피해자 관련 범죄등급 상승요소로 양형가이드라인은 테러리즘(§3A1.4.)과 ‘중요한 인권침해 행위’(§3A1.5)를<sup>220)</sup> 들고 있다.

### 2) 범행에서 범죄자의 역할

§3B1.1.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죄단체의 조직자, 리더역할을 하였거나 범죄행위에서 매니저, 감독자의 역할을 한 경우 각각 범죄등급이 4등급 내지 2등급 상승한다. §3B1.2.에 의하면 범죄자가 최소한의 범주참여(minimal participant) 역할을 한 경우 범죄등급이 4등급 낮아지고, 마이너 역할(minor participant)을 한 경우 2등급 낮아지고, 양자의 중간인 경우 3등급 낮아진다.

§3B1.3.에 의하면 범죄자가 공적 또는 사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거나 특별한 범죄기술을 이용한 경우 범죄등급이 2등급 상승한다. 공적 또는 사적 신뢰관계의 이용은 그러한 지위·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범행 또는 범행은폐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sup>221)</sup>

219)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346.

220) ‘중요한 인권침해 행위’란 제노사이드, 고문, 전쟁범죄, 아동병사 모집과 같은 범죄를 의미한다(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350).

221)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355.

### 3) 수개의 혐의사실(multiple counts)

§3D1.1.에 의하면 수개의 혐의사실 또는 소인(counts)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수개의 혐의사실 또는 소인에서 1) 밀접히 관련성을 가지는 소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2) 각 소인그룹별로 범죄등급을 결정한 후, 3) 가장 중한 범죄등급이 인정되는 소인그룹에 양형 기준상의 '수개 범죄사안(또는 범죄사건)에서의 가중기준'에 따라 범죄등급을 가중해야 한다. §3D1.2.에 의하면, 해악(harm)이 동일한 소인의 경우 하나의 소인그룹으로 묶여지는데, (a) 피해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행위인 경우, (b) 단일한 범죄 목적 또는 공통의 범죄 계획에 포함된 수개의 행위에서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c) 하나의 소인상의 범죄행동이 다른 소인상의 범죄행동에서 특수한 범죄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소인그룹으로 묶인다. 또한 (d) 범죄등급이 주로, 해악 또는 손실의 총량, 관련된 물건의 양에 의해 결정되거나 범죄행동이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양형가이드라인이 계속되는 그러한 범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데, 양형가이드라인은 이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2G2.2('아동성착취물 매매, 취득, 운반, 소지 등에서의 범죄등급결정기준) 및 §2G3.1(음란물 수입, 메일링, 운송 등에서의 범죄결정기준)상의 범죄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2G1.1('미성년자 아닌 자의 상업적 성행위 또는 금지된 성적 행동을 촉진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등급결정기준) 및 §2G2.1('아동성착취물 제작 행위'에서의 범죄등급결정기준)상의 범죄에는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각 소인그룹별 범죄등급이 결정되면, 가장 중한 범죄등급에 아래 표와 같은 가중기준에 따라 등급을 가중하여 '통합 범죄등급(combined offense level)'을 결정한다. 가장 중한 범죄보다 1-4등급 낮은 범죄의 경우 1 유닛으로 계산하고, 5-8등급 낮은 범죄의 경우 1.5 유닛으로 계산하고, 9등급 이상 낮은 범죄는 제외한다.<sup>222)</sup>

### 다. 범죄이력 등급

양형가이드라인 제4장 제A절은 피고인의 범죄이력을 점수화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구간화하여 범죄이력 등급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제4장 제B절에서

222)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372.

는 경력범죄자(career offender) 및 영리형 범죄자(criminal livelihood)의 범죄등급 가중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B1.3.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as a livelihood) 일련의 범죄행동의 부분으로서(as part of a pattern of criminal conduct) 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13등급 이상의 범죄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표 6-17] 수죄에서 가중 기준

Number of Units	Increase in Offense Level
1	none
1 1/2	add 1 level
2	add 2 levels
2 1/2 - 3	add 3 levels
3 1/2 - 5	add 4 levels
More than 5	add 5 levels

## 라. 양형구간의 확정

### 1) 양형구간표

연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범죄등급(수개의 범죄로 유죄판결되는 경우 ‘통합 범죄등급’)과 ‘범죄이력 등급’이 교차하는 양형구간을 해당 사건에서의 양형구간으로 확정한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특별한 범죄자 관련요소 또는 범죄 정황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형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양형구간의 변경

§5H1.2.에 의하면 교육정도 및 직업적 기술능력은 일반적으로 양형구간의 변경을 허용하는 요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다.<sup>223)</sup> §5H1.6. 에 의하면, 가족과의 유대 및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은 일반적으로 양형구간의 변경을

<sup>223)</sup>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460.

허용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없다.<sup>224)</sup> 특히 성범죄에서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 및 사회적 유대 관계가 인정되는 양형구간보다 낮은 양형구간으로 변경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sup>225)</sup>

일반적으로 그러한 범행에서 초래되는 피해자의 심리적 손상에 비해 매우 심각한 극도의 심리적 손상이 초래된 경우 인정되는 양형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sup>226)</sup>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이 범죄유발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다른 범죄에서는 양형구간 감경요소로 기능할 수 있지만, 성범죄에서는 그렇지 않다.<sup>227)</sup>

## 제6절 일본

### 1. 성범죄의 성립요건 관련 최근 주요 입법

#### 가.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한 성범죄 관련 입법 및 개정

일본 「형법」상 성범죄처벌에 관한 규정은 1907년 법률 제정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1907년 이후 성범죄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1958년 집단강간(輪姦)형태의 강간죄를 비(非)친고죄화 한 것과, 2004년 성범죄 관련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것이 전부였다. 시대에 맞지 않는 성범죄 규정과 처벌에 관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고, 제정 후 110년이 지난 2017년 「형법」 개정에서 성범죄에 관한 규정이 대폭 수정되었다.<sup>228)</sup>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강간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개정, ②감호자(監護者)추행죄 및 감호자 성교죄 신설, ③강도강간죄 구성요건 재정비, ④친고죄였던 강간죄 등의 비(非)친고죄화 등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강간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개정

224)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462.

225)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462.

226)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476.

227)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21, Nov. 2021, p. 479.

228) 前澤 貴子, “性犯罪規定に係る刑法改正法案の概要”, 調査と情報 No. 962, 2017, p.1



과거 여성에게만 한정했던 강간죄 피해대상의 성별을 불문하도록 구성요건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강간죄’의 명칭도 ‘강제성교등 죄’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강간죄는 성기 성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성기 성교만을 특별히 취급하고 그 외의 성적 공격(구강 성교, 항문 성교)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의 합의를 거쳐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를 강제성교죄(강간)에 포함시켰다.<sup>229)</sup> 2017년 개정 전까지 구음(口淫)하게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중 악질태양(態樣)으로 분류했다. 개정과정을 통해 나타난 입법자의 가치판단을 고려할 때, 성기 성교의 범정(犯情)을 구강 성교나 항문 성교보다 중하게 평가하여 양형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sup>230)</sup> 이는 반대로 구강 성교나 항문 성교를 성기 성교의 범정보다 경하게 보아서 안 되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간죄의 범정형을 상향하였는데, 기존 징역 3년이었던 강간죄의 범정형 하한을 5년으로 개정하였다.

## 2) 감호자(監護者)추행죄 및 감호자 성교죄 신설

2017년 「형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이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위나 관계성 등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성적침해행위를 한 것을 처벌한다. 따라서 폭행 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유무는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교 교사나 운동 코치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침해행위 등이 본 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성적 침해행위는 「아동복지법」제34조제1항제6호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로 처벌하였다(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아동에 대한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강제추행죄나 강제성교죄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하에 본 죄가 신설되었다.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강제추행죄 및 강제성교죄 등이 적용된다.

22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前澤 貴子, “性犯罪規定に係る刑法改正法案の概要”, 調査と情報 N o. 962, 2017, p.4

230) 井田良, 講義刑法学 · 各論【第2版】, 2020, p.116

### 3) 강도강간죄 구성요건 재정비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의 처벌규정이 크게 바뀌었다. 기존의 강도강간죄는 가해자가 강도를 하는 중에 여성을 강간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였다. 하지만, 개정 이후 피해자의 성별은 묻지 않게 되었고, 강도와 강간의 선후 관계도 불문한다.

### 4) 강간죄의 비친고죄화

일본은 강제추행죄, 강간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와 이들의 미수)에 대해 원칙상 친고죄를 취해왔다. 2017년 「형법」 개정에서는 제180조<sup>231)</sup>를 삭제하여 기존에 친고죄였던 성범죄를 비친고죄화 하였다.

#### 나.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2017년 형법 개정에서는 부칙 제9조에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검토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2018년 4월, 법무성 내 관계 부국(部局)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시책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성범죄에 관한 각종 조사, 연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고 2020년 3월 보고서를 정리, 공표하였다. 당시 형사법 관련 분야의 연구는 2017년 법 개정 이후 시행상황 조사, 2018년 재판례, 불기소 조사, 해외 법제 연구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피해 당사자, 피해자 심리·지원 관계자, 형사법연구자,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이하, ‘검토회’라 한다) 개최가 결정되었다.

2020년 6월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5월까지 1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내용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가 2021년 5월 발표되었다.<sup>232)</sup>

231) 舊「형법」제180조 ① 제176조에서 제178조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생략>

232)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1. <<http://www.moj.go.jp/content/001348762.pdf>>

보고서는 크게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성범죄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형사실체법과 관련해서는 ①현행법의 운용실태와 과제, ②폭행·협박과 심신상실, 항거 불능 요건에 관한 문제, ③지위·관련성을 이용한 범죄유형에 관한 문제, ④성관계 동의능력에 관한 연령, ⑤법정형, ⑥배우자간 성적행위(부부간)에 관한 처벌, ⑦성적행위를 촬영한 경우의 처벌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중 보고서와 관련이 깊은 ⑤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법정형에 관해서는 크게 (1)가중요건으로 보아야 할 유형과, (2)개정과정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된 강제성교죄 등의 법정형 하한을 낮추어야 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먼저, 가중요건 유형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2명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상습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다. 2017년 형법개정으로 집단강간죄가 폐지되면서 집단으로 발생한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제성교 등의 죄의 하한을 유지하면서 상한을 강제성교 등 치사죄와 동일한 무기징역까지 상향하자는 의견이었다.<sup>233)</sup> 이에 대해 지나친 법정형 상한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명이 범행을 저지른 사안의 경우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담당할 역할에 차이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자체를 내릴 수 없는 법정형의 상향조정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거나 다수의 생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성범죄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sup>234)</sup> 또한 2017년 개정에서 강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 다른 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준이 3년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sup>235)</sup> 이에 대해서는 성피해는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의 하한을 5년으로 한 것은 적당하다고 하며<sup>236)</sup>, 2017년 개정은 당시 양형 경향과 법정형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실무 운용이나 사회통념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법정형을 하향조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sup>237)</sup>

233)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1., p.32  
 234)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1., p.34  
 235)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1., p.35  
 236)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1., p.35

## 다. 관련 판례

2017년 11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필요하다고 해 온 기존 최고재판소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추행죄 성립을 판단한 기준과, 이를 변경한 판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 1) 1970년(昭和45年)판결과 당시 상황

#### 가) 사실관계와 판례

甲은 내연관계인 A가 B의 도움으로 도쿄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오후 8시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B를 불러내어 함께 온 A를 상대로 2시간 가량 협박하였다. A가 용서를 구하자 甲은 겁을 먹은 A를 전라인 상태로 5분간 서 있게 하고 A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甲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sup>238)</sup> “강제추행죄의 피해법익은 상대의 성적자유로 동죄는 이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위자 성욕을 흥분, 자극,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 소위 목적범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보복, 모욕을 위해 시킨 경우에도 동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甲의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2심 법원은<sup>239)</sup> “전라 사진을 찍는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임은 자명하다. ... 보복모욕 수단이러는 하나 본 건과 같은 전라사진 촬영을 실행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적의사가 없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원 판결에서 실시한 바와 같다”고 하여 항소를 파기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다수의견을 통해<sup>240)</sup> “형법 제176조 전단의 소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 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성적의도를 가지고 행해질 것을 요한다. 부녀를 협박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부녀에게 보복, 모욕, 학대 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237)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2021., p.36

238) 釧路地判昭和42. 7. 7. 刑集 24券1号12頁

239) 札幌高判昭和42. 12. 26. 刑集 24券1号14頁

240) 3대2로 다수의견이 채용되었다.

강요죄나 그 밖의 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241)</sup>

#### 나) 판결당시의 시대상황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판례 해설에는 강제추행죄에 성적 의도를 요하는 것이 당시의 통설이었고, 이를 받아들인 판례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의도를 요하는 것이 당시의 통설이었는데 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다.<sup>242)</sup>

한편, 1970년대 당시 판례 자료가 일반 연구자들에게 잘 공표되지 않았던 시대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고재판소까지 가는 과정 동안 연구자들의 검토나 평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또, 대부분의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성적의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동 판결이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가 유지되어 왔다고 설명하기도 한다.<sup>243)</sup>

### 2) 2017년(平成29年)판결과 당시 상황

#### 가) 사실관계와 판례

피고는 금전적으로 곤란해져 A에게 금전을 빌리려 하자, A는 금전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당시 7세)와 음란행위를 한 것을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송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상황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존해 두고 영상 데이터를 A의 스마트폰으로 송신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기는 하지만 강제추행죄 성립에 범인이 성적 의도를 가져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2심 법원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자유로 해석해야 하며 동죄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행위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다면 강제추행

241) 最高裁 昭和45. 1. 29. 刑集 24券1号1頁

242) 鈴木義男, 判批, 研修 263号, 1970, p. 61, 65

243) 佐伯 仁志, “強制わいせつ罪における性的意図の要否を巡る判例の変更 : 刑法”, 法学セミナー 66券9号, 2021, p.38

죄는 성립하며 행위자의 성적의도 유무는 동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원판결이 지적인 바와 같이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의도 유무로 피해자의 성적자유 침해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범인의 성적의도를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으로 정한 규정도 없으며 동죄의 성립에 이러한 특별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실직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동 재판소도 형법 제176조에 관하여 원심과 동일한 해석을 하며, 최고재판소 판례(最高裁 昭和45. 1. 29. 刑集 24卷1号1頁)의 판단기준을 현시점에서 유지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고재판소역시 기존의 최고재판소를 인용하여 이를 변경하는 판시를 했다. 최고재판소는 “1970년(昭和45)판례를 든 해석은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현행 형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법문상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성적 의도라는 고의 이외의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언을 규정할 적이 없으며 강제 추행죄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킬지 여부가 동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력한 견해가 이전부터 존재한다. 이에 대해 1970년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적의도를 요구한다고 하여 성적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강요죄 등의 성립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내렸다. 성적의도 유무에 따라 강제추행죄(당시 법정형은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가 성립할 것인지 법정형이 가벼운 강요죄(법정형 3년 이하 징역)에 그칠 것인지 결론을 달리하여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또 동판례는 강제추행죄의 가중유형으로 이해되는 강간죄의 성립에는 고의 이외의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음에도 정합성에 관한 설명도 특별히 붙이지 않고 있다”등으로 지적하면서 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결론을 지지했다.

#### 나) 판결당시의 시대상황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설은 성적의도불요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최고 재판소 판례에서는 성적피해에 관한 범죄나 그 피해의 실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수용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함께 언급했다. 실제로 범죄백서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과거 강간죄의 인지사건이 강제추행죄를 앞서 갔으나 1977년을 기점으로 강제추행죄의 인지사건이 강간죄를 앞서가기 시작했다. 강제추행죄 인지사건의 급증 현상에 대해 강제추행죄의 발생 건 수 변화보다는 피해자의 의식과 사회의 시선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244)</sup>

244) 佐伯 仁志, “強制わいせつ罪における性的意図の要否を巡る判例の変更 : 刑法”, 法学セミナー 66卷9号, 2021, p.41

그리고 이러한 성적피해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가 결국 판례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sup>245)</sup>

## 2. 성범죄에서의 양형 경향

### 가. 주요 성범죄 및 법정형

2017년 「형법」 개정으로 각 범죄유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일본 성범죄의 범죄 유형별 법정형을 정리하면 [표 6-15]와 같다. 제176조에서 제179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은 벌한다(제180조).

[표 6-18] 일본 「형법」상 성범죄 유형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강제추행 (제176조)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6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13세 미만의 자에게 추행한 경우	
강제성교 등 (제177조)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성교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자에게 성교 등을 한 경우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성교 등 (제178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혹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추행한 경우	6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혹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교등을 한 경우	
감호자추행 및 감호자성교 등 (제179조)	18세 미만인 자를 감호하는 자가 감호자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	6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18세 미만인 자를 감호하는 자가 감호자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	

245) 佐伯 仁志, “強制わいせつ罪における性的意図の要否を巡る判例の変更 : 刑法”, 法学セミナー 66卷9号, 2021, p.42

## 나. 성범죄에서의 양형 경향

성범죄의 양형 경향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가 각 유형별 범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 법무성의 '성범죄자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배포자료 중 성범죄의 양형에 관한 자료(자료 7)<sup>246)</sup>와 4개의 논문에 걸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성범죄의 양형에 관한 검토를 한 코이케(小池)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범죄에 관한 일본 양형의 경향과 기준을 검토해 본다. 코이케(小池)교수는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성교', '강간', '추행'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179건의 재판례를 분석해 판례가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지 검토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착목하여 피해자가 1명인 경우와, 다수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차용하여 각 죄목 별로 판례가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간단히 소개한다.

### 1) 강제성교 등 죄(강간죄)

[표 6-19]를 통해 알 수 있듯, 강제성교 등 죄(준강제성교 등 준강간을 포함)의 양형 분포는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40% 전후)와 5년 이상 7년 이하(20% 전후)가 중심을 이룬다.<sup>247)</sup> 집행유예율은 15%전후를 차지한다. 이는 기수와 미수를 모두 합한 경향이고, 미수만을 떼어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20%대~40% 전후, 실형은 3년 이하가 30%정도를 차지한다.<sup>248)</sup> 2017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호자성교죄의 경우 5년 이상 7년 이하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미수범을 포함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은 보이지 않는다.<sup>249)</sup>

[그림 6-1]을 보면 이전부터 강간죄의 양형 추이는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지점에 가장 집중되어 있고 5년이상 7년 이하에도 적지 않은 등 중별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눈에 띈다. 2004년<sup>250)</sup>정도를 보면 강제성교 등(강간)죄의 약 50%를 차지하는 양형

246)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第1回会議 中 (配布資料7) 性犯罪の量刑に関する資料 (平成11年~令和元年) <<https://www.moj.go.jp/content/001323989.pdf>>

247) 性犯罪の量刑に関する資料, p.3

248)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1)”, 法学セミナー 66券8号, 2021, p. 117

249)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1)”, 法学セミナー 66券8号, 2021, p. 117

250) 그래프는 일본의 연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래프의 'H'는 일본 평성(平成: 헤이세이)를 말하는 것으로 그래프 상 H11은 서양력 1999년이다.



이 3년 이하 징역이었다. 하지만 최근(H29)은 약 25~30%가 3년 이하의 징역을 차지하고, 전체의 약 40%가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 개정과정에서 강제성교 등 죄의 법정 하한형이 상향조정 된 것이다. 2004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법정 하한형은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었다. 이후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성교 등 죄의 법정 하한형은 3년에서 5년으로 다시 상향되었다.

코이케 교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판례 데이터에서 검색한 약 360건의 재판례를 기준으로 강제성교 등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수와 연령(13세)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폭행 협박, 동의를 유무 등은 사실 관계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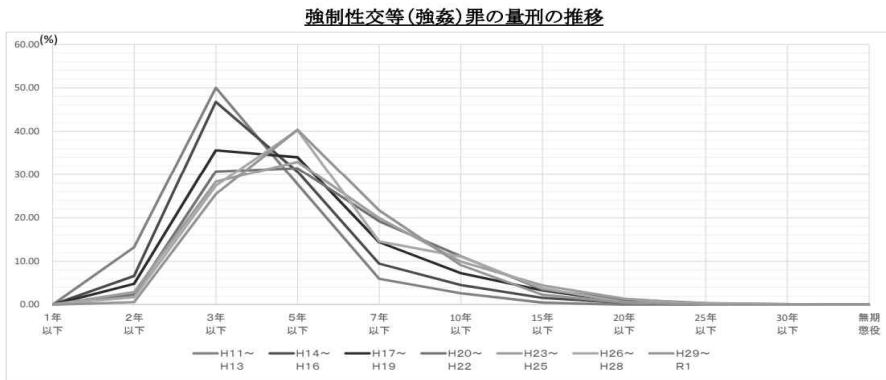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고, 전체 피해자가 1명인 경우’ 형량은 징역 4년에서 5년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은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였다. 반대로 높은 형량을 받은 사안은 수차례에 걸친 간음행위, 피해자를 장기간 구속하거나 강제성교 등 이외의 범죄를 함께 한 경우,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전과 등이 있는 경우였다.<sup>251)</sup> 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준강제성교의 경우 성교 등을 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것인지 여부가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특별한 의도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범의가 생긴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 여부가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에는 비교적 낮은 4년 이하의 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성교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수면제 등을 준비해 마시게 한다거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사안의 경우 6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과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및 피해자 동意的 유무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판례의 경향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판례는 인터넷(SNS)등을 통해 알게 된 11-12세 아동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사안(아동 본인이 성교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 등)에서는 비교적 경한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반대로 학교 교직원이나 운동 지도자 등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강간행위 등을 한 사안이나, 자신 또는 교제하는 사람의 아이를 강간한 경우 등에는 강제성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히 처벌한

251)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1)”, 法学セミナー 66卷8号, 2021, p. 118

다.<sup>252)</sup> 동일선상에서 감호자성교죄의 경우 가벼운 경우라 하더라도 징역 5년, 평균 6년의 형이 선고되고 있다. 감호자성교죄중 징역 9년이 선고된 사안은 감호자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사안으로 상습적인 강간과정에서 아동이 임신하게 된 사유도 있었다.<sup>253)</sup>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대체적으로 징역 7, 8년에서 20년 전후의 범위에서 고르게 분포한다. 비교적 징역형이 낮은 사안의 경우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등이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거나 전체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6-1] 강제성교 등(강간)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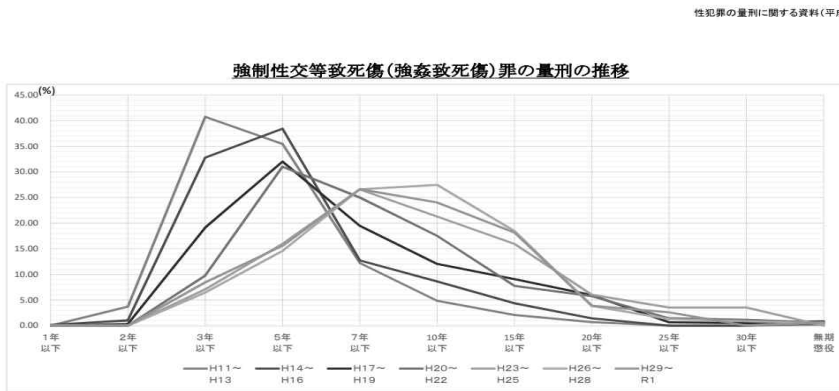
252)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1)”, 法学セミナー 66券8号, 2021, p. 119

253)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1)”, 法学セミナー 66券8号, 2021, p. 119

## 2) 강제성교 등 치상(강간죄 등 치상)

강제성교 등(강간)치사상죄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치상죄’ 수치로 볼 수 있다.<sup>254)</sup> [그림 6-2]를 보면 대체로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 7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상의 경우가 25~30% 전후를 차지한다. [표 6-21]을 보면, 그나마 가벼운 5년 이하의 실형이 15~20% 전후를 차지하는데, 집행유예율은 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재판원제도가 시작되고 강간치사상죄가 재판원제도의 대상 사건이 되면서 집행유예율은 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재판원 제도시 행기의 재판관제도(2008년 4월~2012년 3월)와 재판원제도(2009년 5월~2012년 5월)을 비교해 보면 최고 형량이 전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 후자는 ‘(5년 이상) 7년이하’로 재판원제도에서 더욱 중벌화 경향이 두드러졌다.<sup>255)</sup> 한편 동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벌화 경향은 2004년 정도를 기점으로 안정을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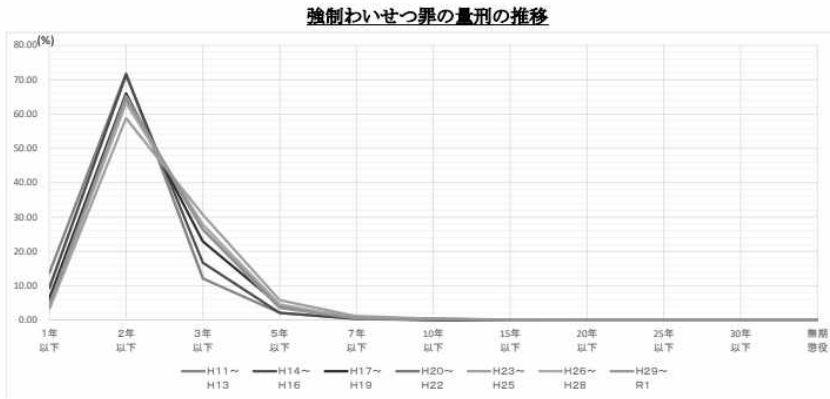


[그림 6-2] 강제성교 등(강간) 치사상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254) 강제성교치사죄의 대부분은 통계상 살인사건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255) 平山 真理, “裁判員裁判と性犯罪”, 立命館法學 327-328号, 2010, p. 677

## 2) 강제추행죄



[그림 6-3] 강제추행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강제추행죄, 준 강제추행죄의 양형은 강간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6-20]과 같이 전체 양형 중 집행유예율이 60~70%에 육박한다.

[그림 6-3]에서와 같이 실형 역시 징역 2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신설된 감호자 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유예율이 60%대에 실형은 2년 이상 3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6-20]). 강간죄와 강간치사사상죄가 꾸준히 중벌화 경향을 보인 것에 비해 강제추행죄는 중벌화 경향이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았다.<sup>256)</sup>

256)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2)”, 法学セミナー 66券9号, 2021, p. 109

아래 각 <표>의 공통 (注)

- ※1. 이 표는 최고재판소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초로 법무성 형사국이 작성한 것이다.
- ※2. 표의 각 연의 숫자는 전국 지방재판소 통상 제1심사건의 유죄(징역) 인원이 다. 각 죄명은 처단형으로,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장기를 계상하였다.
- ※3. 각 죄명 별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하지 않는다.
- ※4. 준강제추행(치사상)죄, 준강간(치사상)죄, 준강제성교등(치사상)죄 및 집단준강간(치사상)죄는 각각 강제추행(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강제성교 등(치사상)죄 및 강제강간(치사상)죄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 ※5. 표의 【 】안의 숫자는 형의 일부집행유예를 받은 인원, [ ] 안의 숫자는 전부집행유예를 말한다. 형의 일부집행유예의 시행일은 2016년 6월 1일부터이다.
- ※6. 2005년 1월 1일 시행 「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 법률제156호)」에 따라 강제추행죄 등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유기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상향되는 외에도 집단강간등(치사상)죄가 신설되었다.
- ※7. 2017년 7월 13일 시행 「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7년 법률제72호)」에 따라 강제성교등의 법정형의 하한이 상향되었고, 집단강간등(치사상)죄가 폐지되었다.

[표 6-19] 강제성교등(강간)죄의 양형 추이 (1999년~ 2019년)

년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무기 징역	합계
1999	0	54	200	114	25	15	1	0	0	0	0	409
	[0][0]	[0][18]	[0][100]									
2000	0	57	211	123	26	7	0	0	0	0	0	424
	[0][0]	[0][16]	[0][86]									
2001	0	55	217	111	24	11	5	0	0	0	0	423
	[0][0]	[0][19]	[0][100]									
2002	0	28	242	149	31	1	2	2	0	0	0	466
	[0][0]	[0][6]	[0][101]									
2003	0	31	225	146	49	30	7	3	0	0	0	491
	[0][0]	[0][6]	[0][111]									
2004	0	34	192	137	53	22	13	1	0	0	0	452
	[0][0]	[0][12]	[0][94]									
2005	0	22	131	149	54	27	13	1	0	0	0	397
	[0][0]	[0][4]	[0][67]									
2006	0	25	133	123	62	32	13	2	0	0	0	390
	[0][0]	[0][6]	[0][75]									
2007	0	7	139	113	47	23	11	5	0	0	0	345
	[0][0]	[0][0]	[0][73]									
2008	0	6	101	98	53	30	11	7	0	0	0	306
	[0][0]	[0][0]	[0][51]									
2009	0	6	80	80	56	32	8	2	1	1	0	266
	[0][0]	[0][1]	[0][36]									
2010	0	7	75	84	51	31	10	1	2	0	0	261
	[0][0]	[0][0]	[0][39]									
2011	0	10	59	71	45	23	10	5	0	0	0	223
	[0][0]	[0][2]	[0][29]									
2012	0	7	70	91	53	21	12	4	1	0	0	259
	[0][0]	[0][2]	[0][31]									
2013	0	4	74	74	45	27	10	1	0	0	0	235
	[0][0]	[0][1]	[0][33]									
2014	0	7	61	109	37	25	9	1	1	1	0	251
	[0][0]	[0][2]	[0][27]									
2015	1	3	67	92	32	25	10	1	0	0	0	229
	[0][1]	[0][1]	[0][27]									
2016	0	2	60	75	31	26	9	2	1	0	0	206
	[0][0]	[0][0]	[0][30]									
2017	0	1	42	77	36	18	3	0	0	0	0	177
	[0][0]	[0][0]	[0][24]									
2018	0	1	57	97	48	24	4	1	0	0	0	232
	[0][0]	[0][0]	[0][36]									
2019	0	2	69	92	59	18	8	2	0	0	0	250
	[0][0]	[0][0]	[0][48]									

〈주〉 2017년 이후 건 수는 강제성교치사상죄 및 강간치사상죄의 합계 건 수

[표 6-20] 강제추행죄의 양형 추이 (1999년~ 2019년)

년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무기 징역	합계
1999	78	405	60	14	2	0	0	0	0	0	0	559
	[0][60]	[0][304]	[0][22]									
2000	112	530	84	10	2	0	0	0	0	0	0	738
	[0][75]	[0][402]	[0][52]									
2001	93	557	108	20	1	1	0	0	0	0	0	781
	[0][68]	[0][409]	[0][66]									
2002	99	639	128	14	6	1	0	0	0	0	0	883
	[0][61]	[0][503]	[0][75]									
2003	71	539	153	25	3	1	0	0	0	0	0	849
	[0][46]	[0][457]	[0][98]									
2004	42	592	220	17	3	1	0	0	0	0	0	944
	[0][28]	[0][411]	[0][141]									
2005	42	572	231	38	2	0	0	0	0	0	0	983
	[0][28]	[0][411]	[0][147]									
2006	32	550	259	43	8	4	0	0	0	0	0	1,008
	[0][22]	[0][402]	[0][166]									
2007	37	503	270	46	12	4	1	0	0	0	0	1,016
	[0][18]	[0][357]	[0][171]									
2008	51	592	220	32	2	1	0	0	0	0	0	898
	[0][31]	[0][419]	[0][141]									
2009	42	572	231	36	5	5	1	0	0	0	0	892
	[0][28]	[0][411]	[0][147]									
2010	32	550	259	44	8	4	0	0	0	0	0	897
	[0][22]	[0][402]	[0][166]									
2011	37	503	270	46	12	4	1	0	0	0	0	873
	[0][18]	[0][357]	[0][171]									
2012	23	505	248	50	4	3	0	0	0	0	0	833
	[0][10]	[0][363]	[0][159]									
2013	24	517	278	54	13	2	2	0	0	0	0	890
	[0][14]	[0][395]	[0][170]									
2014	32	532	265	49	8	3	0	0	0	0	0	889
	[0][14]	[0][421]	[0][159]									
2015	27	573	216	46	12	4	1	0	0	0	0	868
	[0][16]	[0][439]	[0][144]									
2016	30	532	239	23	3	4	1	0	0	0	0	832
	[0][20]	[0][436]	[0][149]									
2017	40	507	221	29	7	3	2	0	0	0	0	809
	[0][26]	[3][420]	[2][139]									
2018	28	505	221	27	2	3	1	0	0	0	0	787
	[0][20]	[7][395]	[0][162]									
2019	29	550	189	28	3	1	0	0	0	0	0	800
	[1][16]	[5][459]	[5][139]									

[표 6-21] 강제성교 등 치사상죄의 양형 추이 (1999년~2019년)

년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무기 징역	합계
1999	0	14	137	112	33	9	2	1	0	0	1	309
	[0][0]	[0][2]	[0][76]									
2000	0	7	111	91	34	13	7	1	0	0	0	264
	[0][0]	[0][0]	[0][47]									
2001	0	11	105	104	39	20	9	4	0	0	1	293
	[0][0]	[0][2]	[0][56]									
2002	0	0	87	91	28	18	9	1	0	0	1	235
	[0][0]	[0][0]	[0][43]									
2003	0	4	93	124	32	21	6	6	0	0	0	286
	[0][0]	[0][0]	[0][36]									
2004	1	4	75	84	39	28	19	4	0	0	0	257
	[0][0]	[0][1]	[0][43]									
2005	0	1	49	74	38	19	15	8	0	0	2	206
	[0][0]	[0][0]	[0][26]									
2006	0	1	37	59	46	19	21	16	2	2	1	214
	[0][0]	[0][0]	[0][166]									
2007	0	0	30	61	34	25	19	12	2	1	2	186
	[0][0]	[0][0]	[0][19]									
2008	0	0	24	64	31	18	9	7	1	2	2	158
	[0][0]	[0][0]	[0][9]									
2009	0	0	7	29	28	20	9	9	2	1	0	105
	[0][0]	[0][0]	[0][7]									
2010	0	0	3	15	28	23	9	4	2	1	0	85
	[0][0]	[0][0]	[0][2]									
2011	0	0	6	13	28	20	9	6	3	3	0	88
	[0][0]	[0][0]	[0][3]									
2012	0	0	8	21	17	22	19	7	3	4	0	101
	[0][0]	[0][0]	[0][4]									
2013	0	0	6	11	30	18	17	4	4	3	0	93
	[0][0]	[0][0]	[0][2]									
2014	0	0	6	14	22	21	15	3	3	0	0	84
	[0][0]	[0][0]	[0][3]									
2015	0	[0][0]	4	12	22	22	17	3	0	0	1	82
	[0][0]	0	[0][3]									
2016	0	[0][0]	5	8	18	21	11	3	0	0	1	67
	[0][0]	0	[0][4]									
2017	0	[0][0]	3	7	4	17	10	3	1	0	0	55
	[0][0]	0	[1][2]									
2018	0	[0][0]	5	12	17	8	10	1	3	0	0	57
	[0][0]	0	[0][4]									
2019	0	[0][0]	5	5	10	12	8	2	0	0	0	42
	[0][0]	0	[1][1]									



[표 6-22] 집단강간죄의 양형 추이 (1999년~ 2019년)

년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무기 징역	합계
2005	0	0	8	17	3	4	0	0	0	0	0	32
	[0][0]	[0][0]	[0][3]									
2006	0	0	23	29	7	2	1	0	0	0	0	62
	[0][0]	[0][0]	[0][17]									
2007	0	0	12	23	6	2	0	0	0	0	0	43
	[0][0]	[0][0]	[0][3]									
2008	0	0	21	20	10	3	0	0	1	0	0	55
	[0][0]	[0][0]	[0][10]									
2009	0	0	11	24	15	2	1	0	0	0	0	53
	[0][0]	[0][0]	[0][5]									
2010	0	0	14	10	3	1	0	0	0	0	0	28
	[0][0]	[0][0]	[0][8]									
2011	0	0	9	6	3	0	0	0	0	0	0	18
	[0][0]	[0][0]	[0][8]									
2012	0	0	5	12	3	0	0	0	0	0	0	20
	[0][0]	[0][0]	[0][5]									
2013	0	0	5	13	4	4	0	0	0	0	0	26
	[0][0]	[0][0]	[0][3]									
2014	0	0	2	7	6	1	0	0	0	0	0	16
	[0][0]	[0][0]	[0][1]									
2015	0	0	2	9	8	1	0	0	0	0	0	20
	[0][0]	[0][0]	[0][2]									
2016	0	0	1	4	3	0	0	0	0	0	0	8
	[0][0]	[0][0]	[0][0]									
2017	0	0	4	8	2	2	0	0	0	0	0	16
	[0][0]	[0][0]	[0][1]									
2018	0	0	0	3	0	1	0	0	0	0	0	4
	[0][0]	[0][0]	[0][0]									
2019	0	0	0	4	2	1	1	0	0	0	03	8
	[0][0]	[0][0]	[0][0]									

[표 6-23] 감호자추행죄 양형 추이 (2017년~ 2019년)

년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무기 징역	합계
2017	0	0	1	0	0	0	0	0	0	0	0	1
	[0][0]	[0][0]	[0][1]									
2018	0	2	16	2	0	0	0	0	0	0	0	20
	[0][0]	[1][0]	[0][9]									
2019	0	3	17	1	0	0	0	0	0	0	0	21
	[0][0]	[0][2]	[0][13]									

[표 6-24] 감호자성교죄 양형 추이 (2017년~ 2019년)

년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25년 이하	30년 이하	무기 징역	합계
2017	0	0	0	0	1	0	0	0	0	0	0	1
	[0][0]	[0][0]	[0][0]									
2018	0	0	0	8	18	4	1	0	0	0	0	31
	[0][0]	[0][0]	[0][0]									
2019	0	0	1	15	37	5	1	0	0	0	0	59
	[0][0]	[0][0]	[0][0]									

### 3. 성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가. 범죄상황 (범정)

일본 형사 실무에서 양형의 본질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사항은 범죄행위 그 자체에 관한 상황(범정)이다.<sup>257)</sup> 이에 비추어 ①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익침해 결과와 행위의 악질성, ② 해당 행위를 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성범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범정을 유형화하면 다음 [표 6-25]와 같다.

[표 6-25] 성범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범정

범정	가해자와 사건이 미친 악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교의 구체적 태양</li> <li>구강성교</li> <li>성교 등이 미수인 경우</li> <li>피해자의 고통, 생활에 지장</li> <li>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li> </ul>
	수단행위의 양태	
	범의(犯意)정도, 계획성, 동기, 경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의의 정도/ 계획성</li> <li>동기/ 경위</li> <li>피해자의 잘못</li> <li>범행 후 악질적 언동</li> </ul>
	상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습성</li> <li>동종전과</li> </ul>
정신장애		

먼저, 가해자의 행위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성 범죄의 구체적 행위태양이 되는 성교의 수단, 피해자의 수, 구체적 행위 내용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이다.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으로는 성 범죄로 인한 임신, 임신 위험성 등이나 사용한 도구, 촬영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구강성교의 경우 2017년 강제성교죄 등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또 성교가 기수인지 미수인지의 여부 역시 양형에서 참작사유가 된다. 성범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 중

257)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3)”, 法学セミナー 66券10号, 2021, p. 105

하나는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 공포, 절망과 평소 생활에서 취업, 학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다. 다만,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 그 자체를 양형 판단서 고려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성범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과정에서 억압,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양형판단에 고려가 된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 경우는 중한 요소로 고려된다.

또한, 성범죄가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계획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역시 양형의 고려 대상이 된다. 또 범행 후 피해자를 입막음 하기 위해 위협적 행동을 하는 행위 역시 양형에서 중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한편, 과거 몇몇 판례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려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의 언동이나 행동이 가해자에게 오해를 불러오게 했다는 것으로, 주로 범죄자의 비난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기능한다. 최근에는 초기에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성적 행위를 요구할 때 거절했다면 특별히 가해자에게 이를 유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상습성과 동종전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참작사유로 중요하게 검토된다.<sup>258)</sup>

마지막으로 심신미약이나 기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제어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신장애 중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아성기호증은 한쪽으로 치우친 성적기호에 불과할 뿐, 변별 능력과 제어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히 유리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sup>259)</sup>

## 나. 일반상황

형벌은 특별예방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갱생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 이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sup>260)</sup>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전과, 상습성, 반성의 여지, 갱생 의욕, 연령, 가족들이 감독·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인지의 여부, 근로여부 등에서

258)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3)”, 法学セミナー 66券10号, 2021, p. 110

259)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3)”, 法学セミナー 66券10号, 2021, p. 111

260)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3)”, 法学セミナー 66券10号, 2021, p. 105

갱생가능성을 파탄한다. 또, 성범죄와 관련된 성향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치료를 위한 적극적 계획도 일반 상황에 포함된다. 이러한 일반상황은 책임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양형에서 부차적으로 고려될 뿐이다. 이는 성범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범죄 전반에 걸쳐 동일하다.<sup>261)</sup>

#### 다. 피해감정, 피해배상, 합의 등

피해감정 회복, 피해배상, 합의 등이 문제는 범죄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정은 일부는 범정으로 일부는 일반상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얻게 된 피해감정은 범행 자체로 얻는 고통과 처벌 감정 등이다. 이러한 피해감정이 양형에서 반영되는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삼기에는 이론적 근거도 부족하다.<sup>262)</sup> 한편 피해배상 및 합의는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용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범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배상과 합의가 양형에서 반영되는 이유에 관해 “재산범은 변상이 법익 침해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큰 반면, 생명·신체범이나 성범죄 등은 변상을 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두기는 어렵다. 변상과 합의는 어디까지나 일반정상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263)</sup>

261)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3)”, 法学セミナー 66券10号, 2021, p. 112

262)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4)”, 法学セミナー 66券11号, 2021, p. 105

263) 小池信太郎, “性犯罪の量刑(その4)”, 法学セミナー 66券11号, 2021, p. 105

## 제7절 대만

### 1. 대만의 성범죄

#### 가. 법령 개관

대만<sup>264</sup>)은 대륙법계의 국가로 성문법을 법치의 근간으로 한다. 대만의 법률체계는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 법률(法律) 그리고 명령(命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은 입법원(立法院)<sup>265</sup>)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통(總統)의 공포로 시행된다(중앙법규표준법(中央法規標準法) 제4조). 대만 법률의 각 명칭은 법(法), 른(律), 조례(條例), 통칙(通則)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법(法)은 일반적인 규정을, 조례(條例)는 특별규정을, 른(律)은 전쟁시의 규정을, 통칙(通則)은 조직을 규정하는 것을 나타낸다(중앙법규표준법(中央法規標準法) 제2조).

명령은 행정기관이 공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위배될 수 없다. 그 성격은 규정(規定), 규칙(規則), 세칙(細則), 방법(辦法), 강요(綱要), 표준(標準) 또는 준칙(準則)으로 구분된다(중앙법규표준법(中央法規標準法) 제3조). 이러한 명령은 각각의 성질에 따른 구분이다. 규정(規定)은 기관의 조직이나 사무처리의 준거 등을 규정하며, 규칙(規則)은 마땅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세칙(細則)은 법규의 시행을 위한 사항이나 법규의 보충해석 등을 규정하며, 방법(辦法)은 사무처리의 방법·권한 혹은 시한 등을 규정하며, 강요(綱要)는 일정한 원칙이나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표준(標準)은 일정한 정도·규격 혹은 조건을 규정하며, 준칙(準則)은 작위의 준거형식 혹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sup>266</sup>

264) 대만(중국어 간체자: 台湾, 정체자: 臺灣/台灣)은 면적 35,980km<sup>2</sup>로 경상도의 면적과 비슷하며 별칭은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을 가리키는 포르모사(Formosa)이다(노호창, “대만의 형사법 체계의 입법적 개관 침 주요 특징”, 『법학논총』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97쪽).

265) 입법원(立法院)은 대만의 5원제 기구 중의 하나이다. 대만은 정부조직이 5권분립이론에 근거하여 5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5원제로는 행정원(行政院), 입법원(立法院), 사법원(司法院), 감찰원(監察院) 및 고시원(考試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원(立法院)은 대만의 최고입법기관이며,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입법위원으로 구성되고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법령정보관리원, “대만의 법률 및 입법체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5쪽).

대만의 성관련 법령은 「형법(刑法)」 제16장에 규정된 성자주권 방해에 관한 죄(妨害性自主罪)를 기본으로 하여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등의 법률이 있다. 그리고 규칙인 「성범죄방지법 시행세칙(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이 있으며, 명령으로 「성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성범죄사건 의료작업의 처리준칙(性侵害事件醫療作業處理準則)」, 「성범죄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요액채취검사의 실시방법(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採驗尿液實施辦法)」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형법(刑法)」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刑法)」과 유사한 것이며,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과 규칙과 명령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상응하는 법령이라 할 수 있다.

266) 한기중,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중국법연구』 제21호, 한중법학회, 2014, 12쪽.

[표 6-26] 대만 성관련 법령

법령명	제정일(개정일)	법률구분
형법 (刑法)	1934.10.31. (2022.2.18.)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1997.1.22. (2015.12.23.)	법률
성희롱방지법 (性騷擾防治法)	2005.1.14. (2009.1.12.)	법률
성범죄방지법 시행세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1997.7.21. (2005.8.8.)	규칙
성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1995.11.11. (2005.10.14.)	명령
검찰기관의 성범죄사건 수사의 처리준칙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1997.2.26. 2005.8.29. 폐지	명령
성범죄사건 의료작업의 처리준칙 (性侵害事件醫療作業處理準則)	1997.12.10. 2009.6.4. 폐지	명령
성범죄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1998.2.18.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2005.8.3.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요액채취검사의 실시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採驗尿液實施辦法)	2005.7.26.	명령
성희롱방지준칙 (性騷擾防治準則)	2006.1.27.	명령
성희롱사건조정지침 (性騷擾事件調解辦法)	2006.1.27.	명령

출처: 저자 작성



## 나. 법률

### 1) 중화민국 형법(中華民國刑法)

「중화민국 형법(中華民國刑法)」(이하 ‘형법’이라 한다)<sup>267)</sup>은 1934년 10월 31일 제정되고 1935년(民國 24年) 7월 1일 시행되었다. 「형법」은 총 49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마지막 개정은 2022년 1월 27일 개정되어 같은 2월 18일부터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다. 「형법」의 구성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은 총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편 각칙은 총 3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7] 형법총칙 조문 구성

제1편 총칙(總則)			
제1장 법례	제1조~제11조	제6장 누범	제47조~제49조
제2장 형사책임	제12조~제24조	제7장 병과주의	제50조~제56조
제3장 미수범	제25조~제27조	제8장 형의 참작과 가감	제57조~제73조
제4장 정범과 공범	제28조~제31조	제9장 형의 유예	제74조~제76조
제5장 형	제32조~제37조	제10장 가석방	제77조~제79조
제5장의1 물수	제38조~제40조	제11장 시효	제80조~제85조
제5장의2 역형	제41조~제46조	제12장 보안처분	제86조~제99조

출처: 저자 작성

267) 중화민국이 최초로 제정한 형법은 아니다. 최초로 제정한 형법은 북양정부 시절 1912년(民國元年)에 제정된 잠행신형률(暫行新刑律)이다. 잠행신형률은 일본 형법학자 오카다 아시타로(岡田朝太郎)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중국 대륙 최초의 근대 형법전 대청신형률(大清新刑律)과 흡사하다. 이후 국민당 정부는 1928년(民國17年)에 현재 구형법(舊刑法)이라 불리는 중화민국 형법을 제정하였었다. 구형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35년 현행 중화민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중화민국의 세 형법은 일본 형법 및 형법학과 함께 하였으며, 따라서 이전에 중국 대륙을 지배한 왕조들의 법제와 단절되어 있다. 이는 후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만에 계속 일본 형법 및 형법학의 영향이 지속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김소영,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한국 강간죄의 식민성과 대만 강제성교죄의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법제』 제696호, 법제처, 2022, 179쪽).

[표 6-28] 형법각칙 조문 구성

제2편 각칙(分則)			
제1장 내란의 죄	제100조~제102조	제19장 농공상 방해의 죄	제251조~제255조
제2장 외환의 죄	제103조~제115조	제20장 마약에 관한 죄	제256조~제265조
제3장 국교에 관한 죄	제116조~제119조	제21장 도박에 관한 죄	제266조~제270조
제4장 직분 매매의 죄	제120조~제134조	제22장 살인의 죄	제271조~제276조
제5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5조~제141조	제23장 상해의 죄	제277조~제287조
제6장 투표방해에 관한 죄	제142조~제148조	제24장 낙태의 죄	제288조~제292조
제7장 질서방해에 관한 죄	제149조~제160조	제25장 유기의 죄	제293조~제295조
제8장 도주의 죄	제161조~제163조	제26장 자유침해의 죄	제296조~제308조
제9장 범죄자 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	제164조~제167조	제27장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의 죄	제309조~제314조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	제168조~제172조	제28장 기밀누설의 죄	제315조~제319조
제11장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죄	제173조~제194조	제29장 절도의 죄	제320조~제324조
제12장 화폐 위조의 죄	제195조~제200조	제30장 강도 및 해적의 죄	제325조~제334조
제13장 유기증권 위조의 죄	제201조~제205조	제31장 침범의 죄	제335조~제338조
제14장 도항형 위조의 죄	제206조~제209조	제32장 신용사기 및 고리대금의 죄	제339조~제345조
제15장 문서도장 위조의 죄	제210조~제220조	제33장 공갈 및 협박의 죄	제346조~제348조
<b>제16장 성자주권방해에 관한 죄</b>	<b>제221조~제229조의1</b>	제34장 정물에 관한 죄	제349조~제351조
<b>제16장의1 풍기문란죄</b>	<b>제230조~제236조</b>	제35장 손괴의 죄	제352조~제357조
제17장 혼인 및 가정방해에 관한 죄	제237조~제245조	제36장 컴퓨터사용 방해의 죄	제358조~제363조
제18장 종교 모독 및 분묘시체 침해의 죄	제246조~제250조		

출처: 저자 작성

「형법」상 성관련 범죄는 2개의 장에서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6장 성자주권 방해에 관한 죄(妨害性自主罪)라는 제목으로 제221조부터 제229조의1까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6장의1 풍기문란죄(妨害風化罪)라는 제목으로 제230조부터 제236조까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만에서 제16장과 제16장의1로 구분하여 성관련 범죄를 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아동에 대한 여러 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되었다. 1차로 논란이 사건은 가오슝(高雄)의 소녀를 성폭행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부터이다. 뒤이어 법원은 여야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가벼운 징역형으로 연달아 선고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0년 이른바 ‘백장미운동(白玫瑰運動)’이라 불리는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형법」 제16장(성자주권 방해에 관한 죄)과 제16장의1(풍기문란죄)의 원문과 번역문이다.

제221조 (強制性交罪)

1. 對於男女以強暴、脅迫、恐嚇、催眠術或其他違反其意願之方法而為性交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2. 前項之未遂犯罰之。

제221조 (강제성교죄)

제1항 남녀에 대하여 폭행, 협박, 공력(恐嚇), 최면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제222조 (加重強制性交罪)

1. 犯前條之罪而有下列情形之一者，處七年以上有期徒刑：

- 一、二人以上共同犯之。
- 二、對未滿十四歲之男女犯之。
- 三、對精神、身體障礙或其他心智缺陷之人犯之。
- 四、以藥劑犯之。
- 五、對被害人施以凌虐。
- 六、利用駕駛供公眾或不特定人運輸之交通工具之機會犯之。
- 七、侵入住宅或有人居住之建築物、船艦或隱匿其內犯之。
- 八、攜帶兇器犯之。
- 九、對被害人為照相、錄音、錄影或散布、播送該影像、聲音、電磁紀錄。

2. 前項之未遂犯罰之。

제222조 (가중강제성교죄)

제1항 전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14세 미만의 남녀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정신, 신체장애 또는 기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약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피해자를 학대한 경우
6. 대중 또는 불특정인이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주거 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선박에 침입하거나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
8. 흉기를 소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9. 피해자에 대하여 사진, 녹음, 녹화 또는 영상, 음성 및 전자기록을 유효하나 방송하는 경우 제2항 전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 (삭제)

제224조 (強制猥褻罪)

對於男女以強暴、脅迫、恐嚇、催眠術或其他違反其意願之方法，而為猥褻之行為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제224조 (강제추행죄)

남녀에 대하여 폭행, 협박, 공혁(恐嚇) 최면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외설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4조의1 (加重強制猥褻罪)

犯前條之罪而有第二百二十二條第一項各款情形之一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제224조의1 (가중강제추행죄)

전조의 죄를 범하여 제2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5조 (乘機性交猥褻罪)

1. 對於男女利用其精神、身體障礙、心智缺陷或其他相類之情形，不能或不知抗拒而為性交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2. 對於男女利用其精神、身體障礙、心智缺陷或其他相類之情形，不能或不知抗拒而為猥褻之行為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3. 第一項之未遂犯罰之。

제225조 (기회성교외설죄)

제1항 남녀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 정신적 결함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이거나 부지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남녀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 정신적 결함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이거나 부지를 이용하여 외설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 (妨害性自主之加重結果犯)

1. 犯第二百一十一條、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第二百二十四條之一或第二百五條之罪，因而致被害人於死者，處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致重傷者，處十年以上有期徒刑。
2. 因而致被害人羞忿自殺或意圖自殺而致重傷者，處十年以上有期徒刑。

제226조(성자주권 방해의 결과적 기중범)

제1항 제221조, 제222조, 제224조, 제224조의1 또는 제225조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중상을 입힌 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은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의1 (妨害性自主之結合犯)

犯第二百一十一條、第二百二十二條、第二百二十四條、第二百二十四條之一或第二百五條之罪，而故意殺害被害人者，處死刑或無期徒刑；使被害人受重傷者，處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

제226조의1 (성자주권 방해의 결합범)

제221조, 제222조, 제224조, 제224조의1 또는 제225조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 (準強制性交與準強制猥褻罪)

1. 對於未滿十四歲之男女為性交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2. 對於未滿十四歲之男女為猥褻之行為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3. 對於十四歲以上未滿十六歲之男女為性交者，處七年以下有期徒刑。
4. 對於十四歲以上未滿十六歲之男女為猥褻之行為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5. 第一項、第三項之未遂犯罰之。

제227조 (준강제성교 및 준강제외설죄)

제1항 14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14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성교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1 (未成年犯罪之減免)

十八歲以下之人犯前條之罪者，減輕或免除其刑。

제227조의1 (미성년자 범죄의 감면)

18세 미만의 사람이 전조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28조 (위계 등 성교 및 외설행위)

1. 對於因親屬、監護、教養、教育、訓練、救濟、醫療、公務、業務或其他相類關係受自己監督、扶助、照護之人，利用權勢或機會為性交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2. 因前項情形而為猥褻之行為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3. 第一項之未遂犯罰之。

제228조 (위계 등 성교 및 외설행위)

제1항 친족, 후견, 교양, 교육, 훈련, 구호, 의료, 공무, 업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 지원 또는 보호를 받는 사람을 권력 또는 기회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사정으로 인하여 외설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 (詐術性交罪)

1. 以詐術使男女誤信為自己配偶，而聽從其為性交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2. 前項之未遂犯罰之。

제229조 (사술성교죄)

제1항 사술을 사용하여 남녀가 자신을 배우자로 오인하게 하여 성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의1 (告訴乃論之特別規定)

對配偶犯第二百二十一條、第二百二十四條之罪者、或未滿十八歲之人犯第二百二十七條之罪者、須告訴乃論。

제229조의1 (친고죄의 특별규정)

배우자에 대하여 제221조 및 제224조의 죄를 범한 경우 또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16장의1 풍기문란죄(妨害風化罪)

제230조 (血親性交罪)

與直系或三親等內旁系血親為性交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제230조 (혈친성교죄)

직계 또는 3촌 등 방계혈족과 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

1. 意圖使男女與他人為性交或猥褻之行為、而引誘、容留或媒介以營利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十萬元以下罰金。以詐術犯之者、亦同。

2. 公務員包庇他人犯前項之罪者、依前項之規定加重其刑至二分之一。

제230조

제1항 남녀를 타인과 성교행위 또는 외설행위를 하도록 유인, 수용 또는 매개하여 영리를 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술로 범죄를 저지른 자도 같다.

제2항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231조의1 (圖利強制使人為性交猥褻罪)

1. 意圖營利、以強暴、脅迫、恐嚇、監控、藥劑、催眠術或其他違反本人意願之方法使男女與他人為性交或猥褻之行為者、處七年以上有期徒刑、得併科三十萬元以下罰金。

2. 媒介、收受、藏匿前項之人或使之隱避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3. 公務員包庇他人犯前二項之罪者、依各該項之規定加重其刑至二分之一。

4. 第一項之未遂犯罰之。

제231조의1 (이익 추구 강제 인위 성교 및 추행죄)

제1항 영리목적으로 남녀에 대하여 폭행, 협박, 공혁(恐嚇), 약제, 최면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성교 행위 또는 추행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사람을 매개, 수수 또는 은닉하거나 은닉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4항 제1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 (引誘容留特定關係者性交猥褻罪)

對於第二百二十八條所定受自己監督、扶助、照護之人，或夫對於妻，犯第二百三十一條第一項、第二百三十一條之一第一項、第二項之罪者，依各該條項之規定加重其刑至二分之一。

제232조 (특정 관계자 유인 성교 및 추행죄)

제228조에 규정된 감독, 지원 또는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231조 제1항, 제231조의1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조항의 규정에 따라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233조 (引誘容留媒介未成年人性交猥褻罪)

1. 意圖使未滿十六歲之男女與他人為性交或猥褻之行為，而引誘、容留或媒介之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一萬五千元以下罰金。以詐術犯之者，亦同。
2. 意圖營利犯前項之罪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十五萬元以下罰金。

제233조 (미성년자 매매유인 성교 및 추행죄)

제1항 16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성교행위 또는 외설행위를 하도록 유인, 수용 또는 매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5,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술로 범죄를 저지른 자도 같다.  
 제2항 영리목적으로 전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34조 (公然猥褻罪)

1. 意圖供人觀覽，公然為猥褻之行為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九千元以下罰金。
2. 意圖營利犯前項之罪者，處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三萬元以下罰金。

제234조 (공연외설죄)

제1항 관람을 목적으로 공연히 외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9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영리목적으로 전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1. 散布、播送或販賣猥褻之文字、圖畫、聲音、影像或其他物品，或公然陳列，或以他法供人觀覽、聽聞者，處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九萬元以下罰金。
2. 意圖散布、播送、販賣而製造、持有前項文字、圖畫、聲音、影像及其附著物或其他物品者，亦同。
3. 前二項之文字、圖畫、聲音或影像之附著物及物品，不問屬於犯人與否，沒收之。

제235조

제1항 외설적인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물품을 유포, 방송 또는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람 또는 청문(聽聞)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구류에 처하고 9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항 전항의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및 그 첨부 저작물 또는 기타 물품을 유포, 방송 및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보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3항 전2항의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영상에 첨부된 저작물 및 물품은 범인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한다.

제236조

第二百三十條之罪，須告訴乃論。

제236조

제230조의 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한다.

## 2)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sup>268)</sup>

대만은 1987년(민국 76년) 계엄해제 이후 여성운동단체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이러한 여성운동 단체는 미국 여성권리운동을 본받아 폭행을 당한 여성을 배려하는 것을 기점으로 사회운동 및 시민참여 역량을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공공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입법 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서의 관심으로 1996년(민국 85년)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 1998년(민국 87년) 「가정폭력방지법(家庭暴力防治法)」, 2005년(민국 94년)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등 폭력방지 3법을 각각 제정하였다.<sup>269)</sup> 이처럼 폭력 방지 3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의 형량이 가벼워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2011년(민국 98년~민국 100년)까지 총 13건의 성범죄방지 및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sup>270)</sup>

268) 대만은 협박(脅迫)과 공혁(恐嚇)을 구분하고 있다. 협박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재의 피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가령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산에 데려가 구강성교를 하지 않으면 산에 버리고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이다. 공혁은 가해자가 미래의 해악 또는 불이익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성교를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공개한다고 말하는 것이 공혁이다(法觀人編輯部, “張鏡榮(榮律師)編著《透明的刑法 - 分則編》,” 法觀人 第249期, 2020, 45頁; 김소영,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한국 강간죄의 식민성과 대만 강제성교죄의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 『법제』 제696호, 법제처, 2022, 182쪽에서 재인용).

269) 法規資源引介 第131輯 103年11月 性侵害犯罪防治法 立法院國會圖書館編印 中央警察大學犯罪防治學系教授沈勝昂審訂, 1頁。

270) 法規資源引介 第131輯 103年11月 性侵害犯罪防治法 立法院國會圖書館編印 中央警察大學犯罪防治學系教授沈勝昂審訂, 1-2頁。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은 1996년(민국 8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7년(민국 86년) 1월 22일 총통(總統)이 공포·시행하였다. 그 입법 취지는 성범죄의 예방과 통제 및 피해자의 권익보호이며, 성범죄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이정표이다.<sup>271)</sup>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 제2조 제1항은 본 법은 “형법 제221조 내지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332조 제2항 제2호, 제334조 제2항, 제348조 제2항 제1항 및 그 특별법을 위반한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말하는 ‘가해자’는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 제2조 제1항 각 죄를 범하여 유죄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sup>272)</sup> 현행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은 전문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방지법(性侵害犯罪防治法)」은 제정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마지막 개정은 2010년(민국 100년) 10월 25일이다.<sup>273)</sup> 특히 2005년의 개정은 전면개정으로 제정 당시 전문 20조로 구성된 것을 현행의 전문 25조로 개정되었다.

### 3)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은 2005년(민국 94년) 2월 5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2006년(민국95년) 1월 18일과 2009년(민국 98년) 1월 23일에 개정되었다.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은 6개 장(章)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29]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장(章)별 체계

章	장	조문
第一章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第二章 性騷擾之防治與責任	제2장 성희롱의 예방과 책임	제7조 ~ 제12조
第三章 申訴及調查程序	제3장 신고 및 조사절차	제13조 ~ 제15조
第四章 調解程序	제4장 조정절차	제16조 ~ 제19조
第五章 罰則	제5장 벌칙	제20조 ~ 제25조
第六章 附則	제6장 부칙	제26조 ~ 제28조

출처: 저자 작성

271) 法規資源引介 第131輯 103年11月 性侵害犯罪防治法 立法院國會圖書館編印 中央警察大學犯罪防治學系教授沈勝昂審訂, 2頁。

272) 法規資源引介 第131輯 103年11月 性侵害犯罪防治法 立法院國會圖書館編印 中央警察大學犯罪防治學系教授沈勝昂審訂, 2頁。

273) 法規資源引介 第131輯 103年11月 性侵害犯罪防治法 立法院國會圖書館編印 中央警察大學犯罪防治學系教授沈勝昂審訂, 2頁。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은 이전의 여러 성범죄와 성차별의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 성희롱에 대한 별도의 단행법을 마련한 것이다.<sup>274)</sup>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으로 성범죄방지법 시행세칙(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성희롱방지준칙(性騷擾防治準則)」 그리고 「성희롱사건조정지침(性騷擾事件調解辦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은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에 따르면 ‘성희롱(性騷擾)’이란 “성범죄를 가리키는 것 외에 타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성(性)이나 성별(性別)과 관련 행위를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제2조).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그 타인이 그 행위의 복종이나 거절로 작업·교육·훈련·서비스·계획·활동과 관련된 권익의 취득·상실 및 삭감의 조건으로 하는 것, 둘째, 문자·도화·음향·영상이나 기타 물품을 전시하거나 방영하는 방법이나 또는 경멸·모욕적 언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의 존엄을 해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공포를 가지도록 하거나 적개심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경우 또는 그 작업·교육·훈련·서비스·계획·활동이나 통상적인 생활의 영위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것 등이다(제2조 제1호, 제2호).

#### 다. 규칙 - 성범죄방지법 시행세칙(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성범죄방지법 시행세칙(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은 1997년(민국 86년) 7월 21일 전문 14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5년(민국 94년) 8월 8일 1차 개정을 하였으며, 2012년(민국 101년) 2월 3일 제13조와 제14조 개정 및 제2조의1, 제12조의1을 신설하면서 2차 개정을 하였다. 마지막 3차 개정은 2016년(민국 105년) 6월 1일 제7조와 제14조를 개정하고 제6조의1을 신설하였다.

---

274) 김성수, “대만의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에 관한 시론적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0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7, 117쪽.

## 라. 명령

### 1) 성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성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이하 ‘방법(辦法)’이라 한다)은 「성범죄방지법」 제20조 제7항<sup>275)</sup> 규정에 따라 1998년(민국 87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심신치료 또는 지도교육의 내용에는 인지교육, 행동교정, 심리치료, 정신치료 또는 필요한 치료 및 지도교육이 포함된다(제2조). 신체적, 정신적 치료 또는 지도적 교육의 시행은 가해자의 호적 소재지 직할시(直轄市), 현(시)(縣(市)) 주관기관이 한다(제3조 제1항).

### 2)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이하 ‘방법(辦法)’이라 한다)은 「성범죄방지법」 제20조 제8항<sup>276)</sup> 규정에 따라 2005년(민국 94년) 8월 3일 제정되었다(제1조). 이 방법은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가 검사·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과학기술장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제2조). 이때 과학기술장비 모니터링이란 도구 또는 장비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대상자가 모니터링 시간 내에 모니터링 장소에 출입하는 상황을 보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신호를 전송하여 지방법원검찰서, 지방군사법원검찰서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275) 「성범죄방지법」 제20조 제7항 “제2항 제3관의 노액의 채취검사의 집행방법, 절차, 기관회수, 점검기관과 항목 등은 법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276) 「성범죄방지법」 제20조 제8항 “제2항 제6호의 거짓말측정기관(기구), 직원, 집행절차, 방법 등과 제3항의 과학기술설비의 통제감시방법, 집행절차, 기관(기구), 직원 등은 법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3)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이하 '방법(辦法)'이라 한다)은 「성범죄방지법」 제9조 제2항<sup>277)</sup>의 규정에 따라 1998년(민국 87년) 2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5년(민국 94년) 12월 16일과 2012년(민국 101년) 2월 20일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의 기록물 내용은 ① 기본정보로 가해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호적지, 거주지, ② 범죄자료로 범죄유형, 범행시간, 범행장소, 수사 및 재판기록, ③ 가해자의 모든 손가락 지문, ④ 가해자의 정면 및 측면 상반신 사진 자료, ⑤ 유전자 비교 데이터, ⑥ 기타 기재사항 등이다(제2조). 가해자 파일은 내정부(內政部) 성범죄방지위원회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제3조 제1항).

### 4) 성희롱방지준칙(性騷擾防治準則)

「성희롱방지준칙(性騷擾防治準則)」은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6년(민국 95년) 1월 27일 제정되고, 2006년(민국 95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희롱방지준칙(性騷擾防治準則)」은 총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성희롱사건조정지침(性騷擾事件調解辦法)

「성희롱사건조정지침(性騷擾事件調解辦法)」은 「성희롱방지법(性騷擾防治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6년(민국 95년) 1월 27일 제정되고, 2006년(민국 95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희롱사건조정지침(性騷擾事件調解辦法)」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77) 「성범죄방지법」 제9조 제2항 “전항의 파일자료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 그 관리와 사용 등 사항의 방법은 중앙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 2. 성범죄 양형기준

### 가. 형법상 양형기준

「형법」은 제8장에서 ‘형의 참작과 가감’이라는 제목으로 제57조에서 제73조까지 양형과 관련하여 17개의 조문을 규정해 두고 있다. 특히 「형법」 제57조는 우리나라 「형법」 제51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형법」 제57조는 “형을 선고할 때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하여 모든 상황을 심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으로 10가지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범행의 동기 및 목적, 2. 범죄시 자극(刺激) 경험(所受), 3. 범죄수단, 4. 범죄행위자의 생활상태, 5. 범죄행위자의品行, 6. 범죄행위자의 지식정도(지적 수준), 7. 범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8. 범죄행위자의 의무위반 정도, 9. 범죄로 인한 위험 또는 손해, 10. 범죄후의 태도 등이다.

[표 6-30] 형법 제57조 양형기준

원문	번역
<p>第57條            科刑時應以行為人之責任為基礎，並審酌一切情狀，尤應注意下列事項，為科刑輕重之標準：            一、犯罪之動機、目的。            二、犯罪時所受之刺激。            三、犯罪之手段。            四、犯罪行為人之生活狀況。            五、犯罪行為人之品行。            六、犯罪行為人之智識程度。            七、犯罪行為人與被害人之關係。            八、犯罪行為人違反義務之程度。            九、犯罪所生之危險或損害。            十、犯罪後之態度。</p>	<p>제57조 형을 선고할 때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하여 모든 상황을 심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표준:            1. 범행의 동기 및 목적            2. 범죄시 자극(刺激) 경험(所受)            3. 범죄수단            4. 범죄행위자의 생활상태            5. 범죄행위자의品行            6. 범죄행위자의 지식정도(지적 수준)            7. 범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8. 범죄행위자의 의무위반 정도            9. 범죄로 인한 위험 또는 손해            10. 범죄후의 태도</p>

출처: 저자 작성

## 나. 성범죄에서 양형주의사항<sup>278)</sup>

### 量刑注意事項

#### 양형주의사항

##### (一) 犯罪動機方面

###### 1. 범죄동기 방면

(1) 預謀犯案相較於臨時起意，宜考量從重量刑。

(1) 예비범죄는 임시적인 의도보다 무거운 형을 고려해야 한다.

(2) 基於種族或宗教、被害人取向、身心障礙之敵視動機而犯罪者，宜考量從重量刑。

(2) 인종이나 종교, 피해자의 인간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3) 犯罪動機、犯罪手段兇殘程度，或前案紀錄已顯示犯罪行為人具有高再犯風險者，宜考量從重量刑。

(3) 범행동기, 범행수법의 흉포함 정도 또는 전과기록에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4) 犯罪行為人受酒精或藥物影響犯罪，倘考量據以從輕量刑，宜注意其非出於原因自由行為，並考量其使用強制力之程度，與情節之嚴重程度。

(4) 범죄자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범죄에 영향을 받는 경우 가벼운 형벌을 고려할 때 이유 없이 자유로운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강제력의 사용 정도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 (二) 犯罪手段方面

###### 2. 범죄수단 방면

(1) 肛交、口交、以器物進入、指交與以性器進入性器之性交行為等不同性交態樣，未必即得逕為量刑輕重之基礎，宜合併考量犯罪具體情節及其造成被害人之創傷情形後妥為量刑。

(1) 항문, 구강, 기구삽입, 성기삽입 등 서로 다른 성교 태양이 반드시 형량의 경중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외상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2) 犯罪手段具越高度之強制力者，宜考量從重量刑。

(2) 범죄수단이 높은 정도(고도)의 강제력을 가진 자는 무거운 형을 고려해야 한다.

(3) 蓄意挑選弱勢被害人，或被害人具有一定弱勢特徵者，宜考量從重量刑。弱勢之被害人，例如：孕婦、年老、年幼、受傷、行動不便、正值生理期、身心障礙、正值坐月子期間、被害人低社經地位或處於脆弱境況之外籍在台人士等是。

278) 立法院第10屆第3會期司法及法制委員會第4次全體委員會議，司法院報告，110年3月15日，立法院紅樓302會議室，부록 1-4쪽. <https://misq.ly.gov.tw/MISQ/docu/MISQ3006/uploadFiles/2021031006/26023520125582119000.pdf>, 검색일 2022. 8. 20.

- (3) 의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선택하거나 피해자에게 취약한 특징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산부, 고령, 어린이, 부상, 거동불편, 생리중, 심신장애, 산후조리중, 피해자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등 취약한 피해자 등이다.
- (4) 犯罪手段倘具有刻意貶抑、羞辱被害人之性質（如拍攝性侵過程、甚至進而散布被害人影像，或於被害人親友在場時性侵等），宜考量從重量刑。
- (4) 범죄수법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성질(성폭행 과정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친척과 친구가 있을 때 성폭행하는 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 (5) 性侵害犯罪歷時之久暫，由於歷時越久者，該犯行對於被害人之意志、自由拘束程度較高，宜列入量刑之考量。
- (5) 성범죄가 오랜기간 지속되었고, 오랜기간 지속될수록 피해자의 의지와 자유구속정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양형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 (6) 犯罪行為人與被害人接觸之程度、性質應列入量刑之考量。以猥褻犯行為例，如犯罪行為人如以赤裸之性器與被害人赤裸之性器、肛門、口腔、五官、臉頰接觸，相較於犯罪行為人以赤裸性器隔著衣著對於犯罪行為人猥褻，對於被害人之尊嚴所生損害更為嚴重。又犯罪行為人與被害人接觸的部位隱私程度，亦應列入考量，例如，犯罪行為人以手或以性器進行猥褻犯行，前者手段嚴重程度依具體情形，可能較後者對被害人造成更大之損害程度。又如，以器物侵入者，器物越大、越具危險性，應考量從重量刑。
- (6) 범죄행위자와 피해자의 성(性)접촉 정도와 성질은 양형의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추행행위의 경우 범죄행위자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벌거벗은 상태의 성기, 항문, 구강, 이목구비, 뺨 등에 접촉하는 경우 범죄행위자가 벌거벗은 상태의 성기를 옷을 사이에 두고 추행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존엄성에 더 큰 손해를 입힌다. 또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의 프라이버시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범죄행위자가 손이나 성기로 추행하는 경우 전자의 수법의 심각성은 특정 상황에 따라 후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기구를 삽입하는 사람은 기구가 클수록 더 위험하므로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 (7) 犯罪行為人客觀上染患性傳染病，主觀上也知悉此情，甚且猶仍未規避此一使被害人感染性病之風險而為性交犯行，其惡性較無此情形者為重，宜從重量刑。
- (7) 범죄행위자는 객관적으로 성병에 감염되고 주관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될 위험을 피하지 않고 성교범행을 저지르며, 그 악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
- (8) 同一犯罪行為人性侵被害人人數越多者，宜考量從重量刑。
- (8) 동일한 범죄행위로 성범죄 피해자가 많을수록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 (9) 犯罪行為人所採手段，倘有必要基於一般預防角度為嚇阻性之量刑，為從重量刑之考量，惟仍應綜合斟酌特別預防、應報原則。
- (9) 범죄행위자가 채택한 수단은 일반적인 예방의 관점에서 위협적인 형량에 기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특별예방 및 보고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10) 犯罪行為如利用網路操控被害人，宜考量從重量刑。
- (10) 범죄행위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三) 犯罪行為人之職業及生活情形

3. 범죄행위자의 직업 및 생활 상황(情形)

(1) 犯罪行為人如係公務員，宜注意是否有刑法第134條之適用。

(1) 범죄자가 공무원인 경우 형법 제134조<sup>279)</sup>의 적용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2) 犯罪行為人雖非公務員，倘其利用職業之機會、專業知識或特殊經驗，藉以獲取被害人信任，利用此一機會犯罪，宜考量從重量刑。

(2) 범죄자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직업 기회, 전문지식 또는 특수 경험을 사용하는 경우 이 기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四) 犯罪行為人之品行

4. 범죄행위자의品行

(1) 犯罪行為人如係具保、緩刑、假釋中再犯罪，或有前案紀錄，尤其是妨害性自主前案紀錄，或有固定犯罪模式，被害人越多者，宜考量從重量刑。

(1) 범죄행위는 보호, 집행유예, 가석방 중 재범 또는 전과기록, 특히 성자주권 방해 전과기록 또는 고정범죄 형식, 다수의 피해자가 많을수록 중형을 고려해야 한다.

(2) 初犯不宜逕為從輕量刑，宜併審酌其他量刑因子。

(2) 초범은 가벼운 형으로 선고하여서는 안 되며, 기타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五) 犯罪行為人與被害人之關係方面

5. 범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방면

(1) 被害人如處於刑法第228條之權勢關係中，難以尋得外援，宜考量從重量刑。

(1) 피해자가 형법 제228조<sup>280)</sup>의 권력관계에 있어 외국의 원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279) 第134條 公務員假借職務上之權力、機會或方法，以故意犯本章以外各罪者，加重其刑至二分之一。但因公務員之身分已特別規定其刑者，不在此限。 제134조 공무원이 직무상 권력, 기회 또는 방법을 가장하여 고의로 이 장 이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단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이미 특별규정이 그 형이 정해진 자는 예외로 한다.

280) 第 228 條

1 對於因親屬、監護、教養、教育、訓練、救濟、醫療、公務、業務或其他相類關係受自己監督、扶助、照護之人，利用權勢或機會為性交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

2 因前項情形而為猥褻之行為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3 第一項之未遂犯罰之。

제228조

제1항 친족, 후견, 교양, 교육, 훈련, 구호, 의료, 공무, 업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 지원 또는 보호를 받는 사람을 권력 또는 기회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사정으로 인하여 외설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미수범은 벌금에 처한다.



- (2) 陌生人所為之性侵害犯罪，應審酌其犯罪情節造成社會危懼感程度，考量從重量刑。
- (2) 낯선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범죄상황이 야기하는 사회적 두려움의 정도를 검토하고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 (3) 網友間之性侵害犯罪，宜細究犯罪行為人利用網路之犯罪手段（如常見之線上誘拐）、情節，注意犯罪行為人與被害人間性成熟度之差距而為量刑，以達刑罰之一般預防功能。
- (3) 인터넷 친구 사이의 성범죄의 경우 범죄행위자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수단(일반적인 온라인 유괴 등)과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범죄행위자와 피해자의 성적 성숙도 차이에 주의하여 양형을 해야하며,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달성해야 한다.
- (4) 犯罪行為人與被害人間原有或曾有親密關係者，倘以其親密關係存在時點離犯罪時點相當接近，而據以考量從輕量刑時，宜併注意犯罪行為人犯罪手段所施用強制力之程度，以及情節之嚴重程度；另並應注意犯罪行為人是否特意利用與被害人之間情感關係，或約會之機會性侵害。
- (4) 범죄행위자와 피해자가 원래 또는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그 친밀한 관계의 존재시점이 범죄시점과 상당히 근접해 있어 이에 따라 가벼운 형을 고려하는 경우 범죄행위자의 범죄수단에 의한 강제력의 정도와 정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행위자가 고의로 피해자와의 감정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데이트 기회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 (5) 犯罪行為人與被害人之間，倘具有一定之信任關係，該信任關係遭違反之程度越為嚴重，宜考量從重量刑。例如，相較於一般照護關係，在醫病關係中，由於醫療專業人員具有一般人難以質疑的專業，可認為信任關係之違反較為嚴重者是。
- (5) 범죄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의 위반 정도가 심할수록 가중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간호관계(照護關係)에 비해 의료 및 질병관계에서 의료전문가는 일반인이 의심하기 어려운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위반이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6) 犯罪行為人與被害人之間，如具有血緣關係、家庭成員關係（例如父女、母子關係），由於犯罪行為人之性侵害犯行不僅破壞人倫、背棄被害人對其信任，家庭關係復遭破壞，宜考量從重量刑。
- (6)범죄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혈연관계, 가족관계(예를 들어 부녀·모자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행위자의 성범죄는 인륜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중형을 고려해야 한다.

(六) 犯罪所生危險或損害

6. 범죄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

- (1) 宜逐一檢視犯罪所生危險或損害，妥為評估犯罪所生之總體損害。犯罪所生損害，至少包括：犯行對於被害人所造成之生理（包含直接因犯行所受傷害、間接因犯行造成之性病感染、流產，甚至被害人嗣後因創傷壓力而自殘等）、心理傷害（急性創傷、長期創傷、生活能力受損等）、社會或家庭關係之破壞（如因性侵害陰影導致被害人與異性交往之障礙、與他人發展親密關係之障礙、與社會關係之斷裂程度、未來生涯發展的可能性等。倘被害人為在學學生，亦將影響求學機會）、犯罪行為人於案發後辯解或偵審中訴訟行為對於被害人造成之二度傷害（如誣指被害人）、犯罪行為人之犯行對於社會價值及正義、社會安全感之破壞程度等。

(1) 범죄로 인한 위험이나 피해를 하나씩 검토하고 범죄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를 적절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최소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며, 최소한 피해자에게 미치는 생리적 피해(직접 범행에 의한 상해, 간접 범행에 의한 성병 감염, 유산, 심지어 피해자의 사후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등을 포함), 심리적 피해(급성 외상, 장기 외상, 생활능력 손상 등), 사회적 또는 가족관계의 파괴(성적 침해로 인한 피해자와 이성교제의 장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발전의 장애, 사회적 관계의 단절 정도, 미래 생애 발전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 학습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범죄행위자가 사건 발생후 변명 또는 수사 중 소송행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피해자를 무고하는 경우), 범죄자의 범행이 사회적 가치, 정의, 사회적 안정감 훼손 정도 등이 있다.

(2) 犯罪造成之損害越鉅, 越為多重, 宜從重量刑。

(2)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고 많을수록 가중처벌해야 한다.

(3) 被害人特別年幼或年老時, 可能深化犯罪所生損害程度, 得作為從重量刑之考量因素。研究報告即指出, 童年受虐(含性侵受虐兒在內)將造成被害人不可逆之腦部受損, 包括邊緣系統(大腦主控情緒部位)敏感、左腦停止發展(造成被害者憂鬱症及增加記憶損傷的風險)、左右腦整合缺失(造成人格突然改變)等。上開傷害將造成兒童永久性人格發展與神經變異, 受害兒童並可能發生失眠、焦慮、長期或及性創傷後群、飲食性疾患、低自尊、解離症等症狀; 成年後罹患憂鬱症比例亦偏高; 受害兒童也可能出現學習問題、行為問題, 自殺傾向, 並容易產生藥物濫用、酗酒、反社會性人格等問題, 甚至反而成為性侵害加害人。

(3) 피해자가 특히 어리거나 노령일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의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시절 학대(성범죄 아동 포함)는 변연계(뇌의 감정 조절 부위) 민감, 좌뇌 정지(피해자의 우울증 및 기억 손상 위험 증가), 좌우 뇌 통합 부족(인격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상개(上開) 손해는 어린이의 영구적인 인격발달과 신경변이를 일으킨다. 피해아동은 불면증, 불안, 장기 또는 성(性) 외상 후 장애, 식이성 질환, 낮은 자존감, 해리증 및 기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성인기의 우울증 비율도 높으며, 피해 아동도 학습문제, 행동문제, 자살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 반사회적 인격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오히려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4) 藉被害人從事公共服務之機會, 接近被害人並為性侵害犯罪, 宜考量從重。

(4) 피해자가 공공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형을 고려해야 한다.

(七) 犯罪後態度

7. 범죄 후 태도

(1) 犯後態度作為從輕事由, 宜審慎調查加害人是否真心悔悟。

(1) 범죄 후 태도는 가벼운 사유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를 성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2) 犯後如有協助偵審行為, 宜從輕; 如有滅證等妨礙偵審行為, 宜從重。

(2)범죄 후 수사에 협조행위가 있는 경우 경감하고,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 (3) 犯罪行為人如與被害人和解，得為從輕量刑事由。惟被害人如係未成年人，而由被害人法定代理人代為和解之意思表示時，宜調查被害人本人是否宥恕犯罪行為人，避免法定代理人為經濟利益犧牲或扭曲被害人本意。
- (3)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면 감형사유에 해당한다. 단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화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범죄행위자를 용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정대리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희생하거나 피해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犯罪行為人如有脫產以逃避民事責任、違反法官或檢察官告誡之行為，或者恐嚇、羞辱、騷擾被害人，或利用其優勢社經地位壓迫被害人等，宜從重。
- (4) 범죄행위자는 민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산(脫產)<sup>281</sup>하거나 법관 또는 검사의 경고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협박, 모욕 또는 괴롭힘을 하거나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八) 重複評價禁止原則

8. 중복평가금지원칙

適用之法條倘已將特定量刑因子列入考量（如刑法第222條各款加重情形），量刑時宜注意重複評價禁止原則，不得再將立法者社法定刑時業已考量之加重減輕因素，重複評價。

적용법 조항이 특정 양형인자를 고려(예를 들어 형법 제222조 각 항의 가중 상황)하는 경우, 양형시 중복평가 금지원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입법자가 법정형시 이미 고려한 가중 감경요인을 더 이상 중복 평가해서는 안 된다.

281) 탈산(脫產)이란 채무자 또는 배상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집행을 막기 위해 재산을 파괴, 은닉, 이전 및 처분하여 타인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성자주권 방해죄 관련 양형참작사유

중화민국 사법원(中華民國司法院)은 2018년 12월 21일에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sup>282)</sup>을 개설하였다.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은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인 범죄유형은 수치화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8개의 범죄유형<sup>283)</sup>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의 범죄유형 중 형법상 성범죄 관련 4개 조항에 대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법 제221조 제1항 성자주방해죄(妨害性自主罪), 형법 제221조 제1항 가중성자주방해죄(加重妨害性自主罪), 형법 제227조 제1항 만 14세 미만자에 대한 성교죄(對於未滿14歲之人性交罪) 그리고 형법 제227조 제3항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교죄(對於14歲以上未滿16歲之人性交罪) 등이다.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은 양형인자, 예를 들어 성범죄 전 전과기록 횟수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 다른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기재하면 권고형량과 권고형량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와 비슷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sup>284)</sup>과도 유사하다.

---

282)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은 사법원이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률감정에 통합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통계학과와 양형정보를 결합하여 양형정보시스템의 판결자료를 통계회귀방법을 통해 각종 범죄의 형량 및 형량에 대한 각종 양형인자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통계회귀방법의 심사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조직을 초청하여 분석하였으며 판사가 중시해야 할 양형인자와 상응하는 형량구간을 건의하였다 (<https://jirs.judicial.gov.tw/GNNWS/NNWSS002.asp?id=397622>). (접속일: 2022.11.25.)

283) 성자주방해(妨害性自主罪), 안전운전불능(不能安全駕駛), 사기(詐欺), 절도(竊盜), 강탈(搶奪), 강도(強盜), 살인 및 창포탄약총기통제조례 등(殺人及槍砲彈藥刀械管制條例等)이다.

284)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접속일: 2022.11.30.)

[표 6-31] 형법 제221조 제1항 성자주방해죄(妨害性自主罪)

양형인자		답변
성범죄 전 전과기록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1회</li> <li>• 2회</li> <li>• 3회 이상</li> </ul>
행위자의 행위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 20세 미만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피해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명</li> <li>• 2명</li> <li>• 3명 이상</li> </ul>
범죄행위태양	신체 부위 이외의 이물질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하나의 행위에서 반복적 성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범죄사실 시인과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수사중 자백</li> <li>• 심리중 자백</li> </ul>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없음</li> <li>• 김독보호관계자</li> <li>•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족구성원관계자</li> <li>• 인터넷 친구</li> <li>• 기타 일상생활에서 신뢰관계 있음</li> </ul>
범죄행위로 초래한 손해	심각한 신체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심각한 트라우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건전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범죄후 태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피해자와의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법정형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권고형량		3년 9월 ~ 7년 5월
권고양형구간		3년 11월 ~ 9년 11월

※ 권고형량과 권고양형구간은 양형결정 문항의 최저와 최고를 의미함<sup>285)</sup>

출처: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sup>286)</sup>을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285) 권고양형구간은 양형추세제안시스템상 양형인자를 모두 대입하여 나온 결과값이며, 계산상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표 6-32] 형법 제221조 제1항 가중성자주침해죄(加重妨害性自主罪)

양형인자		답변
성범죄 전 전과기록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1회</li> <li>• 2회</li> <li>• 3회 이상</li> </ul>
행위자의 행위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 20세 미만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피해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명</li> <li>• 2명</li> <li>• 3명 이상</li> </ul>
범죄행위태양	신체 부위 이외의 이물질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하나의 행위에서 반복적 성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범죄사실 시인과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수사중 자백</li> <li>• 심리중 자백</li> </ul>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없음</li> <li>• 감독보호관계자</li> <li>•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족구성원관계자</li> <li>• 인터넷 친구</li> <li>• 기타 일상생활에서 신뢰관계 있음</li> </ul>
범죄행위로 초래한 손해	심각한 신체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심각한 트라우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건전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범죄후 태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피해자와의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권고형량		7년 7월 ~ 15년 0월
권고양형구간		7년 7월 ~ 15년 0월

※ 권고형량과 권고양형구간은 양형결정 문항의 최저와 최고를 의미함

출처: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sup>287)</sup>을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286)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https://sen.judicial.gov.tw/pub\\_platform/sugg/221I.html](https://sen.judicial.gov.tw/pub_platform/sugg/221I.html))

[표 6-33] 형법 제227조 제3항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교죄(對於14歲以上未滿16歲之人性交罪)

양형인자		답변
성범죄 전과기록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1회</li> <li>• 2회</li> <li>• 3회 이상</li> </ul>
재판상 자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백하지 않음</li> <li>• 자백</li> <li>• 일부 자백</li> </ul>
피해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선 사람</li> <li>• 동반자관계(伴侶關係)</li> <li>• 남녀친구</li> <li>• 고용관계</li> <li>• 친족관계</li> <li>• 동창 또는 친구</li> <li>• 인터넷 친구</li> <li>• 사제관계</li> <li>• 사제시간 이외의 권세관계(權勢關係)</li> <li>• 전 남녀관계</li> </ul>
피해자와 화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하지 않음</li> <li>• 화해하고 완전이행</li> <li>• 화해 개시하였지만 아직 미이행</li> <li>• 화해를 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유없이 이행중지를 연기함</li> <li>• 일부 피해자와만 화해하고 완전이행</li> <li>• 일부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이행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li> <li>• 일부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이행 여부를 판결할 수 없음</li> <li>• 화해할 의향이 있으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나서기 싫어 화해하지 못함</li> <li>• 피해자와 적극 화해 언급만으로 성립여부 판단 불가</li> </ul>
범죄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정적 자율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성교·추행으로 인한 신체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트라우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건전성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가정 손해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소셜네트워크 손해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li> <li>• 아니오</li> </ul>

287)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https://sen.judicial.gov.tw/pub\\_platform/sugg/222I.html](https://sen.judicial.gov.tw/pub_platform/sugg/222I.html))

양형인자		답변
범죄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	임신	• 예 • 아니오
	학습권 손상	• 예 • 아니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당함	• 예 • 아니오
법정형		7년 이하의 유기징역
권고형량		0년 8월 ~ 7년 0월
권고양형구간		0년 2월 ~ 7년 0월

※ 권고형량과 권고양형구간은 양형결정 문항의 최저와 최고를 의미함

출처: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sup>288)</sup>을 저자가 정리하여 작성

#### 라. 성자주권 방해 관련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sup>289)</sup>은 「형법」상 성자주권 방해죄와 관련하여 양형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양형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조문은 총 7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법」 제221조 제1항, 「형법」 제222조 제1항, 「형법」 제224조, 「형법」 제224조의1, 「형법」 제225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제3항 등이다.

288) 양형추세제안시스템(量刑趨勢建議系統)([https://sen.judicial.gov.tw/pub\\_platform/sugg/227III.html](https://sen.judicial.gov.tw/pub_platform/sugg/227III.html))

289)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https://sen.judicial.gov.tw/pub\\_sex\\_s/sex\\_exec\\_stat.html](https://sen.judicial.gov.tw/pub_sex_s/sex_exec_stat.html)) (접속일: 2022.11.25.)



[표 6-34] 제221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집행형도	최저집행형도	평균집행형도
2	36	16년	3.0월	4년 8월
3	15	12년 2월	2년	5년 11월
4	1	5년	5년	5년
5	4	10년	6년 6월	8년 7월
6	3	9년	5년	6년 4월
7	1	6년	6년	6년
8	2	8년	8년	8년
9	1	5년 6월	5년 6월	5년 6월
14	1	4년	4년	4년
15	1	5년	5년	5년
22	1	10년	10년	10년
28	1	18년 6월	18년 6월	18년 6월
35	1	9년	9년	9년
43	1	10년	10년	10년

출처: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표 6-35] 제222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형도	최저형도	평균집행형도
2	43	15년	2년	7년 8월
3	20	18년	2년	8년 8월
4	9	15년	2년	8년 10월
5	6	18년	3년	6년 10월
7	1	4년 6월	4년 6월	4년 6월
8	1	8년 10월	8년 10월	8년 10월
10	3	15년	10년 10월	13년 3월
12	2	12년	6년	9년
13	1	12년	12년	12년
16	1	8년 4월	8년 4월	8년 4월
22	1	29년 6월	29년 6월	29년 6월
26	1	15년	15년	15년
35	1	18년	18년	18년
48	1	10년	10년	10년
84	1	16년	16년	16년
94	1	3년	3년	3년
102	1	18년	18년	18년
335	1	10년	10년	10년

출처: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표 6-36] 제224조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형도	최저형도	평균집행형도
2	24	3년 6월	4월	1년 1월
3	5	1년 6월	1년 2월	1년 4월
4	2	2년 9월	1년 10월	2년 3월
5	2	1년 6월	1년 2월	1년 4월
11	6	1년 10월	1년 4월	1년 5월
12	2	5년 6월	1년	3년 3월
156	1	3년 10월	3년 10월	3년 10월

출처: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표 6-37] 제224조의1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형도	최저형도	평균집행형도
2	34	12년	1년 8월	4년
3	14	8년	2년	4년 8월
4	7	13년	2년	5년 8월
5	4	5년	3년 6월	4년 4월
6	1	7년 10월	7년 10월	7년 10월
7	6	12년	2년	5년 6월
8	1	7년 6월	7년 6월	7년 6월
10	2	2년	2년	2년
11	1	2년	2년	2년
14	2	10년 6월	2년	6년 3월
16	1	6년 10월	6년 10월	6년 10월
30	1	2년	2년	2년
42	2	13년	2년	7년 6월
44	1	3년 4월	3년 4월	3년 4월
57	1	4년 6월	4년 6월	4년 6월
87	1	6년 6월	6년 6월	6년 6월
90	1	6년	6년	6년
109	1	3년 6월	3년 6월	3년 6월
149	1	13년	13년	13년
150	1	8년	8년	8년
255	1	3년	3년	3년

출처: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표 6-38] 제225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형도	최저형도	평균집행형도
2	13	6년 6월	2년	4년 2월
3	5	7년 8월	2년	4년 10월
4	4	5년	1년 8월	3년 3월
5	2	10년	9년 4월	9년 8월
7	1	8년	8년	8년
8	1	2년	2년	2년
30	1	9년	9년	9년

출처: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표 6-39] 제227조 제1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형도	최저형도	평균집행형도
2	145	12년	1년 7월	2년 8월
2	68	10년 2월	1년 7월	2년 9월
4	39	12년	1년 8월	2년 9월
5	17	10년	1년 10월	2년 11월
6	14	12년	2년	3년 8월
7	6	8년 6월	1년 10월	3년 3월
8	4	4년	2년	2년 10월
9	6	4년 10월	2년	2년 5월
10	6	8년	1년 10월	2년 11월
11	4	4년 3월	2년	3년
12	1	4년 3월	2년	3년
13	2	3년 6월	2년	2년 9월
14	2	4년 6월	4년 6월	4년 6월
15	1	4년 2월	4년 2월	4년 2월
17	1	2년	2년	2년
22	1	6년 6월	6년 6월	6년 6월
24	1	3년 2월	3년 2월	3년 2월
28	1	2년	2년	2년
30	1	9년	9년	9년
43	1	9년	9년	9년
46	1	2년	2년	2년

출처: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표 6-40] 제227조 제3항 집행 예정 형죄 수와 형량 통계표(定應執行刑罪數與刑度統計表)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형도	최저형도	평균집행형도
2	300	3년 6월	3월	8년 4월
3	196	20년	3월	1년
4	100	3년 4월	5월	1년
5	75	4년	5월	11년 9월
6	31	6년	6월	1년 1월
7	15	2년	6월	1년 2월
8	16	2년 6월	6월	1년 5월
9	14	4년	8월	1년 9월
10	45	2년	4월	1년 2월
11	6	2년 2월	1년	1년 7월
12	10	2년	5월	1년 3월
13	3	2년	8월	1년 4월
14	4	2년	1년	1년 5월
15	5	3년	10월	1년 9월
17	2	2년	1년 4월	1년 8월
18	1	1년 8월	1년 8월	1년 8월
19	2	2년	6월	1년 3월
20	8	2년	6월	1년 2월
21	1	1년 4월	1년 4월	1년 4월
22	2	2년	1년	1년 6월
23	3	2년	1년 6월	1년 8월
25	2	2년	10월	1년 5월
27	2	1년 6월	6월	1년
28	1	1년 4월	1년 4월	1년 4월
30	2	1년 10월	1년 10월	1년 10월
31	1	1년 4월	1년 4월	1년 4월
32	1	8월	8월	8월
33	1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34	1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35	3	2년	2년	2년
36	1	2년	2년	2년
39	1	1년 2월	1년 2월	1년 2월
40	2	2년	2년	2년
42	1	1년	1년	1년
43	1	2년	2년	2년
44	1	1년 3월	1년 3월	1년 3월
45	2	2년	1년 2월	1년 7월
46	1	1년 2월	1년 2월	1년 2월
48	1	1년	1년	1년
49	1	2년	2년	2년

반드시 집행해야 할 형벌의 수	표본수	최고형도	최저형도	평균집행형도
50	1	2년 6월	2년 6월	2년 6월
51	1	1년 4월	1년 4월	1년 4월
52	3	2년	10월	1년 6월
53	1	2년	2년	2년
54	1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65	1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66	1	2년	2년	2년
70	1	1년	1년	1년
72	1	1년	1년	1년
78	1	2년	2년	2년
83	1	1년	1년	1년
87	1	2년	2년	2년
91	1	1년 8월	1년 8월	1년 8월
100	2	2년	6월	1년 3월
218	1	2년	2년	2년

출처: 사법원 성자주권 방해죄 양형정보시스템(司法院妨害性自主罪量刑資訊系統)

#### 마. 「형사사건 적정 양형 형법」 초안(「刑事案件妥適量刑法」草案)

양형은 국가형벌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형벌의 종류 선택과 형량 구간의 지정을 포함하고 행위자의 생명,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 양형의 차이는 국민의 사법 신뢰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벌 재량이 형벌의 목적을 어떻게 고려하고 양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며, 각국의 형사 재판 실무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양형 개혁도 각국의 사법 개혁의 중점이다.<sup>290)</sup>

현재 대만의 사법실무는 아직 양형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유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형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양형 공정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의 양형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양형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양형의 적절성, 투명성, 공정성 및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합리한 양형 차이를 줄여나감에 따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증진하고, 사법 독립의 원칙을 확보하며, 형사사건 양형법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준칙을 제정한다.<sup>291)</sup>

290) 司法院會通過「刑事案件妥適量刑法」草案 法源編輯室/2021-12-16([https://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_print.aspx?nid=181770.00](https://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_print.aspx?nid=181770.00))

291) 司法院會通過「刑事案件妥適量刑法」草案 法源編輯室/2021-12-16([https://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_print.aspx?nid=181770.00](https://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_print.aspx?nid=181770.00))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법원(司法院)은 양형의 적절성, 투명성, 공정성 및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28일 「형사사건 적정량 형법」 초안(「刑事案件妥適量刑法」草案)의 작성을 완료하고 형사사건 양형준칙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약칭 양준회)를 설립하여 형사사건 양형법제를 보완할 계획이다.<sup>292)</sup>

아래의 내용은 「형사사건 적정량 형법」 초안(「刑事案件妥適量刑法」草案)의 주요 내용의 원문과 번역문이다.

第1條 為完善刑事案件量刑法制，提升量刑之妥適、透明、公平及合理可預測性，特制定本法。

제1조 이 법은 형사사건의 양형제도를 개선하고 양형의 적절성, 투명성, 공정성 및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第2條 司法院為完善刑事案件量刑法制，並促進其成效，設刑事案件量刑準則委員會（以下簡稱量準會）。  
刑事案件量刑準則（以下簡稱量刑準則），由量準會依量刑相關法律定之。

제2조 사법원은 형사사건의 양형제도를 개선하고 그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양형기준위원회(이하 양준위원회)를 둔다. 형사사건의 양형준칙(이하 양형준칙이라 한다)은 양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준회에서 정한다.

第三章 量刑基本原則

제3장 양형의 기본 원칙

第28條 法院量刑，應審酌相關法律規範之目的，並符合比例原則及平等原則。關於少年之量刑，少年事件處理法另有規定者，依其規定。

제28조 법원의 형량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목적을 검토하고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년의 형량에 관하여 소년사건처리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第29條 法院量刑，應審酌罪刑相當原則，不得逾行為人之行為責任程度。

제29조 법원의 형량은 죄형의 상당원칙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92) 林臻嫻, “從我國妥適量刑法草案談德國之無須量刑準則”, 國會李刊 第50卷第2期, 2022年6月, 56頁。

第30條 法院量刑，應兼衡行為人有利及不利之情狀。

제30조 법원의 형량은 행위자의 이익과 불이익의 형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第31條 法院量刑，不得為重複評價。

제31조 법원의 형량은 중복평가로 할 수 없다.

第32條 法院酌定應執行刑，應綜合考量各罪間之整體關係。法院審酌前項各罪間之關係時，宜綜合考量數罪侵害法益之異同、對侵害法益之加重效應及時間、空間之密接程度。

제32조 법원은 각 죄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전항의 각 죄의 관계를 검토할 때 수죄 침해의 범익의 차이, 침해의 범익에 대한 가중효과, 시간적, 공간적 밀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第33條 法院依刑法第五十一條第五款及第六款酌定應執行刑者，除依前條規定外，應考量行為人之社會復歸。

제33조 법원이 형법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전조의 규정 외에 행위자의 사회적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

### 3. 대만 성범죄 관련 판례 분석

#### 가. 지방검찰서 성범죄 사건처리

성범죄란 「형법」상 성자주권 방해죄(「형법」 제221조~제227조, 제228조 및 제229조), 강도죄·해적죄·몸값 요구 목적 납치죄(擄人勒贖罪) 등과 결합된 강제성교죄(「형법」 제332조 제2항 제2관, 제334조 제2항 제2관 및 제348조 제2항 제1관) 및 그 특별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2021년(민국 110년) 지방검찰서 성범죄 수사 종결 건수는 4,448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고, 수사종결 기소 인원수는 1,723인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종결 인원수는 36.7%를 차지하였다.

2021년(민국 110년) 법원 재판 확정되어 검찰기관에 이송된 유죄 인원은 1,408명으로 88.1%가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자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추행죄가



36.1%로 가장 많았고, 강제성교죄가 28.0%, 강제추행죄가 20.2%, 이외에는 기회를 이용한 성교 또는 추행죄나 권력을 이용한 성교 또는 추행죄 등이다.

[표 6-41] 지방검찰서 성범죄 사건처리 통계

항목별	수사 종결 건수	수사 종결 인원수	기소	기소 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	유죄 확정 집행 인원수	범죄행위 유형					유죄율
							미성년자 대상성교 주행죄 a	강제 성교죄 b	강제 추행죄 c	기회 이용 성교 추행죄 d	기타	
연도	건	인	인	인	인	인	%	%	%	%	%	%
2017	4,373	4,617	1,848	213	2,052	1,500	45.7	26.5	16.1	10.1	1.5	87.8
2018	4,067	4,268	1,726	153	1,891	1,516	42.0	26.1	17.2	13.0	1.8	86.1
2019	4,309	4,530	1,805	145	2,130	1,431	39.3	28.0	19.2	11.7	1.8	87.8
2020	4,601	4,820	1,728	181	2,420	1,490	37.4	31.3	16.7	12.4	2.1	86.5
2021	4,448	4,691	1,723	146	2,303	1,408	36.1	28.0	20.2	13.6	2.1	88.1

설명: 1. a 「형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자, b 「형법」 제221조, 제222조의 죄를 범한 자, c 「형법」 제224조, 제224조의1의 죄를 범한 자, d 「형법」 제225조의 죄를 범한 자

2. 유죄판결률 = 유죄인원수 / (유죄인원수 + 무죄인원수) × 100%

출처: 법무부 법무통계 법무통계연감

([https://www.rjsoj.moj.gov.tw/rjsojweb/book/Book\\_Detail.aspx?book\\_id=555](https://www.rjsoj.moj.gov.tw/rjsojweb/book/Book_Detail.aspx?book_id=555))(접속일: 2022.11.30.)

[표 6-42] 성자주권 방해죄 및 풍기문란죄 유죄확정 집행인원 연령

연령	남성	여성	계
14세~18세 미만	47	-	47
18세~20세 미만	191	1	192
20세~24세 미만	332	17	349
24세~30세 미만	317	19	336
30세~40세 미만	430	50	480
40세~50세 미만	397	47	444
50세~60세 미만	202	34	236
60세~70세 미만	152	28	180
70세~80세 미만	30	3	33
80세 이상	6	-	6
불명(不詳)	-	-	-
계	2,104	199	2,303

나. 성자주권 방해 관련 검찰서류 분석<sup>293)</sup>

대만은 1999년 「형법」 대폭 개정을 통하여 성자주권 방해죄와 풍기문란죄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강제성교죄 등 피해자의 의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사법인(司法人)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형사소송의 여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성범죄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고정관념, 편견 등의 문제가 영향을 받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16건의 「형법」상 성자주권 방해죄(제221조, 제222조, 제225조 제1항 및 제3항, 제2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관한 검사서류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2.5년간 검찰이 수사종결 후 피고인이 관여한 사건은 「형법」 제221조, 제222조, 제225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거나 제2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성교행위자로 인정된 사건이 총 21,520건이 접수되었으며,<sup>294)</sup> 연도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295)</sup>

[표 6-43] 2008년~2020년 6월까지 특정 성자주권 방해 사건 분포도

연도	건수
2008년	1,481
2009년	1,419
2010년	1,544
2011년	1,720
2012년	1,878
2013년	1,852
2014년	1,942
2015년	1,971
2016년	1,705
2017년	1,777
2018년	1,815
2019년	1,790
2020년	626
합계	21,520

출처: 資料來源 : 法務部司法官學院「刑事政策與犯罪研究數據資料庫」

293) 蔡宜家, 林俐如, 許家毓, 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1-55頁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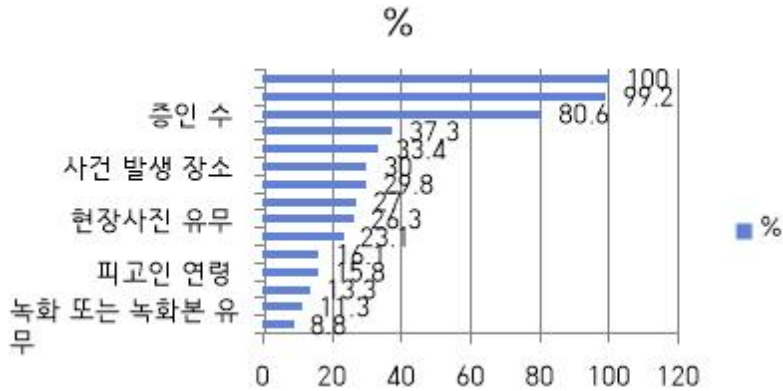
피고인의 기초정보와 관련하여 성범죄사건 피고인 수는 총 347명이며, 남성 338명으로 9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국적은 대만이 341명으로 98.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은 기관에 신청한 서류가 기관의 식별을 위해 피고인의 정보가 삭제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분석할 수 없었다. 피고인 총 347명 중 기소처분 152명(43.8%), 불기소 처분 192명(55.3%) 그리고 기소유예처분 3명(0.9%)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는 총 366명으로 이 중 여성이 350명, 남성이 14명이며, 성별이 기재되지 않는 2명이 있었다.<sup>296)</sup>

피고인의 기소와 불기소처분 결과에 있어 중요도가 80% 이상인 변항은 피해자수(100.0%), 물증 종류 수(99.2%), 증인 수(80.6%)의 3가지 변항순이다. 그리고 다른 변항의 중요성은 모두 50% 미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자백 여부(37.4%), 검증보고서 유무(33.4%), 사건 발생 장소(30.0%), 기타 유형 보고서 유무(29.8%),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여부(27.0%), 피해자 현장 사진 유무(26.3%), 가타 물증 여부(23.1%), 피해자 14세 미만 유무(16.1%), 피해자 연령 (15.8%), 피해자 피고인 인식 여부(13.3%), 현장 사진 유무(11.3%), 녹화 및 복사본 유무(8.8%) 등이다.

294) 총 21,520건의 접수된 사건 중에서 수사결과 수배, 타관송치 등 본안사실이 없는 사건은 배제하였다.

295)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16頁。

296)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30頁。



[그림 6-4] 예측 변수 중요도 백분율

출처: 蔡宜家, 林俐如, 許家毓, 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37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기소처분은 총 192명이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의 범행에 대한 다른 적극적인 증거가 없음’이 176회, ‘피해자가 지적인 기타 증거를 보강하지 않음’이 120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탈출하지 않음’이 64회,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와 교제함’이 56회,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음’이 41회, ‘피해자의 진술 전후 불일치 또는 논리적 모순’이 39회로 파악되었다.<sup>297)</sup> 이러한 불기소처분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수사결과 판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검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성범죄사건의 수사단계에서 문헌이나 평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의 논란보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사법적 견해와 법원, 검찰 실무에서 이 사법적 견해를 따르는 것이 검찰의 성범죄사건 기소나 불기소처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298)</sup>

297) 蔡宜家, 林俐如, 許家毓, 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44頁.

298) 蔡宜家, 林俐如, 許家毓, 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48頁.

결국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결정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 진술 이외의 인적 증거, 물적 증거의 유무 및 다양성일 가능성이 높다. 사법실무의 관점에서 성범죄사건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물적 증거, 인적 증거의 유무를 강조하게 된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다양한 범죄사건에서 널리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견해, 즉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 인정에 유일한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원(司法院) 해석 제78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sup>299)</sup>

성범죄사건 수사 실무는 피해자의 편견 논란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수사 결과에 미치는 중요성, 영향 정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핵심으로 피해자 보호, 수사 실무 등 관련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점차 부상하는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sup>300)</sup> 미스터리 분석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유죄 확신 정도를 강화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sup>301)</sup>

## 다.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 관련 판례

### 1) 관련 판례

가) 판결번호 : 최고법원107년도태상자제887호형사판결(最高法院107年度台上字第887號刑事判決)<sup>302)</sup>

299)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55頁。

300)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는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편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불기소처분 사유 중에서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하거나 탈출하지 않음’이나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인과 왕래했음’이라는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상적 피해자 미스터리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이 점차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여 판결에서 이상적 피해자 미스터리를 띄고 있는 용어를 추론으로 반박을 시도하고 있다(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55頁。).

301)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56頁。

302) 사법원 재판서시스템 <https://judgment.judicial.gov.tw/FJUD/default.aspx>

판결일시 : 2018년(민국107년) 3월 29일

재판사유 : 가정폭력 성자주권 방해

### 【사실관계】

항소인은 14세 미만 피해자 A女에 대하여 손가락을 A女의 질에 삽입하고 강제로 A女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성교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원심판결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14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제성교죄, 14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각 징역 7년 2월, 3년 2월을 선고하였다.

### 【판시내용】

#### ▶ 14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제성교 및 강제추행죄(가슴 만지기) 판단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흠결이 없고 증거와 진술에 상당한 진위성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반이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원심은 항소인이 A女에게 강제성교와 강제추행을 인정한 증거로 ① A女가 목욕 중 욕실에 들어가 A女의 허리를 껴안았다는 자백, ② A女의 고소, ③ 증인인 C女(A女의 어머니), D女(A女の 외할머니), E男(A女の 외삼촌)의 증언, ④ A女 진단서에 처녀막에 오래된 성 찢김이 있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인은 A女의 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A女의 가슴을 억지로 안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A女의 진단서에 A女의 처녀막 11시 방향에 오래된 성열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주치의에 따르면 어릴 때 넘어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외물이 삽입되는 등 구분이 불가능하다.

원심은 이 진단서가 항소인이 A女의 질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증거, C女, D女, E男의 증언 등에 대하여 A女の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C女, D女, E男의 증언내용은 모두 A女の 진술과정 및 사건 후 항소인이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전한 소문일 뿐이며, A女の 진술에 관한 어떠한 경험, 전문, 체험도 없었고(예를 들어 항소인을 언급할 때 몸이 떨리고 말을 할 때 오열하는 경우, 감정반응(예를 들어 울음, 분노)이나 심리상태(예를 들어 공포, 슬픔) 등의 구체적인 묘사나 정황도 없었다.

위의 내용은 상소의 취지로 지적되거나 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원심판

결의 위법이 사실확인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법원에 판결에 근거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파기환송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 14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제추행죄(키스)

증거인정은 사실심법원의 권한으로 증거에 대한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판단의 심증을 근거로 하는 이유로 임의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성자주권 방해 피해자는 전형적인 사후감정반응과 표준적인 대응절차가 없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처한 상황,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감정, 타인에게 성적 침해 사실을 알게된 후의 상황 등은 모두 피해자의 성적 침해 후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른바 이상적 피해자의 이미지는 가부장제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며칠을 위해 이상반응 없이 비교적 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를 피해가 위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피해자가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은 항소인이 평소 A女の 볼에 입맞춤을 하며 굿나잇 인사를 했다고 자백한 점, 이번에는 A女の 입에 입맞춤을 했다는 점, A女가 침을 빨었다는 점, A女の 증언에 근거하여 항소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며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신빙성이 있다. 항소인은 A女の 입에 1초만 키스하고 혀를 내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심판결은 항소인과 A女는 평소 사이가 좋았고, 만약 항소인이 1초만 키스했다면 A女가 갑자기 침범당했다고 하여도 침을 빨아 항소인을 화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항소인이 A女の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혀를 내밀어 입을 맞추는 추행범행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항소인은 A女の 생부이며, 상호작용 상황에 따르면 A女는 항소인을 포함할 동기나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가정폭력으로 성자주권 방해 사건이다. A女는 항소인과 절친한 사이이며, A女는 가족애에 기초하거나 부모의 감정을 고려하거나 항소인의 권세 등에 얽매어 참아왔지만, A女の 학교 정서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A女가 피해자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고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결번호 : 최고법원110년도태상자제1962호형사판결(最高法院110年度台上字第1962號)

刑事判決)<sup>303)</sup>

판결일시 : 2021년(민국110년) 3월 31일

재판사유 : 성자주권 방해

### 【상고취지】

본 사건 고소인 A女는 상소인이 형사소추될 수 있도록 사건 당시 의식이 맑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경찰, 수사 및 제1심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지적에 대해 언급하였다. ① 상소인에게 추행을 당한 시간은 상소인이 2018년(민국 107년) 12월 22일(이하 ‘사건일’) 오전 3시 38분에 차량번호 000000번을 열고 미니버스(이하 ‘자가용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상체가 뒷좌석에 들어갔을 때 또는 같은 날 오전 3시 43분에 왼쪽 뒷문으로부터 뒷좌석에 들어갔을 때이다. ② 범행 장소는 돈화남로상의 풀숲이거나 신복시○○구○○로(이하 ‘경평로’)의 집 앞이었다. ③ 차 문을 열고 탈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 이 사건의 핵심 사안과 진술이 엇갈리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원심판결은 이를 무시하고 A女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하였고, A女의 상이한 진술의 진실성이 어떻게 보장되었는지와 증인 장○○, 황○○이 A女の 축적된 증거로부터 A女の 불일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판결의 이유가 없는 오류가 있었다.

원심은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에 대한 미스테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A女가 침해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혼미정(놀란 가슴이 아직 가라앉지 않음), 정서미달, 감정미달, 이에 대한 회신이 불가능하지 않아 당황한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문을 열지 못한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3분 만에 차 안으로 돌아왔고, A女の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즉시 자리를 비운 것도 사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자동차 문 안전설계 사실을 사전에 들추어내고, A女가 감정미달로 인해 바로 자리를 비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항소인은 차 안에 머무른 지 14분 이내에 A女에게 성침해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것은 ‘전형적인 범죄인’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원판결의 소에 대한 판단은 증거법칙 및 논리법칙에 위배된다.

---

303) 사법원 재판서시스템(<https://judgment.judicial.gov.tw/FJUD/default.aspx>)



### 【최고법원의 판단】

수사 및 제1심에서는 모두 당일 항소인의 차가 멈춘 후 항소인이 뒷좌석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걸터앉아 놀라 깨자마자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항소인은 목을 조르고 강제로 키스하고 허벅지까지 외투를 벗었으며 항소인에게 불법 추행성 침해를 당한 정황이 명확했다. A女는 사건 발생일부터 병원에서 상해를 입어 목에 검체를 채취하여 타액전분 검사법으로 양성반응을 보였다. 또 1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소인은 다시 A女를 차에 태우고 숙소로 돌아갔고, A女는 차에서 내린 뒤 바지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A女가 외투를 강제로 벗었다는 A女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인 장○○, 황○○이 증언한 A女의 성침해에 관한 것은 A女의 증언과 같은 누적 증거이며,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사건 당시 및 사건 후 A女와 접촉했을 때 A女의 당시 감정, 언변,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증인 장○○, 황○○의 증언에 따르면 A女는 사건 당일 기분 좋게 항소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한 뒤 장○○, 황○○에게 도움을 요청해 불법침해와 두려움, 불안, 울음 등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A女가 항소인이 차를 몰고 떠난 직후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 바닥에 계속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는 모습, 가까이 지나가는 기관차에 움직이지 않는 모습 등이 1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A女가 실제로 불법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았다면, 깊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며, 즉시 이러한 울음, 흥분, 감정 붕괴 등의 외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A女는 2018년(민국 108년) 1월 10일, 1월 26일, 2월 19일에 잇달아 심신 클리닉을 방문하였을 때 손떨림, 얼굴이 저리고, 쉽게 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짜증이 나며, 자각감정의 기복이 크고, 피해감, 불안감, 우울감 적응장애가 있다.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A女가 고소할 수 있는 신뢰성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다.

수사 및 제1심 진술에 의하면 상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였으며, 상소인이 주차한 후 뒷좌석에서 들어와 눕히고, 그 위에 걸터앉아 놀라서 즉시 몸부림치며 저항하였고, 상소인은 목을 조르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상소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 A女는 정확한 시간, 장소, 세부 방식에 대해 전후 진술이 다르지만, A女는 당일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차에서 잠을 잤고, A女의 진술에 따르면 A女는 이 상황에서 상소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을 통해 들어왔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다. A女는 앞서 언급한 외상 반응이 있어 기억을 잘하지 못하거나 침해의 세부 사항을 다시 떠올리기 꺼려하는 것도 성폭력 사건에서 생존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어긋나지 않는데,

하물며 A女の 이 부분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보강증거가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 2) 평가

2018년 최고법원107년도태상자제887호형사판결(最高法院107年度台上字第887號刑事判決)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부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와 상호작용하는 관계, 피해자가 키스를 당했다는 침 뱉기 반응을 종합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물론 증거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상소 취지가 피해자의 친인척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이론을 따르지 않고, 피고인에게 증오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건 발생 후 학교에서의 정서적 이상, 피해자의 진술이 실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이 판결은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의 평석 기준으로 반론 사유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sup>304)</sup>

성자주권 방해 피해자는 전형적인 사후감정반응과 표준적인 대응절차가 없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처한 상황, 피해자의 성격, 피해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감정, 타인에게 성적 침해 사실을 알게된 후의 상황 등은 모두 피해자의 성적 침해 후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른바 이상적 피해자의 이미지는 가부장제의 상상에만 존재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명예를 위해 이상반응 없이 비교적 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를 피해자가 위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피해자가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sup>305)</sup>

이 판결<sup>306)</sup>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변-피해자 친족이 사건 발생 후 격렬한 반응이 없고, 피해자의 사건 발생 후 행동이 정상이며,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 미스테리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나타내는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논술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최고법원 판결 이후 성자주권 방해사건에서 이

304)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法務部司法官學院，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50頁。

305)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法務部司法官學院，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50頁。

306) 最高法院107년도태상자제887호형사판결(最高法院107年度台上字第887號刑事判決)

최고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성자주권 방해 관련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의 증명력과 경험법칙, 예를 들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함부로 만지거나 술을 마신 경우 또는 사건 당시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나 도망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건 발생 후 즉시 경고를 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 남아 있거나, 피고와 계속 왕래하거나, 계속 출근하거나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이 있어 진술과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최고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 미스테리를 반박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행동과 반응이 정상과 일치함을 입증하고, 피고인의 유죄확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과거 피해자의 고정관념, 직감 인정 등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성자주권 방해 사건을 주축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 미스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종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상식적인 판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법원 실무가 미스테리를 명확히 하고, 경험칙적 판단으로 회귀하려는 태세(態勢)로 해석될 수 있다.<sup>307)</sup>

307)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50-51頁。

사법원(司法院) 법학자료검색시스템 홈페이지(法院法學資料檢索系統網站)<sup>308</sup>에서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건의 성희롱 또는 성자주권 방해 관련 민·형사판결이 나타났다. 일부 판결은 원심, 당사자 등이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 미스테리를 설명한 뒤 피해자 진술 등 증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 논술에 반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 미스테리에 대한 반론이 점차 실무적으로 채택될 때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논리와 경험칙에 대한 논증이 사법 실무의 도전이 될 수 있다.<sup>309</sup>

## 제8절 양형기준 관련 비교법적 분석의 시사점

### 1. 비동의간음죄 관련

강간죄에서 적절한 양형의 문제는 개개 사건에서 강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문제된다. 이러한 점에서 강간죄 인정범위 또는 성립요건 그리고 성립요건 관련 입증의 문제는 강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요소를 적절히 적용하여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보다 더욱 더 해당 국가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08) 사법원(司法院) 법학자료검색시스템 홈페이지(法院法學資料檢索系統網站)<https://lawsearch.judicial.gov.tw/>

309) 蔡宜家, 林俐如, 許家毓, 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51頁. 사법원(司法院) 법학자료검색시스템 홈페이지(法院法學資料檢索系統網站)에서 ‘이상적 피해자(理想被害人)’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臺灣高等法院109年度侵上訴字第217號刑事判決, 109年度侵上訴字第186號刑事判決; 臺灣橋頭地方法院106年聲判字第19號刑事裁定. 肯認見解(含主動運用「理想被害人」迷思進行反駁與論證): 最高法院110年度台上字第1962號刑事判決; 臺灣高等法院109年度侵上訴字第291號刑事判決, 109年度上易字第665號民事判決, 109年度上易字第1547號刑事判決, 109年度侵上訴字第167號刑事判決, 108年度侵上訴字第111號刑事判決, 108年度侵上訴字第115號刑事判決, 108年度侵上訴字第122號刑事判決, 107年度侵上訴字第58號刑事判決; 臺灣高等法院臺南分院108年度侵上訴字第265號刑事判決, 108年度侵上訴字第894號刑事判決; 臺灣臺北地方法院108年度訴字第1918號民事判決; 臺灣士林地方法院109年訴字第1397號民事判決; 臺灣新北地方法院109年度訴字第259號民事判決, 108年度侵訴字第158號刑事判決; 臺灣桃園地方法院108年度侵訴字第21號刑事判決.

비교대상 국가 중 일본과 대만은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제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정의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스탄불협약에 따라 비동의간음행위를 ‘의사에 반하는 간음을 통한 성폭력행위(이를 ‘성적 침해’라고 지칭하고 있음)’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고, 폭력·협박, 무기사용 등을 통한 강제간음행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1976년에 성문법률로 비동의간음행위를 ‘강간’으로 정의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사망·중상해·납치 이외의 해악고지를 통해 협박하여 간음·유사간음하거나 동의 없이 간음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로 정의하고, 폭행하거나 사망·중상해 또는 납치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의식적으로 타인을 간음·유사간음하거나 무의식상태를 초래하여 또는 약물 등을 이용하여 간음·유사간음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최협의의 폭행·협박 즉,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정의하는 경우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간음행위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사건 및 미투운동을 계기로 몇 년 전부터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sup>310)</sup> 관련 여러 법률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sup>311)</sup>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크게 보면 독일과 같이 ‘비동의 간음행위’행위를 ‘의사에 반하는 또는 동의 없는 간음을 통한 성범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면서 폭행·협박 등에 의한 간음행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방안,<sup>312)</sup>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동의 없는”과 같은 자구를 추가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의 성립범위를 넓히되 법정형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방안<sup>313)</sup>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현행 강간죄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히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것은 과잉형벌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점을 우려

310) 많은 문헌이 있지만 허황,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 연구, 2020, 85면 이하; 김희정,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비동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4호, 2019, 324면 이하 등 참조.

311) 예컨대 천정배대표발의안(의안번호2012725); 강창일대표발의안(의안번호2012564); 백혜련대표발의안(의안번호2012601); 나경원대표발의안(의안번호2012282); 홍철호대표발의안(의안번호2012532) 등

312) 예컨대 허황,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 연구, 2020, 107면 이하 참조.

313) 예컨대 김희정,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비동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4호, 2019, 349면 이하 참조.

하면서 절충적 방안으로 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행위와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행위를 모두 강간죄로 인정하되, 양자의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강간죄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sup>314)</sup> 그리고 현행 강간죄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동의간음죄를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성범죄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해석론상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방안,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입증문제를 소송법적 차원에서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315)</sup> 한편, 비동의간음죄 신설 견해 또는 절충적 견해에 대해서는,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에 포섭될 수 있는데 반해,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경우 피해자측의 의사에 따라 범죄성립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또는 절충적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sup>316)</sup>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반대하는 견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통해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통해 성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만 성립하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통해서 성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모두 포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한(그것이 명문규정이 아니라 해석에 의한 것일지라도), 최협의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비동의간음 사례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일정 부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독일이 이스탄불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비동의간음행위를 ‘성적 침해행위’ 또는 강제간음행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성적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입법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sup>317)</sup>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을

314) 김혜정,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2019, 279면 이하 참조.

315)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9호, 2018, 428면 이하; 김정연,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1호, 2018, 93면 이하 참조.

316) 예컨대 홍태석,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원광법학* 제37권 제30호, 2021, 64면 이하 참조.

317) “지금까지와는 달리 Vergewaltigung(강간)은 더 이상, 범행자가 피해자를 폭력행사, 폭력행사의 협박 또는 비보호상태의 이용을 통해 강요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범행자가

통해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형사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성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당벌성(Strafwürdigkeit)이 있는 행위를 적절하게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지, 성범죄로 처벌할 당벌성이 없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입법적 조치(즉, 형사 당벌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입법자도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독일과 같이 비동의간음행위를 강간의 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는 방안이 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 2. 법정형 관련

개개 사건에서의 선고형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에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낮다면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비교대상 국가의 성범죄 법정형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정형을 비교하여 보면, 영국과 미국은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법정형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정형이 비교대상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이 2021년 형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한 것은 독일이 기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아동·청소년대상성착취물 범죄에서 법정형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법정형 상향을 통한 엄벌주의를 취해왔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도 ‘성범죄에서 일부 범죄의 경우 법정 최소형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실무에서는 개개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법정최소형을 벗어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현상이 심각하다’는 비판이<sup>318)</sup>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강요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예: 피해자는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자는 피해자에게 성교를 하였다) Vergewaltigung이 성립한다. 이는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 형태의 성적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형법적 의미에서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 자체를 성적화된 폭력(sexualisierte Gewalt)으로 여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18) 이에 대해 자세히는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Mandatory Minimum Penalties for Sex Offences in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January 2019, p. 14 참조.

영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법정형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영국 또는 미국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법정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영국 및 미국의 관련 양형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상대적으로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양형범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중·감경 양형인자 및 가중·감경 양형인자의 적용기준 등이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3. 범죄등급 구분 및 양형인자의 중요도 설정 관련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에서 범죄등급을 크게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3등급으로만 나눈다. 감경, 기본, 가중 권고영역 중 어느 권고영역이 적용되는지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영역에서 세부적인 형량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뿐이다.<sup>319)</sup> 즉, 해당 범죄 양형기준에서 미리 정해 놓은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권고영역을 판단할 때, 감경 권고영역으로 결정되면, 일반양형인자에서 가중인자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감경 권고영역 내에서 세부적인 형량범위를 높게 설정할 수 있을 뿐, 가중권고영역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범죄별로 어떠한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특별양형인자는 범죄에 따라 다르다.<sup>320)</sup>

우리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인적 신뢰관계 이용',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등의 요소가 모두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그러한 인자가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에 따라 감경권고영역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가중권고영역의 형량범위가 적용될 수는 없다.

반면에 영국은 범죄의 피해정도 관련 요소를 세분화하여 피해등급을 나누고, 범죄자의 유책성 관련 요소를 세분화하여 유책성 등급을 나누어 피해등급과 유책성등급의 상호교차를 통해, 강간죄의 경우 범죄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어 형량권고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성착취물 촬영·송출의 죄에서는 피해등급, 유책성등급에 피해연령을 교차시켜 범죄등급을 18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등급 또는 유책성등급을 결정하는 세부 피해/유책성 관련 요소를 우리의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특별/일반 양형인자 구분 기준과 비교하면, 영국은 강간죄에서 '현저한 계획적 범행', '신뢰관계 남용', '상업적 착취 그리고 또는 그러한 동기로', '인종적 사유 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범행'을 유책성 A급 표지로 하고 있기에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만약 범죄피해가 1급이라면, 영국에서는 가장 중한 강간죄 범죄등급으로 인정되어 '10-15년 자유형' 형량범위에서 기타 가중·감경인자를 적용하여(영국도 '범죄자의 후회·반성'을 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은 '알콜 또는 마약류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319) 양형위원회, 2022 양형기준, 2022. 7. 1. 기준, 767면 참조.

320) 양형위원회, 2022 양형기준, 2022. 7. 1. 기준, 767면 참조.

범행' 등을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형량범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표지를 일반양형인자로 하고 있기에 만약 감경권고영역이 적용되는 경우라면(우리 성범죄 양형기준은 '자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중권고영역이 적용될 수는 없다.

영국의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특별/일반양형인자 구분 및 구체적인 특별/일반양형인자 설정은 먼저, 현재의 특별/일반양형인자 설정은 성범죄의 특성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예컨대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 인적신뢰관계의 이용은 범행의 중합 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양형인자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범행의 중합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표지들(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등)이 특별양형인자가 아니라, 일반 양형인자로 설정되어 있다.

위의 문제점은 우리의 양형기준이 범죄등급을 크게 3등급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과 결합하여(3등급으로만 구분하고 있기에 현재의 양형기준이 그러한 요소를 일반양형인자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영국과 비교하면 그러한 요소가 선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범적 차원에서(양형기준상) 약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식 차이 등에 따라 개개 사건에 따라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범행의 중합 정도 관련 요소(피해관련 요소 및 유책성 관련 요소)를 세분화하면서 범죄등급을 6등급 등으로 우리에게 비해 더욱 세분화하고 있기에 그러한 요소들이 선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개개 법관의 인식 차이에 따른 편차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양형기준이 특별/일반양형인자 구분, 범죄등급의 3등급화라는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감경, 기본, 권고 영역을 각각 2등급으로 나누어서 범죄등급을 총 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현재 일반양형인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범행의 중합정도와 관련된 중요요소들이기에 특별양형인자로 할 필요가 있는 표지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하되(예컨대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특별히 적용되는 '권고영역 결정기준'을<sup>321)</sup> 정하는 것은 현재

321) 예컨대 인정되는 특별가중양형인자의 수를 범죄등급 결정과 연동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에서 발생하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개별 양형인자의 의미·적용 관련

영국과 미국은 개별 범죄별 양형가이드라인에서 각 일반양형인자의 의미, 적용과 관련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성범죄 양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국 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은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감경인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강간죄 양형기준은 강간죄의 경우 감경인자를 고려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에 큰 의미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이 강간범행에 이용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은 가중인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교육정도 및 직업적 기술능력은 일반적으로 양형구간의 변경을 허용하는 요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연방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족과의 유대 및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은 일반적으로 양형구간의 변경을 허용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없고, 특히 성범죄에서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및 사회적 유대 관계가 인정되는 양형구간보다 낮은 양형구간으로 변경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은 양형가이드라인 해설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이 범죄유발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다른 범죄에서는 양형구간 감경요소로 기능할 수 있지만, 성범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범죄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에서 각 양형인자 특히 일반 가중/감경양형인자의 의미, 적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양형기준에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양형인자의 의미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자료를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공청회 자료' 또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만 제공할 뿐, 영국 또는 미국과 같이 개별 범죄 양형가

이드라인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상세한 해설·주석을 함께 제공하지는 않는다.

현재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가 ‘처벌불원’, ‘비난동기’ 등과 같이 아주 간단한 문구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간단한 기술을 통해서도 어떠한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양형인자의 적용이 개개 사건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날 수 있다. 따라서 영국 및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과 같이 우리나라도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상세한 해설·주석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성범죄의 특성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행동’, ‘가족과의 유대 및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과 같은 요소는 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양형기준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5.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영국은 ‘수죄의 경우 전체형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범해진 가정폭력범죄 또는 성범죄’의 경우 실제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음란이미지 제작 등 죄’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에서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범죄등급을 달리 하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 ‘많은 양의 이미지를 소지·유포·제작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적시하고 있다.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 양형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해자 연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유책성등급 및 피해등급과 결합시켜 범죄등급을 총 18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각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별개의 범죄사실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른 양형구간에서 벗어나 높은 양형구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성착취물 취득, 소지 등의 경우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기본범죄등급을 상승시키고 있고, 이미지의 수가 미성년자의 수에 상당히 미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구간에서 벗어나 양형구간의 상승이 인정될 수 있다.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음란물범죄(Obscenity)의 경우 아동성착취물 취득, 소지 등의 행위에서 인정되는 범죄등급 상승 인자와 동일한 인자를 이유로 범죄등급의 상승을 인정하고 있지만(예컨대 음란물을 미성년자에게 교부

하였는지 여부, 가학적·폭력적 내용의 음란물인지 여부, 컴퓨터 또는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 음란물 범죄의 경우 유포된 음란물의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범죄등급을 상승시키지는 않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위와 같은 태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음란물범죄와 달리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특별가중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는 ‘성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음란물 범죄’ 즉,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연속해서 행해진 경우일지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없고, 피해자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다른 양형가이드라인에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을 뿐, 피해자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특별 가중양형인자로 들고 있는 것은 하나의 범죄사안이라면 피해자가 많은 경우일지라도 실제적 경합관계가 인정되기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마련된 양형인자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항소심 판결에서<sup>322)</sup> 법원은 손모씨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행위에서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인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그러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특히 제작, 판매, 배포의 경우) 피해자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되, 디지털범죄의 특성상 일반범죄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적합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모색할 필요 있다. 한편 그러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이 피해자 수 그리고 이미지·영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가중양형인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판결.





## 제 7 장

#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윤정숙, 박경규, 김영중, 김남희







## 제7장 |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 가. 경찰 및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의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실태와 이차 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념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460명의 경찰과 검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남녀평등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 제로섬 신념,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4대 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통념과 이차 피해 수사행동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소속 기관의 성평등 정책 인식과 만족도가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남녀평등의식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으며,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을, 직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남녀평등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여성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미 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충분함에도 여성이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일반인 기준 집단과 비교 시 남녀평등 의식이 일반인의 상위그룹에 속했다. 여성과 남성 집단 모두 연령이 높아지면서 같은 연령대 기준 집단 대비 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을 보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성평등 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의 효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본 집단의 남녀평등의식 평균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가 전체표본의 13.5%(T점수 50미만)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19.5%가, 여성의 3%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를 통해 남녀평등의식에서 문제적 수준을 보이는 대상자들

이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적 수준 집단에는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온정적 성차별 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집단의 평균 T점수(49점)는 백분위 35점에 해당하여 일반인 기준 집단의 평균 수준보다 낮았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의식에서 T점수 50을 초과한 소집단의 빈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표본의 상당수(47.8%)가 일반인의 평균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 집단은 52.56%, 검찰 집단은 39.52%가 T점수 50을 초과하여, 경찰 집단이 검찰 집단보다 높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34.25%, 여성의 8.93%가 T점수 50을 초과하여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은 대상자가 여성 집단에 비해 남성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척도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경찰 집단 내 소집단 간의 차이는 미비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검찰 집단은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직급(수사관의 경우) 변인에서 소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보다는 기혼 집단에서, 수사관의 경우 직급이 높을수록,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은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경찰 집단 내 소집단 간의 차이는 미비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검찰 집단에서는 성별, 결혼여부, 직급별 등 소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대폭력 통념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일수록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높았다. 수사관 집단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통념을 보였다. 또한 경찰 집단의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검찰 집단보다 높으며, 특히 '성매매'와 '성폭력'에 관련된 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일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수사관 집단에 해당)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피해자보호결여'나 '과잉수사'보다 '합의종용' 부분에서 검찰 집단이 경찰 집단보다 관련된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연령대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직급별로는 탐장급 이상의 경찰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즉, 경찰 집단은 연령대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성평등 교육이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집단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수사관이 검사에 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이차 피해 수사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4대폭력에 대한 통념과 이차 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만으로 구성된 모델은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심리검사 변인을 투입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성별과 더불어 남녀평등의식,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이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이차 피해 수사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 모델에서 성평등 교육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투입했을 때에는 4대폭력에 대한 통념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 피해 수사행동에서 설명력이 없었던 성평등 교육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 마지막 모델에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을 투입하자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 이차 피해 수사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델 설명력 23.1% 증가,  $R^2 = .630$ , 수정된  $R^2 = .623$ ), 최종 모델에서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영향력이 소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이차피해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념은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심층면담조사 결과 요약

### 가. 법집행공무원 심층면담

경찰 심층면담에서는 2017년부터 경찰 내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에 전사적 시동이 걸렸고 형사나 지능수사 부서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사 중요성이 높은 부서와도 견주어 젠더폭력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부서의 수사 중요도가 상승하는 등 젠더폭력 수사 조직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졌음이 조명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수사경찰의 다수는 젠더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섬세함과 피해자 관점을 견지하려 한다고 답변하였고, 수사관의 성향이

나 통념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태도가 때로는 타당성 없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상당 부분 이뤄졌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객관적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경찰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정서를 배려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게 느껴지고, 교육에 있어서도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 오히려 성평등적 분위기에 남자 경찰관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들은 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사 경찰은 연령, 직급, 지역, 개별 경찰관의 성향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수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전문성 미비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2차 가해성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수사 경찰은 소속 부서의 고유 특성이나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부서의 고유 특성상 높은 성인지 수준을 요하며, 조직 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편중(예: 다수가 남성 혹은 다수가 40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 등)되어 있을 경우도 성인지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육의 파급효과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지역의 관서, 지구대 등은 상대적으로 최근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침투력이 낮을 거라고 인식하였다. 모든 면담 대상자가 젠더폭력 사건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청소년 수사에서 전문성이 생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하였다.

검찰 및 법원의 법집행 공무원은 검찰, 법원의 피해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절차 마련, 성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양성 평등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조직의 성인지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먼저, 검찰은 과거에 비해 여성검사나 간부급 여성, 여성 수사관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보다 유연하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조직 문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전사적 교육을 통해 침투되었으며, 미투사건을 통한 조직의 자성 등으로 성인지 부족을 야기하는 문제적 상황들이 일정 부분 정화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성범죄 전담 검사나 성범죄 공인인증 수사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전문조직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면서 성인지 수준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별도의 피해자 조사실 확보, 영상녹화 확보,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 및 제도상의 변화로 인해 피해자 성인지가 개선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에서는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년 사이에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모임 발족, 법관 연수 강화 등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 왔고 많은 법관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점차적으로 보편적 법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반면, 검찰이나 법원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며 각 개인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정의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거나, 개념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 구현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수사 및 재판 시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할 때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균형을 찾는 것의 어려움이 개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이해 및 설득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재판에서는 재판정의 소송 지휘권 및 재량, 재판의 효율성 추구, 재판정의 공정성 등 재판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정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지적되었다. 또한 재판에서 감정을 호소하는 피해자 등 피해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차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균적 성향으로만 대하는 재판정의 성인지 수준도 지적되었다.

한편,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 심문 상황에서 피해자 사생활 질문 등 2차 피해성 발언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논리로 미성년 피해자 혹은 장애인에 대해 영상녹화 대체가 헌법재판소에서 불인정되면서, 결국 피해자를 다시 불려서 지속적으로 증언해야 하므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판검사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피고인 변호사의 성인지 연수 강화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이 나서서 교육 실태 파악과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나.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는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향후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젠더폭력 수사재판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치우쳐져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법집행공무원이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중립, 기술적 법리 적용, 주변부 정황,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을 찾는 것에만 주력하다보니 정작 젠더폭력 발생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명증한 젠더폭력 피해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법집행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가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젠더폭력의 맥락에 대한 이해,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였다. 젠더폭력 범죄는 대체로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재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는 법집행공무원의 젠더폭력 및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더욱 강조되었다.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취약층에 대한 법집행에서 2차 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에게 젠더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불찰이 있음을 지적하거나, 장애여성의 보호자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전달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젠더폭력 법집행결과에 왜곡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다. 이주민 여성, 특히 동남아시아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법집행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법집행체계는 내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2차 피해를 가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주민 여성에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하는 성차별적인 통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탈북민여성의 젠더폭력사건은 젠더폭력수사보다 대공수사로 접근함으로써 탈북민여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가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 취약층의 젠더폭력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차별적인 통념이 자유롭게 작동하는 위 사례들은 성인지 관점의 수사재판을 법집행공무원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역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 관점의 수사재판을 강화하는 절차적 제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수사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지위 인정 및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진술인의 지위로 재판에 참여한다. 피해자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배제됨으로써 당사자로서 주체성을 상실하여 법집행과정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판결문 비공개 신청권이 없지만 피고인은 판결문 비공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지위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처리결과 통보가 누락되기도 하며, 피해자 진술권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기도 한다. 피해자 변호인 역시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증인신문도 불가하며, 증인신문사항 제출도 불가하다. 그 외에도 수사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변호를 위한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실무전문가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인 역할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젠더폭력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2차 피해 사례들은 성인지 감수성 차원을 넘어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뢰인 동석, 통역인 동석 등 취약층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이미 법률,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수사재판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무고에 대해 언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위반하여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한다. 현행 지침과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지침을 이행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재량권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현재 법집행조직의 지침, 규정을 충실하게 잘 이행만 하더라도 젠더폭력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지침, 규정이 충실히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선변호인, 무료법률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역량있는 변호인의 참여를 이끌어 낼 만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사례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법집행공무원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피해자 진술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 역시 법집행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원과 인력 한계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젠더폭력 사건 판례분석 결과 요약

#### 가. 주요 사건의 전과정 추적 조사결과

###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검토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과 수사기록을 포함한 일부 판례 검토, 2021년 강간과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범죄의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주요 법률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다. 형법은 강간과 추행에 대한 기본범죄유형을 담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합동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등 특수한 유형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범죄를 다룬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형사처치상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1일에 최초 시행된 이래, 2010년, 2012년, 2012년, 2013년, 2020년, 2022년 수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의 기준은 2022년 7월 4일에 개정된 것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대체로 법정형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30년 이하인데, 일반 강간보다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2/3으로 감경되므로 일반 강간범죄보다도 경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성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강간범죄의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 협박,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부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어느 부위를 침해했느냐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양형기준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한편 강도강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10년 ~ 3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3년도에 한차례 하한과 상한이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법정형에 미치지 못한다. 또 법에서는 형별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어떤 경우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강간·강제추행 살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강간치사의 형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다. 하지만 양형기준표에서는 사형을 부과하는 기준을 언급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무기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중요소가 작용하였음에도 유기징역형을 두고 또 그 기간도 25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정형과의 균형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의 선택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강간죄의 감경요소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이 있다. 하지만 처벌불원



의 의사표시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일반 양형 인자에서의 감경요소는 소극적 가담, 강압에 의한 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등이 있다. 그러나 상당금액을 공탁하였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다면서 타인에게 맡겨서 반성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실무에서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진지한 반성이나 금액 공탁을 형벌 자체를 감경하는 요소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중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추행은 가중요소 중 하나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를 든다. 성적인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교체되었다. 다만 수치심과 불쾌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이 용어만 교체되어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불원과 상당금액 공탁의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감경인자로 작용하는 동시에 집행유예의 요소도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 즉 이 인자를 충족시킴으로써 형을 낮게 받으면서 집행유예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면에서 집행유예에서는 제외하고 감경인자로만 고려하되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적정한 형벌 부과 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는 피해자가 존속이거나 범행에 취약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인 경우와 같이 가족 또는 친족 중 일부에 대한 폭력을 양형 가중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협박이나 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가정 내 폭력의 대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양형에서는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양형에서 반영하여 가정 내의 폭력에 대하여 법원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2) 젠더폭력 범죄 판결의 수사자료와 판결문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이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최근인 2020년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배포,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추출하였다. 최초에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유명 미투사건을 선정하였으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사건은 강간 등 사건, 강제추행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가정폭력 사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이다.

우선 강간 등 사건은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일부 성적인 편견이 담긴 질문과 답변을 이어 나갔고, 재판장은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은 채 본인도 그러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의 피해여부에 대한 진실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법정에서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고정관념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은 강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이 담겨져 있었다. 대법원은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단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강간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자료와 소송기록에서 특별한 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1심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면서 가슴에 접촉한 사안에 대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2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이 작용하게 되면 균질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위 N번방 사건 중 하나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조사 당시에 음란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진술을 청취하였던 경찰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성착취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 영상 등 피해자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경찰에서의 조사는 성착취 영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2015년부터 여러 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물 등의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더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사건은 형벌이 비교적 경하게 선고되는데,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왔다면 이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나. 성폭력 범죄 하급심 판결문 분석

하급심 판결 분석은 2021년의 성폭력 사건 중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유형의 판결문 총 34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지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성폭력 통념'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기준으로 삼았으며, 성폭력 통념을 5가지(① 피해자답지 않다, ② 피해자유발론,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것이다, ④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로 유형화하여 판결 내용에 각 통념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유죄를 선고한 187개 판결에 대하여는 성범죄 양형기준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사유에 대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사건 당시 혹은 이후의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판결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사이인 경우거나 친분이 있는 지인인 사건들에서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책임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여지를

주었다는 ‘피해자유발론’에 영향을 받은 판결문이 있었다. 해당 판결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델에 가는 모습이 자발적으로 보인다거나,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되게 ‘동의’를 추단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착각하였을 것이라며 가해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정한 판결들도 다수 있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설령 소극적으로 거부의를 표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전에 특정 행위에 동의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여서 동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라도 피고인은 같은 행위에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로 범행의 고의를 부정한 판결 등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 상 고소를 망설이다가 피고인과의 다른 갈등으로 비로소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특이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 전 다른 갈등상황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의 고소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한 판결들도 있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유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혹은 ‘동종전과 없음’이었다. 유죄를 선고한 대부분의 판결에서 두 사유 중 하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 반영되어 있으나, 단순히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은 양형기준 상 정해진 바가 없음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양형사유를 실시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유의미하게 반영된 판결들도 있었다. 우선 분석 대상 판결이 선고된 2021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제18조)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불리한 사유로

고려한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해당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양형사유로 고려한 판결들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들도 다수 있었다. 범죄의 성립과 전혀 관계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릇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막연히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를 고려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도 있었다. ‘기습추행’ 유형의 판결들에서는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습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 4. 해외 입법례 분석 결과 요약

해외 주요 국가 젠더폭력 관련 양형기준 및 양형판례 분석 부분에서는 이스탄불 협약의 실체법적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및 대만의 성범죄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살펴보았다.

이스탄불협약은 성폭력 및 강간을 ‘동의 없는 간음행위’로 정의하고, 협약국에 그러한 행위를 범죄화하여 소추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는 이스탄불협약상의 강간죄 정의규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스탄불협약이 제정되기 전인 2003년에 이미 ‘강간죄의 핵심성립요건은 동의가 없을 것이고, 물리적 폭력이 행사될 것 또는 피해자가 저항하였을 것은 강간죄 성립의 핵심요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독일은 이스탄불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강간죄에 관한 규정인 독일 형법 제177조를 개정하여 ‘의사에 반하는 간음’을 성폭력 또는 강간 범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여 ‘성적침해행위’라 칭하고, 폭력사용, 무기·흉기 소지 또는 이용 등을 통한 간음행위를 성적 침해행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184i조(성적 모욕·괴롭힘)을 신설하여 기존에 모욕죄로 처벌하던 경한 성적인 신체접촉행위를 성적 모욕·괴롭힘죄로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 영국 또는 미국과 같은 양형기준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범행동기, 행위자의 전력,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양형사

유들이 각 범죄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문의 명시적인 규정으로 규율하지는 않고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개개 범죄별로 그리고 개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관의 의무합치적 재량에 맡기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학대 사건에서 징역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는데, 이 판결의 양형이유를 보면 우리 법원이 낮은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양형이유와 유사하다. 독일에서는 3년여 전에 한 유명인이 26개의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였음에도 징역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이 낮다는 비판이 가해졌고,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독일은 2021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 반포 등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영국은 강간죄를 '동의 없는 간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은 개별 성범죄별로 상세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 양형은 1단계로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의 심각성 정도를 핵심요소로 하는 범죄등급을 결정한 후, 양형구간표에 정해진 범죄등급별 양형출발점과 양형범위에 가중·감경 양형인자를 적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강간죄 양형기준에서는 강간죄의 경우 감경인자를 고려함에 있어서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에 큰 의미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성품 그리고/또는 선한 행동'이 강간범행에 이용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은 가중인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유포, 취득의 죄에서는 해당 성착취물의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범죄등급을 달리하고, 많은 양의 이미지를 소지·유포·제작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강간죄를 '동의 없는 간음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중벌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아동성착취물 취득, 소지 등의 경우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기본범죄등급을 상승시키고 있고, 이미지 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교육정도 및 직업적 기술능력은 일반적으로 양형구간의 변경을 허용하는 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다. 양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족과의 유대 및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은 일반적으로 양형구간의 변경을 허용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없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가족과의 유대관계,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및 사회적 유대 관계가 인정되는 양형구간보다 낮은 양형구간으로 변경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일본은 2017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고,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하는 등 일부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은 기존에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행위자의 성적 의도’를 요구하였지만, 2017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행위자의 성적 의도’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판결례를 통해 강간죄 양형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대체적으로 징역 7, 8년에서 20년 전후의 범위에서 고르게 분포한다. 비교적 징역형이 낮은 사안의 경우 성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등이었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거나 전체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판원 제도시행기의 재판관제도(2008년 4월~2012년 3월)와 재판원제도(2009년 5월~2012년 5월)를 비교해 보면 최고 형량이 전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 후자는 ‘(5년 이상) 7년 이하’로 재판원제도에서 더욱 중벌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성범죄 양형에 있어서 과거 몇몇 판례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려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의 언동이나 행동이 가해자에게 오해를 불러오게 했다는 것으로, 주로 범죄자의 비난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기능하였는데, 최근에는 초기에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성적 행위를 요구할 때 거절했다면 특별히 가해자에게 이를 유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대만 사법원(司法院)은 양형의 적절성, 투명성, 공정성 및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28일 「형사사건 적정량 형법」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다. 대만은 「양형추세제안 시스템」을 통해 성자주방해죄 등 4개 범죄에서 양형인자, 예를 들어 성범죄 전 전과기록 횟수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 다른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기재하면 권고형량과 권고형량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자주권 방해죄 관련 검찰서류 분석결과를 보면 불기소처분의 주요 사유는 ‘피고의 범행에 대한 다른 적극적인 증거가 없음’, ‘피해자가 지적한 기타 증거를 보강하지 않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탈출하지 않음’,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와 교제함’,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음’, ‘피해자의 진술 전후 불일치 또는 논리적 모순’ 등이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이상적 피해자’상이라는 편견에 근거하여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시하였다.

## 제2절 정책제언

### 1.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가.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소집단별 차별화된 교육

본 연구에서 경찰과 검찰 모두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신념, 즉 남녀평등의식이나 온정적 성차별 의식이 일반인 표준 집단의 상위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일반인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같은 동년배의 일반인 집단보다 의식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교육의 기회가 적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경찰과 검찰이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많았고, 공공기관 내 각종 성평등 정책의 제도화로 인해 성인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검찰 대상의 심층면담에서도 과거 4~5년 간 성인지 감수성 진작을 위한 전사적 교육과 정책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해 주었고,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가들도 이들의 최근 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경찰과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남녀평등의식이나 온정적 성차별 의식이 일반인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있었고, 이러한 대상자들이 남성 집단에 좀 더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을 대표하는 신념, 즉, 남녀평등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 4대폭력에 대한 통념에서 문제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검찰의 심층면담에서도 내부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수사관의 전문성과 연결시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반복 조사하는 식의 2차 피해 행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가들도 피해자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최근의 사례들을 다방면에서 여전히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판례분석의 결과에서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의 언어나 양형 선고 결과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아직 상당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저조한 성평등 인식을 보이는 법집행공무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성별로는 남성 집단에,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은 집단에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전사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인지(awareness)’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이를 ‘내재화(internalization)’하여 구체적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천(performance)하고 구현하는 것은 아직 충분치 않고 개인 간의 차이도 상당하다는 점도 추론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수사 및 재판에 종사하는 형사사법기관 법집행 공무원 중, 저조한 성평등 인식 혹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변별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성별이나 연령, 혹은 직급 등 소집단에 따라 특화된 교육 혹은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하는 자발적 검사 등을 통해 저조한 대상자들이 교육에 보다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의 개별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현행과 같은 전직원 대상의 의무적 집체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만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의 교육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이들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이 저조한 사람들의 개별적 수준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교육의 형식을 일방이 아닌 쌍방향의 토론식으로 구성하여, 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만을 강조하는 전통적 강의식 교육(education)에서 벗어나, 개별적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전통적 교육은 주로, 양성평등에서 어떠한 점들이 간과되어 왔는지에 대한 강의식 교육으로 대상자들에게 핵심 개념들을 ‘인지’시키는데 치중하여 왔다. 물론,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그러한 핵심 개념의 인지마저도 저조한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상,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은 그러한 ‘성인지 관련한 인식이 저조한 대상자들’에 집중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의 인지를 넘어서 ‘실천 단계’에 접어들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각 형사사법기관은 성인지 감수성 인식에 있어 개별적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의 인지를 넘어선 실천을 위한 보다 심화된 교육을 구성하되, 수사나 재판의 실무와 연결되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 개발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되는 수사나 재판의 성인지 미흡

사례들을 수집하고 집행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커리큘럼의 개발과 현장 밀착식 교육방법 등을 연구하여 보다 진일보한 교육안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 나. 경찰 및 검찰의 이차 피해 수사행동 예방을 위한 특화된 교육

본 연구에서는 2차 피해 수사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4대폭력에 대한 통념'이며, 남녀평등의식과 젠더기반 제로섬 신념이 4대폭력에 대한 통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의 성평등 교육 및 정책 인식은 4대폭력 통념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양성평등 의식 강화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젠더폭력 대한 통념 감소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행의 성평등 교육이나 정책이 이차 피해 수사행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진일보한 교육이나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경찰과 검찰 대상의 심층면담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반복 조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관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수사관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명목적인 이유로 개인의 통념이나 편견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상의 이차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 향후 수사상의 실무에서 피해자 관점을 견지하기 위한 보다 특화된 구체적인 훈련을 필요로 함을 방증한다. 예를 들어, 수사관(재판관)들은 젠더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나 트라우마 증상에 대한 개별적 차이,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해자 반응의 다양함 등,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질문하는 수사 인터뷰 기법상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투영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도 필요하다.

피해자 관점의 성인지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젠더폭력 수사에 있어 전문성 함양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령 피해자-가해자 특성 이해, 수사 인터뷰 방법, 트라우마 기반의 실무(trauma informed practices),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해 등(Campbell, Lapsey, & Wells, 2020; Darwinkel, Powell, & Tidmarsh, 2013; Tidmarsh, Sharman, &

Hamilton, 2021)과 같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교육과 훈련이 동반될 때 이차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차피해 행동을 줄이는 방법은 젠더폭력 관련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특화된 실무적인 훈련과 교육으로 젠더폭력의 이해를 높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일 것으로 사료된다.

#### 다. 법관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한편, 판례분석 결과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현출한 판결문은 분석대상 판결 342건 중 10건 밖에 되지 않았다.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점차적으로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학습한 법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급심 판결문 분석에서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 이후에도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법관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넘어서 재판과정 및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통념에 대해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 내에서도 법관 연수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재판관의 성인지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 쉽지 않고 이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거의 전무하여 간접적으로 판례분석을 통해 성인지 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다. 재판이라는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정에서의 2차 피해 사례가 사실상 일반인이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고 주로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적어도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 변호사나 피해자 지원 실무가들과 법원의 상시적 정례회의 등을 통해, 재판정에서 이뤄지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전파 등을 통해 법원도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피해자 변호사와의 협업이나, 법원 내의 특별 조직 구성 등을 통해 재판의 결과 뿐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투영된 좋은 사례와 미비한 사례들을 분별하여 사례집 등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재판 실무가들에게 공유하고 전파한다면, 법관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심층면담 조사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잘 투영된 사례로 재판관이 피고인 변호인의 피해자 심문 내용을 미리 접수하여,

2차 가해성 질문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했다는 모범례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이 미비한 사례까지 함께 연구하여, 재판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성인지 감수성의 정례적 실태조사와 교육효과의 상시적 측정 및 환류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정례적으로 조사하여 그 현상과 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의 개선을 위한 가장 기초적 작업일 것이다. 형사사법기관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현상을 왜곡하거나,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의 수준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성인지 감수성의 정례적 실태 조사를 통해 현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로 각 기관의 보다 구체적이고 정치한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며, 관련 정책이 미진한 분야와 함께 향후 어떠한 정책 내용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례적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효과성을 상시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내용의 실무적 응력 향상을 꾀하고, 고소·고발 접수, 피해자 대면 조사, 피해자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 통지시에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고, 관련 민원제기에 따른 절차 진행 결과 성인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하는 등, 교육 효과의 측정이 수사 및 재판 실무 개선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마. 형사사법 절차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 제고

이번 연구를 통하여 법집행공무원은 아니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 시 피해자의 사정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질문하여 공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질문은 형사소송절차상 필요하지만, 그 외 피해자의 성적인 취향이나 경제상황, 과거 성생활과 관련 전력 등 피고인의 범죄를 반박할 만한 사실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나, 왜 항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추궁,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개별적 사정 혹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위한 기계적 논리로 구성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마땅히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판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질문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이 담긴 질문을 하거나 성적인 차별을 내용으로 하는 질문을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고(주체는 변호사단체나 법원 등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 법정교육에 이를 포함시켜 이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성인지 감수성 실천을 위한 수사 및 재판관행 혁신

### 가. 성인지 관점의 사법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형사사법기관 법집행 공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보다 실천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기존의 수사 및 재판관행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 법원의 심층면담에서 지적된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점차적으로 보편적 법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경찰 수사관이나 검찰, 법관이 되는 과정에서 학습된 법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만으로 이를 체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수사나 재판관행을 해소하고 성인지 관점이 투영된 수사 및 재판실무로 혁신하는 사법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가령,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 지적된 것처럼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폭력 사실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하나의 치유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신청이 불허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진술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면서 진술권 제한은 소극적 재량만 허용하게 만드는 사법문화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보편적 법원리로 수용한 법원 내 사법문화는 판사 재량에 의한 소송지휘권 발휘에도 영향을 미쳐 젠더폭력 2차 피해 방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증인신문의 명목 하에 가해자측 변호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2차 피해 가능성을 재판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면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송지휘권은 판사 재량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권고되는 사법문화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 언급한 바대로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진단하

고, 피해자 지원기관 및 피해자 변호인과의 협업을 추진하며, 법원 내에 성인지 감수성 학습조직을 활성화하여 토론식, 사례중심 논의의 장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찰, 검찰 역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학습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법집행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법문화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나.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인 지위 강화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인의 당사자 지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체계에서 주체는 피고인·변호인, 검사, 판사가 된다. 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참고인, 진술인, 증인에 불과하여 사건에서 타자화되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되어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와 면담내용을 보면 최근 젠더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진술하기 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가 진술을 기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전에 피해자 진술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피해자가 진술을 기피한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해야 하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사전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피해자등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진술불허사유로 들고 있으나, ‘충분히’, ‘현저하게 지연’과 같은 용어는 헌법과 법률에서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부여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관의 재량을 넓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는 공판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공판절차 지연만을 목적으로 진술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에 대한 불허사유를 규정한 위 규정은 삭제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피해자가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게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만 불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권 보장은 피해자 지위 인정의 한 예에 불과하다. 중요한 쟁점은 수사재판과정에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위 인정은 ‘수사재판과정 통지’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수사재판과정 통지는 본인 신청에 기반하고 있으며, 통지되는

내용도 극히 제한적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재판절차의 흐름과 그 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재판절차 진행 및 결과 통지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처리절차에서 배제되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보석으로 출소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다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지위 인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지위,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집행절차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인 피해자는 이를 사법당국의 압박으로 받아들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형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고 이를 빠르게 결정하도록 요구하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에 압박을 느끼고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하고 후회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 변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법원에 신청하여 진술할 수 있다(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28, 대법원 규칙 제3029호] 제6조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동조 제6항),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은 보장되지만,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재량으로 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권은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둔 것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불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권 보장의 실질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 진행경과와 피고인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어떻게 활용될지 알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단순히 진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는 바로 범죄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성폭력처벌법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의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되는데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에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및 무료법률지원 확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담소를 방문할 경우 자신의 진술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사기관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담 후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국가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법률자문 상담을 하거나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기관에 연계하여 무료법률구조를 받도록 지원하게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방문시부터 동석하여 법률적으로 조언하여 주고, 그 변호사가 수사절차와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개입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임무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수사재판절차에서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면담에서 국선변호인, 무료법률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많이 거론되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젠더폭력 사건에서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여 재판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었다. 가해자 측은 많은 돈을 들여 승률 높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반해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여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회의



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는 원인을 단순히 변호사 개인의 자질 문제로만 치부하기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국선변호인에게 명예나 책무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국선변호인의 재판승소를 위한 노력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젠더폭력 관련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에 놓여있다. 예를 들어, 무료법률구조기금 등을 통해 역량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약 7개월 정도면 기금이 소진되어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젠더폭력사건 수사재판에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역량있는 변호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인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변호인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당한 보수체계 및 충분한 기금 마련 역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정당한 사법적 편의제공 실현을 위한 규정 강화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층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통념이 여과없이 적용되어 2차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취약층에 대한 정당한 사법적 편의제공, 예를 들면 신뢰관계인 동석과 같은 제도가 적극적으로 실현된다면 범집행과정에서 2차 피해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적극적 실현은 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은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 육안으로도 명확한 장애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겠다.

이주민 및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법통역인 양성을 법제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 속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관점 역시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은 짐작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는 문화마다 다른 관점들이 국내법적인 언어로 명료화

되어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사법체계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법통역인 양성이 필요하다.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과 형사사법체계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말에 익숙한 주변 지인이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인 비전문가에 의한 통역은 이주민 및 외국인의 젠더폭력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권적 차원에서도 전문적인 사법통역인 양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법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역인 양성이 이미 상당히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법통역인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법통역인 양성 제도를 법제화하여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마. 피해자 개인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법집행 절차 개선

젠더폭력 피해자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변호사는 젠더폭력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는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 병합이 가능하더라도 젠더폭력에 있어서는 사건 병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결론적으로 사건병합은 피해자의 개인민감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취약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전문가 면담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최근 젠더폭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성범죄와 경제범죄와 같은 일반형사사건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관여된 범죄자와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른다. 이렇듯 복잡한 젠더폭력의 양상을 고려하면 수사재판 편의를 위한 사건병합 요구는 재판부에서 기각해야 함이 명확해 보인다. 판결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데, 현대의 디지털시대는 거주지역, 출신학교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병합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형사사법체계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가해자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신중한 검토없이 사건병합이 결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결정과정이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판결문 공개시 첨부되는 범죄일람표에 개인 민감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 역시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법집행체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젠더폭력 법집행체계는 디지털시대 흐름에 따라 개인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 바. 피해자와의 무리한 합의 규제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양형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양형조사서에서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실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결선고기일을 늦추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현재 양형사유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합의를 위한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양형조사서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원하지 않고 추후 연락을 바라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에 둘 필요가 있다.

## 3.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개선

### 가. 양형기준 제정절차 정비

현재 양형기준은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함께 변화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법정형에도 반영되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양형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형벌을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

현재의 양형기준은 기존의 판례에서 형벌부과 부분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제정·개정되므로,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이 더 중하게 변하였거나,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대두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이를 반영한 경우 등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양형기준의 법정형과의 괴리는 법원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는 다른 형벌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되었거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대두되어 법률이 개정된 경우 공포된 시점에 양형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기존의 판례와 관계없이 형량을 일괄 상향하는 것을 제안한다.

## 나. 범죄등급 구분 및 양형인자의 중요도 설정 관련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에서 범죄등급을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3등급으로만 나눈다. 감경, 기본, 가중 권고영역 중 어느 권고영역이 적용되는지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영역에서 세부적인 형량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뿐이다.

영국의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특별/일반양형인자 구분 및 구체적인 특별/일반양형인자 설정은 먼저, 현재의 특별/일반양형인자 설정은 성범죄의 특성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예컨대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 인적신뢰관계의 이용은 범행의 중합 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양형인자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범행의 중합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표지들(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등)이 특별양형인자가 아니라, 일반 양형인자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인적 신뢰관계 이용',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등의 요소가 모두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일반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그러한 인자가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에 따라 감경권고영역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가중권고영역의 형량범위가 적용될 수는 없다.

위의 문제점은 우리의 양형기준이 범죄등급을 크게 3등급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과 결합하여(3등급으로만 구분하고 있기에 현재의 양형기준이 그러한 요소를 일반양형인자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영국과 비교하면 그러한 요소가 선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규범적 차원에서(양형기준상) 약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식 차이 등에 따라 개개 사건에 따라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범행의 중합 정도 관련 요소(피해관련 요소 및 유책성 관련 요소)를 세분화하면서 범죄등급을 6등급 등으로 우리에게 비해 더욱 세분화하고 있기에 그러한 요소들이 선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개개 법관의 인식 차이에 따른 편차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양형기준이 특별/일반양형인자 구분, 범죄등급의 3등급화라는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감경, 기본, 권고 영역을 각각 2등급으로 나누어서 범죄등급을 총 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현재 일반양형인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범행의 중합정도와 관련된 중요요소들이기에 특별양형인자로 할 필요가 있는 표지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하되(예컨대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특별히 적용되는 ‘권고영역 결정기준’<sup>323)</sup>을 정하는 것은 현재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에서 발생하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양형기준에 대한 해설·주석 제공 및 적용할 수 없는 양형인자 명시

현재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가 ‘처벌불원’, ‘비난동기’ 등과 같이 아주 간단한 문구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간단한 기술을 통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양형인자의 적용이 개개 사건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날 수 있다. 따라서 영국 및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과 같이 우리나라도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상세한 해설·주석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국 또는 미국과 같이,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성범죄의 특성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이전의 선한 행동’, ‘가족과의 유대 및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과 같은 요소는 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양형기준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라. 처벌불원의 감경이유 구체화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형사사법절차상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

323) 예컨대 인정되는 특별가중양형인자의 수를 범죄등급 결정과 연동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절차 진행 중이나 제1심법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가, 1심 재판 후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2심 법원 공판정에서 처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현행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 제출이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지고, 피해자가 (2심)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이 처벌불원의사표시는 ‘특별감경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감경요소가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시 또는 설명이 양형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마. 감경요소로서 상당한 보상에 대한 범죄유형별 분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핵심은 전파가능성과 삭제 부분인데 현재의 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는 단기 인력 고용으로 유지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포된 성착취물을 개인이 삭제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는 피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법정형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 유포자에 대한 삭제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좀 더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보상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보니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자변호인과 피의자변호인 두가지를 모두 신경쓰게 되는데 수입료가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는 강간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당하였는데 재판기간이 길어져서 변호인 선임료로 고액을 지불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나 민사까지 담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선변호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지원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관련 비용 등을 가해자가 공탁한 경우 피해기금으로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는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특별가중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는 ‘성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음란물 범죄’ 즉,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디지털성범죄와 음란물범죄의 차이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영국은 ‘수죄의 경우 전체형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범해진 가정폭력범죄 또는 성범죄’의 경우 실제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음란이미지 제작 등 죄’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에서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범죄등급을 달리 하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 ‘많은 양의 이미지를 소지·유포·제작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적시하고 있다. ‘아동성착취영상 촬영·송출의 죄’ 양형가이드라인에서는 피해자 연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유책성등급 및 피해등급과 결합시켜 범죄등급을 총 18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각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별개의 범죄사실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른 양형구간에서 벗어나 높은 양형구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성착취물 취득, 소지 등의 경우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기본범죄등급을 상승시키고 있고, 이미지의 수가 미성년자의 수에 상당히 미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구간에서 벗어나 양형구간의 상승이 인정될 수 있다. 미 연방 양형가이드라인은 음란물범죄

(Obscenity)의 경우 아동성착취물 취득, 소지 등의 행위에서 인정되는 범죄등급 상승 인자와 동일한 인자를 이유로 범죄등급의 상승을 인정하고 있지만(예컨대 음란물을 미성년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가학적·폭력적 내용의 음란물인지 여부, 컴퓨터 또는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 음란물 범죄의 경우 유포된 음란물의 이미지 수를 기준으로 범죄등급을 상승시키지는 않고 있다.

개인적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연속해서 행해진 경우일지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없고, 피해자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다른 양형가이드라인에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을 뿐, 피해자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특별 가중양형인자로 들고 있는 것은 하나의 범죄사안이라면 피해자가 많은 경우일지라도 실제적 경합관계가 인정되기보다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마련된 양형인자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항소심 판결에서<sup>324)</sup> 법원은 손모씨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행위에서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인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 그러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특히 제작, 판매, 배포의 경우) 피해자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되, 디지털범죄의 특성상 일반범죄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적합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모색할 필요 있다. 한편 그러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이 피해자 수 그리고 이미지·영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가중양형인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사. 법관의 양형기준 준수

양형사유에 있어서는 양형기준 상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형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재판부의 재량권이 넓게 보장되고, 때문에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선고형의 차이가 크게 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3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판결.



선고한 판결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를 명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양형기준 및 관련 인자 반영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과 그 특성에 대한 이해는 성인지 감수성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 양형기준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 또는 내밀한 영역에서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양형인자에서 관련 사항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가정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가정폭력 자체가 범죄화 되어 있지 않고, 폭행, 협박과 같은 다른 범죄유형에 포섭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데이트 폭력도 폭행, 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성폭력과 같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고 있으며, 언어적 정신폭력의 경우에는 모욕, 명예훼손, 감금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일반 범죄인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에서 친밀한 또는 내밀한 관계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요소로서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톱킹처벌법에는 별칙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서 균질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에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가중처벌인자로 추가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스톱킹처벌법상 별칙규정 위반을 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 강간죄 성립요건의 정비

미국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는 ‘의사에 반하는 또는 동의 없는 간음행위’ 즉, 이른바 ‘비동의간음행위’를 성폭력범죄 또는 강간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고, 폭력사용, 무기·흉기사용 등의 범죄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강간죄를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행위’로 정의하였던 독일도 2016년에 이스탄불

협약을 반영하여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를 '성적 침해행위'라고 지칭하면서 강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폭력사용, 무기·흉기 소지 또는 사용 등과 같은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강간죄의 체계를 개편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최협의를) 폭행·협박을 통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만을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기에 최협의를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다른 범죄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흡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일이 이스탄불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비동의간음행위를 '성적 침해행위' 또는 강제간음행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최협의를 폭행·협박을 '성적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을 통해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형사가별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성범죄로 처벌할 당벌성(Strafwürdigkeit)이 있는 행위를 적절하게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지, 성범죄로 처벌할 당벌성이 없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입법적 조치(즉, 형사 당벌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입법자도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독일과 같이 비동의간음행위를 강간의 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는 방안이 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문봉, 공정식 (2017). 왜곡된 성관념이 성폭력 무고사건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안전문화연구, 1, 41-60.
- 강선미 (2005).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강은영, 강민영, 박지선 (2021).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인숙, 이건정,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 권혜림 (2019). 수사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2차피해 인식요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671-681.
- 길보민 (202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젠더지위 제로섬 신념에 대한 이해.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룡, 김현조 (2013).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被害者學研究, 21(1), 245-264.
- 김소연 (2022).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한국 강간죄의 식민성과 대만 강제성교죄의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법제, 696, 167-194.
-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 허나윤, 조영주, 김미선 (2005). 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사업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용석 (2018).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의 타당화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 49(3), 87-114.
- 김은주, 이대성, 이미정, 이창한 (2001).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被害者學研究, 9(2), 241-274.
- 김정연 (2018).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0(1), 67-101.
- 김한균 (2018).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59, 415-443.

- 김혜정 (2019).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3), 265-290.
- 김효정, 김애라, 정연주, 동제연, 서경남 (2021).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찰청.
- 김희정 (2019). 비동의(without consent) 간음죄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의 “비동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4, 324-356.
-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호창 (2021). 대만의 형사법 체계의 입법적 개관 칙 주요 특징. *법학논총*, 41(4), 97-114.
- 류병관 (2006).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법과 정책연구*, 39, 5-421.
- 박선미 (1989).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刑事政策*, 4, 289-316.
- 박철현, 광명달 (2007).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被害者學研究*, 15(1), 1-32.
- 송광섭 (2000). 刑事節次에 있어서 被害者의 地位 強化. *被害者學研究*, 8(1), 100-133.
- 송인자, 강남식, 송현주, 한정원 (2006).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 신경아 (2004).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性認知的 觀點)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정책리포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 신성대 (2009).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기 (2002).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의 최소화 방안. *法學研究*, 12(4), 133-174.
-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2016).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 검사 타당화 기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형위원회 (2022). 양형기준.
- 여성가족부 (2020). 성인지 감수성으로 양성평등한 세상 바로 알기.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14&bbtSn=708589](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14&bbtSn=708589).
- 윤경희, 양문승, 장일식 (2019).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의 실태와 차이 분석. *경찰학논총*.
- 이도경, 김형빈 (2022).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학습지중심교과교육*

- 연구, 22(5), 567-581.
-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여성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신, 양난미 (2011).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3(1), 159-185.
- 이명신, 이계민 (2018).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여성연구, 96(1), 5-48.
- 이미경 (2011).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쟁점. 被害者學研究, 19(1), 105-130.
- 이미경 (201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23(2), 43-75.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3(2), 131-148.
- 이소라, 최미진, 양지영 (2021).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성인지 실태조사, 서울교육정책연구소.
- 이수연, 김인순, 고재훈 (2018).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연, 김인순, 고재훈 (2019).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검사 개발(II): 표준화 규준 마련 및 검사활용 메뉴얼 제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준 (2009). 성폭력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문제. 형사판례연구, 17, 560-589.
-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9-137.
-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 정재원, 이은아 (2018). 대학생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 여성학 교양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5), 11-35.
- 정주리 (2021).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85-303.
- 정현미 (2000).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被害者學研究, 8(1), 162-200.
- 정현미, 장규원, 진수명, 박철현 (199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68.
- 정혜욱 (2018).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법학연구 18(3), 55-88.
- 조국 (200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刑事政策, 14(2), 185-210.
- 조옥라 (2003). 의식화 운동에서 성별 감수성 훈련으로. 글로벌 젠더트레이닝 교육개발 사업보고서, (사)또하나의문화.

- 최인섭, 이순래, 조균석 (2006).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1), 23-335.
- 하경애 (2018). 청소년의 부모·또래요인, 인터넷음란물 접촉, 성인지 감수성 간의 관계 및 성교육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 한기중 (2014). 대만(중화민국)의 양안관련 법체계의 구조와 특징. 중국법연구, 21, 1-24.
- 함영욱 (2021). 사이버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가 사이버성폭력 사건의 수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선주, 조은경 (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被害者學研究, 20(1), 381-415.
- 허황 (2020).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28(1), 85-119.
- 홍태석 (2019).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원광법학, 37(3), 51-71.

## 2. 국외문헌

- Batchelder J. S., Koski D. D., & Byxbe F. R. (2004). Women's hostility toward women in rape trials: Testing the intra-female gender hostility thesi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2), 181-200.
- Blake, B. F., Valdiserri, J., Neuendorf, K. A., & Nemeth, J. (2006). Validity of the S DS-17 measure of social desirability in the American contex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8), 1625-1636.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ampbell, B. A., Lapsey Jr. D. S., & Wells, W. (2020). An evaluation of Kentucky's sexual assault investigator training: Results from a randomized three-group experi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6, 625-647.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edited by Samovar, Larry A. and Richard E. Porte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9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uncil of Europe (2011), *Explanatory Report to the Council of Europe Con*

- 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 Council of Europe (2018), ECHR Case-Law Research Report. Article 2, 3 and 14. Equal access to justice in the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violence against women.
- Darwinkel, E., Powell, M., & Tidmarsh, P. (2013). Improving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sexual offending through intensive train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0(8), 895-908.
- Edens, J. F., Buffington, J. K., Tomicic, T. L., & Riley, B. D. (2001). Effects of positive impression management on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Law and Human Behavior*, 225(3), 235-256.
- Erb, Volk & Schäfer Jürgen (Hrsg.) (2021),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buch. Bd. 4, 4. Auf. C.H.Beck.
-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 Bacon.
- Halime, C., Toine, A., Guy, G., & Tineke, A. (2010). Bringing gender sensitivity into healthcare practic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84(1), 143-149.
- Laufhütte, Heinrich Wilhelm/Tiedemann, Klaus/Rissing-van Saan, Ruth (Hrsg.) (2006), *Leipziger Kommentar Strafbuch*. Bd. 2, 12 Aufl., De Gruyter.
- Newman, Constance (2003). *Gender Sensitivity Assessment Tool for FP/RH Curricula*: Chapel Hill, NC: IntraHealth International.
- Ruthig, J. C., Kehn, A., Gamblin, B. W., Vanderzanden, K., & Jones, K. (2017). When women's gains equal men's losses: Predicting a zero-sum perspective of gender status. *Sex Roles*, 76(1), 17-26.
- Sugarman, D. B., Aldarondo, E., & Boney-McCoy, S. (1996).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4), 313-337.
- Tidmarsh, P., Sharman, S. J., & Hamilton, G. (2021). The effect of specialist training on sexual assault investigators' questioning and use of relationship evidence.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https://doi.org/10.1007/s11896-021-09446-x>.
- Tisch, S. J., & Wallace M. B. (1994). *Dilemmas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 What, Why, And Who Of Foreign Aid*, Westview Press.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21), Guidelines Manual 2021.  
van de Mortel, T. F. (2008). Faking it: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in self-report research.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4), 40-48.  
von Heintschel-Heinegg, Bernd (Hrsg.) (2022), Beck'scher Online-Kommentar, Stand. 2022.11.1., C.H.Beck.  
Wentz, E. & Archbold, C. A. (2012). Police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victims: Exploring the Intra-Female Gender Hostility Thesis. *Police Quarterly*, 15(1), 25-44.

### 3. 국외기타

井田良(2020). 講義刑法学・各論【第2版】.  
小池信太郎(2021). “性犯罪の量刑(その1)”, 法学セミナー 66券8号.  
小池信太郎(2021). “性犯罪の量刑(その2)”, 法学セミナー 66券9号.  
小池信太郎(2021). “性犯罪の量刑(その3)”, 法学セミナー 66券10号.  
小池信太郎(2021). “性犯罪の量刑(その4)”, 法学セミナー 66券11号.  
鈴木義男(1970). 判批. 研修 263号,  
佐伯 仁志(2021). “強制わいせつ罪における性的意図の要否を巡る判例の変更 : 刑法”, 法学セミナー 66券9号.  
前澤貴子(2017). “性犯罪規定に係る刑法改正法案の概要”, 調査と情報 No. 962.  
平山真理(2010). “裁判員裁判と性犯罪”, 立命館法學 327-328号.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2021).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  
性犯罪に関する刑事法検討会(2021). (配布資料7) 性犯罪の量刑に関する資料.  
法觀人編輯部, “張鏡榮(榮律師)編著《透明的刑法—分則編》”, ”法觀人 第249期, 2020.  
法規資源引介 第131輯 103年11月 性侵害犯罪防治法 立法院國會圖書館編印 中央警察大學犯罪防治學系教授沈勝昂審訂.  
林臻嫻, “從我國妥適量刑法草案談德國之無須量刑準則”, 國會季刊 第50卷第2期, 2022年6月.  
蔡宜家、林俐如、許家毓、顧以謙, “性侵害案件之檢察書類分析——以偵查結果為中心之實證研究”, 法務部司法官學院, 中華民國一一〇年六月.



## 부록1 ■

### 젠더폭력 사건 수사관행 조사 -형사사법기관 종사자(경찰) 대상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소속기관, 근무경력, 직책 등)

#### I. 젠더폭력 수사 관행

1.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사건의 수사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최근 접수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들은 어떠한 사건들입니까? 혐의없음으로 기각되는 사건들은 어떠한 사건들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2.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을 젠더폭력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젠더폭력 사건 수사가 다른 수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3. 젠더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해자의 주장과 다를 경우가 많습니까? 이러한 경우, 수사관행 상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가해자와 대질 심문을 하십니까?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진술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면서 확인하는 편이십니까?

4.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사에 장애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진술을 요구하거나 상세한 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까?
  
5. 피해자 진술을 듣고, 피해자의 신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조사하십니까?
  
6. 젠더폭력 사건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하거나 고소취하를 권하는 경우는 주로 어떠한 경우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7. 피해자에게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8.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이나, 평소 성향 등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건처리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성향증거로 인해 사건이 무성의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9. 2차 피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차 피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수사 경험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피해자가 평온하거나 사건 당시 저항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변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경찰관의 태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11.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진실한 반응을 보이면 수사 태도나 결정에 영향을 줍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된 태도일 가능성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 II.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관심

1. 혹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혹시 낯설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 III. 성인지적 접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대안

1. 본인이 근무하시는 경찰서의 성평등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평등 관련 교육이 있습니까?
2.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나 여성의 전화, 아보전, 노보전)과 젠더폭력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수사나 폭력 예방에 고충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3. 성인지적 접근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4. 최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정책 가이드 같은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 끝으로 향후, 성인지 실태 설문조사를 위해 조언해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록2 ■

### 검찰, 법원 심층면담 질문

####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최근 피해자 관점에서 검찰(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고 보이는 수사(재판)사례, 혹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수사(재판)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성폭력 전담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젠더폭력 전담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인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가해졌습니까? 보직순환에 따라 전담부서의 구성원이 바뀌면서 미흡해 지지는 않습니까? 기타, 전담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 최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 사건에서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검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4.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일이 감소하여 성인지 감수성 강화의 필요성이 덜 강조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검사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이때 증인 신청은 피해자(변호사) 측에서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증인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2015년 형사소송규칙 제134조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개정으로 증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피해자 의견진술이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진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피해자 의견진술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의견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법정에서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려는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검찰이나 법원에서 가해자 입장을 고려한 듯한 간접적 합의 종용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 (검찰만)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검사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8. (법원만)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와 문제점 등에 대해 판사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9. 수사재판에서 법리 적용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자를 압박한 사례가 없는지, 그 이유와 문제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0. 일각에서 사건 병합의 문제가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 기계적 형평 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마지막으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가 면담

연구명	2022년 형사사법 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발주처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자), 박경규 부연구위원, 김영중 부연구위원, 김남희 부연구위원, 조병철 조사연구원</li> <li>- 김혜정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 <li>-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 공익법률센터)</li> </ul>		
면담일		면담시간	
참여 전문가			
면담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관점에서 형사사법 법집행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시 성인지 감수성 반영 체감도</li> <li>- 형사처리 절차에서의 문제점</li> <li>- 성인지적 접근에 대한 피해자의 욕구</li> <li>- 형사사법절차에서 법집행공무원의 2차 가해 감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안</li> </ul>		



- ※ 본 면담은 젠더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전문가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 젠더폭력은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으로 통칭하고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 ※ **‘피해자 관점’**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 분야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에 대한 경험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전문가 면담 질문지

〈최근 동향〉

- 최근 어떠한 사건들을 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지원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 젠더폭력 수사·재판 법집행공무원들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변화되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젠더폭력 수사·재판 법집행공무원들의 태도 **변화**에 주요하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관련법 제개정, 여론, 대형사건, 조직문화, 교육훈련, 지원기관의 노력, 피해자의 자기주장 등

###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 젠더폭력 법집행공무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2차 피해)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납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피해자 의심·비난, 가해자 옹호·두둔, 사건처리의 부적절성(합의종용, 대질심문, 반복진술요구 등), 피해자 권리 침해(조력인 동석거부 등), 무고죄 및 명예훼손 언급 등
- 젠더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은 법집행공무원의 행동과 태도에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각, 감정, 태도에도 차이가 나타납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법집행공무원, 가해자, 피해자 본인,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

## 〈대안〉

- 젠더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집행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젠더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법집행공무원에게 바라는 주요한 소양, 태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젠더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2차 가해 감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젠더폭력 법집행공무원의 2차 가해 감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직종**, 어떤 **직급**, 어떤 **지역**의 법집행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부록4-경찰 설문지 ■

<p>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p>	<p>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p>	<p>ID</p>			
--------------------------	--	-----------	--	--	--

설문지	
<p>안녕하십니까?</p> <p>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p> <p>본 설문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 그리고 남녀 간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항들은 누구나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고 틀린 응답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설문에 응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의 누설이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10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p>	
<p>조사 실시 기관</p>	<p>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p>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p>			
<p>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는 조사목적으로만 수집 및 이용되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통계처리 이용에 동의하십니까?</p>			
<p>수집 목적</p>	<p>폐기 기간</p>	<p>동의</p>	<p>동의함 <input type="checkbox"/></p>
<p>조사검증</p>	<p>조사완료 후 6개월</p>	<p>여부</p>	<p>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다음 문항들은 개인의 생각과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다음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 체크 하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어떤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점점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는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	①	②	③	④
8.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부유한 사람보다는 인간성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10.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삶은 테니스 게임처럼 어떤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들은 지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2.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6.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17. 소수 사람들의 부는 다수의 희생으로 얻어진다.	①	②	③	④
18. 만원버스 안에서 노인이 내 앞에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0.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21.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2.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만들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23.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 교육에 좋다.	①	②	③	④
24.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5. 여성은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26. 나는 자신을 잘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27. 나의 언행에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논쟁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태도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31. 어떤 사람들의 성공은 대개 다른 누군가의 실패와 같다.	①	②	③	④
32. 신체상의 위험 부담이 큰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3.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①	②	③	④
34. 이때까지 내가 한 결정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5.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36.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면, 그 당사자는 결국 손해 보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흥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 대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3.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상대방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 없다.	①	②	③	④
7.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8. 여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운다.	①	②	③	④
9.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①	②	③	④
10.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기는 남자가, 요리, 빨래, 청소는 여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11. 여자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	①	②	③	④
13.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6.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17.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①	②	③	④
18.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9.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20.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21.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23.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24.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바쁜 척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5.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6.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자가 하고, 차례상 음식마련은 여자가 하는 것이 공평하다.	①	②	③	④
27.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8. 방문한 손님이 그만 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붙잡는 척 한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흉하다.	①	②	③	④
30.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픈 척을 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1.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32.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자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①	②	③	④
33.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34.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35.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6.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 각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를 설득하여 수사를 마무리해야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여성의 경제적 이득은 남성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①	②	③	④
3.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할 경우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강간이 아닌 성추행, 성희롱인 경우에는 합의를 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여성에게 가정 내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것은 남성에게 가정 내 의사결정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6. 부부가 폭력까지 행사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더라도, 남의 집안일에는 끼어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8.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애인인 경우 좋게 해결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9.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권한다.	①	②	③	④
10.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1. 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번 경찰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여성의 정치 영향력이 클수록 남성의 정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14. 경찰은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는 사건해결을 위한 사실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5. 수사가 중요할 뿐 공개된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평상시와 달리 술자리에서만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은 평상시 그런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을수록 남성은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된다.	①	②	③	④
18. 친한 동료들 간 단독방 성적 대화는 당사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9.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한 행위로 인하여 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0.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21. 밤에 숙박업소나 집에 함께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①	②	③	④
22.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스토킹은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3. 성희롱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예민하거나 의사소통에 미숙한 탓도 있다.	①	②	③	④
24.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억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취하를 권유한다.	①	②	③	④
25.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대면도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성폭력 수사 시 여성단체나 동행자가 있으면 도리어 공정한 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	①	②	③	④
27.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8.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9. 경미한 성희롱으로 징계받거나 비난받는 행위자를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0.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몇 년 전 사건을 문제 삼는다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1.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남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32. 피해자 수사 중 피해자를 닮는 표현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33.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보는 사람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①	②	③	④
34. 여성이 더 많은 권력을 얻을수록 남성은 더 적은 권력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35. 이성과의 자리에서 음담패설은 성희롱이지만 동성끼리 있을 때는 성희롱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36. 여성 차별 감소는 남성 차별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①	②	③	④
37.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구애를 계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8.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9 독립적 입장에서 수사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0 정확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체크 하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 관리자급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기관 직원들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성평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조직 내 성평등 관련 규정, 지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성평등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6.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성평등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8. 성평등에 대한 직원들 간의 토론, 워크숍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성평등 교육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10. 현재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11.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성평등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 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문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별거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재학·졸업 포함)
5. 대학교(재학·졸업 포함)
6. 대학원(재학·졸업 포함)



문5) 귀하의 소속기관의 지역은?

- |          |             |          |
|----------|-------------|----------|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9. 경기도   |
| 10. 충청북도 | 11. 충청남도    | 12. 전라북도 |
| 13. 전라남도 | 14. 경상북도    | 15. 경상남도 |
| 16. 강원도  | 17. 제주특별자치도 |          |

문6) 귀하의 소속은?

1. 시·도경찰청(7번 문항으로 이동해주세요.)
2. 경찰서(6-1번 문항으로 이동해주세요.)
3. 지구대·파출소(6-1번 문항으로 이동해주세요.)

문6-1) 본인의 근무지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1. 1급서
2. 2급서
3. 3급서

문7) 귀하의 총 경찰기관 재직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문8) 귀하의 계급은?

1. 순경
2. 경장
3. 경사
4. 경위
5. 경감
6. 경정
7. 총경 이상

문9) 귀하의 직급은?

1. 팀장급 이상
2. 팀원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설문 사례비 지급을 위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시요.**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부록5-검찰 설문지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설문지	
<p>안녕하십니까?</p> <p>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p> <p>본 설문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 그리고 남녀 간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항들은 누구나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고 틀린 응답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설문에 응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의 누설이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10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p>	
조사 실시 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p> <p>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는 조사목적으로만 수집 및 이용되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p> <p>개인정보 수집 및 통계처리 이용에 동의하십니까?</p>			
수집 목적	폐기 기간	동의 여부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조사검증	조사완료 후 6개월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다음 문항들은 개인의 생각과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다음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 체크 하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어떤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점점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는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	①	②	③	④
8.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부유한 사람보다는 인간성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10.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삶은 테니스 게임처럼 어떤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들은 지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2.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14.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6.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17. 소수 사람들의 부는 다수의 희생으로 얻어진다.	①	②	③	④
18. 만원버스 안에서 노인이 내 앞에서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0.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21.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2.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만들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23.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 교육에 좋다.	①	②	③	④
24.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5. 여성은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나는 자신을 잘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27. 나의 언행에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논쟁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태도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29. 내 기분이 나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31. 어떤 사람들의 성공은 대개 다른 누군가의 실패와 같다.	①	②	③	④
32. 신체상의 위험 부담이 큰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3.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①	②	③	④
34. 이때까지 내가 한 결정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5.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36.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푸면, 그 당사자는 결국 손해 보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흥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특별 대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3.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상대방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은 거의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의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 없다.	①	②	③	④
7. 결혼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상속제도는 잘못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8. 여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운다.	①	②	③	④
9.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①	②	③	④
10. 형광등 교체, 컴퓨터 점검, 무거운 짐 옮기는 남자가, 요리, 빨래, 청소는 여자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11. 여자들은 체력은 안 되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에까지 욕심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남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에 비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4.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6.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①	②	③	④
17.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①	②	③	④
18.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19.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20.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21.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2.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23.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24.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바쁜 척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5.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6. 명절 때, 장거리 운전과 성묘는 남자가 하고, 차례상 음식마련은 여자가 하는 것이 공평하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28. (방문한)손님이 그만 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붙잡는 척 한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29. 여성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흉하다.	①	②	③	④
30.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픈 척을 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1.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32. 여성을 위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도 여자들은 끊임없이 요구만 한다.	①	②	③	④
33. 딸은 커서 전문직을 갖더라도 우선 가사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34.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35.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6.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 각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폭력이 아니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를 설득하여 수사를 마무리해야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여성의 경제적 이득은 남성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①	②	③	④
3.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할 경우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강간이 아닌 성추행, 성희롱인 경우에는 합의를 권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여성에게 가정 내 의사결정이 많아지는 것은 남성에게 가정 내 의사결정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6. 부부가 폭력까지 행사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더라도, 남의 집안일에는 끼어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7. 상대방이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8.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애인인 경우 좋게 해결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9.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권한다.	①	②	③	④
10.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1. 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번 검찰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여성의 정치 영향력이 클수록 남성의 정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13.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검찰이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14. 검찰은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는 사건해결을 위한 사실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5. 수사가 중요할 뿐 공개된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평상시와 달리 술자리에서만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은 평상시 그런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을수록 남성은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된다.	①	②	③	④
18. 친한 동료들 간 단톡방 성적 대화는 당사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9. 흑시라도 내가 과거에 한 행위로 인하여 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0.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 역할이다.	①	②	③	④
21. 밤에 숙박업소나 집에 함께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①	②	③	④
22.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스토킹은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3. 성희롱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예민하거나 의사소통에 미숙한 탓도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취하를 권유한다.	①	②	③	④
25.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대면도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26. 성폭력 수사 시 여성단체나 동행자가 있으면 도리어 공정한 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	①	②	③	④
27.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8.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성폭력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9. 경미한 성희롱으로 징계받거나 비난받는 행위자를 보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0.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몇 년 전 사건을 문제 삼는다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1.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남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32. 피해자 수사 중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33.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보는 사람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①	②	③	④
34. 여성이 더 많은 권력을 얻을수록 남성은 더 적은 권력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35. 이성과의 자리에서 음담패설은 성희롱이지만 동성끼리 있을 때는 성희롱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 여성 차별 감소는 남성 차별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①	②	③	④
37.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구애를 계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8.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을 보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39.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0. 정확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체크 하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기관 관리자급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기관 직원들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성평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조직 내 성평등 관련 규정, 지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성평등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6. 현재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성평등 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8. 성평등에 대한 직원들 간의 토론, 워크숍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성평등 교육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10. 현재 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11. 검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성평등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 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문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별거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재학·졸업 포함)
5. 대학교(재학·졸업 포함)
6. 대학원(재학·졸업 포함)

문5) 귀하의 소속기관의 지역은?

- |          |             |          |
|----------|-------------|----------|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9. 경기도   |
| 10. 충청북도 | 11. 충청남도    | 12. 전라북도 |
| 13. 전라남도 | 14. 경상북도    | 15. 경상남도 |
| 16. 강원도  | 17. 제주특별자치도 |          |

문6)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검사
2. 수사관

문6-1) 귀하의 직급은? (6번 문항\_1번 선택 시)

1. 검사 10년 미만
2. 검사 10년 이상
3. 부장검사
4. 차장검사 이상

문6-2) 귀하의 직급은? (6번 문항\_2번 선택 시)

1. 5급 이상
2. 6급
3. 7급
4. 8급
5. 9급
6. 기타(연구, 전문경력관 등)



문7)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계신 검찰청의 유형은?

1. 지청
2. 지검
3. 고검 및 대검
4. 기타(법무연수원, 외부파견 등)

문7-1)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계신 검찰청이 소속된 그룹은?(7번 문항 1, 2, 4번 선택 시)

1. 1그룹      2. 2그룹      3. 3그룹      4. 4그룹
5. 5그룹      6. 6그룹      7. 기타(법무연수원, 외부기관 파견 등)

**【참고】 그룹별 검찰청 현황**

구분	기관명
1그룹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2그룹	안산지청, 광주지검, 서울북부지검, 대전지검, 울산지검, 성남지청, 서울동부지검, 부천지청, 창원지검, 서울서부지검, 고양지청
3그룹	대구서부지청, 안양지청, 청주지검, 천안지청, 부산동부지청, 제주지검, 평택지청, 순천지청, 전주지검, 부산서부지청
4그룹	김천지청, 포항지청, 진주지청, 마산지청, 군산지청, 통영지청, 목포지청, 여주지청, 서산지청, 춘천지검, 원주지청
5그룹	강릉지청, 홍성지청, 충주지청, 경주지청, 안동지청, 정읍지청, 논산지청, 밀양지청, 영월지청, 해남지청, 상주지청
6그룹	속초지청, 제천지청, 공주지청, 의성지청, 거창지청, 영덕지청, 남원지청, 영동지청, 장흥지청

문8) 귀하의 검찰 내 총 재직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 인쇄일 | 2022년 12월 30일

|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성차별시정과 02)2125-9956

| F A X | 02)2125-0926

| 제 작 | 디자인모장 02)2278-1990

ISBN : 978-89-6114-948-8 93330 비매품